

310/8  
통147

가구소득통계에 관한  
전문가 그룹(캔버라 그룹)

최종 보고 및 권고안

**(Final Report and  
Recommendations)**



B175063

오타와 2001

ISBN 0-9688524-0-8

# 목차

감사의 말 .....	1
서문 .....	5
요약 .....	7
제 1장 도입 .....	7
제 2장 소득 개념 .....	7
제 3장 기타 개념적 문제 .....	8
제 4장 이론의 실제 적용 .....	9
제 5장 소득 분배의 시기별 비교 .....	10
제 6장 소득 동태성 .....	10
제 7장 데이터 표현 .....	10
제 8장 로버스트성 평가 보고 .....	10
제 9장 향후 과제 .....	11
제 1장 도입 .....	13
1.1 가이드라인의 목적 .....	13
1.2 왜 소득 분배가 중요한가? .....	14
1.3 경제적 후생 .....	15
1.3.1 소득 .....	16
1.3.2 순자산 가치의 변화 .....	17
1.3.3 순자산의 저량 가치 .....	17
1.4 가구 소득의 미시경제 및 거시경제적 개념 .....	19
1.5 역사적 배경 .....	20
제 2장 소득 개념 .....	24
2.1 도입 .....	24

<b>2.2 소득 정의를 위한 전제</b> .....	<b>24</b>
2.2.1 역사적 배경 .....	24
2.2.2 미시적 접근법 .....	26
2.2.2.1 현금 소득 .....	26
자산 소득	
현금 이전	
공제	
2.2.2.2 현금 소득 외 .....	29
현물 소득	
순자산 변화	
2.2.3 미시적 접근법과 거시적 접근법의 조화 .....	30
<b>2.3 소득 대 자본 축적</b> .....	<b>31</b>
2.3.1 경상 이전 및 자본 이전 .....	31
2.3.2 자본 이득 / 보유 이득 .....	32
<b>2.4 소득구성요소와 그 총량</b> .....	<b>33</b>
2.4.1 도입 .....	33
2.4.2 총 소득과 구성요소 .....	35
2.4.2.1 근로 소득 .....	35
2.4.2.2 개인사업 소득 .....	35
2.4.2.3 임대 소득 .....	36
2.4.2.4 자산 소득 .....	36
2.4.2.5 경상 이전 수령분 .....	37
2.4.2.6 총 소득 .....	39
2.4.3 가처분 소득 .....	39
2.4.3.1 경상 이전 지급분 .....	39
2.4.3.2 가처분 소득 .....	39
2.4.4 조정 가처분 소득과 사회적 현물 이전 .....	40
2.4.4.1 사회적 현물 이전 .....	40
2.4.5 소득 지표의 선정 .....	42
2.4.5.1 총 소득, 가처분 소득, 조정 가처분 소득 .....	42
2.4.5.2 현금 소득 및 비현금 소득 .....	43

<b>2.5 소비와 자산 축적으로의 확대</b> .....	<b>44</b>
2.5.1 도입 .....	44
2.5.2 가계 소비 지출 .....	44
2.5.2.1 가구간 이전 .....	45
2.5.2.2 가구와 다른 단위간 자발적 이전 .....	46
자선단체에 대한 이전	
복권과 도박	
비생명보험	
2.5.3 보유 손익 .....	48
<b>제 3장 기타 개념적 문제</b> .....	<b>51</b>
<b>3.1 도입</b> .....	<b>51</b>
<b>3.2 회계 기간</b> .....	<b>51</b>
<b>3.3 통계 단위</b> .....	<b>52</b>
3.3.1 도입 .....	52
3.3.2 통계 단위의 정의 .....	53
3.3.2.1 무소속 개인 - 가족에 속하지 않은 개인 .....	54
3.3.2.2 가구 .....	54
정의	
소득 공유 가정에 대한 영향	
실제 측정 문제	
주택과 결합시키기	
주택의 정의	
3.3.2.3 광의의 가족 .....	57
정의	
소득 공유 가정에 대한 영향	
3.3.2.4 핵가족 .....	58
정의	
소득 공유 가정에 대한 영향	
3.3.3 단위 선택과 소득 측정 .....	58
3.3.3.1 소유자 거주 주택 .....	58

3.3.3.2 고용계약으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 .....	59
3.3.4 절충적 통계 단위를 위한 제언 .....	59
3.3.5 가구 균등화 지수 .....	63
3.3.6 인구 가중치 .....	64
<b>3.4 물가 지수의 활용 .....</b>	<b>65</b>
<b>3.5 구매력 평가설 .....</b>	<b>66</b>
제 4장 이론에서 현실로 .....	69
<b>4.1 도입 .....</b>	<b>69</b>
<b>4.2 데이터 유용성 .....</b>	<b>71</b>
4.2.1 도입 .....	71
4.2.2 메타설문조사 .....	71
4.2.3 결과 .....	73
4.2.3.1 근로 소득 .....	73
4.2.3.2 개인사업 소득 .....	73
4.2.3.3 임대 소득 .....	74
4.2.3.4 자산 소득 .....	74
4.2.3.5 경상 이전 수령분 .....	74
4.2.3.6 경상 이전 지급분의 공제 .....	75
4.2.3.7 사회적 현물 이전 .....	75
4.2.3.8 기타 항목 .....	76
4.2.4 결론 .....	76
<b>4.3 소득 분배 결과의 타당성 평가 .....</b>	<b>77</b>
4.3.1 도입 .....	77
4.3.2 소득 데이터의 결함과 모호성 .....	78
4.3.2.1 인구층의 불완전 포괄 .....	78
4.3.2.2 설문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기타 집단 .....	78
4.3.2.3 표본의 대표성 .....	80
4.3.2.4 데이터셋의 대표 응답자들에 대한 부정확한 소득 데이터 .....	80
4.3.2.5 소득 데이터가 지닌 기타 결함 .....	82

4.3.3	가구 균등화 지수에 대한 결과의 민감도 .....	84
4.3.4	물가 지수 .....	86
<b>4.4</b>	<b>실용적 정의 선정을 위해 .....</b>	<b>87</b>
4.4.1	비교 가능한 추계치의 생산 .....	87
4.4.2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IS)의 경험 .....	88
4.4.3	국제적 비교를 위한 실용적 소득 정의 .....	89
4.4.4	더욱 완전한 소득 정의를 향해 .....	92
4.4.4.1	자산 소득, 개인사업 소득 및 자가생산 .....	93
4.4.4.2	소유자 거주 주택을 위한 순 귀속 임대료 .....	93
4.4.4.3	사회적 현물 이전 .....	94
4.4.4.4	자본 이득 .....	98
제 5장	시기별 소득 분배의 비교 .....	100
<b>5.1</b>	<b>도입 .....</b>	<b>100</b>
<b>5.2</b>	<b>측정 오차의 영향 .....</b>	<b>102</b>
<b>5.3</b>	<b>데이터 창조자와 관련된 문제 .....</b>	<b>104</b>
<b>5.4</b>	<b>2차 데이터 생산자와 관련된 문제 .....</b>	<b>105</b>
<b>5.5</b>	<b>최종 사용자와 관련된 문제 .....</b>	<b>107</b>
5.5.1	추세 인지 .....	107
	변화의 유의성	
5.5.3	추세 vs 에피소드 .....	112
제 6장	소득 동태성 .....	115
<b>6.1</b>	<b>도입 .....</b>	<b>115</b>
<b>6.2</b>	<b>종단면 조사의 상대적 장점과 단점 .....</b>	<b>115</b>
<b>6.3</b>	<b>종단면 소득 조사: 국제적 사례 .....</b>	<b>117</b>
6.3.1	노동 및 소득 동태성 조사 .....	118
6.3.2	소득 동태성에 관한 패널 연구 .....	118
6.3.3	소득 및 프로그램 참여 조사 .....	119
6.3.4	유럽 공동체 가구 패널 조사 .....	119

<b>6.4 종단면 조사의 적용</b> .....	<b>119</b>
6.4.1 노동 시장의 동태성 .....	120
6.4.2 가족의 경제적 이동성 .....	121
6.4.3 저소득 동태성 .....	122
<b>제 7장 데이터 표현</b> .....	<b>123</b>
<b>7.1 도입</b> .....	<b>123</b>
<b>7.2 분석 단위 및 분류 단위</b> .....	<b>123</b>
<b>7.3 소득수준의 요약 지표: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b> .....	<b>126</b>
<b>7.4 소득 산포의 지표</b> .....	<b>127</b>
도수 그래프	
7.4.1 로렌츠 곡선 .....	129
7.4.2 지니계수 .....	130
7.4.3 분위집단 .....	131
7.4.4 기타 요약 지표 .....	135
<b>7.5 소득 구성</b> .....	<b>136</b>
<b>제 8장 로버스트성 평가 보고</b> .....	<b>137</b>
<b>8.1 도입</b> .....	<b>137</b>
<b>8.2 지침원리</b> .....	<b>137</b>
소득 분배 결과의 로버스트성과 데이터 결함 관계	
<b>제 9장 향후 과제</b> .....	<b>143</b>
<b>9.1 도입</b> .....	<b>143</b>
<b>9.2 가계의 경제적 후생 다음에 오는 것은?</b> .....	<b>144</b>
9.2.1 가구간, 가구 내 이전 .....	144
9.2.2 소득, 지출 및 부의 관계 .....	145
9.2.3 가계생산을 통한 비화폐적 소득 .....	146
<b>9.3 경제적 변화로 인한 소득 측정의 문제</b> .....	<b>149</b>
9.3.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변화 .....	149
9.3.2 비공식 부문 .....	150

부속서 1 소득구성요소의 정의 .....	152
<b>1. 근로 소득 .....</b>	<b>152</b>
1.1 현금 임금 및 봉급 .....	152
1.2 봉사료 및 보너스 .....	153
1.3 스톡옵션을 포함한 수익분배 .....	153
1.4 해고 및 퇴직 수당 .....	153
1.5 고용계약으로 원격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	154
1.6 고용주의 사회보험 부담금 .....	154
1.7 고용계약으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 .....	155
<b>2. 개인사업 소득 .....</b>	<b>156</b>
2.1 비법인 기업의 손익 .....	156
2.2 로열티 .....	157
2.3 물물교환용으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	158
2.4 자가소비용으로 생산된 재화 .....	158
2.5 소득에서 소유자 거주 주택비를 뺀 항목 .....	159
<b>3. 임대료에서 비용을 뺀 소득, 지대 제외 .....</b>	<b>160</b>
<b>4. 자산 소득 .....</b>	<b>161</b>
4.1 수령 이자에서 납입 이자를 뺀 금액 .....	161
4.2 배당금 .....	162
4.3 지대 .....	162
<b>5. 경상 이전 수령분 .....</b>	<b>163</b>
5.1 고용주 지원의 사회보험 급여 .....	163
5.2 정부 지급의 사회보험 급여 .....	164
5.3 정부 지급의 종합사회부조 급여 (자산조사 불필요) .....	165
5.4 자산조사에 따른 사회부조 급여 .....	166
5.5 가구간 정기적 현금 이전 .....	167
5.6 자선단체 등 비영리 기관의 정기적 지원 .....	168
<b>6. 총 소득 .....</b>	<b>168</b>
<b>7. 경상 이전 지급분 .....</b>	<b>169</b>
7.1 고용주의 사회보험 부담금 .....	169

7.2 근로자의 사회보험 부담금 .....	169
7.3 소득세 .....	170
7.4 정기적 재산세 .....	171
7.5 가구간 정기적 현금 이전 .....	172
7.6 자선단체 등 비영리 기관에 대한 정기적 이전 .....	173
<b>8. 가처분 소득 .....</b>	<b>173</b>
<b>9. 사회적 현물 이전 (STIK) .....</b>	<b>173</b>
<b>10. 조정 가처분 소득 .....</b>	<b>174</b>
부속서 2 미시-거시 개념 및 용어의 융합 .....	175
<b>1. 도입 .....</b>	<b>175</b>
1.1 소득 유형 또는 지급 수단 .....	175
<b>2. 현금 수입 (A열) .....</b>	<b>177</b>
2.1 생산 참여로 발생하는 소득 .....	177
2.2 자산 소득 .....	178
2.3 이전 .....	180
2.4 소득세와 재산세 등 .....	185
<b>3. 현물 수입 (B열) .....</b>	<b>186</b>
<b>4. 강제 저축 수입 (C열) .....</b>	<b>186</b>
4.1 고용주의 사회보험 부담금 .....	186
4.2 자산 소득 .....	187
4.3 연금 기금 조정 .....	187
4.4 자본 이득 .....	188
<b>5. 재화의 자가 생산 및 소유자 거주 주택 (D열) .....</b>	<b>188</b>
5.1 자가 생산 .....	188
5.2 소유자 거주 주택 .....	189
<b>6. 서비스의 자가 생산 (E열) .....</b>	<b>189</b>
<b>7. 사회적 현물 이전 (F열) .....</b>	<b>190</b>
<b>8. 상응 지출 (G열) .....</b>	<b>190</b>

<b>9. 소득 총량의 도입</b> .....	<b>191</b>
9.1 본원소득 .....	193
9.2 총 소득, 가처분 소득 및 조정 가처분 소득 .....	193
<b>10. 표를 소비 및 자산으로 확대</b> .....	<b>194</b>
10.1 소비 지출 .....	194
10.2 저축 .....	198
10.3 축적 자산 기장 .....	199
<b>11. SNA/거시 총량과의 조화</b> .....	<b>200</b>
<b>12. 결론</b> .....	<b>201</b>
<b>부속서 3 구매력 평가지수</b> .....	<b>207</b>
1. 구매력평가지수(PPP)란 무엇인가? .....	207
2. PPP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	207
3. 주기성 .....	208
4. PPP의 발전 .....	208
5. 어떤 PPP인가? .....	209
6. 대표성 및 비교가능성 .....	210
7. 여러 소득 집단에 대한 PPP .....	211
8. 결론 .....	213
<b>부속서 4 소득 데이터의 유용성</b> .....	<b>214</b>
<b>부속서 5 국민계정 추계치의 로버스트성</b> .....	<b>222</b>
1. 개관 .....	222
2. 산출 측정 .....	222
3. 소득 측정 .....	224
4. 지출 측정 .....	224
5. 세 가지 측정 지표의 융합 .....	226
<b>부속서 6 소득 분배 자료의 로버스트성 평가 보고서</b> .....	<b>227</b>
분배 데이터	

Statistics in Focus: 1차 배포 혹은 보도자료를 위한 요건

보다 상세한 보고서를 위한 요건

개론, 선집, 또는 간행물

참고문헌

표 및 그림

표 2.1 소득의 정의 .....	33
표 2.2 소비와 자산 축적으로의 소득 개념 확대 .....	49
표 3.1 절충적 통계 단위를 위한 캔버라 그룹의 제언 .....	60
표 4.1 가치분 소득구성요소 .....	90

부속서 2

표 1 미시 및 거시적 관점에서의 소득 분배 .....	203
표 2 소비와 자산 축적으로의 확대 .....	205

부속서 4

표 1 소득구성요소 코드 목록 .....	215
표 2 소득구성요소 요약자료 .....	221

제 5장

그림 5.1 X국의 불평등: 세 개의 함정 .....	109
그림 5.2 소득 불평등 추세: Y국의 지니계수 .....	110
그림 5.3 소득 불평등 추세: Z국의 지니계수 (1996=1) .....	111
그림 5.4 소득 불평등 추세 (지니계수) .....	113
그림 5.5. 소득 불평등 추세: H국의 지니계수 (1983=1) .....	114

제 7장

그림 7.1 평균 가계 균등화 가처분 소득: 생애 단계에 따라, 1996 (연간 \$) ..... 125

그림 7.2 가구 평균 및 중위 균등화 가처분 소득의 변화 ..... 126

그림 7.3 소득 도수 분포 ..... 127

그림 7.4 세계 소득분포 ..... 128

그림 7.5 가계 균등화 가처분 소득분포에 대한 로렌츠 곡선 ..... 129

그림 7.6 가계 균등화 가처분 소득분포에 대한 로렌츠 곡선 ..... 130

그림 7.7 십분위 집단의 가구 가처분 소득 ..... 132

그림 7.8 제1오분위와 제4오분위, 제1십분위와 제9십분위의 간격 ..... 133

그림 7.9 십분위 집단 비중간 비율 (A)과 십분위수점간 비율 (B) ..... 134

# 감사의 말

이 보고서는 캔버라 그룹 내 4개 이상의 회담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정성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속한 단체와 (회담이 개최되었던 시점에)의 협력이 분명 있었지만, 이분들은 특정 단체의 회원이라기보다는 소득분배통계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들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한, 전체 캔버라 그룹 회원들이 주신 귀중한 정보를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편집심사위원회 (Editorial Review Board) 위원 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Jenny Church** (Consultant Editor)

**Anne Harrison** (OECD)

**Marion McEwin** (호주 통계청)

**Leon Pietsch** (호주 통계청)

**Mike Sheridan** (캐나다 통계청)

**Timothy Smeeding** (룩셈부르크소득연구)

**Paul Van Der Laan** (네덜란드 통계청)

**Daniel Weinberg** (미국 통계국)

## A. 각국 기관

호주

**Academy of Social Sciences**

*Ian Castles*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Marion McEwin*

*Harry Kroon*

*Maureen McDonald*

*George Sarossy*

**Commonwealth Treasury**

*Phil Gallagher*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Peter Whiteford*

**National Centre for Social and**

**Economic Modelling**

*Ann Harding*

**University of Melbourne**

*Duncan Ironmonger*

캐나다

**Informetrica Limited**

*Michael McCracken*

**Statistics Canada**

*Cathy Cotton*

*Ian Macredie*

*Mike Sheridan*

*Maryanne Webber*

*Stew Wells*

중국

**State Statistical Bureau**

*Qingxin Meng*

*Ting Shi*

핀란드

**Statistics Finland**

*Veli-Matti Törmälehto*

*Pekka Ruotsalainen*

독일

**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Gert Wagner*

인도

**Department of Statistics**

*Prabhakar Joshi*

이탈리아

**Bank of Italy**

*Giovanni D'Alessio*

일본

**Statistics Bureau**

*Takehiro Fukui*

*Yoshiyuki Kobayashi*

한국

**National Statistical Office**

*Sa-Im Woo*

말레이시아

**Department of Statistics**

*Abdul Rahman Hasan*

*Saidah Hashim*

멕시코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Geografía e Informática**

*Patricia Méndez Carniado*

네덜란드

**Ministry of Finance**

*Leo van den Ende*

**Statistics Netherlands**

*Wim Bos*

*Ben Grubben*

*Paul van der Laan*

*Peter Meuwissen*

*Jos Schiepers*

*Clemens Siermann*

*Lourens Trimp*

뉴질랜드

**Statistics New Zealand**

*Dianne Macaskill*

*John Scott*

*Helen Stott*

노르웨이

**Statistics Norway**

*Jon Epland*

스웨덴

**B. 국제 기구**

Centre d'Études de Populations, de  
Pauvreté et de Politiques Socio-  
économiques/

International Network for Studies in  
Technology, Environment, Alternatives,

**Development (CEPS/INSTEAD)**

*Frédéric Berger*

*Uwe Warner*

**Statistical Off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UROSTAT)**

*Antonio Baigorri*

*Anne Clemenceau*

**Statistics Sweden**

*Kjell Jansson*

*Leif Johansson*

영국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Gordon Harri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Tim Harris*

*Nigel Stuttard*

미국

**Bureau of the Census**

*Daniel Weinberg*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sia Garner*

*Pieter Everaers*

*Alfred Franz (Consultant)*

*Eric Marlier*

*Lene Mejer*

*John Walton (Consultant)*

*Christine Wirtz*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ADB)**

*José Antonio Mejí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ILO)**

*Marie-Thérèse Dupré*

*Sylvester Young*

**Luxembourg Employment Study**

**(LES) at CEPS/INSTEAD**

*Jean-Yves Bienvenue*

*Jean-Marie Jungblut*

**Luxembourg Income Study (LIS)**

**at CEPS/INSTEAD**

*Paul Alkemade*

*Ann Morissens*

*Tim Smeeding*

*Koen Vleminckx*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Heinrich Brünger*

*Anne Harrison*

*Peter Scherer*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CLAC)**

*Juan Carlos Feres*

*Pedro Sáinz*

**The World Bank**

*Haeduck Lee*

*Michael Ward*

# 서문

가계의 경제적 후생과 가구소득에 대한 통계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호주 통계청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은 가구소득통계에 관한 국제 전문가 그룹 (International Expert Group on Household Income Statistics) 설립을 기획하였다. 이 기획은 가구소득통계 수준을 증진하기 위한 과정에서 각국의 통계 당국이 공통적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는 인식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특히, 소득 분배에 관한 OECD 비교연구 (Atkinson et al. 1995)는 가구소득 데이터가 지닌 품질과 비교능력에 대해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키면서, 각국이 협력을 통해 개념적, 방법론적 문제를 해결하고 타당성과 신뢰성이 더욱 높은 국민 통계를 생산해 내어 소득 분배에 관한 국제적 비교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생성시켰다.

국제 전문가 그룹은 호주 캔버라에서 1차 회의를 진행하였고, 회의 장소의 이름을 따서 스스로를 '캔버라 그룹'이라 명명하였다. 캔버라 그룹은 UN 통계위원회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의 후원으로 수립되는 도시 이름을 딴 전문가 그룹의 전통을 따라 탄생되었는데, 그 시작은 1987년 1월년 네덜란드 푸어버그에서 1차 회의를 진행하면서 수립된 서비스 통계에 관한 푸어버그 그룹 (Voorburg Group)이다. UN 통계위원회는 이러한 도시 그룹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국제 프로그램에서 수립된 체계 안에서, 각 직무 분야에서의 국제 표준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각 직무 분야에서의 모범적 사례를 교환한다.
- UN 통계위원회가 요청한 결과 (자문, 분류, 안내서 출판)를 생산한다.

## 캔버라 그룹의 목표

캔버라 그룹의 1차적 목표는 소득분배통계 작성과 관련된 개념적, 실천적 사안에 대한 표준을 개발함으로써 가구소득통계를 증진시키는 것이며, 소득분배통계에 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의 개정 지원을 주된 활동으로 삼는다. 캔버라 그룹은 국제, 국내의 통계 기관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개념, 정의, 실천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며, 개념과

방법론에 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류하고 작성된 가이드라인을 승인 받는 포럼의 역할을 한다. 캔버라 그룹은 공통된 개념적, 방법론적 문제 해결에 종합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향상된 국가 통계를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구소득분배의 국제적 비교를 위한 데이터도 증진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회의 및 참여자

캔버라 그룹은 가구소득통계를 전문으로 하는 탄력적인 실무 단체이며 국제 기구와 연구단체뿐 아니라 유럽, 북미, 남미, 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각국 통계 기관, 정부 부처, 연구소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모든 회원은 자신이 속한 기구의 공식 대표자라기보다는 하나의 전문가로서 그룹에 참여한다. 캔버라 그룹을 포함한 모든 그룹은 회원들이 각자 속한 단체가 아닌 개인적 역량으로 참여함을 중심 원칙으로 삼고 있다. 캔버라 그룹의 공식 언어는 영어이다.

캔버라 그룹은 1996년 12월에서 2000년 5월까지 네 번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그 동안 26개 국내 기구와 7개 국제 기구에서 70 여명의 참석했다. (감사의 말 참조) 1차, 2차, 3차 회의의 보고서는 1997년 2월, 1998년 5월, 1999년 각각 출판되었다. (1997, 1998, 1999년 가구소득통계에 관한 국제 전문가 그룹 참조). 이 문서 역시 캔버라 그룹이 펴낸 최종 보고서이다.

이 외에도 다른 개인과 조직에서 캔버라 그룹의 작업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A B Atkinson (Nuffield College, Oxford) 교수 및 Mr Andrea Brandolini (Bank of Italy, Research Department) 는 특히 캔버라 그룹의 보고서 작성에 가장 많은 공헌을 하였다. 1999년 12월 Eurostat가 조직한 소득분배통계에 관한 전문가 그룹 회의에서 진행한 논의도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소득과 부의 연구를 위한 국제 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into Income and Wealth)는 1996년 8월 노르웨이 릴레함메르에서 개최된 24차 총회에서 소득과 부의 분배에 관한 국제 표준 (International Standards on Income and Wealth Distribution)에 관한 회의 결과 캔버라 그룹을 탄생시켰다. 2000년 8월 폴란드 크라코프에서 개최된 제 26차 총회에서는 동 보고서 초안이 제출되었는데, 소득과 부의 연구를 위한 국제 협회는 이 보고서에 대한 전문 심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 요약

## 제 1장 도입

제 1 장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 대상, 역사적 배경 등을 설명한다. 자세하게는 통계 작성자, 자료 분석가 및 기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소득 분배에 관한 조화롭고 비교가능성이 높은 통계의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이 보고서는 통계 생산과 원 자료의 제공에 드는 비용을 비롯하여 자료 수집과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소득의 개념적 성격과 이론적 정의 모두에 충실해야 한다는 총량적이고 일반적인 관념을 토대로 쓰였다.

가구소득통계를 작성하는 가장 큰 목적은 경제적 후생을 측정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소득이 경제적 후생의 개념을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소득 외에도 더욱 광범위한 개념적 문제를 다룰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의 일차적 대상은 미시적 수준의 소득 통계 사용자와 생산자이지만, 가구 소득의 개념은 거시 국민계정 전문가에게도 친숙한 개념이다. 실질적으로 이 두 방식의 통계가 조화로운 방식으로 생산되는 일은 드물지만,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미시와 거시, 두 접근법의 차이와 용어를 사실상 단일한 개념으로 해석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제 2장 소득 개념

이 장에서는 자료의 품질 및 유용성에 관한 논의는 잠시 접어두고, 가구소득을 정의하고 측정하기 위한 개념적 원칙을 수립한다. 소득의 구성요소간 위계를 수립하고, 총소득, 가처분 소득, 조정 가처분 소득을 정의한다. 이들 개념에 대한 상세 정의는 부속서 1에 수록되어 있다. 부속서 2에서는 이들 미시적 개념과 국민계정의 거시적 개념의 융합을 시도하여 소득의 다양한 범주가 어떻게 조합되어 두 전통에서 발생한 여러 분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지 보여주고 있다.

캠버라 그룹은 표 2.1에 설정된 개념 체계 모두가 실용적 목적에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소득분배분석을 위한 기본 틀로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이 장에서는 소득 개념과 가계 소비 및 자본 축적 개념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 제 3장 기타 개념적 문제

3장에서는 소득분배통계를 생산하기 이전에 결정해야 할 기타 개념적 문제들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계의 기준이 될 통계 단위와 회계기간을 정해야 한다. 만일 가구를 통계 단위로 선택했다면, 가구의 규모와 구성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소득을 조정하기 위해, 가구 균등화 지수의 사용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캠버라 그룹은 소득분배분석에 사용될 회계기간을 1년으로, 그리고 표 3.1에 정의된 가구를 기본 통계 단위로, 그리고 표 3.1에 규정된 다른 단위를 특정 목적을 위한 대안적 통계 단위로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가구의 규모를 고려, 가구 균등화 지수를 사용하여 소득을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

소득분배통계의 시기별 비교 혹은 국가별 비교는 절대 수준의 소득에 불변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적 단위로 수행된다. 그러나 화폐로 표시된 소득분배통계를 시공간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실질 소득 비교를 위해, 어떻게 물가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국가별 혹은 지역별 실질 소득을 비교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 구매력평가지수 (Purchasing Power Parities)이며, 한 국가 내에서의 실질 소득 비교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물가 지수를 사용한다. 부속서 3은 이 구매력평가지수의 등장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캔버라 그룹은 국가별 실질 소득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환율과 관련된 구매력평가지수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 제 4장 이론의 실제 적용

4장에서는 실천적 문제를 개관하고, 소득분배통계 생산을 위한 매개변수를 결정한다. 실제 적용을 위해 논의해야 할 사항은

- 데이터의 유용성
- 데이터의 품질
- 통계의 목적

캔버라 그룹은 전 세계 6개 대륙의 25개국으로부터 데이터 유용성에 관한 메타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이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상세 결과는 부속서 4 참조).

결과에 따르면 각국은 현 관행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일관된 정의의 개발과 이행을 고려하는 수준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4장에서는 소득분배통계의 결과에 내재한 오차나 불확실성의 원인과, 실제적 어려움을 파악한다. 국민계정 총량지표는 부속서 5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지만, 소득분배통계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역할을 한다.

데이터 유용성과 데이터 품질 모두는, 소득 정의 선택 시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실용적 소득 정의는 주로 록셈부르크소득연구의 경험을 기반으로 그 논의를 발전시켜 왔는데, 주로 국가별 비교 상황에서 채택되고 있다.

캔버라 그룹은 국가별 소득 비교 시에는 표 4.1의 실용적 소득 정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이 외에도 더욱 완전한 소득 정의 개발을 위해 여러 대안이 제시되었다.

## 제 5장 소득 분배의 시기별 비교

5장에서는 국가간 시기적 추이의 변화 비교뿐 아니라 일국 내 소득 분배의 시기별 비교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1차 데이터 생산자와 복수의 국가에 대한 시계열 추계치를 합산한 2차 데이터셋 생산자, 그리고 1차 데이터와 2차 데이터 모두를 활용하는 연구자와 분석가를 위한 길잡이가 제공된다.

캠버라 그룹은 소득분배통계의 1차 및 2차 생산자가 시계열 데이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차, 2차 데이터와 메타 데이터 모두의 유용성을 증진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 제 6장 소득 동태성

제 6장에서는 횡단면적 데이터가 소득 분배의 시기별 변화 연구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한다. 종단면 (패널) 데이터는 소득분포 내에서 다양한 유형의 가구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이동하는가에 대한 통찰을 제시해 준다. 그러나 종단면 데이터도 탈락 편향 (attrition bias)과 수집 비용에서 단점을 지닌다. 패널 조사와 그 활용 사례도 함께 제시한다.

## 제 7장 데이터 표현

7장에서는 복합적인 소득분배통계를 확실하고 명쾌하고 쉽게 표현하는 방법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제시한다. 통계의 사용자들은 캠버라 그룹 회원의 경험을 토대로 소득분배통계를 표현하고 해석할 때의 함정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제 8장 로버스트성 평가 보고

8장에서는 소득분배연구의 결과를 제시할 때, 자료의 출처와 사용된 방법, 품질 평가서에 대한 전체 정보를 함께 제시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앞 장의 내용들을 보완한다. 또한 개별 분석과, 소득분배통계 생산과 활용을 위한 각 단계에 적합한 보고 형식에

대해에서도 권고한다. 로버스트성 평가 보고용 템플릿은 부속서 6에 수록되어 있으며, 부속서 7은 추계치의 로버스트 데이터 제시를 위한 Eurostat 권고를 소개하고 있다.

캠버라 그룹은 소득분배통계를 제시할 때에는 부속서 6에 수록된 로버스트성 평가 보고서를 항상 함께 제시하여 합목적성을 평가할 것을 권고한다.

## 제 9장 향후 과제

9장에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들에 대해 소개한다. 이 중 앞의 장에서 이미 논의된 과제도 있다. - 예, 경제적 후생을 측정하는 보충적 수단으로서 지출과 부가 지니는 중요성 등- 또한 오늘날 가구소득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세계 경제분야에서 개념적, 방법론적 문제제기가 발전하고 있다는 점, 남아 있는 향후 과제 등을 수록하고 있다.

캠버라 그룹은 이 가이드라인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발전하고 있는 소득분배통계 작성의 수준, 소득분배통계가 활용되는 경제 사회적 환경에 따라 내용을 갱신할 것을 권고한다.

# 제 1 장

## 도입

### 1.1 가이드라인의 목적

이 보고서는 통계 작성자, 데이터 분석가 및 기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조화롭고 비교 가능한 소득분배통계의 작성 안내서이다. 이 보고서는 통계 생산과 원 자료 제공에 드는 비용을 비롯, 데이터 수집과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면서도, 소득의 개념적 성격과 이론적 정의 모두에 충실해야 한다는 총량적이고 일반적인 관념에서 출발하였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일반적 관념과 모범 사례를 근거로 수립된 소득 데이터의 복합적 성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경제적 사회가 어떻게 조직되고 사람들의 생활 방법은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 및 정치적 변혁, 정부 역할의 변화, 세계화 등으로 인해 경제적 문제와 정책 우선순위는 변화를 겪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일반적 통계 표준을 수립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상황에 적합한 단일 개념은 없다는 것, 이 가이드라인이 소득분배통계 작성을 위해 단일하고 명확한 표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오히려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개념적이거나 실천적인 모든 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 부분은 소득분배통계의 생산자나 사용자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다.

모범 사례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욱 정확하고 완벽하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소득 통계를 활용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여러 권고가 수행된다. 그 경우 국내외 기관이 생산한 복합적인 통계를 투명하게 제시하고, 현명하게 잘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실용적 활용을 위해 작성되었다. 주 대상은 소득분배통계의 작성자들이며, 1차적 출처에서 나온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1차적 생산자 (조직)와, 데이터를 처리 (미시데이터, 메소 데이터, 요약 데이터)하고 이들로부터 자체적 추계치와

데이터셋을 도출하는 2차적 생산자 모두이다. 또한 1차, 2차 생산자가 생산한 산출물을 활용하는 연구자나 분석가들이, 소득분배통계의 기본 원리와 실질적 응용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더욱 잘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 1.2 왜 소득 분배가 중요한가?

경제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가 소득 분배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소득 분배의 형태가 경제활동의 형태와, 노동, 자본,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그리고 사회가 조직되는 방법, 예컨대 사회의 이론적 제도적 형태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정책 입안자가 다양한 사회경제 단체에 대해 보편적이고 사회적인 목적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평가할 때 관심 정보를 수집한다. 셋째, 다양한 소득 분배의 형태가 각 가구의 후생 및 욕구 충족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얻는 능력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목표에 부합한 통계치를 생산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따라서 소득분배통계의 생산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

- 한 국가 내에서 소득은 얼마나 불공평하게 분배되는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또는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의 그 결과는 어떠한가?
- 누가 ‘빈곤’층인가? 빈곤층의 개념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가?
-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는가?

보통 소득분배통계의 수요자들은 그 생산자보다는 ‘소득,’ ‘빈곤함,’ ‘부유함’ 등과 같은 모호한 개념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이들은 ‘소득’을 그저 현금 소득과 관련된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빈곤’층이란 소득이 적어 삶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며, 낮은 ‘소득’은 빈곤층의 소비를 구속하고 ‘부유’층이란 화려한 생활을 즐길 여유가 있는 사람들로 여긴다. 이 문제에 대해 일반적 관심 사항은 국가간 소득 분배 형태의 비교가 아니라 시간에 따른 소득 분배 형태의 변화이다. 통계학자들은 소득을 다양한 계층의 인구가 경험하는 다양한 삶의 수준으로 해석하며, 따라서 최저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최저의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제품의 편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분배되는가를 살펴보는 방안으로서, 또는 경제적 후생의 분배를 위한 최선책으로서 소득 분배에 관심을 두게 된다. 철저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후생 수준을 완벽히 측정하려면 개인의 생애 효용을 따져야 하며, 이 효용을 측정하려면, 가내 생산품과 공공재 등, 모든 제품에 대한 잠재적 소비뿐 아니라 여가에서의 차이점도 모두 측정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국가에서 사는 국민이 직면하는 제약과 서로 다른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제약의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년 정도의 기간으로 측정된 가구소득은 적어도 이러한 이상적 개념에 대한 최선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센의 능력접근법 (Sen's capability approach (Sen, 1992))과 같은 비공리주의적 틀에서 본다면 하더라도, 소득은 여전히 인간 후생을 결정하는 근본적 인자이다.

하지만 소득 외에도 경제적 후생이라는 개념을 규정짓는 지표가 존재하기 때문에, 먼저 소비, 저축, 부와 같은 성격을 규정짓는 광범위한 개념적 문제들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 1.3 경제적 후생

한 가계의 경제적 후생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라는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더 많이 소비될수록, 경제적 후생 수준도 높다. 물론 이 둘은 선형 관계는 아니다. 소비를 측정함으로써, 경제적 후생을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특정 기간에는 그 가계가 가능한 최대한의 소비를 하지 않는 대신, 가용 자원을 저축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가계는 저축을 함으로써, 소득 수준이 감소하거나 수요가 증가하는 미래의 지출을 위해 소득을 창출함과 동시에 '일천'의 역할을 하는 자산의 구매를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다. 부의 소유는 잠재적 수익의 창출 외에도, 좀 더 광범위한 경제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예컨대, 부유한 가계는 소비를 위해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신용을 더욱 쌓기가 쉽다. 따라서 한 가계가 지닌 최대한의 경제적 후생을 측정하려면, 소득뿐 아니라 부의 수준 (이후 순자산 (net worth) -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개념-으로 명명한다.)과 그 부의 가치 변동 모두를 고려한 다양한 경제적 상황의 측면을 함께 보아야 한다.

경제적 후생의 분석은 일차적으로는 사회의 다양한 집단간, 다양한 사회의 단체간 실질적 또는 잠재적 삶의 수준을 특정 시간을 기준으로, 혹은 통시적으로 비교하는

일이다. 보통 삶의 수준 문제를 다루는 정책에서는 어떤 형태이든 소득에 역점을 둔다. 다시 말해, 정책적 목적에서 소득은 경제적 후생을 평가하는 가장 객관적 기준으로 통용된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도 가구 소득의 측정에 역점을 둔다. 그러나 가구소득이 경제적 후생의 유일한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경제적 후생과 소득, 순자산 가치의 변화, 순자산의 저장적 가치간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소득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 한다.

경제학자들이 내세우는 경제적 후생의 개념에는 여가 시간의 가치 (또는 노동의 비효용)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 1.3.1 소득

넓은 관점에서 소득이란 임금 및 봉급, 사업 소득, 투자한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배당금, 사회보험에서 발생하는 연금이나 기타 수익, 기타 경상 이전수입 과 같은 정기적 수입을 의미한다. 유산 등으로 받는 광범위하고 비정기적인 수입 등은 자본 이전에 해당한다. 이는 받는 즉시 지출을 할 수 있거나 ‘일회성’의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득은 경제적 후생과 더불어 한 가계 경제 계정의 정기적 혹은 반복적 수입을 보여준다. 또한 그 가계가 소비와 저축에 가용한 자원 측정의 도구가 된다. 가계 계정의 지출 측면에서 보면, 소비 지출은 정기적 혹은 반복적 소득뿐만 아니라 전년도의 저축에 의하거나 부채를 들여 조달한 자금을 의한 일상적 구매를 의미한다. 은퇴한 가구의 경우 소비를 위한 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 생애에 걸쳐 동등한 소비를 하려는 의도적 노력이 나타난다. 반면 농민의 경우 수 년에 걸쳐 평균적 소비를 하지만, 동기간 동안 소득은 극심한 변동을 보일 수 있다. 이 경우 소비 지출은 한 가구가 지니는 지속 가능한 삶의 수준을 더욱 잘 측정하는 도구가 된다.

가구 설문조사에서 소득과 소비 지출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수집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많은 응답자들이 소득을 민감한 문제로 여기고,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하거나 그릇 전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반면, 소비 지출에 대한 데이터는 수집 비용이 많이 든다. 사실, 경제적 후생 측정을 위해 소득을 선택할 것이냐 또는 소비 지출을 선택할 것이냐를 따질 경우, 소득 데이터가 소비 지출 데이터보다는 훨씬 수집하기가 용이해서 소득 데이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어쨌든, 이 가이드라인에서 소득을 규명하기 위한 접근 방법은, 처음부터 필수적으로 소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 정 (+)의 자원 흐름 (현금, 재화, 서비스)이 이를 받는 가계 소비나 저축 잠재력을 증가시킨다면 경제적 후생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고, 부 (-)의 흐름이 소비나 저축 역량을 감소시킨다면 경제적 후생을 축소시킨다.

### 1.3.2 순자산 가치의 변화

소득이나 지출 데이터를 경제적 후생 측정에 사용할 경우, 특정 기간 동안 가계의 순자산 가치의 변화에 대한 평가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만일 순자산 수준이 증가한다면, 이는 저축 (소득과 소비의 차이), 자본 이전, 또는 자본이나 보유 이득을 포함한 기타 자산가치의 변화 등으로 인한 것이다. 이런 가계는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 즉, 부 (-)의 저축에 의해 유사한 수준의 지출을 한 가계보다는 장기적으로는 부유해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이 경우 부 (-)의 저축이 비자발적인가, 아니면 전기 (前期)의 결정에 의한 것인가가 중요하다.

### 1.3.3 순자산의 저장 가치

한 가계가 소유한 순자산의 저장 가치 (value of stock)란 누적 자산의 가치를 의미한다. 이미 지적했듯이, 순자산이 높은 가계는 소비나 투자를 위한 신용을 더욱 쉽게 얻을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소비를 위한 기간의 선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순자산이 높으면 현재 혹은 미래에 소비를 위한 잠재적 부에 의해 생활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가능하면 가계의 순자산 가치는, 경제적 자원이나 경제적 후생에 대한 가계의 구매력을 완벽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가계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미시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응답자들에게는 자산과 부채가 소득보다는 더욱 민감한 문제일 수 있고, 자산과 부채를 거래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그릇 전달될 경우가 많다. 또한 부의 저장적 수치에 대한 데이터 및, 경제적 후생을 나타내는 복합적 거래 또는 유량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는 한 가지로, 그 가계가 보유한 순자산을 연금화하여, 이 (추상적) 연금을 소득과 기타 수입에 추가하는 방안이 있다. (호주 통계청 1995) 그러나, 순자산의 연금화를 위해서는 예컨대 그

순자산이 연금화되는 기간 (가구주나 배우자의 생애), 그리고 사용되는 이자율과 관하여 수많은 가치 판단과 추정을 해야 한다.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가계 순자산의 저량적 가치를 사용하여 경제적 후생을 광범위하게 측정하는 문제는 별도의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러한 저량적 개념의 측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제 2장의 마지막 부분에 소득, 소비, 누적 자산의 상호 관계에 대한 개념적 체계만 소개하였다.

이상적으로는, 완벽한 설문조사가 수행되는 경우나 소득, 지출, 저축, 보유한 부의 가치 등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관리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경제적 후생 분석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가계가 창출한 경제적 자산의 규모와 성격, 그리고 이의 처분 방식 등을 관찰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예컨대, 어떤 가정에서는 추가 저축액으로 여기지만 다른 가구에서는 즉시 지출할 자금으로 간주되는 일시불 소득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등의 문제에 담긴 많은 불확실성은 관측된 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미시 수준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든 가구군을 대상으로 하든,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가정을 수립할 수는 없다.

실용적 관점에서는 완벽한 데이터의 수집이란 불가능한 일이다. 소득 및 지출에 대한 통합 설문조사는 주로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에서 더 자주 수행된다. 어떤 곳에서는 저축, 기타 자본 거래나 순자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한다. 그러나 응답자의 부담이 매우 높아, 이 모든 변수에 대해 데이터가 수집되더라도 명확한 답변이 수록된 경우는 드물며, 그만큼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예컨대, 소득 정보 수집에 가장 적합한 회계기간일지라도 지출이나 자본 거래용으로는 최선의 기간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총량에서 도출된 저축 추계치에 일관성이 없거나 오차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 보고 단위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데이터 수집 시의 용이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절충적 선택이 필요하지만, 이들간 일관성이 희생될 수 있다. 통합적 설문조사라도, 현금 소득에만 집중된 질의 응답 면접이 2시간 이상이 걸리는 복잡한 경제체제에 사는 응답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위탁기관의 선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뿐 아니라 응답자들의 기회 비용도 상당하다.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사항들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 정보원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 1.4 가구 소득의 미시경제 및 거시경제적 개념

캔버라 그룹은 가구소득 측정 시 전통적으로 두 가지 방법론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 국민계정, 특히 국민계정체계 (SNA) (EU 집행위원회, et al, 1993)에 뿌리를 둔 거시적 접근법
- 미시경제학, 특히 빈곤 및 빈곤이 한 사회 내 다양한 사회경제단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뿌리를 둔 미시적 접근법.

이 두 가지의 전통은 각기 서로 다른 용어와 관습을 발전시켜 왔으며, 활용하는 데이터 출처도 다르다. 두 접근법의 차이는 SNA의 철저한 회계 체계와 소득 미시데이터의 내재적 유연성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그러나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시분석과 미시분석 모두 가구소득이라는 동일한 개념의 측정에 역점을 둔다는 점은 기억해두어야 한다. 가구소득 분배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에서 직면하게 되는 개념적 어려움의 대부분은, SNA와 같은 가이드라인 수립 시 직면하는 어려움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특정 상황을 어떻게 다룰까 혹은 다루지 않을까에 대한 결정은 때로는 상대적으로 자의적일 수 있지만, 가능한 한 체계 전체에 걸쳐 일관된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

사실 SNA 제 20장에서 설명되었듯, 국민계정에 대한 사회계정행렬 (SAM)식 접근법에서는 한 경제체제 내 사람들의 역할을 중시한다. SAM은 한 경제체제의 구조적 특징과 다양한 사회경제단체간 소득 및 지출 분배간 상호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가계 부문을 분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SAM에서는 가구 소득의 거시적 총량과 그 분해의 근거가 되는 미시적 소득 통계를 융합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러나 SNA가 국민계정산출의 한 표준으로서 사회경제단체별 가구소득을 분해한다는 의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가구소득통계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이용자는, 생산자들이 가구 소득의 거시적 총량과 전체 인구로 합산되는 미시적 소득 통계를 융합시키기를 기대할 것이라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두 가지 통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만이라도 기대할 것이다. “가구소득”이라고 명명된 개념 하에 수립된 두 종류의 통계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양산하고, 이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회정책을 제시하게 된다면,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사용자에 대해 무례를 범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통계기구에서 이 둘을 융합시킨 사례는 거의 없다.

소득 분배의 통계와 국민계정의 일부인 가계 부문 소득간 비교 능력을 극대화하려는 또 다른 실질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된 어떤 데이터셋이라도 여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둘째, 다양한 틀 내에서 수집된 통계자료는 상호 확인 과정에서 비교 가능하며, 만일 이 다양한 통계가 분석적 목적에 요구될 경우 함께 융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가이드라인이 미시 분석가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이지만, 미시적 권고와 SNA의 권고간 차이점, 그리고 이 둘이 어떻게 융합되는가 하는 문제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어쨌든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미시 분석가의 관심과 거시분석가의 관습간 이해를 도모하고, 둘간의 간극을 해소하는 것이다.

## 1.5 역사적 배경

소득분배통계는 1966년 UN 통계위원회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의 제 14차 총회의 안건으로 처음 대두되었다. 그 후 가계의 소득, 소비, 자산 등을 모두 다루는 여러 소득분배통계 체계가 UN 통계사무소 (United Nations Statistical Office)에서 점차 발전되었다. 이는 UN 국민계정체계의 초기 형태이면서 동시에 지금은 사장된 System of Balances of the National Economy (MPS)와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

UN 통계위원회는 1972년 17차 총회에서 완벽한 소득분배통계 체계를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후 논의에 따라 수정 및 단순화를 수행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좀 더 단순화된 체계를 지닌 초안이 1974년 제 18차 총회에 제출되었으며, 몇 개의 유보 조항을 포함하여 채택되었다. 물론, 위원회는 나중에 작성된 이 요약본 초안이 더 이상적이라고 판단하였다.

UN 통계사무소는 신중한 논의를 거친 후 완성본과 요약본 모두를 결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이를 합쳐 단행본으로 펴냈다. 그 결과가 1977년 UN 통계사무소가 출판한

가계의 소득, 소비, 자산 분배통계를 위한 잠정 가이드라인 (*Provisional Guidelines on Statistics of the Distribution of income, consumption 및 accumulation of 가구*)이다. (M71, United Nations, 1977)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소득분배통계를 수집, 배포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국제적 비교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미시적 수준의 소득분포를 거시적 수준의 국민계정수준과 융합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소득분배통계의 국내적 관습에 대한 설문조사는 1981년과 1985년 UN 통계 사무소에서 작성된 바가 있다.

1977년 잠정 가이드라인은 1968년 SNA (eg Norrlof, 1985)의 수정과 함께 개정되기로 되어 있었다. 특히 UN유럽경제이사회 (UNECE)는 1977년 잠정 가이드라인 수정에 착수하였고, 이를 위해 가계 통계에 관한 워크숍과 세미나를 수 차례 개최하였다. 1968년 SNA가 가계 부문, 특히 소득 개념에 대한 개념적 사고에 큰 진전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SNA 개정의 타당성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1989년 UN). 그러나, 자원의 부족으로 1977년 잠정 가이드라인의 개정은 빨리 진전되지 못했다.

1944년, UNECE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의 협약에 따라 유럽통계청 (EUROSTAT)는 1977년 잠정 가이드라인의 개정에 일차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의 주요 목적은 가구소득통계 (숨어 있거나 비공식적 활동을 포함)과 관련하여 개정된 SNA와 유럽계정체계 (ESA), 1977년 이후 발전에 비추어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고, 경제, 사회정책의 분석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적합하게 수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정 가이드라인의 지리적 범위는 일단 유럽경제지역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그 외에도, 1993년 10월, 제 15차 노동통계 국제 컨퍼런스 (ICLS)의 결과, 국제노동기구 (ILO)의 통계국에서는 고용 소득 측정 방법을 개선하는 일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eg Dupré, 1997). 1998년 10월, 제 16차 노동통계 국제 컨퍼런스 (ICLS) 고용관련 소득의 측정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ILO, 1998b) 소득분배통계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 수립에서 이러한 접근법 대부분은 1차적으로 SNA에서 발전된 거시적 시각에서 출발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개념적 문제에 대한 하향식 접근 및 거시에서 미시적 접근은 대부분의 미시데이터 사용자에게는 즉시 명확하지 않았다. 유연성이 비일관적으로 보이는 곳에서는, 하나의 틀에 대해 역점을 둬으로써 더욱 엄격하고도 이론적인 접근법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미시데이터셋에서 야기된 실질적 문제를 강조하면, 기초틀을 간과하면서 유연성의 장점만 강조하게 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틀 또는 체계 (framework) 기반의 가이드라인은 미시데이터의 생산자나 사용자를 위한 유용한 내용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것이 아마도 1977년 잠정 가이드라인이 소득분배통계 생산자들에 의해 거의 채택되지 않고 잠정적으로 남은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소득 분배가 어떻게 측정될 수 있고 측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적 정책 목적상 경제적 후생에 대한 더 나은 측정법 개발에 대한 우려와 어려움이 많았다. 설문조사 범위와 기타 정보의 확장, 그리고 기술적 진보는 수집한 미시데이터를 더욱 잘 처리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동시에 가용 데이터의 일관성 부족을 드러낸 통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열의도 점점 증가하였다. 국가간 수준에서는 1983년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IS: Luxembourg Income Study)가 발족되어 각 국가간 가계 수입 데이터의 비교역량의 부족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룩셈부르크의 인구, 빈곤, 사회경제적 정책 연구 센터 (Centre for Population, Poverty 및 Socio-Economic Policy Studies) 내에 소재한 LIS는 광범위한 국가로부터 단위 레코드 데이터 (unit record data)를 수집하여 이들을 공통 개념과 정의 체계로 재구성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은행, UN, OECD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모두 1990년대에 국가간 비교자료를 출간했는데, 같은 국가라도 사용된 개념이나 데이터 출처에 따라 상대적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OECD는 LIS 데이터를 토대로 하여 소득 분배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를 위탁한 바 있다. (Atkinson et al, 1995)

1996년 8월에 개최된 국제소득및부협회 (IARIW)의 제 24차 총회에서는 소득 및 부의 분배에 대한 국제 표준 토론회가 열렸다. (Smeeding, 1996) 이 토론회는 1977년 가계의 소득, 소비, 자산 분배통계를 위한 잠정 가이드라인 (UN, 1977) 개정을 중심 안건으로 하여, 다음 두 개의 기초 논문이 발표되었다.

- 가계의 소득, 소비, 자산 분배통계를 위한 UN 가이드라인 개정을 향해 (“Towards a Revision of the UN Guidelines on Statistics of the Distribution of income, consumption 및 accumulation of 가구”). 세 명의 기고자는 Lidia Barreiros 및 Deo Ramprakash (Barreiros 및 Ramprakash, 1996), Alfred Franz (Franz, 1996a) 와 John Walton (Walton, 1996) 이다.

- 1995년 6월 호주 통계국이 펴낸 ‘가구소득, 소비, 저축과 부를 위한 잠정 체계 (‘A Provisional Framework for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저축 및 Wealth’). 발표자는 Harry Kroon과 Maureen McDonald (호주 통계국, 1995)이다.

처음 논문은 EUROSTAT 컨설턴트 작업의 초기 결과를 담고 있다. 이들 작업의 결과는 Franz et al, 1998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두 번째 논문은 가계의 경제적 후생과 관련된 통계 발전의 기초로서 개념적 ‘지도’를 정의하고 이러한 통계의 사용자와 생산자간 국내외적인 대화의 촉진을 목표로 한다.

다시 한번, 이 장에서의 논의의 주요 결론은, 하향식 접근법, 거시에서 미시로의 접근법은 미시데이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충분치 않다는 점이며, 거시에서 미시적 관점과 미시에서 거시적 관점이 모두 중시되어야 하며 이 문제를 다룰 새로운 국제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1996년 IARIW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도전 과제가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론과 응용의 통합은 어려운 일일지 모르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득분배통계를 위한 UN 잠정 가이드라인의 개정은 이 두 가지 목표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통계국뿐 아니라 광범위한 국내외 단체들을 포함한 좀 더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들이 이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에 탄생한 것이 캔버라 그룹이다.

# 제 2장

## 소득 개념

### 2.1 도입

이 장에서는 가구소득통계 생산을 위한 개념적 규칙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 장의 목적은 이상적 세계에서 어떤 것을 '소득'으로 규명하고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 유용성의 문제는 잠시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각각의 분석적 목적에 걸맞은 다양한 소득 측정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처음부터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는 한 국가 내 다양한 집단간 소득 불평등의 정도, 절대적 혹은 상대적 개념에서의 빈곤의 정도, 사회부조와 조세를 통한 정부 간섭이 소득 분배와 빈곤에 미치는 영향 등도 포함된다. 시간에 따른 소득 분배의 변화는 국가간 소득 분배의 차이만큼 중요한 관심사가 되며, 대안적 정부 정책의 효과도 중대한 관심사안이 될 수 있다. 이 통계의 활용이라는 시각에서 비추어 보아 적절한 소득 정의를 선택하는 문제, 특정 국가의 경제적 상황, 데이터의 유용성 등은 제 4장에서 다룰 예정이다.

### 2.2 소득 정의를 위한 전제

#### 2.2.1 역사적 배경

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아주 오랜 기간의 논쟁이 존재해 왔다.

- 소득에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입만 포함되어야 한다. (기대하지 않은 단발성의 대규모 수입은 제외)
- 현재 경제적 후생에 기여한 수입 또는, 미래의 후생에 기여한 수입만 한정시켜야 한다.
- 순자산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소득

이러한 논쟁의 배경에는 여러 저명한 경제학자의 이론이 존재한다. J.R. Hicks (Hicks)는 '어떤 사람이 일주일 동안 소비한 후에도 주말에는 주초처럼 똑 같은 부를 가지리라 기대할 수 있는 최대의 가치를 소득이라 규정할 수 있다.' (Hicks, 1946, p 172)라고 정의했고, 헤이그-사이먼 (Haig-Simons)는 소득이 일정 기간의 소비의 총량과 순자산의 변화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기적 수입과 비정기적 수입간 뚜렷한 구별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Hicks와 헤이그-사이먼을 비교하려면 Goode, 1997 참조)

그러나 이런 정의는 일반적 정의로 한 가지 이상의 해석을 낳을 수 있다. 소득의 정의는 다양한 관점에서 출발한 거시적, 미시적, 분석가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들은 실제로는 동일한 개념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리곤 했다.

거시 분석가들은 전체로서 거시경제에 걸맞은 가구 소득의 총량에 관심을 두며, 하향식 (top-down)으로 소득 구성을 바라본다. 소득 분배에 대한 기존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갱신하여 (UN, 1977) 1993 SNA에 부합되게 하려던 시도에서는, 지급 방식과는 상관 없이 소득 유량을 야기시키는 거래 형태에 따라 소득을 분류하였다. 그 과정을 보면, 처음에 기본적으로 생산 과정에서 창출된 소득을 측정한다. 다음, 자산 소득의 분배를 측정하여, 이를 "본원소득 (primary income)"으로 명명하였다. 그 다음에는 경상 이전을 측정하여 이를 "가처분 소득 (disposable income)"으로 명명하였다. 이 가처분 소득은 소비나 저축에 사용된다. 저축은 투자나 순융자 및 차입에 사용된다.

다른 제도적 부문의 소득 정의와의 일관성과 더불어, 소득 정의의 완벽성도 거시 분석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실제로 통계 수집 시에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귀속 혹은 추정 등이 널리 행해지지만, 이론적으로 만큼은 이들은 어떤 결함도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 미시 분석가의 1차적 관심은 소득 분배의 측정에 있다. 즉, 이들은 한 개인이 자신에게 직접적 편익을 주는 수입으로 인지하는 것을 소득으로 도출하며, 상향식 (bottom-up) 으로 소득을 정의한다. 미시적 관점에서, 소득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급 방식이며, 지급의 원천은 부차적 요소이다. 실제로도 소득 정의는 가구조사에서 수집 가능하거나 수집 가능한 행정자료에 의해 제약된다. 사실 이 두 가지 고려 사항 - 개념적 고려사항과 실질적 고려 사항 - 은 결국 동일한 선택을 낳게 된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수입을 자신들이 받는 직접적 편익으로 인식한다면, 이에 대해 더욱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 2.2.2 미시적 접근법

미시 분석가들의 접근방식은 “소득을 받은 단위 (가구 혹은 개인)는 오늘 더 많은 후생을 누릴 수 있는가?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주된 관심 대상은 “현재의” 경제적 후생이다. 미래의 경제적 후생에 기여하는 소득 요소로는 연금 기금이나 기타 형태의 사회보험 등에 대한 고용주의 부담금, 퇴직 기준 자산에 대해 받은 이자, 자본 이득 등이 있다. 이의 수급자는 반드시 미래에 이를 지급 받는 시점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편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수령’하는 그 시점에서는 이를 거의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다. 따라서 이들 요소를 포함시킬 때 미시적 분석가는 개념적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그 이득의 가치에 대한 미시데이터 수집에도 심각한 곤란을 겪게 된다.

현재의 경제적 후생을 구성 원칙 (organizing principle)로 선택할 경우, 소득구성요소를 더 선정할 때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현금 (화폐) 대 비현금 소득, 정기적 소득 대 비정기적 소득, 순자산 가치의 유지가 있다. 이 세 가지 측면 중 어떤 것을 포함시키고 어떤 것을 제외시키느냐에 대한 결정은 특정 요소를 ‘오늘 얼마나 지출’ 가능한가에 의해 지배된다. 미시 분석가들은 이 결과 생산된 소득 분배에 대한 통계가 가능한 통계적 기교를 배제하고, 실제 소득 분배의 전반적 모습을 진실되고 공정하게 나타내기를 원한다.

#### 2.2.2.1 현금 소득

소득의 가장 기본적 요소는 현금 소득이다. 현금 소득은 소득 분석가에게 가장 1차적인 소득 요소일 뿐만 아니라 가구조사에서도 가장 쉽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소득 이다. 이에는 초과근무 수당, 보너스, 임금 및 봉급 등이 해당된다. 현금 소득은 근로 또는 개인사업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다. 개인사업의 경우 사업의 매출에 영업비를 제외한 수입으로 측정된다.

현금 수입이 소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미시 분석가들이 제시하는 합리적으로 완전한 소득분배통계를 위한 소득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자산 소득
- 현금 이전

각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자산 소득

사람들은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소득을 얻듯이 다른 이들에게 토지와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자산 소득을 얻는다. 미시 분석가들이 자산 소득에 포함시킨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이자
- 배당금
- 로열티, 부동산 및 신탁 소득
- 지대

### 현금 이전

사람들은 정부의 사회보험, 민간 보험, 비영리 단체, 다른 가구 등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현금 이전을 받으며, 심지어는 외국의 가구나 정부 등으로부터 현금 이전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로부터 받는 현금 이전의 비중이 가장 크다.

사회보장으로 분류되는 현금 이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앞서 낸 부담금, 혹은 근로자를 대신해 고용주가 낸 부담금에 의해 수급 자격이 생긴 현금 이전이다. 정부 통제 및 지원 하에 운용되는 이 제도는 사회보장 제도로 알려져 있으며 고용주가 운영하는 민간 보험과 더불어 함께 사회보험으로 불린다.

둘째 이전은 수급 자격을 획득 시 어떠한 부담금도 요구되지 않는 현금 이전이다. 이를 사회부조라 한다. 사회부조는 자산조사에 기반한 원조이다. 즉, 수급자가 특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나 자산을 가져야 수혜 자격이 생긴다. 물론 모든, 혹은 특정 유형의 시민(아동 부조 등)에게 수혜 자격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사회부조와 사회보험을 모두 합쳐 사회보장제도로 부른다.

일부 비영리 단체의 경우 사회보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계에 이전할 수도 있다. 예컨대, 노조에서 노조원에게 지급하는 파업수당이나 질병수당, 자연재해 발생시 적십자에서 지급하는 구호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현금 이전은 다른 가구로부터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경조사비, 이혼 수당 또는 자녀 양육비, 현금 증여 등이 해당되는 이런 종류의 현금 이전을 소득의 정의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만일 '오늘 그 수입을 지출할 수 있는가?'라는 첫 질문으로 돌아가면, 아마 미시 분석가들은 비정기적이고 흔치 않은, 이른바 '횡재'에 가까운 '대규모'의 소득은 지출보다는 저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득 개념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이 경우 이런 종류의 이전이 의무적이냐(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에 의한 것인가) 또는 자발적이냐에 따라 소득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물론 둘간의 정확한 구별은 어렵고 국가마다 제도적 차이에 의해 영향도 받는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가구간 현금 이전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종류의 현금 이전은 수급자의 소득에 포함되며 동시에 제공자의 소득에서도 공제된다. 만일에 존재할 수도 있는 이중 산정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가능하지 않다면 미시 분석가들은 가용 데이터의 한계 속에서 소득 분배의 전반적이고 진정한 모습을 나타내는 데에 어떤 방법이 제일 가까운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 공제

앞서 기술한 소득 요소의 총액은 총 현금 소득으로 볼릴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에 지급하는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와 정부나 고용주 지원 사회보험에 지급하는 사회보험 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이전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세금 공제 후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도 발생한다. 개인들은 이런 비자발적 공제를 소득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비 역량을 축소시키기 때문이며, 만일 세금이 공제된다 하더라도, 그 세액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한다. 따라서 비록 일부 국가에서는 시뮬레이션 모형을 사용하여 순소득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세전 소득을 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는 직접세를 감안한 총소득과 순소득 모두를 토대로 소득분배통계를 낸다.

개인들은 근로와 관련된 지출 - 출퇴근 비용, 양육비 등 - 을 강제적으로 여겨, 가처분 소득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의 문제는 근로와 관련된 '강제적' 지출과 기타 다른 소비 지출을 구별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비용을 공제하여, 근로자들의 경제적 후생을 비 근로자와의 후생과 정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한 분석 사례도 있다.

#### 2.2.2.2 현금 소득 외

앞서 기술한 현금 소득구성요소 외에도 아래와 같이 다른 요소들이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가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 현물 소득

앞서 열거한 대부분의 소득은 현금이 아닌 현물로도 지급될 수 있다. 예컨대 고용주가 제공하는 차량도 임금을 구성한다. 가게가 자가소비나 물물교환을 위해 재화를 생산하는 국가도 아직 많이 있다. 사회부조를 식품 교환권 지급이나 임대료 지급 등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가구간에도 현금보다 재화의 형태로 선물이 거래되는 경우도 많다.

여기에 사회적 현물 이전 (social transfer in kind: STIK)이라 통합적 명명된 소득도 있다. 대부분은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로 대부분 무료로 개인들에게 제공되는 보건 및 교육 서비스가 이에 해당된다.

현물 소득을 소득 개념에 포함시킬 때의 개념적 어려움은, 그 수급자가 그 편익의 가치를 모른다는 점, 그리고 그 현물과 동일한 가치의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에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게다가 수급자들은 현물을 받은 결과 그들의 후생이 향상되었다는 사실, 즉 그들이 '오늘의 후생이 더욱 좋아진다.'라고 느끼지 못한다.

현물 소득의 가치평가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현물 소득을 대체 (imputation)해야 하는데, 대체의 정도가 커질수록 통계적 기교에 취약한 통계를 낳게 될 위험성이 커진다. 또한 현금에 기반한 추계치를 편성한 다음에야 모델링을 한다면 시의성이 약해질 것이다.

반면 식품 교환권 같은 항목은 명확한 현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출 시 좀 더 넓은 재량권을 지니게 된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런 종류의 현물을 넓은 의미의 소득에 포함시킨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자체 소비를 위해 생산하는 재화에 대해 가치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가계의 소득이 과소 측정될 것이다. 이 경우 이 소득의 가치를 평가할 것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

## 순자산 변화

수많은 가구가 자본 이전을 받거나, 실현 및 미실현 자본 이득의 편익을 누리고 있다. 이런 소득을 가구소득 내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한다. 자산 매각, 혹은 자본 이득의 실현을 통해서도 가계는 의식주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2.5절에서 다룰 것이다.

### 2.2.3 미시적 접근법과 거시적 접근법의 조화

거시적 수준에서 소득 분석을 위해 개발된 가장 중요한 틀은 국민계정체계 (SNA)이다. 수 십 년간 진화를 거듭해온 SNA는 한 경제의 다양한 부문의 규칙, 상호관계 등과 함께 한 국가의 경제가 지닌 모든 요소를 통계적 용어로 기술한 종합 체계이다. 국민계정의 중요한 부문 중 하나가 바로 가계이다. 1993년 국민계정체계 (SNA93)과 1995년 유럽국민계정체계 (ESA)에서 최근 경제적 이론에 기반한 명확한 정의를 내린 바 있다. 개념적 정의의 몇 가지 구성 요소는 다른 요소보다 좀 더 직설적이고 명확하지만, 여전히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구성요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A는 현재 가장 널리 채택되고 적용되는 국제 표준이다.

SNA93에 규정된 소득의 개념은 Hicks (Hicks)의 소득 개념과 아주 유사하다. SNA93에서는 가처분 소득의 이론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렸다.

“..가계 혹은 기타 경제 단위가 일정 회계기간 동안 현금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기타 금융 혹은 비금융 자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증가시킴으로써 소비 지출에 충당하지 않고서도 소비재나 서비스에 지출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 (SNA93 para 8.15)

SNA 내에서 경상 거래는 해당 기간 내에 완료된다. 그 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마치 파도처럼 사라져 가계수지 (대차대조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자본 거래는 다른 기간에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부의 척도가 되는 가계수지 (대차대조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앞 절에서 논의한 소득의 정의는 이와 아주 유사하다. 따라서 캔버라 그룹은 SNA93의 정의가 가구소득분배분석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통계의 목적에 따라, SNA93에 수록된 권고를 벗어나는 부문도 있다. 아래의 정의는 여러 측면에서 SNA93과 다르다. 소득분배통계는 1차적으로 특정 미시경제적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개별 가구의 환경을 반영하는 통계를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SNA는 1차적으로 거시경제적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가계 부문은 단순한 관심 영역 중 하나일 뿐이다. 예컨대 SNA는 비가계 부문을 대상으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가계 부문에 영향을 주는 SNA93의 권고는 가구소득분배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달리 다루어야 한다고 여긴다.

## 2.3 소득 대 자본 축적

### 2.3.1 경상 이전 및 자본 이전

자본 이전이란 자산 혹은 순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을 의미한다. 반면 경상 이전은 특정 회계기간 동안의 소비에 활용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어떤 이전이 자본 이전이 아니라 경상 이전으로 간주된다면, 소비와 저축에 가용한 수입은 증가할 것이다.

SNA93은 '알뜰한 가계라면 특정 기간 동안 우연히 수령한 자본 이전을 동일한 회계기간 내의 최종 소비를 위해 모두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SNA93 8.31)

하지만 실제로는 가계가 수령한 경상 이전과 자본 이전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미시 분석가들은 자본 이전은 기대하지 않은 단발성의 대규모 수입인 반면, 경상 이전은 비교적 규모가 작고 정기적으로 기대 가능한 수입이라 가정한다. 이는 SNA의 주장과 상당히 유사하다. 하지만 이 경우 '대규모,' '기대하지 않은' 그리고 '단발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정 수입에 대해, 어떤 가계는 특정 회계기간 내에 모두 소비한다면 낭비라 간주할 만큼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가계는 평소의 소득에 비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모두 써버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상적 세계에서는, 가계가 이전 수입을 실제로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 그 해답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가계에 같이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 고안되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 수당 또는 퇴직 수당과 관련이 있다. 이 수당은 SNA 내에 있기 때문에 모두 근로자의 소득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가계마다 수당의 규모가 다를 수 있고, 가계가 그 수당을 취급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수급자가 다른 직업을 구하는 동안 이들 수당이 특정 기간의 소비 지출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가계 자산을 증가시키는 대규모의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반대인 두 번째 사례로 상속이 있는데, 상속은 그 규모와 무관하게 자본 이전으로 분류된다. 상속은 사망자에서 상속자로의 자산의 이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한 개인의 대차대조표에서 다른 개인의 대차대조표로의 이동이라 할 수 있다.

### 2.3.2 자본 이득 / 보유 이득

자본 이득을 확대된 소득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론적 주장은, 소득이란 한 회계기간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계의 후생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라는 소득 정의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자본 손익은 가계의 경제적 행위 및 소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본 손익을 소득 개념에 포함할 것인가 제외시킬 것인가에 대해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제 5장 (5. 5절)에서 논의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자본 손익은 특정 분석 시, 선택적으로 소득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메모 항목으로 따로 분류한다.

## 2.4 소득구성요소와 그 총량

### 2.4.1 도입

여기서는 다양한 소득 지표에 포함될 구성 요소에 대해 개관해 보겠다. 표 2.1은 간략한 소득 정의를 보여주며 부속서 1은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부속서 2는 SNA의 권고에서 벗어난 영역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며 거시적 접근법과 미시적 접근법이 어떻게 융합되는지 보여준다. 부속서 10 아래 사용된 개념과 용어를 설명한다면 부속서 2는 이 가이드라인이 국민계정의 관습 및 관행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 심도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는 미시 분석가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다. 각 부속서의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표 2.1에는 간략한 정의만 나타나 있고, 이에 대한 더 상세한 자료는 부속서 4의 소득 데이터 유용성에 잘 제시되어 있다.

표 2.1 소득의 정의

참조 절

<b>1</b>	근로 소득 <i>현금 또는 준현금</i>	<b>2.4.2.1</b>
1.1	현금 임금 및 봉급	
1.2	봉사로 및 보너스	
1.3	스톡옵션을 포함한 수익분배	
1.4	해고 및 퇴직 수당	
1.5	고용계약으로 원격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i>'복리후생'의 현금 가치</i>	
1.6	고용주의 사회보험 부담금	
1.7	고용계약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화와 서비스	
<b>2</b>	개인사업 소득 <i>현금 또는 준현금</i>	<b>2.4.2.2</b>

2.1	비법인 기업의 손익	
2.2	로열티 귀속 현물	
2.3	물물교환용으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투입비 제외	
2.4	자기소비용으로 생산된 재화, 투입비 제외	
2.5	소득에서 소유자 거주 주택비를 뺀 항목	
<b>3</b>	<b>임대 소득</b>	
	<b>2.4.2.3</b>	
3.1	임대료에서 비용을 뺀 소득, 지대 제외	
<b>4</b>	<b>자산 소득</b>	<b>2.4.2.4</b>
4.1	수령 이자에서 납입 이자를 뺀 금액	
4.2	배당금	
4.3	지대	
<b>5</b>	<b>경상 이전 수령분</b>	<b>2.4.2.5</b>
5.1	고용주 지원의 사회보험 급여	
5.2	정부 지급의 사회보험 급여	
5.3	정부 지급의 종합사회부조 급여	
5.4	자산조사에 따른 사회부조 급여	
5.5	가구간 정기적 현금 이전	
5.6	자선단체 등 비영리 기관의 정기적 지원	
<b>6</b>	<b>총소득 (1-5)</b>	
<b>7</b>	<b>경상 이전 지급분</b>	<b>2.4.3.1</b>
7.1	고용주의 사회보험 부담금	
7.2	근로자의 사회보험 부담금	
7.3	소득세	
7.4	정기적 재산세	
7.5	가구간 정기적 현금 이전	
7.6	자선단체 등 비영리 기관에 대한 정기적 이전	
<b>8</b>	<b>가처분 소득 (6- 7)</b>	
9	사회적 현물 이전 (STIK)	<b>2.4.4.1</b>

## 10 조정 가처분 소득 (8+ 9)

근로 소득개인사업 소득자산 소득경상 이전경상 이전현물 이전

표 2.1의 모든 내용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표를 소득분배분석을 위한 개념 체계로 채택하기를 권고한다.

### 2.4.2 총소득과 구성요소

전체 소득을 측정하는 첫 번째 지표는 '총소득'이다. '가처분 소득'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공제하기 전의 집합적 개념이기에 '총' 소득이라 한다. 총소득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2.4.2.1 근로 소득

근로 소득은 현금이나 비현금의 형태로 고용주로부터 받는 보수의 총량이며 근로자를 대신해 고용주가 내는 민간 또는 정부 연금보험료 등도 포함된다.

#### 2.4.2.2 개인사업 소득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비법인 기업으로부터 얻은 이익에는 확대된 노동에 대한 보상과 사용 자본에 대한 이득 (이 때문에 SNA는 이 수입을 혼합 소득이라 칭한다.) 등이 포함된다. 개인사업이 손실이 날 경우, 이를 부 (-)의 소득이라 일컫는다.

가계는 다른 이로부터 구입하거나 받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뿐 아니라 스스로 생산한 재화도 소비한다. 따라서 자가소비를 위한 가계생산이 경제적 후생의 중대한 요인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가계생산을 제외시킬 경우, 국가간 비교, 시기별 비교, 혹은 소득 집단간 비교 시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귀속 소득에는, 자신 노동의 귀속 가치 외에는 투입 비용이 적은, 자가소비용으로

생산된 재화가 포함된다. (따라서 귀속소득이란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에 자신의 귀속 노동가치 외 투입 비용을 뺀 것을 의미한다.)

재화가 실제로 팔리면 이에 대한 가치평가는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 가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나 다른 가게와의 물물교환을 위해 재화가 생산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수많은 개도국에 있는 자급농업을 하는 농장이나, 선진국의 경우 텃밭이나 임대 채마밭 등이 그 좋은 예이다.

가구 일원들이 생산, 소비하는 서비스, 예컨대 요리, 집안일, 육아 등도 그 가구의 후생에 영향을 준다. 제 9장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지만, 이런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게다가 이런 종류의 평가를 위한 표준적 방법이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표 2.1에서 제외시켰다.

부속서 1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듯이 사업주의 주거에서 비용을 뺀 귀속 소득은 여기에 포함된다.

#### **2.4.2.3 임대 소득**

가게는 주거, 건물, 차량 등을 임대하고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거시 계정에서 이런 종류의 수입은 개인사업 소득의 일부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그 가게는 소유물 임대를 통해 운영되는 비법인 기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시적 소득분배통계에서는 이런 소득이 현물 자산의 '임대' 결과이기 때문에 자산 소득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표 2.1에서 이런 종류의 소득은 별도의 범주에 분류한다.

#### **2.4.2.4 자산 소득**

자산 소득이란 주로 화폐성 수익을 위해, 특정 종류의 자산을 다른 사용자에게 임대하여 받은 수입 중, 발생 비용의 제외분을 의미한다.

가구소득, 이자 및 배당금 등에 대한 거시 데이터는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즉 실제로 이들을 수령한 때가 아니라 매출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해야 한다. 때로 이 차이는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미시적 수준에서 이런 정보를 수집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자산 소득은 실제 수령 시를 기준으로 나타낸다.

이자 지급의 형식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 주택, 기계, 차량 등과 같은 임대 자산에 대한 대출을 포함, 비법인 기업이 지급하는 기업 대출이자
- 주택 보유와 관련된 대출에 대한 이자 (주택담보대출이자)
- 소비 충당을 위한 차입 이자

두 번째까지의 이자는 항상 소득에서 공제된다. 자산 소득에서 받는 이자와 상계함으로써 공제될 수 있다. 세 번째 형식인 소비자 부채에 따른 이자도 소득 수입에 대해 상계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위 세 가지에 대한 총 이자를 별도로 분리시킬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SNA의 방침과도 부합된다. 그러나, 일부 분석을 위해서는 소비자 대출에 대한 이자를 따로 명확히 분류하여, 이를 가처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소비 지출을 가처분 소득에서 제외시켜 저축을 구하는 단계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SNA와의 일관성을 위해 저축을 계산해야 한다.

#### 2.4.2.5 경상 이전 수령분

이전 (이전)이란 '반대급여 (quid pro quo)' 없이 발생하는 지급과 수령을 의미한다. 이전은 소득이 재분배되는 가장 보편적 방법이기 때문에 소득분배연구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전은 가구간, 가구와 정부간, 가구와 자선단체간 발생할 수 있으며, 국경을 넘어 발생할 수도 있다. 표 2.1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전과 국외에서 발생하는 이전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컨대, 다른 국가의 정부에서 받는 연금을 자국 정부에서 받는 연금과 구별하지 않았다.

앞서 기술한 대로 성격상 이전을 경상 이전으로 분류한다고 했을 때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이전 수입을 실제로 소득이라 말할 수 있는가? 이전 지급이 소득의 감소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가처분 소득의 지출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하는가? 제 1장은 '소득'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순자산을 증감하지 않은 채 현재의 경제사회적 상황에서 지속시킬 수 있는 일정 수준의 물질적 생활수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득을 경제적

후생에 대한 지표로서 작용하는 선택의 개념이라 규정하였다. 따라서 경상 이전을 소득 개념에 넣을 것인가의 문제를 결정하려 할 때에는, 이러한 기초적 이론을 다시 되짚어보아야 한다. (물론 미시적 통계학자와 거시적 통계학자간 입장 차이가 여기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거시적 시각에서는 모든 경상 이전은 가처분 소득을 도출 하기 전에 기록되어야 하며, 성격상 이전을 경상 자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자본 이전으로 볼 것인가만 결정하면 된다. 물론, 가계 부문을 분해하지 않는 거시 계정에서는 어쨌든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전을 두 가지 그룹으로 분리하는 것이 유용하다. 첫 번째 그룹은 가처분 소득에 명백히 영향을 미치는 거래와 관련된다. 이 그룹에서 지급해야 하는 이전은 성격상 의무적인 것으로, 소득세, 의무적 연금보험, 이혼 수당 또는 양육비 지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이 그룹에 속하는 이전으로 사회보험 급여 및 사회부조금, 이혼 수당 및 자녀 양육비 수당 등을 수령할 수도 있다. 이 모두는 정기적으로 거래되며 어떤 상황에서 예측 가능한 거래이다. 캔버라 그룹은, 이 모든 거래가 소득의 정의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이전 지급은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두 번째 이전 그룹에는 가구간 거래되는 선물,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 기타 자발적이며 간헐적인 성격을 지닌 거래, 예컨대 법적 구속력이 없이 지급되는 자녀 양육비 등이 해당된다. 이 거래 중 현금 이전과 현물 이전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물 이전은 가구간 교환되는 선물, 자선단체에 기증되어 수혜자들에게 분배되는 의류 등을 의미한다. 캔버라 그룹은 현물 이전은 소득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 2.5.2.1에서는 이런 이전 거래를 소득 이전보다는 지출 이전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제 현금으로 거래되는 자발적 이전에 대한 성격을 규명해야 한다. 물론 수령자는 다른 가구일 수 있지만 그 가구가 이전 수입을 수령 받는 시점에서 소비에 사용을 하더라도, 신뢰성 있는 소득원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이를 지급하는 가구는 증여자의 후생에 기여하는 다른 비용처럼 (도덕적 의무의 수행 등), 이전 지급을 소득의 감소가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거래를 소득에 포함되는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해야 한다. 이 결정은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국가간에도 달라진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수령자가 정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전 거래는 소득에 포함시키기를 권고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다른 모든 경상 이전은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소득 이전이 아니라 지출 이전으로 분류되어, 다음 5절에서 논의될 것이다.

그 다음 수입과 지출을 별도로 작성하느냐 아니면 통합적으로 작성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궁극적으로는 이중 계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이전을 두 단계 -수입 그 다음 지출 - 로 기록하는 접근법을 선택한다.

#### **2.4.2.6 총소득**

총소득은 앞서 말한 모든 수입의 총량을 의미한다.

#### **2.4.3 가처분 소득**

##### **2.4.3.1 경상 이전 지급분**

여기 포함된 항목들은 앞서 사회보험 부담금, 가구간 정기적 현금 이전과 같이 경상 이전 수령분에 대응되는 항목들이다. 소득세, 재산세 등도 이에 포함된다.

자산에 대한 세금은 두 종류가 있는데, 자본이득세와 같이 상대적으로 드물게 부과되는 세금과 주택 혹은 소비 내구재와 같은 자산 소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다. 이런 세금은 납세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부과되며 소득에서 납부되는 것이므로 소득세와 함께 공제된다. 자본이득세와 같은 경우 자본에서 납부되며 따라서 자산에서 공제된다.

##### **2.4.3.2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은 총소득에서 지출된 경상 이전을 공제하여 도출된다. 교통비나 양육비와 같은 근로비용은 이 체계 내에서 소비지출로 분류된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비나 미환급 경비는, 근로자와 실업자의 경제적 후생을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시점에서 공제 가능하다.

#### 2.4.4 조정 가처분 소득과 사회적 현물 이전

가처분 소득은 수령한 사회적 현물 이전 (STIK)을 포함하는 경우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가처분 소득' 측정방법을 개발했다.

##### 2.4.4.1 사회적 현물 이전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는 개별 가구의 교육, 보건, 사회 복지와 같은 특별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개별 가구가 소비하기 때문에, 개별 서비스로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한 가구가 이 서비스의 편익을 얼마나 누리느냐는 다른 가구에 제공되는 편익의 정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공공행정 및 국방과 같은 정부 서비스는 전체 가구가 함께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배분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서비스는 국민계정에서 집합적 서비스 (Collective service)로 부르며 경제학자들은 순수 공공재라 부른다. 이런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가간 비교를 할 때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에 대해 먼저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이나 도로 건설에 들어가는 경비가 거주민들의 후생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소득 비교 시 대부분 이러한 정부 서비스를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반대로, 개별 서비스의 수준과 분배는, 서비스 수혜 자격의 수준이 가구마다 다르고, 국가의 서비스 제공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가구나 국가간 비교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적 현물 이전 (STIK)은 개별 소비지출의 가구간 배분을 알기 위해 소득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회적 이전은 완전한 소득 정의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캔버라 그룹은 사회적 이전을 표 2.1의 소득 개념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통계적 측면에서 개별 가구에 대한 완벽한 평가 및 배분 방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심도 깊은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한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정부와 가계 부문 비영리기관 (NPISHs)이 개별 가구에 제공하는 급여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된다. 교육, 주택, 문화 및 오락과 같은 재화와 서비스는

사용 시점에서 무료로 혹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되는데 이는 비시장 개별 재화와 서비스의 이전이라 알려져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주로 의료 혹은 치과 서비스나 재화 등 특정 형태에 지출된 경비에 대해 정부사회보험기관으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의 현물 사회보장 급여로는 성격상 치과 혹은 의료 서비스도 있지만 수급자에게 직접 제공되어 환급이 필요 없는 재화와 서비스도 있다. 현물 사회부조 급여로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식품 교환권처럼 사회보험을 통하지 않는 것도 있다.

개별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현물 이전의 가치는 여러 방법으로 추계할 수 있다. 그 중 기본적인 방법은 편익 수급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가구의 특징에 따라 수급권의 가치는 모든 가구의 총 수급권이 제공된 서비스의 가치와 동일하도록 계산된다.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결부되는데, 첫째는 모든 이들이 완전한 수급권을 향유했을 때 관측되는 수준만큼 사회적 편익의 향유가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이다. 둘째는 수급관자에 대한 직접적 비용 없이 제공되는 서비스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는가 이다. 여기서 우리는 서비스의 가치는 제공 비용과 동일하다는 국민계정의 관습을 따른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는, 실제로 수급권을 이용하는가의 여부와 무관하게, 동등한 수급권을 지닌 모든 가구는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의해 동일한 후생을 얻는다는 가정이 성립된다. 이 때의 수급권은 필요하면 그 서비스가 제공될 것을 보장하는 보험료와 동일하게 간주해도 좋다.

개념적으로는 사회적 현물 이전 서비스를 실제 이의 향유 정도에 따라 배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래에서 더 논의를 하겠지만, 이는 매우 유용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제공 서비스에 상당하는 소득을 생각할 때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만일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 대신 유료 사립학교로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들을 고려할 경우에는 상관 없지만, 보건 서비스의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힘들다. 빈곤 가정이 단순히 더 광범위한 의료 서비스를 요구했다고 해서 부유층 범주로 다시 분류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현물 서비스 배분을 위한 세 번째 방안으로, 보험을 기준으로 한 배분 방법이 있다. 이 경우, 개별 가구 대신, 그 가구가 속한 전체 집단의 평균 비중에 따라 가구 집단에 배분된다. 보통 이러한 배분 방법은 수급권에 따른 배분과 아주 유사한 방식이지만, 의료 서비스는 주로 노년층으로 갈수록 더 많이 소비하는 등, 그 서비스의 향유 수준이 그 가구 집단과 밀접한 상호 관련이 있다면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가구

집단의 구성이 변화하면, 보험 원칙에 따른 배분도 다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한 개별 가구에 대한 암묵적 배분도 변하게 된다.

예컨대, 수령자가 현물 서비스 대신, 그보다 낮은 가치의 현금 지급을 더 원하는 등, 수령자가 서비스의 편익을 제공 비용보다 낮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서는 사회적 현물 서비스의 가치 측정이 매우 어려워진다. 따라서 네 번째 대안으로 제시된 방법은, 한 가구가 해당 현물 서비스 대신 받고자 하는 현금 액수가 얼마인지를 기입하는 것이다. 이 방법과, 서비스 제공에 드는 정부의 비용의 차이는 순수 공공재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개별 가구 또는 가구 집단이 받는 사회적 현물 비용의 가치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한 간접적 방법으로만 측정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제 4장에서 다시 논의한다.

#### **2.4.5 소득 지표의 선정**

##### **2.4.5.1 총소득, 가처분 소득, 조정 가처분 소득**

표 2.1에 나타난 개념 체계를 보면, 총소득은 가장 광범위한 소득 지표이다. 총소득은 자산이나 이전을 수령한 후 지급 전에 측정되기 때문에 전체 가구 수준에서 보면 이중 계산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중 계산의 정도는 국가마다 제도에 따라 다르다. 사회보험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총소득은 예컨대 근로 소득 등과 더욱 비례적이 될 것이며, 다른 개념보다는 측정하기가 더욱 용이해져서 더욱 신뢰성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

가처분 소득은 주로 소득분포를 분석할 때 선호되는 지표이다. 총소득보다는 제도적 장치에 덜 민감하고 당해 회계기간 동안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입을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대부분의 소득세가 누진적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소득분포를 분석할 때에는 세전 소득보다는 세후 소득을 많이 이용하며, 세후 소득으로 측정했을 때 더욱 공평한 소득 분배를 이룰 수 있다.

조정 가처분 소득은 이 “소득 평준화 (income leveling)”를 한 단계 더 진행시킨 것으로,

그 이유는 정부가 사회적 현물 이전을 통해 핵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더욱 공평하게 그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정 가치분 소득은, 사회보장 급여와 조세라는 형태의 정부 간섭이 지니는 총소득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지표이다. 또한 이런 종류의 연구에서는, 소비 지출에 내재된 간접세의 가치도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 2.5.2 참조)

#### **2.4.5.2 현금 소득 및 비현금 소득**

한 개인이 현금으로 소득을 받으면, 이를 소비할 것인가 저축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얼마나 많이 소비할 것인가, 어떤 것을 살 것인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금 소득 데이터만 활용하면 편리하기는 하지만, 그 가구가 향유하는 경제적 자원을 제대로 평가하는 데에는 부족하다. 또한 현금과 비현금 소득의 상대적 비율이 인구층마다 상당히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금 소득과 비현금 소득간 관계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고 일국 내에서도 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의 소득 수입이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에는 비현금 형태의 소득이 대부분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비현금 소득의 형태는 자급 농업에서 나타난다.

이와 유사하게, 한 국가 내에서도, 현금과 비현금 형태로 지급되는 근로자에 대한 보수는 시간에 따라 그 비율이 변화될 수 있다. 예컨대, 복리후생을 늘리거나, 고용주의 연금 보험료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 “급여 희생”이 사용될 경우, 현금과 비현금의 비율이 변화될 수 있다. 조세 제도의 변화도 현금이나 비현금 수입의 비율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만일 현금 소득만을 소득의 지표로 사용한다면 시간에 따라 소득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 2.5 소비와 자산 축적으로의 확대

### 2.5.1 도입

앞서 소득 유량과 자본 유량과의 차이, 가계 소비와 저축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표 2.1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소득 개념에 포함되는 요소들을 소개하였다. 소비, 저축 및 부 개념으로의 확장은 캔버라 그룹의 범위를 넘어서지만, 표 2.2는 이러한 다양한 개념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모여, '순자본축적'으로 불리는 저축과 순자본 이전으로 인한 순자산 변화의 척도가 될 것인가를 보여준다. 물론 이 문제는 더 많은 논의 작업이 필요하다. 자세한 논의 내용은 제 9장에 소개할 것이다.

표 2.2에 포함된 항목 대부분은 2장, 특히 3절 소득 대 자본 축적에서 주로 다루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계 소비 지출 및 보유 손익에 대해서만 논의할 것이다.

### 2.5.2 가계 소비 지출

가계 소비에는 고용주로부터 받은, 또는 가내 생산 (소유자 거주 주택에 위한 귀속 임대료의 가치 포함)의 결과 발생한 재화와 서비스의 모든 가치가 포함된다. 이 항목들은 가계 저축이 과대평가되지 않는 한 총소득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의 소득 창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소유자 거주 주택에서 귀속 임대료의 창출에 발생하는 비용도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이 과정이 가능하지 않다면, 투입 비용을 가계 소비 지출에 포함시켜 가계 저축에 대한 적절한 가치를 도출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총지출은 분석 유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분해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보장 급여와 조세를 통한 정부 간섭이 소득의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려면, 소비 지출액에 포함된 간접세를 규명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현금 이전과 현물 이전의 가치를 총 조세 가치 - 이전에 포함된 직접세와 소비 지출의 형태인 간접세와 비교할 수 있다.

둘째, 때때로 소비 지출은 지출 유형에 따라 나눌 수도 있는데, 고용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경비 규모를 파악해야 할 때가 있는 한편, 2.4.3.2에 설명된 바와 같이 이런 경비를 공제한 다음 도출된 가처분 소득을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도 있다. 또, 따로 주거비를 산정해서, 소득에 주거비를 제한 금액을 도출하는 방법도 있다. 즉, 소유자 거주 주택의 투입비를 포함한 주거비를 총소득에서 제하는 방법이다.

소비와 관련해서는, 지출 단위와 사용 단위를 구별하는 것이 좋다. 한 단위당 총지출금액을 소비 지출이라 하며 실제 사용된 총 금액을 실질 소비라 한다. 동일한 가구가 소비한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는 이 두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사회적 현물 이전은 정부가 비용을 총당하지만 가계가 소비한다. 따라서 이는 정부의 소비 지출이며 가계의 실질 소비가 된다.

이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소비 지출 - 다른 단위로 지급되는 사회적 현물 이전 + 다른 단위에서 받는 사회적 현물 이전 = 실질 소비

소득분배통계를 위해서, 지출과 실질 소비간 개념적 구별은 유사한 방식으로 가구간 이전을 다룰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의무적 이전과 가구간 정기적 현금 이전은 앞서 논의한 소득 하에서 다루어졌다. 여기에는 소득 분배는 아니더라도, 소비 분배에 영향을 주는 다른 이전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가구간 이전이다.

### 2.5.2.1 가구간 이전

일단 의무적 이전과 가구간 정기적 현금 이전을 제거하면, 두 종류의 가구간 경상 이전이 남는다. 첫째는 비정기적 현금 이전이며, 이는 주로 서로 다른 가구간 가족 구성원 사이에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정기적 현금 이전이 무엇인가를 먼저 명확하고 정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비정기적 현금 이전의 수량과 지급이라는 여지는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가구 구성원과 비 가족간 교환되는 비정기적 선물이 있다. 주로 A 가구의 구성원이 재화를 사고 이를 B 가구의 구성원에게 증여할 때

발생한다. A는 그 선물을 구입함으로써 B 대신 지출을 위해 가처분 소득의 일부를 사용한 셈이다. B는 소득이나 기록된 지출이 없지만 A로부터 선물을 획득, 소비함으로써 편익을 얻는다. 이 선물은 A의 소비 지출, 그리고 B의 실질 소비에 포함되며 가구간 현물 이전으로 기록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이러한 가구간 자발적 이전을 소득이 아닌 소비 이전으로 보는 방법도 있다. 즉, 수혜자의 실질 소비가 증가하고 증여자의 실질 소비는 감소하지만, 가처분 소득, 소비 지출 및 저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데이터 수집 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만족스러운 분석적 처리를 결정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한 방법이다. 기초 데이터에서는 불가피하게 이런 이전을 파악하기가 아주 어렵다. 하지만 이런 오차는 총량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대차대조표상으로 부유한 가구가 더 주고 빈곤한 가구가 더 많이 받을 지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선물의 주고 받음은 동일한 크기의 자리수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전 중에는 국내의 가구와 외국의 가구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총량은 국내의 가구간 거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 **2.5.2.2** 가구와 다른 단위간 자발적 이전

가구와 다른 경제 부문간 발생하는 이전도 상당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자선단체와 가구간 이전, 복권 및 생명 및 상해 보험 등이다.

##### 자선단체에 대한 이전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는 규모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으며,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일 수 있다. 소득분배통계를 위해서는 자선단체에 대한 이전을 두 가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 시각은 이를 “비인칭” 가족 후원으로 간주, 의무적 이전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수많은 가구가 평균 소득의 일부를 기부에 의존하는 단체, 예컨대 노조나 전문 단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후원을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는 SNA의 방침과도 일치한다. 두 번째 시각은 이 이전을 앞서 기술한 지출 이전으로 보는 것이다. 즉, 자선단체에 대한 가구의 지출, 자선단체의 가구에 대한 이전에 상응하는 것으로 본다. 첫 번째 시각은 앞서 이미 정기적 현금 지급에 대해서 권고된 바 있지만, 두 번째 시각은 비정기적 현금 지급과 모든 현물 지급에 대해 채택된다. 그러나 각 국가마다 채택하는 접근법이 달라질 수 있다.

## 복권과 도박

복권과 도박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득 집단간 순수한 재분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가계 예산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도박에 대한 지출은 거의 기록에서 누락되고, 거액의 당첨금을 받은 사람들도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내기에 들어간 총 금액은 가계 소비의 일부로, 그리고 당첨금은 이를 상쇄하는 부 (-)의 지출로 보는 것이 좋다.

여기서 거액의 당첨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당첨금이 경상 거래라기보다는 자본거래로 보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반대 의견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대부분의 당첨금 규모가 작다는 점이다. 물론 개별 가구에게 그 당첨금은 클지 모르지만 전체 소득 집단으로서는 그다지 많은 금액이 아닐 수 있다. 가처분 소득으로부터 당첨금을 제외한다면, 당첨금의 규모는 해당 가구가 속한 소득 집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차대조표 상으로는, 거액의 당첨금이라도 “부의 지출”에 포함시켜, 당첨금에서 즉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저축에 포함하는 것이, 이렇게 통상적이지 않은 자본 이전 수입으로 부의 저축을 상쇄하는 것보다는 더욱 합리적이거나 유용할 수 있다. 이런 흐름은 다음 표에서 나타난다. 물론, 여기서도 국가마다 다른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 비생명보험

비생명보험은 상해보험과 유사하며, 생명보험이라는 용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종신보험은 저축의 한 형태로 취급한다.)

여기서는 실제로 지급한 보험료를 가계 지출의 일부로, 그리고 보험금 지불 청구액은 앞서 복권과 관련하여 제기한 여러 이유로 인해 부 (-)의 지출로 본다. 이는 보험료와 보험금을 매입 및 매출 이전으로 보는 SNA의 입장과는 다르다. - 부속서 2 참조.

이 가이드라인에서 아주 간단하게 제안했지만, 일부 보험금의 종류를 경상 이전이 아니라 자본 이전으로 간주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개별 가구의 경우, 주거침입에 대한 배상금이나 차량에 대한 대손상각비 지급이 자본 거래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규모가 큰 보험금일지라도, 그 금액은 저축이 아닌 손실된 금액을

대체하기 위해 즉시 지불되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통계적으로 보험금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보험요율을 정한다. 가구의 경우에도 위험의 규모가 작고 흔할수록, 보험료도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납입될 것이다.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자본 지급보다는 경상 지급으로 간주될 만큼 흔하다. SNA는 국민 저축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 모든 비생명보험금을 경상 거래로 간주한다. 그러나 자연 재해와 같은 사건에 대한 비생명보험을 경상 이전이 아닌 자본 이전으로 보는가에 대해서는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다.

비생명보험에는 민간 실업보험 혹은 장애보험처럼, 사회보험 부담금 같이 개인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보험도 있다. 특정 국가에서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는 공통된 방안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험료와 보험금을 규명하는 것이 유용하다. 왜냐하면 보험금은 수급자의 소득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5.3 보유 손익

제 2.4.2절 자본 이득/보유 이득에서 간략히 설명했듯이, 보유 손익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단, “보유 이득” 또는 “자본 이득”과 같은 용어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자본 이득을 칭하는 방법은 매우 복잡하고 많다. (SNA에서는 자본 이득이 고정 자본에 대한 이득뿐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금융 또는 기타 자산에 대한 이득도 일컫기 때문에, 이를 보유 이득으로 기술한다.) 간단한 예를 들어 이를 설명해 보자.

예컨대, 100이라는 자산을 구입했는데, 5년 지난 후 그 가치가 500이 되었다고 가정하자. 5년 동안 400이라는 명목 보유 이득이 발생한 셈이다. 만일 이 자산이 매각되었다면, 실현된 보유 이득은 400이다. 매각되지 않았다면, 미실현 이득이 400이다. 그러나 그 이득은 5년이라는 기간과 관련되어 있다. 만일 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적절한 회계기간 (1년 등) 내의 이득만을 따지고 싶을 것이다. 만일 전년도 말의 자산 가치가 450이었다면, 그 해의 명목 보유 이득은 50인 셈이다. 그 해의 물가상승률이 10%라 가정한다면, 이 50 중 45는 자산의 실제 가치를 단순 유지하기 위한 비용인 셈이다. 이 경우 45를 중립적 보유 이득이라 부른다. 실질 보유 이득은 5이다.

그렇다면, 이 중 어느 것이 소득에 포함되는가? SNA는 이들 중 아무것도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득이란 생산과 동일한 기준으로 측정되어야 하기 때문이고, 따라서 보유 이득은 엄격하게 제외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분석을 위해 5라는 실질 보유 이득을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이는 한 회계기간의 초기와 말기의 부를 따지는 소득 개념과 유사하다.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50 전체를 소득 개념에 포함시키고자 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중 계산의 위험성이 있다. 예를 들면, 한 회사의 실적이 향상하여 주가가 상승하였다면, 주가 상승은, 그 이듬해 기대되는 배당금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이 두 개를 모두 소득으로 계산하게 되면, 두 회계기간 동안 동일한 소득의 흐름을 계산하는 셈이 된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모든 종류의 보유 손익을 소득 개념과 '순 자본 축적'이라는 개념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물론, 대차대조표 작성시에는 고려 사항이므로 별도의 메모 항목으로 이들을 기록해야 한다. 캔버라 그룹은 (제 4장에서) 보유 손익에 대한 데이터는 수집해야 한다고 권고하지만, 수집 시의 실질적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표 2.2 소비와 자산 축적으로의 소득 개념 확대**

---

**11** 가계 소비 지출 (STIK를 제외한 현물 소비 포함)

- 11.1 미환급 근무 관련 필수 경비 (교통비, 양육비 등), 간접세 제외
- 11.2 근무 관련 경비 (교통비, 양육비 등)에 대한 간접세
- 11.3 주택 소비 지출 (실질 임대료, 주택 보조금, 소유자 거주 주택의 귀속 임대료 (2.5), 간접세 제외
- 11.4 주택 소비 지출에 대한 간접세
- 11.5 기타 가계 소비 지출, 간접세 제외
- 11.6 기타 가계 소비 지출에 대한 간접세
- 11.7 고용계약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 (1.7)
- 11.8 교환을 통해 받는 재화 (2.3)
- 11.9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 투입비 제외 (2.4)

---

**12** 비정기적 현금 및 현물 지출 이전

- 12.1 다른 가구와 자선단체에서 수령한 비정기적 현금 이전과 현물 이전
- 12.2 복권 및 도박에 건 돈, 당첨금 제외
- 12.3 비생명 보험료, 보험금 제외

---

**13 총 소비 지출 (11+ 12)**

---

**14** 수령한 사회적 현물 이전 (9)

---

**15 가계 실질 소비 (13+ 14)**

---

**16 가계 저축 (10- 15)**

---

**17** 수령한 자본 이전

---

- 17.1 상속
- 17.2 일시불 퇴직금
- 17.3 생명보험금, 보험료 제외
- 17.4 기타 실현된 자본 이득

---

**18** 지급된 자본 이전

- 18.1 상속세
- 18.2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보유 손익에 대한 세금 포함)

---

**19 순자산 (자본 축적 (16 + 17- 18))**

---

**20** 메모 항목: 보유 손익

---

## 3장

# 기타 개념적 문제

### 3.1 도입

소득 통계를 수립하기 이전에는 소득 개념의 정의 외에 수많은 다른 개념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통계의 기준이 되는 통계 단위와 회계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만일 국가별 혹은 시기별 비교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물가의 차이를 참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 3.2와 3.3절은 회계기간과 통계 단위에 대해 각각 논의한다. 제 3.4절은 시계열 비교에서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가격 지표의 사용에 대해 논의하고, 제 3.5절은 국가간 가격차를 조정하는 구매력평가지수 (PPP)의 활용에 대해 논의한다.

### 3.2 회계기간

12개월의 준거 기간은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공식 부문 내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손익을 평가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만일 소득세 데이터와 같은 행정 기록을 근거로 소득 통계를 만든다면, 12개월의 준거 기간 동안 임금 노동자에 대한 데이터만 활용할 것이다.

이자, 배당금 및, 농업 및 관광업처럼 계절적 활동을 통해 연간 단위로 소득이 발생하는 수입의 형태도 존재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정기적' 수입이며 소득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회계기간은 일년이 된다.

1년의 준거 기간이 수많은 상황에서 바람직하면서 실용적인 회계기간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존재한다. 소득 데이터가 가구조사라는 방법에 의해 수집된다면, 이전 주나 월과 관련된 정보만 있다면 근로 소득과 기타 정기적으로 받는 이전은 더욱 쉽고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 실용적 목적을 위해서는, 다양한 회계기간을 지닌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적 목적으로 표준화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분석을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다양한 회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예컨대, 당해 인구 내 소득분배연구를 보면, 한 개인의 생애의 평균으로 측정된 소득보다, 12개월 동안 소득을 측정했을 때 불평등 현상이 더 많이 드러날 경우도 있다. 학생들의 경우, 올해는 빈곤하지만 근로 생애 전반에 걸친 평균 소득의 향상을 위해 기량을 쌓아 나갈 수 있다. (자세한 논의는 제 8장, 소득 동태성에서의 종단면 데이터 문제 참조). 반면, 생애 평균 소득은 정부나 빈곤층 지원 단체에게는 그다지 유용한 척도가 되지 못한다.

우리는 소득분배분석에 사용되는 회계기간을 1년으로 할 것을 권고한다.

### 3.3 통계 단위

#### 3.3.1 도입

소득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기 위해서는 통계 단위를 선택해야 한다. 데이터 수집을 위한 통계 단위는 설문조사 설계 (또는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성격) 에 따라, 그리고 소득구성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임금 및 봉급은 개인 수준에서 가장 쉽게 수집되지만 귀속 임대료를 계산하기 위한 데이터는 가계 수준에서 수집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분석 단위 선택 시 최대한의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수준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제부터는 분석 단위의 선택에 대해 알아보겠다.

유의미한 국제적 데이터 비교 영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구조사 시 소득 추계치의 개발에 사용되는 분석 단위를 표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경제적 후생은 집단적 경험이라기보다는 개인적 경험이다. 하지만, 소득분배분석에서 개인을 1차적 단위로 사용한다면, 그 개인이 함께 살고 있는 다른 개인과 소득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된다. 또한 경제적 의존 상태의 배우자를 빈곤 생활자로 간주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비록 부부와 자녀가 함께 소득을 공유한다고 해도 그렇다. 따라서 개별 소득을 정확히 추계하려면 생활 단위 내의 이전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경제적 후생 분석을 위한 통계적 단위는 경제적 자원의 공유가 가장 타당하게 진행되는 단위여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그 단위의 모든 구성원의 종합적 경제 자원을 기준으로, 각 개인의 경제적 후생을 평가할 수 있는 단위여야 한다.

통계 단위는 경제적 후생의 사회적, 인구통계학적 함의를 평가할 때, 특히 그 척도가 소득 분배일 경우 점점 중요해지는 개념이다. 따라서 분석의 통계 단위는 해당 정보에 대해 수립한 분석체계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이러한 개념은 *가구소득, 소비, 저축, 부를 위한 잠정체계 (A Provisional Framework for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Savings and Wealth)* (호주 통계청, 1995)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는 소득과 교육 수준간 관계의 분석을 위한 통계 단위로는 개인이 적합할지 모르지만, 소득분배분석에서는 단일한 지출 단위를 형성하는 가족과 같은 단위, 즉 그 안에서 소득이 잠정적으로 공유되는 단위가 더욱 적합하고 유의미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득, 지출, 부에 대한 통계는 가구, 다양한 유형의 가족과 개인과 같은 한정된 범위의 통계 단위를 사용하여 수집, 배포되어야 한다. 통계 단위 선택에서의 관행, 그리고 이러한 단위의 정의는 국가마다 다르며 한 국가 내에서의 소득 및 관련 통계 프로그램에 따라라도 달라질 수 있다. (8장: 로버스트성 평가 참조) 개인의 경제적 후생은 선택하는 통계 단위, 그리고 분석 단위의 적절한 통계적 비교가능성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 그러나 이미 지적했듯이, 보고 단위는 분석 단위와 다를 수도 있다. 데이터 수집은 최저 수준의 단위에서 수집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소득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합산하는 것이 좋다.

다음 절에서는 소득의 분석에서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 단위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통계 단위를 개념적 수준에서 탐색한 다음, 몇 가지 특수한, 조작적으로 타당한 정의를 권고할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통계 단위를 위한 정의 선택 시, 실용적 이유 때문에 절충 등을 수행했다면, 이는 이상적 이론에 견주어 판단할 수 있다.

### 3.3.2 통계 단위의 정의

전통적으로 소득 측정에 사용되는 기본 단위는 가계, 즉 광의의 가족 (“경제적 가족”)과 핵가족 (더 작은 단위 - 부, 모, 형, 제)이다.

### 3.3.2.1 무소속 개인 - 가족에 속하지 않은 개인:

통계 단위로 가족을 선택하게 되면, “가족에 속하지 않은 개인”으로 일컫는 개인은 가족과는 다른 그룹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런 개인은 홀로 사는 개인과 다른 이와 함께 거주하는 개인으로 나눌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 홀로 사는 개인은, 가족에 대한 정의가 어떻든지 간에 가족에 속하지 않은 개인으로 분류된다. 이 때 다른 사람과 주소가 같은 개인이 문제가 된다. 핵가족의 경우, 이들은 주소는 같지만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에 속하지 않은 개인으로 간주되는 사람이다. 광의의 가족이나 경제적 가족에서는, 가족에 속하지 않은 개인이란 같은 집에 살지만 혈족관계가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만일 가구가 통계 단위로 선택된다면, “가족에 속하지 않은 개인”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구란 1인 가구 등, 홀로 사는 사람도 그 정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관행적으로는 가구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가구를 계산에 포함한다. 가족의 경우, 2인 이상이 계산에 포함된다. 그 결과 가구는 더욱 포괄적 단위가 되고, 1인 가구도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평균 가구소득은 평균 가족의 소득보다 상당히 작게 된다.

가족 개념을 선택했을 때 가족에 속하지 않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은 최저임금수준 혹은 빈곤선과 같은 기준선에 따른 계산일 경우 가장 명백히 드러난다. 핵가족인 경우, 친족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경제적 후생 (부모자녀관계가 아닌 경우)은 홀로 사는 사람들로 계산된다. 함께 사는 핵가족과 소득을 공유하면서 상당한 편익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이들의 개인적 소득은 “빈곤”층으로 잘못 계산되어 저소득층으로 나타난다. (노인들의 경우 특히 그러함) 이는 경제적 가족일 경우에도 나타난다. 그러나 경제적 가족일 경우, 가족에 속하지 않지만 다른 이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동거인들과 혈족관계가 없기 때문에, 소득 공유의 가능성은 현실보다 낮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이들의 소득은 경제적 후생을 부정확하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 3.3.2.2 가구

정의

가구의 정의는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 현재는 두 가지 유형이 가구의 정의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첫째는, 한 주소에 함께 사는 사람들, 둘째는 주택이 같으면서 함께 식대를 하는 사람들이다. 가구 예산 조사에서는 후자의 정의가 많이 쓰인다.

### 소득 공유 가정에 대한 영향

가구는 혈통, 결혼이나 입양에 의해 다른 가구 구성원과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소득을 공유한다는 가정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극단적으로 말해, 세입자, 하숙생과 같은 가구 구성원은 자신들이 받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다른 가구 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또 다른 가구 구성원은 이런 소득(세입자와 하숙생의 지급분)을 공유할 수 있지만 세입자와 하숙생의 모든 소득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구 수준에서는 소득 공유 가정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가구간 소득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이 모국의 가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은 개도국에서는 대가족 제도가 아주 중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높은 소득을 벌어들이는 노인 가족 구성원이 다른 곳에 거주하는 성인 자녀 (또는 손주)에게 소득을 이전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장기적으로 소득세 부담을 덜기 위해 이용하는 방법) 가구간 소득의 공유는 가족이 분열되어 한 배우자가 (자녀 양육 부담이 없는 배우자) 이전 배우자에게 배우자 지원을 위해 혹은 자녀 양육을 위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다시 말해, 만일 통계 단위를 소득을 공유하는 개인의 집단으로 정의한다면, 그리고 정의에 “동일한 주소”라는 제한을 씌운다면,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모든 소득 공유의 상황을 파악하여 가구간 이전에 포함시키려면

- “동일한 주소” 제한에 구속되지 않은 통계 단위 정의를 채택하거나
- 모든 가구간 이전을 소득으로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첫 번째의 경우 가구조사에서 통계 단위 파악을 위해 가구간 소득 이전에 대한 질문을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문제가 된다. 또한 그 ‘공유 단위’

내 모든 가구가 설문조사의 표본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는 지역 표본을 사용할 경우 매우 비실용적인 문제가 된다. 두 번째는 제 2장에서 권고한 개념체계에서 나타난 것인데, 이 경우 증여 가구의 소득에서 가구간 이전을 반드시 공제해야 한다.

### 실제 측정 문제

가구란 일반적으로 한 주소를 공유하는 모든 구성원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을 주택과 결합시킬 것인가와 더욱 중요하게는 무엇이 주택인가의 두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다.

### 주택과 결합시키기

일반적 관행을 따르면, *평상시* 거주하는 곳을 그 사람의 주택으로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모든 이들을 주택과 결합시키지 못할 경우, 지역 표본을 이용하는 인구조사나 가구조사에서 과소 포함되는 원인이 된다. (연령별 과소포함률은 10% 이상이며, 응답하지 않은 가구 표본을 포함하면 이보다 더 높다.) 인구 통계학에서 이는 무시할 수 있는 통계지만, 소득 분배 평가나 분석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한 가구 구성원이 직계 가족이 거주하는 곳에서 떨어져 살며 일을 한다면, 그 사람과 가족의 주택을 연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소득 분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구 혹은 가족의 소득은 소득 분배 구조의 최하위 수준으로 감소될 수도 있다. 1인 가구 (가족과 떨어져 사는 그 구성원)의 경우, 경제적 후생의 척도에서 실제보다 소득이 너무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생긴다.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학생들에게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은 학생들은 아주 낮은 소득을 지닌 1인 가구로 나타날 것이며 부모가 거주하는 가구의 경제적 후생은 과대평가될 것이다. 다소 다른 성격을 지녔지만 여전히 문제점을 내포하는 예로는 별거 혹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공동 양육권이 생긴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주택에 기초한 가구 정의를 채택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분포를 기술하기 위한 단위로서 가구는 기타 더 유용한 분석 단위를 위한 기본 골격이 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가구는 주택을 공유하는 개인들의

모임이라는, 다소 느슨히 정의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소득과 지출의 공유라는 가정은 가족보다는 가구의 경우 훨씬 그 명확성이 떨어진다.

### 주택의 정의

전통적 정의에 의하면,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분리된 생활 공간으로, 그 구조물의 밖에서 들어오는 현관이 있지만 다른 주거지로는 통하지 않는 곳이다. 적어도 선진국의 경우 주택이 잘 정비된 곳에서는 이 정의를 채택했을 때 거의 문제가 없다. 그러나 여러 가족원이 함께 살면서 공동 주방과 화장실 등이 있는 저비용 주택 등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3.3.2.3 광의의 가족

#### 정의

광의의 가족이란 혈연, 결혼 또는 입양에 의해 관계가 맺어지고 (경제적 가족) 한 주택을 공동 사용하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 이 정의는 소득 공유 가정을 입증하기 위해 관계 (혈연, 결혼, 입양)에 의존한다. 가장 일반적 의미에서 가족은 다음의 특징들을 지닌다. 일단 가족은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중 한 명은 최하 연령 (15세 혹은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혈연, 결혼 또는 입양으로 가족관계를 맺어야 한다. 가족 구성원은 보통 동일한 주택에 살며, 법적 결혼 (법률혼 혹은 사실혼 모두)으로 보통 평등한 지위가 주어진다. 이러한 일반적 특징이 없으면서 동일한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무소속 개인으로 칭한다.

#### 소득 공유 가정에 대한 영향

명백히 설명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경제적 가족 구성원은 소득을 공유한다고 일반적으로 가정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서로 관계를 맺고 같은 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나 성인이 된 자녀가 서로 다른 곳에서 살 경우, 또한 형제 자매가 다른 곳에서 살 경우에는 소득을 공유한다고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관계만으로는 소득을 공유한다고 확정하기 힘들다. 앞서 지적했듯이, 가구라는 상황에서도, 주거지를

공유한다고 해서 반드시 소득을 공유한다고 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경제적 가족의 경우처럼 혈족 관계와 공유 주택 개념이 효력이 있다면, 소득 공유 가정은 더욱 강력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 **3.3.2.4 핵가족**

정의

핵가족이란 한 집에 살고 있는 부모와 결혼 전 자녀를 의미한다. 나이 제한 (예, 18세 이하)을 두기도 한다.

소득 공유 가정에 대한 영향

다시, 혈족관계와 한 집에 산다는 것은 소득 공유 가정을 입증한다. 핵가족의 경우, 혈족관계의 성격에 의해 소득 공유 가정이 더욱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 핵가족의 자녀, 특히 일정 연령대 이하의 자녀는 자신의 소득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소비는 부모의 소득에서 비롯된다.

#### **3.3.3 단위 선택과 소득 측정**

소득 공유 가정을 위한 통계 단위를 선택할 경우, 소득 유형마다 그 타당성이 달라진다. 특히, 특정 소득 체계 내에서 소득이나 급여, 그리고 그에 따른 주택, 가구, 가족, 혹은 개인에 대한 분배를 하나의 가구조사 방법론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경우가 있다. 소득을 귀속 소득까지 확대했을 때의 장단점이 무엇이든, 여기서의 문제는 통계 단위가 지니는 함의가 무엇인가 이다.

##### **3.3.3.1 소유자 거주 주택**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은 집에 사는 "가족"은 집을 임대하여 사는 가족보다는 수준 높은 생활을 영위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영 주택에 살거나 시장 임대료보다 적은

임대료를 내고 사는 가족의 경우에도, 지급 임대료와 이에 귀속된 시장 가치간 차이만큼 사회적 현물 이전의 형태로 소득이 지급된다 할 수 있다. 이는 소유자 거주 주택과 관련된 모든 논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택과 관련한 모든 귀속 소득은 그 주택에 대한 법적 자격을 보유한 이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소득 공유의 전형적인 경우이다. 그 주택에 사는 모든 이는 주거에서 오는 주택 서비스를 모두 소비하기 때문에, 모든 이들은 그 귀속 소득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통계 단위의 측면에서 보면, 그 가구는 아마도 소유자 거주 주택에서 발생하는 소득 평가를 위한 가장 적합한 단위가 될 것이다.

### **3.3.3.2 고용계약으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

흔히 '복리후생'이라 불리는 재화와 서비스는 근로계약을 맺은 당해 근로자 외에도 그 편익이 돌아간다. 예컨대, 치의료보험 급여는 근로자와 가족 모두에 돌아간다. 하지만, 이러한 복리후생 정책은 거의 모두 소위 핵가족 - 부모와 "미성년 자녀" -에게만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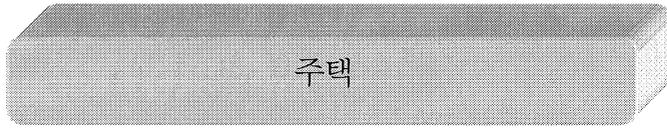
통계 단위의 선택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복리후생의 귀속 가치를 소득에 부가시킬 경우, 가족 혹은 지출 단위의 개념은 하나로만 정의될 수는 없다. 사실 어떤 단일한 분석 단위도 포괄적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절충적 정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소득 데이터의 수집과 배포를 위한, 일련의 위계적 분석 단위를 제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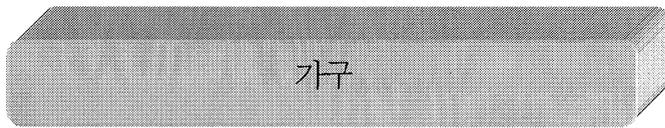
### **3.3.4 절충적 통계 단위를 위한 제언**

아래 그림은 가구소득 데이터의 수집과 배포를 위한 표준으로 캔버라 그룹이 권고하는 분석 단위의 위계를 그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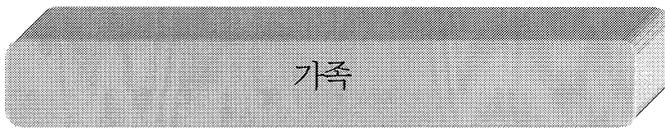
표 3.1 절충적 통계 단위를 위한 캔버라 그룹의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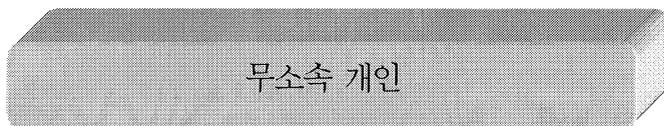
구조적으로 독립된 생활 공간으로서, 건물 외부 혹은 복도나 계단에서 안으로 통하는 독립된 현관을 지녀야 한다.<sup>1</sup>



1인 혹은 같은 주택 내에 함께 사는 다수의 사람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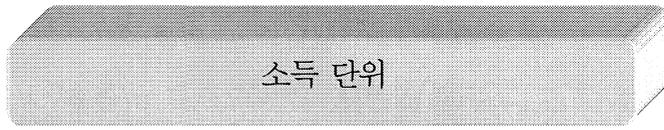
혈육, 결혼 (동성 커플, 사실혼 혹은 관습법상 관계 포함), 또는 입양에 의해 관계를 맺게 된 2인 이상의 사람들로 같은 주택에서 생활. 데이터 수집 당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친인척도 고려하여, 혈족관계의 성격과 무관하게 단일한 가족에 대해 유연한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



<sup>1</sup> Eurostat 정의에 의하면, 주택은 구조적으로 독립된 생활 공간으로서, 적어도 1인이 상주하는 공간이다.

<sup>2</sup> 이는 Eurostat의 민간인 가구 - 가구 주거지 개념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무소속 개인이란 홀로 살거나, 다른 가구 구성원과 관계가 없는 가구에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



1인 혹은 한 가구 내의 다수의 사람들로서, 소득에 대한 통제권이 공유되는 사람들<sup>3</sup>

캔버라 그룹은 분석 단위를 위한 “골격”과 소득 추계치의 실제 생산간 관계를 고려하며, 가장 바람직한 분석 단위로서 가구를 채택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가구는 미시데이터 (가구 설문조사) 및 거시 데이터 (SNA) 모두를 활용하는 데에 가장 적합하고 밀접한 관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1993년 국민계정체계 (SNA)가 내린 경제의 제도적 부문에 대한 정의 (3페이지 C절)에는 완벽한 계정을 작성하기 위한 경제의 주요 부문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두 개의 제도적 단위 혹은 거래 단위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하나는 가구이고 다른 하나는 법인체 (legal entity)이다. SNA에서는 경제 주체인 제도적 단위를 다음과 같이 상호 배타적인 5개 제도부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 i) 비금융기업 (Non-financial Corporations)
- ii) 금융기업 (Financial Corporations)
- iii) 정부 단위 (Government Units)
- iv) 비영리 기관 (NPI's)
- v) 가구 (Households)

거시적 측면에서 가구를 단위로 선택한 까닭은 소득과 가구가 지닌 연관성 때문이다. 그러나 SNA에서는 가구에 대해 상당히 느슨한 정의를 내렸고, 제도적 단위 및 부문의 여러 하위 집합 중 하나로 나타났다. 가구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sup>3</sup> 이는 Eurostat의 민간인 가구 - 가사 개념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가구: 한 개인 혹은 개인 집단으로 이루어진 가구 부문에서, 제도적 단위를 지닌 경제 내 모든 물리적 인간. 제도적 단위의 정의를 위한 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비법인 기업의 가구에는 제도적 단위 (특정 조건 하에서는 제외)로 간주되지 않은 비법인 기업이 포함된다. 가구의 주된 기능은 노동력 제공, 최종 소비, 그리고 한 기업체로서 시장의 재화와 비금융 (금융 서비스도 가능) 서비스의 생산이다.

가계지원 비영리기관 (NPISH): 1차적으로 가구를 위한 비시장 서비스의 생산에 관여하는 법인체이며, 가구의 자발적 후원을 주된 자원으로 해서 운영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SNA는 어떻게 “가구”가 정의되고 구성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대신 가구가 생산 단위 혹은 소비 단위로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역점을 두고 설명하였다. SNA 체계에서는 “호주”의 가구 단위가 “캐나다” 혹은 “미국” 가구 단위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물론 각각은 미시데이터에서는 현격히 달리 나타난다.

이 논문에서 제안된 “가구”의 기본적 정의는 비교연구 및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도록 권고되고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시데이터에서 사용하는 가구 개념의 유일한 차이점은 “함께 식사하는” 단위로서의 정의이다. 이 차이는, 대부분의 미시데이터 조사 기반의 추계에서는 가구의 숫자 혹은 규모에 중대한 차이를 낳지 않는다고 본다.

우리는 표 3.1에 정의된 가구를 소득분배분석을 위한 기초적 통계 단위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단 특정 목적을 위해, 표 3.1의 다른 단위를 대안적으로 함께 사용해도 좋다.

### 3.3.5 가구 균등화 지수

가구를 통계 단위로 사용할 때 드러나는 한 가지 문제점은, 가구는 규모나 구성 면에서 아주 다양해서, 가구별로 기본 요구간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동일한 수입을 버는 가구일 경우 규모가 큰 가구가 작은 가구보다 생활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 가구 구성원에 들어가는 비용도 연령, 학생의 유무, 노동력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진다.

국가별 소득분포 상황을 비교하기 위해 가구를 기초적 분석 단위로 채택하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인구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결과의 타당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가구 규모와 구성의 다양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구간 요구의 차이를 감안한 소득 비교를 위해, 가구 균등화 지수가 개발되었다. 가구 균등화 지수는 가구 구성원당 가구소득을 계산하여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총소득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 과정에서, 가구의 규모 등에 따라 가구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된다. 특히 성인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기본 소비 욕구가 달라질 때 더욱 그렇다.

가구 균등화 지수는 국가와 사용 기관마다 사용하는 형태가 아주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가구 혹은 가족 규모를 고려한다. 가구나 가족 규모는 수많은 척도 중 유일한 요인이지만, 기타 고려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경우, 가장 많은 가중치를 두는 요인이다.

가구 균등화 지수는 각기 다른 규모와 구조를 지닌 가구가 각기 필요로 하는 소득 금액 혹은 소득의 비율로 제시된다. 따라서 1인 가구가 특정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 한 단위를 필요로 한다면, 2인 가구는 1.7 단위를, 3인 가구는 2.2 단위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러한 균등화 지수는 두 가지 접근법에 의해 구성되는데 하나는 사회과학자들의 전문가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구조사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경험적 지식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가구 균등화 지수는 일반적으로 소득에 불변한다고 가정한다. 즉, 가구의 상대적 욕구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가구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보다 더 복잡한 가정을 수립할 경우, 실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광범위한 균등화 지수에 비추어 결과를 평가할 수만 있다면 단순한 접근 방법이 훨씬 합리적이다.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 4장에 제시한다.

가구의 규모별 욕구 차이는 국가간 비교를 위해서도 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을 가구 규모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조정된 가구소득을 측정한다. 물론 측정 대상 소득 개념에 따라서도 가구 균등화 지수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소득 개념에 사회적 현물 급여 - 학생 교육비 혹은 보건의료 혜택 등 -를 포함시키는 경우, 현금 소득에만 적용되는 가구 균등화 지수와 차이를 보일 것이다 (Smeeding et al. 1993). 마지막으로, “비 균등화” 조정도 실제로는 특정 균등화 지수를 의미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즉, 생산자는, 한 가구에 주어지는 주어진 현금 소득이 1명, 2명 혹은 6명의 가구 구성원에 의해 공유된다면, 그 현금 소득 수준은 동일한 수준의 효용을 낳는다는 완전한 규모의 경제를 암묵적으로 가정한다.

우리는 소득분배분석을 위해서는 가구 균등화 지수를 이용하여 가구 규모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

### 3.3.6 인구 가중치

통계 단위와 관련한 마지막 사안으로 인구 가중치 (population weights)의 선정 문제가 있다. 소득 조사에 응답한 가구는 특정 인구층을 대표할 것이라 추정한다. 이 때 이들의 추출 확률 (probability of selection)과 반비례로 각 가구에 대해 가중치가 주어진다. 그 다음 이 가중치를 가구소득과 곱해서 목표 인구층의 전 가구에 대한 대표 소득 추계치를 계산해 낸다. 이렇게, 표본 가구소득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총 가구소득을 추계한다.

그러나, 앞 절에서 말했듯이, 소득 통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가구 자체의 후생이 아닌, 개인의 경제적 후생에 관심을 둔다. 일단 가구소득을 가구 균등화 지수로 조정하여 가구의 소득이 직접적으로 그 가구의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면, 가구소득

가중치를 각 단위에 있는 사람의 수로 곱해, '개인 가중치'를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 가중치'를 균등화한 가구소득에 적용하면, 모든 개인간 소득 분배 형태를 도출할 수 있다. 예컨대, 6인 단위는 1인 단위를 여섯 번 '계산'하면 된다. 전체 가구소득을 전 인구가 공유한다고 가정할 때, 개인 가중치는 해당 인구층의 개인 전체간 소득 분배의 양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소득 분배는 가구소득은 모든 가구 구성원들간 공평하게 분배된다는 가정은 반영하고, 개인이 직접 소득을 수령한다는 가정은 반영하지 않았다. 수많은 가구 구성원들이, 특히 어린 자녀의 경우 현금 소득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가정이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다.

한 가구 내 각 개인에 (아동은 제외) 대한 완벽한 소득 데이터를 생산하는 국가도 있다. 이 경우 각 개인의 가중치는 소득을 버는 인구층의 소득 분배 추계치 생산에 이용되는 표본 설계로 결정한다. 이러한 설계 기반의 가중치는 앞서 설명한 소득분배분석에서 사용되는 '개인 가중치'와 구별된다. 설계 기반의 가중치에서는, 가구 구성원들 각기 다른 소득 가치를 지니고 있고, 소득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라 가정한다. 그러나, 한 가구 단위 내에서 모든 가구 구성원간 (아동 포함) 소득 분배 형태를 추계하려면, 앞서 말한 개인 가중치 방법이 더 권장된다.

### 3.4 물가 지수의 활용

데이터 편집자가 시계열을 형성하는 가구소득통계를 낼 경우,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하도록 조정하여 '실질'적 소득 비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 조정 과정에서는 앞서 논의한 균등화 지수를 확장한 개념이 사용된다. 균등화 지수는 어떤 특성을 지닌 가구가 요구하는 가처분 소득의 수준에 대한 추정치, 혹은 추계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가구 구성원은 다른 특성을 지닌 기준 가구와 동일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다. 이를 여러 가구 유형에 대한 물가 지수라 일컫는다.

그러나, 어떤 유형의 가구이든지 물가는 시간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시기별 유효한 비교자료를 제공하려면 - 또는 한 국가 내 지역별, 혹은 집단별 비교자료를 제공하려면 - 소득분배통계는 그 소득 정의와 적합한 물가 지수로 조정을 해야 한다.

한 물가 지수로 조정된 소득에 의해 사람들의 순위를 매기는 경우, 이들의 순위는 정확히 그 소득으로 가능한 생활수준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처분 소득을 기준 소득으로 간주할 경우, 물가 지수는 '가처분 소득'으로 구입할 수 있는 소비 항목을 파악해야 한다. 예컨대, 지방정부에 내는 재산세 등을 공제한 순소득을 특정하였다면, 그 재산세는 그 물가 지수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는 소비자 물가 지수 혹은 이와 관련한 하위 지수가 널리 사용된다.

만일 현금 소득을 넘어선, 광의의 소득 정의를 채택한다면, 그에 따라 물가 지수도 확대되어야 한다. 예컨대, 소유자 거주 주택에 대한 귀속 임대료를 소득에 포함시킨다면, 그런 '임대료'를 파악해서 물가 지수에 적절하게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 만일 '소득'에 사회적 현물 이전까지 포함시킨다면, 이도 물가 지수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물가 변화는 소득계층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각 항목에 대한 물가 상승률이 달라, 이에 따라 준비 가능한 지출 항목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할인마트에 대한 접근성도 소득계층마다 달라져, 생활비에서도 차별적 변화가 발생한다. 이런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물가 지수를 복합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방식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세 종류의 물가 지수 - 하나는 가족 환경, 하나는 평균 소득, 하나는 지리적 위치를 반영하는 물가 지수 - 가 있다면, 어떤 가구에 어떤 물가 지수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분석마다 다른 조정을 해야 한다면,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조차도 분석마다 차이를 보일 것이다. 다른 균등화 지수를 사용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데이터 생산자는 단일한 차원의 (지리 혹은 가족 구성 등) 물가 지수를 일관되게 적용하여 동일 국가 내 시기별 차이에 대해 주어진 소득 정의를 조정해야 한다.

### 3.5 구매력 평가설

대부분의 국가별 소득 분배 비교연구에서는 상대소득 데이터를 제시한다. 예컨대, 빈곤 연구에서는 중위 소득보다 낮은 소득층의 비중에 대해 기술한다. (제 7장 데이터 표현 참조) 이 경우의 데이터는 화폐 단위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통화를 공통된 표준 통화로 변환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석가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각국간 상대적 생활수준을 실질 가격으로 비교하는 데에 관심이 더 많다. 예컨대, 일국 내 빈곤층의 '실질' 생활수준과 타국의 빈곤층의 '실질' 생활수준을 비교하는 데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소득의 구매력 차이를 고려하여, 상대 소득을 실질 소득으로 변환해야 한다.

거시경제학자들은 여러 국가들의 상대소득을 공통 기준으로 변환하기 위해 구매력 평가지수 (Purchasing Power Parities: PPP)를 이용한다. PPP는 전체 경제와 관련한 재화와 서비스의 '평균' 물가를 국가간 비교 조사한 결과와 이를 결합한 국민계정 (National Account) 데이터에서 발전한 개념이다. PPP는 OECD가 주기적으로 회원국에 대해, 그리고 Eurostat가 EU 회원국에 대해 조사 발표하며, 세계 은행 (World Bank)의 경우 좀 더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비정기적으로 조사, 발표한다.

PPP 지수는 한 국가에서 살 수 있는 재화의 비용과, 다른 국가에서 동일한 양을 살 수 있는 재화 비용의 비율을 계산해서 얻어진다. 국가별로 살 수 있는 재화의 양은 서로 다르다. 기술적으로는 두 국가의 재화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 재화가 두 국가 모두에서 동등한 대표성을 가지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나타난 가격 비율은 실제의 구매력을 왜곡시킬 수 있다. 지리적 요소도 이에 영향을 준다. 온대기후에 위치한 국가의 경우, 에어컨이나 중앙 난방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 운영비를 비교할 경우, 어느 정도는 인위성을 떨 수밖에 없다. 비교가 어려운 것은 기초적 식재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 국가에서의 주식이 다른 국가에서는 낫선 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PPP는 1차적으로 '국민 1인당 실질 GDP'를 창출하여 가구의 소비 항목을 넘어서 광범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개발된다. 물론 자본재와 정부의 종합경비를 제외한 '가구의 개별 소비'에 대한 하위 물가 지수도 파악되어 가구소득 데이터 조정에 활용된다. 하위 지수는 건강보험, 교육 및 주택과 같은 재화 및 서비스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활용 가능하다. 따라서 PPP는 소득분배분석에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필요한 지수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PPP가 매년 계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구소득 미시데이터의 비교 연도에 최대한 가까운 연도의 PPP를 사용해야 한다.

어쨌든, 여러 기술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국가별 비교연구에서는 환율보다는 PPP가 더 많이 사용된다. 만일 특정 단위의 재화 가격을 공통 통화로 나타낼 수 있다면 한 통화에서 다른 통화로의 환산함으로써 그 국가의 실질 구매력을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환율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될 터인데, 그 이유는 환율이 국내 생활비뿐 아니라 그 국가의 상품, 자본 시장, 외환 거래, 국제 무역에 대한 상대적 수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PPP의 상세한 개념 및 방법론은 부속서 3에서 다시 논의하겠다.

우리는 국가간 실질 소득을 비교할 경우, 환율보다는 구매력평가지수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 제 4 장

## 이론에서 현실로

### 4.1 도입

제 2장과 3장에서는 가구소득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 개념을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개념들은 여러 제약을 가지고 있고, 이상과 현실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절충이나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제 4장에서는 이러한 제약과 그 영향을 탐색하고, 실용적 개념 정의를 위한 기준을 도출하려고 있다.

소득의 개념적 정의를 실용적 정의로 변환할 때에, 대표적으로 두 개의 제약이 존재하게 된다.

- 데이터의 유용성
- 데이터의 품질

이 외에도 데이터의 활용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어떤 정의가 선택되는가가 달라진다.

대부분의 소득분배통계는 가구조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된다. 물론 일부 국가에서는 과세 자료, 사회적 급여 자료, 개인 소득 기록 등 그 외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제 2장, 3장에서 논의되었듯이, 상세한 데이터 수준까지 제공하기는 쉽지 않다.

가구조사에서는 면접 대상자들이 합리적 정확성을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리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정보에 의한 제약을 많이 받는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기대와, 제약이 많이 드러난다.

- 응답자들은 해당 소득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지만, 예를 들어 고용주가 그들을 대신해서 내는 사회보험 부담금 등에 대해 알지 못할 수도 있다.

- 응답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합리적 수준의 정확성을 가지고 기억해 내야 한다. 이는 질문 내용뿐 아니라 회계기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설문 내용은 응답자들에게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수많은 OECD 국가에서, 물물교환을 위해 가내 생산을 한 재화의 가치 등, 연관성이 없는 내용을 질문한다면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 중 특정 소득을 추계할 수 있는 대리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문제 - 사회적 현물 이전과 같은 - 도 있고, 실제 일부 국가에서는 소득세와 같은 항목의 추계를 위해 선호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가구조사가 아닌 행정자료를 기본 토대로 할 경우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가장 중요한 행정자료인 소득세 자료는 오랜 기간 동안 연속 데이터의 시계열 정보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행정자료에도 다음과 같은 발견된다.

- 과세기준선 이하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과세기준. 특히 총인구와 비교해서 과세기준이 너무 낮은 국가에서 과세기준이 시간에 따라 심한 변화를 보이는 문제
- 과세 소득의 정의가 소득분배연구에서 선택된 정의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 과세 단위의 정의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 부분 연도의 단위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세 자료는 비납세자에 대한 사회보험 정보, 국민계정에 나타난 총소득 정보 등과 함께 사용된다. 이를 적절히 이용하려면 개인 식별 시스템을 통해 개인 파일을 직접 대조해야 하는데, 이 경우 사생활 정보 및 개인정보 비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응답자들의 "동의"를 구한 후 이 과정을 수행한다.

데이터 유용성의 문제는 사용목적에 걸맞은 데이터의 품질 및 적합성과 관련을 가진다. 특정 소득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는 이유는 목적에 걸맞게 충분히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하다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품질 높은 데이터가 정확한 추계치를 제공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문제는 후에 다시 자세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제 4.2절에서는 여러 발전 국면에 있는 국가에서 수집한 소득 데이터에 대해 캔버라 그룹이 메타설문조사를 하여 얻은 데이터 유용성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 그러나 데이터 항목의 유용성만으로 신뢰성 있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소득분배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데이터 품질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이다. 제 4.3절에서는 캔버라 그룹에 참여한 국가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데이터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해 논의하고, 생산자와 사용자 모두가 인식해야 하는 데이터의 함정을 알아본다. 제 4.4절에서는 모든 자료와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uxembourg Income Study)의 경험을 토대로, 실용적인 소득 정의 방안을 제시하여 국가별 비교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더욱 완전한 소득 정의의 개발을 위한 방안도 제안한다.

## **4.2 데이터 유용성**

### **4.2.1 도입**

이 절에서는 여러 국가에서 수집한 소득구성요소에 대해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소득 개념에 어떤 소득구성요소가 포함되고, 어떤 요소가 포함되지 못하는지에 대해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기존 가구조사에서는, 제 2장의 완전한 소득 정의에 해당되는 모든 (또는 대부분의) 소득구성요소를 수집했느냐의 여부이다. 또한 누락이 발생한 경우, 이를 다른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 **4.2.2 메타설문조사**

부속서 4는 전 세계에 걸쳐 가구소득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106개의 소득구성요소에 대한 “메타설문조사 (설문조사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데이터 수집을 위한 훌륭한 설문이란, 가장 수집하기 힘든 요소에 대해 가장 상세한 질문을 던지고, 쉽게 수집 가능한 개념에 대해서는 더욱 간단한 질문을 던지는 설문지이다. 여기서는 데이터 수집 도구를 소득 유형에 따라 9개 부문으로 구성하였고, 가능한 상세 목표를 설정하였다. 9가지 소득 유형은 a) 근로 소득 b) 복리후생 c) 자산 소득 d) 종합

정부 프로그램 소득 e) 정부 및 민간 사회보험 급여 f) 정부의 자산조사에 따른 이전 프로그램의 급여 g) 민간 이전 h) 소득공제 k) 기타 소득으로 대표된다.

응답자들은 각각의 유형에 대해 다음 사항을 기록하도록 요청을 받았다.

- 모두 수집되었는지의 여부
- 그렇지 않다면, 조사를 담당 한 통계청에 의해 대체 (할당)되었는지의 여부
- 그렇다면, 별도의 소득구성요소로 수집되었는가 아니면 다른 요인과 결합되어 수집되었는가의 여부
- 결합되어 수집되었다면, 어떤 요인과 함께 수집되었는지.

한 소득구성요소가 포괄적 질문을 근거로 한 추론만으로 수집되었다면, 응답자들은 그에 대해서도 기입했다. 또한 한 소득구성요소가 그 국가에 적용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기록했다.

4개국 -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소득분배통계 보고를 위한 행정자료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부속서 4의 표 1에서는 106개의 소득구성요소를 정리하였다. 이 장에서는 제 2장 표 2.1 (부속서 1)에 정리된 소득 분류를 따르기 위해 소득구성요소를 다시 정리하였고 표 2.1의 요인과 일치된 (확대된) 코드를 각각에 부여했다.

세계 5개 대륙 25개국의 응답자들은, 30개의 소득 설문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데이터에 일정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응답자가 질문서에 설명된 소득구성요소를 정확히 이해한 것은 아니며, 그들이 답변한 소득구성요소도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고 설명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가마다 언어 외에도 행정자료의 유용성 등에서 상당한 제도적 차이도 보였다.

부속서 4의 표 2에서는 조사 결과를, 표 3에서는 설문에 대한 모든 답변을 나타내었다. 각 답변의 상세 내용과 수정 내용 등은 룩셈부르크소득연구 웹사이트 ([www.lis.ceps.lu/canberra.htm](http://www.lis.ceps.lu/canberra.htm))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 소득요소를 적어도 한 설문조사가 수집했다면, 이는 수집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예"라고 응답한 국가의 수를 셀 경우, "해당 없음"이라는 응답도 함께 나타냈다. "예"라고 응답한 국가의 수를 계산하면, "적용

불가능"이라는 답변도 함께 추가된다. (어떤 국가가 특정 프로그램이나 소득구성요소가 없는 경우, 암묵적으로 그 값은 0으로 둔다.) 그러나 어떤 요소의 수집 여부를 구별하기는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그 값을 무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 4.2.3 결과

23개 이상의 국가에서 9개의 소득구성요소가 수집되었다. - 임금 및 봉급 (1.1A, 1.1B), 보너스 (1.2B), 개인사업자 소득 (농장 및 비농장) (2.1A, 2.1B), 임대 소득 (3), 이자와 배당금 (4.1A, 4.2A), 고용주 지원 연금 (5.1A). 기타 항목들은 아래의 각 소득구성요소에서 논의한다.

#### 4.2.3.1 근로 소득

거의 모든 국가에서 임금 및 봉급, 보너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고, 조사 국가의 절반 이상에서 근로자 현금 소득 데이터 다섯 개 요소를 추가적으로 수집할 수 있었다. 만일 임금 및 봉급에서 지급되어 후에 공제되어야 할 근로 관련 비용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고용주의 환급분 (1.1E, 1.1F)은 실제로 어떤 국가에서도 수집되지 않았지만, 그다지 중요한 정보는 아닌 듯 보인다.

"복리후생"과 관련한 데이터는 거의 수집하기가 힘들었다. 절반 정도의 국가에서 수집된 정보는 세 가지 - 13개국에서는 회사차량 (1.7A)과 식대 (1.7B), 14개국에서는 사택 (1.7D) 등이었다. 고용주의 사회보험 부담금은 (1.6A-E) 6개국 이하에서만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 4.2.3.2 개인사업 소득

각각 24개국과 23개국에서 개인사업 소득 (농민 및 비농민) (2.1A, 2.1B)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15개 국가에서 로열티 자료가 수집되었다. 그러나 자영업의 귀속 소득 데이터는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특이한 사항은 물물교환을 위한 가내 생산 (2.3)에 대해 수집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14개국에서는 자체 소비를 위한 가내 생산 정보를 수집했지만 (2.4), 6개국에서만 이 — 중국, 감비아, 모리셔스, 멕시코,

네덜란드 및 스위스 — 물물교환을 위한 가내 생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소득구성요소는 다양한 발전 국면에 있는 국가들간 비교 가능한 국제적 소득 지표를 창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자가 거주 (2.5)에서 발생한 귀속 소득은 응답국 중 절반 이하에서만 수집 가능했으며, 12개국에서만 귀속 소득을 추계하였다.

#### **4.2.3.3 임대 소득**

25개국에서 임대 소득 자료를 수집했다.

#### **4.2.3.4 자산 소득**

자산 소득 정보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수집되었는데, 이자 (4.1A), 배당금 (4.2A) 수령 정보는 24개국에서 수집되었으며, 부동산 및 신탁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금 (4.1B + 4.2B)은 15개국에서 수집했다. 담보 대출 및 비담보 대출에 대해 납입된 이자 (11.7A 및 11.7B)는 각각 13개국과 12개국에서 수집했다. 이론적으로는 지대 수입과 비토지 자산의 임대료를 구분하고 지대만 자산 소득으로 간주해야 하지만, 실제로 건물 임대료는 건물 토지에 대한 지대까지 거의 포함을 하고 있으므로, 가구조사에서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는 모리셔스와 스위스만이 지대를 구분한다.

#### **4.2.3.5 경상 이전 수령분**

첫째 이전은 정부 및 민간 사회보험 급여다 (5.1 및 5.2). 실제로 고용주가 지원하는 연금에 대한 자료는 모든 나라에서 수집 가능하였다 (5.1A). 대부분의 국가에서 (25개국 중 19개국) 해외에서 지급되는 연금 정보 (5.1.B)를 수집할 수 있었다.

15개국 이상에서 정부 사회보장 급여 중 은퇴 및 유가족 연금 (5.2A), 장애 혹은 장애보험 (5.2B), 실업 급여 (5.2C), 산재 보험 (5.2D) 및 퇴역 군인 연금 (5.2F)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었다.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부조 프로그램의 경우, 국가마다 프로그램 일부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설문지를 완전히 완성하지 못한 곳도 있었다. (남미 국가) 25개국 중 17개국에서 종합 가족보험 및 육아급여 (5.3A) 정보를 수집하였고, 13개국에서는 출산 수당 (5.3B), 14개국에서는 정부 장학금 및 교육 지원 혜택 (5.3C), 17개국에서는 학자금 대출이자 감면 혜택 (5.3D) 정보를 수집하였다. 세액 공제 등 자산조사에 의거한 급여는 몇몇 국가에서 수집되었는데, 9개국 이상에서 전체 10개의 급여 요소를 수집했으며, 11개국 이상에서 9개의 급여 요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세 개의 민간이전 정보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수집된 바, 21개국에서 이혼 수당 (5.5A), 19개국에서 양육비 (5.5B), 20개국에서 정기적 현금 선물 (5.5C)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 **4.2.3.6** 경상 이전 지급분의 공제

제 2장에서는 지급 이전을 수령 이전과 반대로 공제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10개 이상의 국가에서 수집한 항목은 6개로 의무적 사회보험 부담금 (7.2B 및 7.2C), 소득세 및 재산세 (부동산세) (7.3A, 7.4), 이혼 수당 및 양육비 (7.5A, 7.5B)가 이에 해당한다. 총 응답국 중 1/4에서 절반 정도의 국가에서 기타 공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의무적 수수료 및 과태료 등은 사냥, 사격, 낚시 (7.3B) 및 기타 항목 (11.6A)으로 분류되었다. SNA 규정에는, 전자는 조세로, 후자는 경비로 분류되고 있다. 별도의 소득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데이터 수집이 완료되지 않았다.)

#### **4.2.3.7** 사회적 현물 이전

조정 가처분 소득을 계산하려면, 사회적 현물 이전의 가치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부문에 대한 데이터는 수집하기가 쉽지 않았다. 예컨대, 25개국 중 15개국에서 임대료 수당, 14개국에서 식량 보조 정보를 수집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일은 단 1개국에서만 (호주) 공공 교육 프로그램 (9.1) 정보를 제시했다는 점이며, 호주, 독일 및 미국에서만 정부 보조 의료 서비스 (9.2) 정보를 제시하였다.

#### 4.2.3.8 기타 항목

제 2장에서 제시한 소득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특정 목적을 위해서 가처분 소득에 포함될 수도, 제외될 수도 있는 항목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조사하였다. 예컨대, 17개국에서 일회성 현금 수령분(12.1C), 6개국 (아르헨티나, 중국, 감비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및 스위스)에서는 가구간 현물 이전 (12.1A) 정보를 제공하였다.

#### 4.2.4 결론

이번 메타설문조사는 제 2장에서 개발된 가구소득요소를 구축한 국가는 많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다수의 국가 (75% 이상)에서 수집된 소득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현금 임금 및 봉급
- 보너스
- 개인사업 손익 (비법인 기업)
- 임대 소득
- 수령 이자 및 배당금
- 고용주 지원의 민간 연금 (외국 연금 포함)
- 정부 지급의 사회보험 (사회보장) 급여
- 정부 지급의 사회부조 급여
- 가구간 정기적 현금 이전
- 가구 외부로부터의 정기적 지급

위 소득구성요소에서 소득세와 근로자 사회보험 부담금이 제외된 것이 의아스러울 지 모르지만, 데이터의 원 생산자가 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대체했을 지라도, 총소득이 상대적으로 완전할 경우에는 이들 항목을 합리적 수준의 정확성을 지닌 항목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이 소득구성요소의 데이터 유용성 상황을 고려한다면, 일관되게 모든 종류의 귀속 소득을 포함하는 소득 정의를 내리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 4.3 소득 분배 결과의 타당성 평가

#### 4.3.1 도입

앞서 우리는 소득분배통계는 진정하고 공정한 소득 분배 형태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일반적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어떤 소득구성요소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소득분배통계의 정확성이 반드시 향상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절에서는 진정하고 공정한 소득 분배 형태를 제시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여러 요인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소득분배통계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 가계 수준에서의 소득 데이터
- 일정 생활수준 영위를 위해 서로 다른 소득 수준을 필요로 하는 여러 유형의 가구에 대해 조정된 “가구 균등화 지수”
- 물가 지수

여기서 일반적으로 소득 데이터란 가구의 ‘가처분 소득’, 즉, 직접세 등을 공제한 후의 총순소득을 의미한다. 물론 앞 절에서 언급하였지만 ‘가처분 소득’이란 국가마다 소득 정의가 어느 정도 다를 수 있다. 예컨대, 현금 혹은 준현금성 가처분 소득 개념에 현물 소득을 추가한다면, 가처분 소득은 증가한다. 또한 조세나 이전이 주는 영향에 역점을 두는 연구일 경우에는, 가처분 소득과 함께 조정 가처분 소득 개념도 함께 검토된다.

가구 균등화 지수 및 물가 지수를 사용하여 원 소득 데이터를 조정할 경우의 요건은 제 3장에서 논의된 바 있다.

3.2절 - 3.4절까지는 오차 혹은 불확실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 논의에서는 주로 현금 혹은 준현금으로 이루어진 가처분 소득의 분배 통계에 대해 논의할 것이지만, 더욱 광범위한 소득 개념도 함께 고려할 것이다. 각 사례는 각국의 통계기구 등을 통해 소득 불충분한 데이터가 소득 분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캔버라 그룹의 로버스트성 평가 보고서 (RAR) 프로젝트에서 나온 것이다. RAR은 유럽 15개국, 남미 5개국, 호주,

캐나다, 미국 등을 대상으로 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제 4.2절에 수록된 데이터 유용성에 대한 연구보다는 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다. RAR은 데이터 결함뿐 아니라 그 결함이 소득 분배 결과에 주는 함의를 검토, 보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4.3.2 소득 데이터의 결함과 모호성

소득분배통계는 원 소득 데이터에 다음과 같은 결함이 있는 경우, 제 2절에서 제시된 질문에 대해 타당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

- 인구층의 불완전 포괄
- 일부 계층의 소득 데이터 대표성이 너무 낮거나 높음
- 생활수준에 대한 가이드로서 소득 데이터가 지닌 결함 - 예컨대, 소득 데이터에서 포착된 소득 개념과 관심 문제에 대한 타당한 답변을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개념이 일치하지 않음.

##### 4.3.2.1 인구층의 불완전 포괄

소득분배통계를 위해서는 대표적 인구 표본으로부터 얻은 소득 데이터가 필요한데, 대부분 이 데이터는 설문조사 면접을 통해 얻어진다. 그런데, 설문조사는 거의 민간 가구 구성원에 한정되기 때문에, 병영, 학생이나 간호사, 이주 근로자 등을 위한 숙박시설, 감옥, 병원, 노인 혹은 장애인을 위한 요양원 등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설문조사에서 제외되기가 쉽다.

##### 4.3.2.2 설문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기타 집단:

이에는 산간 벽지나 광역도시 외곽에 사는 비 도시민, 즉, 불법 이민자, 또는 대가구에 사는 사람들 등이 있다. 물론, 설문조사에서 이들을 배제시키는 일은 거의 드물지만, 이들의 소득과 배제 원인간 상관관계를 감안할 경우, 이들을 배제하게 되면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소득분배통계 로버스트성을 평가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배제 집단의 식별 및 수량화. 단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적지 않은 경우.
- 배제 집단의 소득 및 생활수준 추계치
- 특정 결과가 주는 함의에 대한 평가

첫 번째 요건은 소득 미시데이터셋을 위임 혹은 생산하는 이들이 가장 잘 수행한다. 이들은 표집틀과 그 결정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배제 집단의 규모 및 기타 특성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에 의거하여, 그 결정의 영향력을 가장 잘 추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다소 어려운 문제인데, 시설 거주민들에 대한 소득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보를 수집한다 하더라도, 이를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 시설에서 숙박시설, 난방, 식품 및 기타 소비 항목을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데이터셋에서 도출된 소득분배통계의 1차적 생산자는 이 집단이 소득 분배 계층 전반에 걸쳐 널리 분포되어 있는지 아니면 특정 소득 범위에 더욱 집중되어 있는지 평가할 책임이 있다.

세 번째 평가요소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입각하여, 각 소득 분배 보고서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정 문제, 예컨대 전반적 소득분포의 형태를 분석할 때에는 약간의 배제는 허용될 수 있지만, 이 외의 다른 분석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 수형자 집단을 설문조사에서 배제할 경우라도 지니 계수 (Gini coefficient)의 측정값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청년을 주 대상으로 하거나 실업을 측정을 위한 연구일 경우, 수형자 배제는 중대한 문제가 된다.

사회적 배제의 위험성을 지닌 가장 큰 집단은 소득분배통계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사회적 배제는 소득분배통계를 활용하는 국가의 사회 정치 분석가들에게는 중요한 관심사이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한 배제가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신중히 평가해야 한다.

RAR에서는 인구총을 완전히 포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반적 소득분포를 정확히 제공하는 데에는 그리 큰 위험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 4.3.2.3 표본의 대표성

행정자료 (과세기록 등)가 아닌 표본조사에서 소득 미시데이터를 도출되는 경우, 무응답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 면접 대상자 중 무응답자의 비중은 10%에서 50%가 이상이 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응답자 소득과 무응답자 소득간 차이로 인해 소득분배통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소득분배통계의 로버스트성 평가를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응답 편향의 성격 및 규모의 평가
- 특정 결과에 대한 의미의 평가

첫 번째 요건은 소득 미시데이터셋에서 소득분배통계를 작성하는 1차적 생산자와 더불어, 소득 미시데이터셋을 생산하는 이들이 가장 잘 수행하지만,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꽤 어려운 작업으로 알려져 있다. 3-4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진 무응답 모듈은 전반적 면접을 거부한 가구에게서 유용한 정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다. 보통 설문조사 기관은 무응답자가 사는 지리적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나 블록 거주민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자료 혹은 상용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서 무응답 편향을 추계할 수 있다. 조세나 연금 데이터 혹은 행정자료, 인구조사와 비교를 하더라도, 부정형적으로 소득이 높거나 낮은 집단이 과소대표되는지 혹은 과대 대표되는지 알 수 있다.

RAR은 몇몇 국가들의 경우 최고소득계층과 최저소득계층에서 응답률이 낮음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불평등도 과소추정될 수 있다.

### 4.3.2.4 데이터셋의 대표 응답자들에 대한 부정확한 소득 데이터

설문조사 응답자의 데이터가 부정확한 경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 특정 소득구성요소를 포착하지 못한 질문
- 부정확한 응답

- 부정확한 데이터 편집 또는 포맷간 부정확한 변환
- 기밀 유지 혹은 기타 이유로 인한 데이터간 의도적 대체

소득 미시데이터셋의 생산기관은 한 가구의 총소득 및/또는 가처분 소득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편집 규칙을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또한 개인 소득구성요소의 귀속의 정도에 대해서도 반드시 보고하여 데이터셋 사용자들이 귀속 오차의 잠재적 규모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편향되지 않는 귀속이라도 소득분포의 양극단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가처분 소득'을 위해 공제된 소득구성요소에 대한 대체는 총소득과 당해 소득구성요소간 진정한 관계를 그대로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다.

납세 데이터는 귀속된 것인지 혹은 납세 신고기록에 의해 도출되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야 한다. 총소득 데이터를 가장 신뢰해서, 해당 회계연도 이후에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조세로 귀속시키는 국가가 있는 반면, 납세 기록에 의존을 하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국가별 비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가처분 소득의 산포는 후자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예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전 연도의 과세 소득에 따라 해당 연도에 납세를 하기 때문이다.

응답 편향 평가에 도움을 주는 절차들은 부정확한 응답을 식별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예컨대, 설문조사에서 고소득의 보고자 수를 납세 기록 결과와 비교할 수 있고, 이 기록을 고소득층이 보고한 투자 수익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데에 이용할 수도 있다.

미시데이터를 총합해서 (grossed-up)를 국민계정총량과 비교할 경우, 소득 미시데이터의 정확성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포괄성, 정의 및 기간 등의 차이를 창작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계정데이터도 자체로 결점이 있다. 부속서 5에서는 GDP의 3대 국민계정 추계치인 산출, 소득, 지출의 품질과, 현재 상황에서 국민계정 추계치의 로버스트성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RAR은 수많은 참여 국가에서 소득 미시데이터에서 파악한 자산/투자 수익의 규모가 너무 적어 불평등을 과소 추계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예컨대, 캐나다는 "투자 소득의 무응답 편향이 높다. 대규모의 투자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최상위 소득계층에 집중된 소규모 집단인 경우가 많다. 표본에서의

과소대표성 때문에, 소득 분배에서는 이들의 대표성이 과소 추계될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표집 과정에서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 중소득층과 저소득층인 경우, 적은 금액의 투자 소득 (은행의 예금 이자 등)은 거의 보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였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소득 데이터도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는 신뢰성이 없다고 간주된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신고한 소득으로는 이들이 유지하는 소비 수준을 알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고한 바 있다. 즉, 소득 분위별로 중위 지출은 중소득층과 저소득층간 거의 차이가 없으며 중소득층과 고소득층간 지출 변동은 다른 집단보다 적게 나타났다. 그 결과, 소득하위 10% (십분위)의 경우 주거비를 공제한 후의 소득이 왜곡되게 나타나며, 하위 오분위의 소득비중과 비 연금수급자 부부의 대표성이 왜곡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 외에도 RAR은 학생 및 전체 청년집단이 누락되어, 불완전한 데이터 생산에 한 몫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 경우 만일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살거나, 부모와 함께 살더라도 별도 가구로 취급되는 경우, 총 저소득층의 계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네덜란드처럼 부모로부터의 이전이나 학생 대출이 학생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들의 소득 측정 시, 잠재적 소비가 반영되지 못할 것이다.

#### 4.3.2.5 소득 데이터가 지닌 기타 결함

소득 데이터는 데이터셋에서 사용한 개념의 정확한 수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엄밀하게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각 소득계층이 향유하는 경제적 후생 수준의 면에서 본다면, 이들이 얼마나 부유한가 또는 빈곤한가를 진정하고 공정하게 보여주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특정 소득 정의로는 포착하기 힘든 비정기적 후원 수단에 의존하는 집단이 있다. 예컨대, 학생들은 부모로부터 비정기적으로 받는 용돈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를 설문조사에서 포착하기가 매우 어렵다. (미국의 경우) 후생단체 수혜자는 식품 교환권 등을 통해 상당한 부조를 받고 있는데, 이런 후원에 대해서는 거의 신고를 하지 않는다. 주택을 보조해 주는 일부 국가에서도 중요한 후원 수단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가처분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도 현실을 왜곡하기 쉽다. 출퇴근 비용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이 비근로자들보다 과도하게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양육비도 마찬가지이다. 제 2장에서 논의했듯이 '핵심'적 근로 비용을 주 소비와 가까운 비핵심적 비용과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제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비용은 모든 가구간 유효한 비교를 위해 중요하지만, 그 비용을 단독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일부 집단의 경우 채무의 형태와 보상 여부에 따라 단기간 생활비를 변화시켜, 주어진 현금 소득으로 영위하는 생활 수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컨대, 최근 직장으로 복귀한 사람들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상환 요구를 받는 경우, 이 채무 상환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직장 복귀에서 얻는 경제적 후생이 과대평가될 수도 있다.

RAR은 이렇게 소득 정의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의 민감도가 높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미국 통계국 (US Census Bureau)은 최근 몇 년간 자본 이득, 정부 이전, 봉급 혹은 임금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고용주가 내는 사회보장료, 소득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주택 소유주에 대한 귀속 임대료 (자산 수익)을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에 따라 소득 정의가 달라지게 되면

- 중위 소득과 평균 소득
- 소득 오분위, 오분위 집단 소득 비중
- 달러 소득 그룹 (dollar income bands)별 가구 분포
- 지니 계수

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회계기간 혹은 통계 단위처럼 소득분배통계를 결정하는 매개변수도 특정 집단에서는 부적합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연도별 (year) 신고 기간도, 어떤 기간에는 자본을 축적했다가 다른 기간에는 이를 매각하는 개인사업자의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을 지 모른다.

학생, 미혼 성년 등 서로 관련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구의 경우, 모든 가구 구성원이 공통된 생활수준을 영위한다라는 가정은 맞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생활수준의 산포 (산포)가 과소 추계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이 별도의 가구 단위로 취급될 경우, 학생이나 무직자의 경우 생활수준이 과소 추계될 수 있으며, 그 국가의 전반적인 개인별 소득 분배는 과대 추계될 수 있다.

따라서 설문조사 결과를 작성할 때에는, 소득 분배 결과를 왜곡시키는 이런 모든 장애가 보고결과의 유효성을 얼마나 저해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해야 한다. 몇몇 국가에서 나타난 보고서를 따르면 (프랑스, 뉴질랜드, 영국) 최저소득층의 경우 가계 지출이 다른 계층의 가구보다 낮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최저소득계층이 사회에서 가장 빈곤하거나 물질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다고 기술하기 전에, 이들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시계열 결과와 관련해서도 특수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재화나 서비스 구입의 지원 방식에 변화가 있는 경우- 예컨대 정부가 제공하는 현물 급여가 현금 급여로 바뀌었다면, 현금 소득만을 소득으로 정의했을 때에는 특정 집단의 시간에 따른 생활수준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할 수 있다. 통시적 비교를 하기 위한 데이터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결과에 나타난 편향의 의미를 평가하고 보고해야 한다. 제 5장은 이러한 사안을 좀 더 상세하게 탐구하고 있다.

제 2장에서 논의되었듯이 보건 및 교육 등의 대인 서비스는 대부분 국가에서 제공되며, 그 범위는 국가별, 시기별로 다르다. 조정 가처분 소득의 개념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추계치를 포함하여 도입된 것이지만, 그 가치평가의 기준을 찾기는 개념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쉽지 않다. (제 2절에서는 공교육과 정부 지원의 보건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국가는 단 한 개 국가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완벽하거나 확실한 타당성을 갖기 힘든 경우, 결과의 로버스트성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가구소득 이외의 수입원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거나 향유하는 경우를 소득 분배 결과에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그 한계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 **4.3.3 가구 균등화 지수에 대한 결과의 민감도**

가구 균등화 지수 (ES)는 소득을 조정하여 가구 규모 및 구성의 차이를 밝히도록 설계된 개념이다. 그 활용 근거는 제 3장에서 논의하였다. 여기서는 특정 시기의 단일한 국가라

하더라도 완벽히 정확한 지수값 집합을 도출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가구 균등화 지수를 적용하면 소득분배통계에서 또 다른 오차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지금까지 지수 측정을 위해 여러 기법이 사용되었는데 (Buhmann et al, 1988; Whiteford, 1985). 그 어떤 기법을 통해서도 두 개의 다른 가구가 동일한 생활수준을 영위하는지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어떤 기법도 완전히 로버스트성 있는 결과를 낳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뢰성이 없는 특정 지수값을 배제할 수도 있을 지 모른다. 하지만 정확한 관측자의 눈으로 보면, 타당성을 넘어선다고 간주할 수 없는 값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소득분배통계는 가구 균등화 지수의 로버스트성에 대해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다.

소득분배통계 생산자들은 아래와 같은 집단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고할 때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일정 생활수준 영위를 위해 비정형 (atypical) 비용을 들여야 할 집단. - 예컨대, 별도의 가구 지출이 요구되는 장애인. 무료 현물 지원 - 교통비 혹은 대인보호 서비스- 등에 의존하는 집단.
- 1인 가구 및 대가구 - '평균' 가구 규모에서 벗어나는 집단으로 ES 선택에 내제된 규모의 경제 정도에 더욱 민감한 집단.

경험상, 시기별 변화 (보통 10년 기간 이상)로 나타나는 결과는 ES 선정에 그다지 민감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정 시점 (point-in-time)의 결과는 아주 민감할 수 있다. 영국에 관한 한 연구를 예로 들자면, 1979년 ES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변화한 반면, 평균 소득 이하의 싱글 연금 수급자의 비중은 5%-50% 정도로 변화하였다.

ES는 일반적으로 소득에 불변한다고 가정한다. 즉, 가구의 상대적 욕구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가구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보다 더 복잡한 가정을 수립할 경우, 실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광범위한 균등화 지수에 비추어 결과를 평가할 수만 있다면 단순한 접근 방법이 훨씬 합리적이다

각 소득 분배 결과에 대해서는, ES 선정에 대한 민감도를 새롭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도 ES 선정에 민감도가 높은 결과들을 식별해야 한다.

#### 4.3.4 물가 지수

제 3장에서 논의했듯이, 한 국가 내에서 시간, 지역, 집단간 비교를 수행하려면, 물가 지수를 통해 소득 데이터를 조정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소득 분배 결과의 타당성을 침해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 부적절한 물가 지수
- 부정확한 물가 지수
- 적합한 지수가 없는 경우

제 3장에서 논의했듯이 물가 지수는 정의된 소득 개념과 일치해야 한다. 만일 물가 지수의 구성요소와 소득의 정의가 완벽히 일치되지 않았다면, 통계 생산자들은 그 불일치로 인해 결과에 중대한 편향을 초래했는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적절한 물가 지수라 하더라도 부정확할 수도 있다. 예컨대 '진정한' 물가 지수를 잘못 계산할 경우이다. 즉,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품품질 개선의 효과를 과소 추계하여 인플레이션을 과대 추계하는 경우이다. 반대로, 대표성 없는 재화 '묶음'을 기반으로 물가 지수를 측정할 경우에도 문제는 발생한다. 예컨대, 그 재화 묶음의 가중치에 반영된 지출패턴이 설문조사 대상자의 것이 아닌 경우이다. 이는 물가 지수를 활용하여 소득 분배 결과를 조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다.

물가의 변화는 소득분포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데, 그 물가 지수가 다른 인구집단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단일 물가 지수를 사용하거나, 아예 물가 지수를 사용하지 않아 잘못된 결과를 낳는 경우, 그 결과를 식별하고 기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여기서도 소득분배통계의 1차적 생산자들이 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

특정 절대적 수준의 소득 이하/이상의 가구 수를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비교할 경우에는 구매력평가지수 (PPP)를 활용할 수도 있다. 구매력평가지수도 물가 지수와 동일한 어려움

- 사용 중인 소득 정의와 일치하지 못하거나 잘못 산정될 가능성이 존재-을 지닌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소득분배통계 생산자들이 그 편향의 정도를 고려, 보고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소득 분배 상황을 시기별로, 혹은 국가별, 인구집단별로 비교할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의 구매력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CPI는 시기별 소득분포를 비교하는데, PPP는 국가별 소득 분배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 합리적 방법이지만, 각 지수는 완벽하지 않은 개념적 가정의 영향을 항상 받는다.

#### 4.4 실용적 정의 선정을 위해

##### 4.4.1 비교 가능한 추계치의 생산

소득분배통계의 작성을 위해 요구되는 수많은 질문들은 집단간 혹은 시기별 상황 비교를 수행하기 위한 상대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제 4.2에서 4.3절의 논의 결과, 공시적이든 통시적이든 한 소득 분배와 다른 소득 분배간 비교 시 나타나는 주된 이슈는 사용된 소득 정의의 비교가능성, 그리고 통계 도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의 비교 가능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데이터 유용성은 국가마다 다르고, 한 국가라도 시간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수집된 소득구성요소의 범위가 증가되거나, 응답률 향상을 위해 질문이 변경되거나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층의 포괄 및 무응답 편향 등과 관련하여 데이터 품질도 달라질 수 있으며, 국가마다 혹은 기간마다 달라질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면서 품질도 동일한 듯 보이는 추계치라도 일단 '꼼꼼히' 검토하는 순간, 달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과일이 뒤섞인 '과일 샐러드'가 아닌 사과 대 사과를 정확히 비교하는 추계치를 생산하는 데에는 수많은 장애가 뒤따른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소득 분배 생산자가 결과를 발표할 때에 가능한 가장 포괄적인 증빙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사용자가 데이터셋의 상대적 품질과 비교 추계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제 8장은 이러한 증빙 자료 - 메타 데이터 등 - 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국가간 비교를 위해 실용적 정의의 선정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해 본다. 사실 캔버라 그룹의 주요 목표는 각국들의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국제적 비교 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제 5장에서는 시기별 비교 및 국가별 비교와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 4.4.2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IS)의 경험

국가간 소득분배통계의 비교를 위해 사용되는 '최첨단' 방식은 1차적으로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IS)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1983년 설립된 LIS의 목표는 응답자의 기밀과 사생활을 유지하면서, 사용자가 전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구소득에 대한 미시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었다. 2000년 여름 수행된 LIS 프로젝트는 1970-1997년에 걸쳐 28개국을 대상으로 수집된 100개 이상의 데이터셋을 수록하고 있으며, 중부, 동부 유럽의 경제체제뿐만 아니라 급성장 중인 환태평양 국가들까지 아우르고 있다.

LIS 데이터셋을 이용한 소득분배분석 (예, Atkinson, Rainwater 및 Smeeding 1995: ARS) 작업은, 비교가 거의 불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득 분배 추계의 향상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LIS의 작업 방식은 기존의 국내 가구소득조사데이터를 획득하여 이를 절충한 (harmonization) 다음 비교 가능한 자료로 변환하는 것이다. 데이터 절충은 비교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데이터셋의 신호 (참값) 대 잡음 (통계적 차이 등)의 비율도 향상시킨다. 소득분배통계의 생산 시, 이 LIS와 기타 가구소득 데이터를 가지고 선정을 해야 한다. 국가간 비교 가능한 성과를 양산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선정 과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이 선정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데이터 창조자가 선정한 소득 지표와 설정한 한계 (예, 상위 코드, 하위 코드, 대체 등). 비교능력은 대체, 시뮬레이션 (총소득만 수집되었다면 납입 소득세에 대한 시뮬레이션), 혹은 보고된 소득으로부터 선정 소득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타 통계 기법 (위 3절 참조)
- 회계단위: 가구 혹은 기타 소득 공유 단위 (제 3장)
- 관측단위 (관측 가중치 부여); 개인 가중치 (각 개인의 소득을 관측단위로 산정) 또는 가구 가중치 (각 단위를 관측단위로 산정).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개인

가중치를 선택하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 (미국 통계국)

- **기간:** 연간소득 (연간소득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한 국가도 있다.)
- **불평등 지표:** 대안적 요약 지표, 표현 기술 등 (제 7장)
- **가구 균등화 지수:** 가구 규모의 차이에 대한 조정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중요함 (3장)
- **인구층의 포괄:** 소득 불평등 측정을 위한 가구조사의 대상은 대부분 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민간인이다. 그러나 군인, 노숙자, 위탁 가정에 사는 사람들, 특히 합법적 (불법) 이주민 (외국인) 등과 같은 집단은 표집틀 (가구 주소 혹은 그 국가의 등기부), 또는 관행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4.3절 참조)

따라서 국가간 불평등 및 소득 배분의 비교 과정은 데이터 분석자와 수집자가 선정한 정의나 결정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위의 모든 요소는 데이터 분석가에 의해 선정 과정을 거치며, 모두 민감도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LIS같은 국가별, 시기별 비교 데이터셋의 경우, 하나 이상의 소득구성요소를 완전히 측정하지 않아, 한 국가 혹은 한 기간에 대해 소득 총량이 누락되는 문제가 생긴다. 가장 좋은 방법은 0으로 취급된 누락 소득에서, "진짜" 0의 소득 (또는 부의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다. 또한 불완전 보고자를 포함할 것인가 배제할 것인가도 선택해야 한다. "0"의 소득을 계산하는 것과 누락시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LIS의 목표는 기술적, 제도적 증빙 자료를 지속적으로 갱신하여 설문조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LIS가 가진 수많은 가치를 사회적, 법적, 정치적 상황에 적용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소득 미시데이터를 거시데이터와 비교하는 것도 기술적 문서화의 일부로 수행된다.

#### 4.4.3 국제적 비교를 위한 실용적 소득 정의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소득 정의를 구축하고 이를 실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LIS의 오랜 경험은 캔버라 그룹 작업의 중요한 근간이 되었다. 국제적 비교를 위한 실용적 소득 정의는 표 4.1에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제 2장과 부속서 1에서 채택한

소득구성요소 분류를 사용하였으며, LIS가 제공한 소득 지표인 개인 가처분 소득 (DPI)를 기본으로 한다. DPI에는 현금과 준현금 소득구성요소만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가능한 사과 대 사과라는 깔끔한 비교를 위해서이다. 표 4.1의 정의에는 특히 개도국에 중요한 자가생산도 포함되어 있다. 다른 측면에서의 정의는 모두 동일하다.

우리는 표 4.1의 정의를 국가별 소득분포 비교를 위한 소득 정의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표 4.1 가처분 소득구성요소**

---

**1 근로 소득**

1.1 현금 임금 및 봉급

---

**2 개인사업 소득**

2.1 비법인 기업의 손익

*개인사업자의 귀속소득*

2.4 물물교환용으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투입비 제외\*

2.5 자가소비용으로 생산된 재화, 투입비 제외\*

---

**3 임대료에서 비용을 뺀 소득, 지대 제외 \*\***

---

**4 자산 소득**

4.1 수령 이자에서 납입 이자를 뺀 금액

4.2 배당금

---

**5 경상 이전 수령분**

5.1 고용주 지원의 사회보험 급여

5.2 정부 지급의 사회보험 급여

5.3 정부 지원의 종합사회부조 급여 (현금)

5.4 자산조사에 따른 사회부조 급여

5.5 가구간 정기적 현금 이전

---

**6 총소득 (1+2+3+4+5)**

---

**7 경상 이전 지급분**

7.2 근로자의 사회보험 부담금

7.3 소득세

---

## 8 가처분 소득 (6-7)

\* LIS DPI에는 포함되지 않음

\*\* LIS DPI의 자산 소득에는 포함

LIS의 개별 국가 데이터셋에는 소득 정의라는 '과일 샐러드'의 온갖 재료 - 배, 바나나 등 -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제 2절에서 설명했듯이 어떤 국가도 자신들의 샐러드를 같은 조리법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LIS 소득 분류화 체계는 더 많은 재료까지 가구 소득의 정의와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수립된다.

예컨대, 제 4차 LIS 데이터셋 (1994-1997 데이터셋)의 새로운 변수 정의에는 새로운 형태의 공적 이전 소득 - 예, 아동 지원, 육아 보조금, 장애인 간병 수당, 초기 LIS 소득 범주에 속해 있던 요소 (상세 연금 소득원 등)을 위한 별도의 범주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범주는 국가간 비교가 거의 불가능하다.

사과 하나만으로는 경제적 후생의 측정 수단이 될 수 없지만, 현재 데이터 유용성 상태를 보면, 구성 요소들을 너무나 광범위하게 배제시키고 있다. 우리는 국가간 '최소 공분모' 정의를 찾아 이를 더 광범위한 정의로 점증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일관된 시계열 데이터 생산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한 국가의 데이터셋에서 특정 소득구성요소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제 4.2에서 논의한 것처럼 아주 다양하다. 그런 성격의 소득을 '0' 혹은 무시 가능하다고 간주할 만큼 데이터 관련성이 없어서일 수도 있다. 이 경우 A 국가의 데이터셋에 특정 항목이 없다고 해서, 그 항목을 가진 B 국가와의 비교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ARS가 출판된 이후, 수많은 국내외 연구에서 "LIS-DPI" 정의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OECD에서는 ARS 가처분 소득 정의를 토대로 국가 통계청이 수립한 소득 및 빈곤에 대해 수많은 연구물을 내놓았다 (OECD 2000). 이와 유사하게 미주간개발은행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은 LIS 모델을 토대로, 자가소비를 위한 재화

생산에 역점을 둔 남미 데이터셋을 작성하였다 (e.g., Szekely 및 Hilgert 1999).

표 4.2에 수록된 가처분소득과 2장과 부속서 1에 정의된 가처분 소득의 주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총소득구성요소

- 고용조건 (“복리후생”)의 일부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
- 소유자 거주 주택의 귀속 소득 (귀속 임대료)

#### 소득공제 요소

- 가구간 정기적 현금 이전

또한 총소득 구성을 위해서는 고용주가 지원하는 사회보험 부담금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며 조정 가처분 소득에는 사회적 현물 이전 데이터가 필요하다. 표 4.1에 수록된 정의를 이런 요소까지 확대하여 포함시킨다면 좀 더 완벽한 소득 정의가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자산 소득 등의 비교에 사용되는 기존 데이터의 품질 향상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 4.4.4 더욱 완전한 소득 정의를 향해

캔버라 그룹은 더욱 공정하고 정확한 소득 분배 현황을 실용적이고 유용하게 나타내기 위해, 다음 네 가지 영역을 기본 범주로 정하였다.

- (a) 자산 소득, 개인사업 소득 및 자가생산
- (b) 소유자 거주 주택의 귀속 임대료
- (c) 사회적 현물 이전 (STIK) 또는 비현금 정부 급여
- (d) 자본 이득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는 아래 별도의 절에서 논의한다. 이 문제들은 Eurostat (Eurostat 1998, 2000a) 등에서 더욱 완벽하고 비교능력이 높은 소득 분배 논의를 위해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 4.4.4.1 자산 소득, 개인사업 소득 및 자가생산

이 세 항목은 표 4.1에 포함되어 있지만 기존 데이터 품질이 향상되어야만 완전성을 드높일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제 4.3절에서 논의했듯이, 자본소득과 개인사업 소득을 측정하기 위한 가구조사는 유용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자산 소득의 경우 응답자의 기억이 부정확하고, 표본이 풍부하지 않아 데이터의 품질이 떨어진다. 물론 대체 또는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초로 2차 정보원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들도 자체 오차를 가지고 있거나 실제로 수행된 가구조사 데이터를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고, 수집하기도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자가소비용으로 생산된 재화의 가치 혹은 자가소비를 위한 생산의 가치는 특히 개도국 경제체제에 상당히 중요하다. 자가생산의 데이터 생산 시 부딪히는 어려움은 9.2.3에서 다시 논의한다.

#### 4.4.4.2 소유자 거주 주택을 위한 순 귀속 임대료

귀속 임대료의 문제는 소득분배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먼저, 귀속 임대료는 수많은 국가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예컨대, 스페인의 경우 가구 중 86%가 자택소유자 (Eurostat 2000)인데 부유한 북유럽 국가의 경우 (독일 등) 자택 소유지 비율이 이보다 적은 50% 정도 이다. (Smeeding et al. 1993). 둘째, 주택 보유 (소유자 거주)를 통해 연간 소비 서비스 흐름이 발생하여 다른 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다. 셋째, 공영 주택도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임차인이 시장 임대료 이하의 임대료를 낸다면 비소유 단위 (non-owned units) 암묵적 임대 보증금이 존재한 셈이다. 이 세가지 형태의 귀속 임대료는 주택의 "공공 소유"가 흔한 국가에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문제는 귀속 임대료의 정확한 측정이 힘들다는 점이다. 이론상 귀속 임대료는 주택을 임대하는 데에 드는 비용 (경쟁시장에서)에서 자기가 소유하면서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 (혹은 시장가격 이하로 임대할 경우)의 차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계산하려면 총 임대 가격에서 세금, 감가상각비, 보수 및 수리비, 이자율, 재산세, 기타 주거비 등

소유주의 비용을 빼야 한다. 따라서 귀속 임대료를 정확히 계산하고, 시장 임대료를 추계하려면 주택 자체 (품질, 규모, 위치, 침실 수, 공간 등 모든 정보)의 모든 추가 정보를 알아야 한다. 또한 소유주의 실질 비용 (세금, 유지보수비, 광열비 등)도 계산해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한 Eurostat 1998 및 2000a의 논의 참조)

소유 주택에서의 순자산 수익률도 주택의 순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연간 순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를 소득에 포함시킨다면, 국제적 표준을 통해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가지 방법은 낮은 정부 이자율을 주택의 순자산가치로 곱하는 것이다 (Smeeding et al, 1993). 물론, 특정 대도시의 경우 (동경, 홍콩, 뉴욕 등) 지가가 지나치게 높아 거주자의 주택 서비스의 가치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방법은 “비교 가능한” 추계치를 내는데 도움을 주면서도 동시에 높은 귀속 임대료를 양산할 수도 있다. 예컨대 미국에 사는 자택 소유자이면서 (근저당 없음) 저소득 노인층은 소득의 30-40%를 재산세, 수리비, 광열비, 유지보수비 등의 주거비로 지출한다. (Johnson 및 Smeeding, 2000) 따라서 쉽지만 “비교 가능한” 방법으로 정확한 추계치를 내기 힘들다면, 더욱 복합적으로 순 시장 임대료를 (비용을 제외한)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할지도 모른다. (Smeeding, 1982)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산출하는 자산은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는 그 서비스 흐름의 시장 가치와 비슷할 것이다. 왜냐하면, 더욱 높은 수익이 난다면, 주택 소유자는 그 주택을 팔아 새 소유자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귀속 임대료를 시장 가격으로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지만,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되는 공영 주택 등의 사회적 현물 이전인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거시적 수준에서 국민계정에 순 귀속 임대료를 추계한다. 따라서 소득 미시데이터 생산자는 이 추계에 사용되는 방법론과 자료 출처 등을 조사하여 이를 미시적 수준의 추계치 생산에 활용할 것이다.

#### 4.4.4.3 사회적 현물 이전

조정 가처분 소득을 추계하려면 정부가 시민에게 제공하거나 (프랑스의 *école maternal*) 보조하는 조기 무상 교육 (유치원 혹은 프리스쿨) 등의 교육 및 의료보험 등의 서비스

한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 대부분의 정부에서는 이 외에도 많은 종류의 사회적 현물 보장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전 (前) 공무원에 대한 공공 교육 혜택 등 (미국 퇴역군인에 대한 교육 지원)이다. 의료보험은 보통 환급의 형태로 제공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저소득층에 사회적 현물 부조를 제공한다. 식품 (미국의 경우 식품 교환권)과 같은 준현금 형태나 주택 보조금 (영국, 스웨덴) 형태로 제공된다. (표 4.1. 참조) 이런 준현금 급여 이외의 사회부조 급여는 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난방 (냉방)비 보조금 및 식품 보조금을 시행하는 국가도 있다. 공영 주택, 빈곤층을 위한 무료 의료 서비스 (다른 계층의 보험료 납부로 가능함) 등도 좋은 사례인데, 이들은 수급자들이 거의 그 가치를 측정하기 힘든 형태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준현금 급여와 구별된다.

국가간 비교를 위해서는 소득에 STIK (사회적 현물 이전) 추계치를 가산해야 한다. STIK를 상대적으로 덜 제공하는 국가에서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광범위한 사회적 급여가 제공되는 국가보다 더 높은 소득을 벌어야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한 국가 내에서는 언제 STIK 급여가 소득층에 따라 불균등하게 분포하는가에 따라 비교 결과가 달라진다. 따라서 소득분배통계의 국제적 비교능력뿐 아니라 일반적 정확성이 향상되려면, 원칙적으로 비교의 관점에서 STIK의 추계치가 반드시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간 비교에서 또 하나의 주요 관심사는 일관된 급여 체제를 개발한 다음 이의 가치를 평가할 일관된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의료 체제나 교육 체제가 모두 유사한 것은 아니다. 아픈 이들이 보건 프로그램의 편익을 받는다는 이유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부유하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의 질은 국가 내에서도 매우 다양하다. 순수한 국가적 목적으로 종합적 현물 급여의 품질을 측정할 다음 화폐적으로 이들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국가간 비교의 관점에서 추계치를 만들어 내는 것도 더 문제가 많다. 이와 관련된 개념적 사안은 제 2장에서 이미 논의하였다.

모든 현물 급여의 가치를 평가할 때 관심을 두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수급자 - 특히 저소득 수급자-는 비현금 급여 대신 이보다 액수가 적더라도 현금 소득을 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론적으로는 이 급여를 시장 가치나 정부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

Hicks의 현금등가가치 (Hicksian cash equivalent value)를 사용하여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Smeeding 1997.) 그러나, 이를테면 기초 교육이나 의료보험과 같이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사비용을 들여 지출하는 행위는 거의 없기 때문에, 현물 급여의 가치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전통적으로 입법론자들은 수급자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지출할 수 있는 현금보다는, 특정 필수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선호했다. 여기서 수급자들은 현물 급여보다는, 그 비용이나 가치보다 더 낮을지라도 현금 소득과 교환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은 간과되었다. 한편 국민계정과 소득분배통계의 회계가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현물 급여의 가치는 정부에 대한 비용과 동일하게 된다. (물론 시장 비용이 건강보험과 같은 재화에 대한 정부 비용을 능가하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판매 및 마케팅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상당히 다른 개념일 수 있다.)

영국, 덴마크, 및 호주는 보건, 교육, 주택관련 정부 급여의 연관 효과와 가구소득세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이 급여는 전체 공공지출의 1/3을 차지하며 호주도 이와 비슷하다. 이들 급여에 대한 귀속 가치를 소득에 포함시켰을 때, 소득 불평등 개선에 주는 효과는 어마어마하다. 호주의 경우, 상위 20%의 소득 대 하위 20%의 소득 비율이 가처분 소득일 경우 5.5-5.7인데, 가처분소득에 현물 급여를 포함시켰을 때 3.0-3.5까지 낮아진다. 영국의 경우에도 그 수치는 4에서 1로 감소한다. (Harris, 1999) 따라서, 이러한 급여는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소득 분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덴마크, 호주, 영국에서는 6개국을 대상으로 한 초기 LIS 연구처럼 현물 혹은 사회적 급여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Smeeding et al, 1993) 일반적으로 자녀 (대규모의 귀속 교육비의 편익을 얻는)가 있는 가구와 은퇴 가구 (평균 건강 상태가 낮고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건서비스로부터 높은 귀속 급여를 받는 가구)는 청년 가구, 1인 가구, 무자녀 부부 가구가 낸 비용으로 편익을 얻는다. 보건과 교육과 같은 사회적 급여는 이들을 받는 집단에는 상대적으로 동등한 가치인 경우가 많고, 이들의 귀속 가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 성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 특히, 한부모, 자녀가 있는 저소득 대가족, 장애인 가족 및 저소득 노인층의 경우 가장 많은 편익을 얻는다.

이들 급여의 귀속 가치를 저소득 가구의 소득에 부가한다면, 수많은 가구가 현금 소득보다는 사회적 현물 이전 형태의 소득을 더 많이 받는 상황이 생긴다. 만일 이와 등가의 현금 (equivalent cash benefit)이 주어진다면, 완전히 다른 지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딜레마를 발생시킨다. 예컨대, 세 자녀를 둔 편모의 "총소득"은 3만 달러이고, 이는 1만 5천 달러어치의 교육비 보조, 5천 달러어치의 보건비 보조, 1만 달러의 현금 소득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3만 달러의 현금 가치분 소득을 버는 가구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금방 드러난다.

앞서 계속 논의한 대로, 이와 관련한 여러 방법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현물 이전을 가구소득에 부가하려 한다면, 한 소득의 미시데이터셋 내에서 개별 가구에 이를 귀속시키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어떤 한 가구나 다른 가구가 급여를 받는 경우, 소득 분배에서의 순위가 변하기 때문에, 동일한 가구 순위를 유지하면서 현금 가치분 소득별로 순위를 정한 다음 일정 "평균"의 사회적 현물 이전을 단순히 부가하는 방법으로는 순위를 정할 수 없다. 각 소득에 부가 혹은 치환을 하려 하면 순위 재설정이 필요하다. Smeeding (1997a)는 순위 재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 측정된 불평등이 약 25%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즉, 1972년, "총" 소득에 모든 급여가 포함되었지만 순위 재설정을 하지 않은 소득하위 오분위의 비중은 총소득의 8.0%를 차지했으나, 순위 재설정을 한 경우 총소득 비중이 6.0%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가구 균등화 지수 조정의 적합성도 다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있거나 없는 가구의 상대적 요구는, 소득에 교육비 보조금이 포함될 경우 상당히 달라질 수 있고, 의료보조금이 소득에 포함된 경우, 연령집단간 상대적 요구도 상당히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택 보조금의 가치는 4.4.4.2에서 설명한 귀속 임대료 환산 가치 방법과 일치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예컨대, 정부의 임대 보조금 비용은 귀속 임대료- 즉 공영 주택의 시장 가치와 임차인이 실제로 지불하는 임대료의 차이 -와 유사하게 측정할 수 있다 (Smeeding, 1982). 따라서 임차인에 시장 임대 가치를 할당하여 실제로 지불한 임대료와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STIK를 소득에 포함시켜 비교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실험을 한 후 방법론적 실용적 문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그 다음

수급자들에게 지급하는 현물 급여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합의한 모든 가이드라인과 공식을 이행해야 한다.

#### 4.4.4.4 자본 이득

표 4.1과 제 2장에 규명된 가처분 소득의 측정수단에서는 제외되었지만 경제적 후생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입이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소비자 부채에 부과되는 이자와 실현된 보유 이득으로서 전자는 소비 지출로 분류되고 후자는 메모 항목으로 분류된다.

미국에서 최근 발생한 자산 소유의 변화 및 불안정한 소비자 부채로 인해, 납입 이자 및 이자 수입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등지의 수많은 저소득 가구에서는 신용카드 이자 및 기타 소비자 부채가 자본소득을 초과하고 있어 부의 이자 소득 현상을 보이고 있다. (Lupton 및 Stafford 2000)

OECD 국가에서 계속 그 중요성이 커지는 가구의 경제적 자원 중 하나가 바로 실현된 보유 이득 혹은 자본 이득이다. 가구는 가치가 상승한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의식주 등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는 특히, 은퇴 후를 대비하여 경제활동 시기에 의도적으로 자산을 증가시킨 - 즉, 생애에 걸쳐 소득을 평준화한 - 노인층에서 많이 나타난다.

미실현 자본 이득을 처리하는 가장 일반적 방법은 이를 무시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산에 대해 소득을 귀속시킬 수 있다. 이 방식은 자원에 대해 미 실현되었지만 가용한 통제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더욱 정확하다고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구가 일상의 필수품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의 여부에 관심을 둔다면, 실현된 자본 손익만 계산하면 된다. 실현 자본 손익을 계산하면 적절한 물가 디플레이터를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배분되는 소득에 상당한 변화를 주는 한편, 자본 소득 신고 건수를 증가시키면서 위성 계정 (satellite account)를 통해 소득 지표에 실현 자본 손익을 포함시키는 데에 유용하게 될 것이다. 캔버라 그룹에 참여한 국가 중 스웨덴은 실현 자본 이득을 공식 소득 정의의 일부로 계상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스웨덴은 소득세 과세 대장에서 직접 자본 이득을 도출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기준 가격과 매도가격을 질문한다면, 응답자 부담, 고소득층의 과소 표집 문제 및 응답 거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자본 손익이 연간 소득 지표에 포함될 경우, 소득 불평등의 변화 형태는 불균질적으로, 순행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간 소득 불평등 비교치에서 더욱 불안정하고 순환적 민감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 제 5장

## 시기별 소득 분배의 비교

### 5.1 도입

경제학자와 사회정치 분석가들은 소득 분배의 장기적 추이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4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소득 분배의 추이를 분석하면 불평등과 성장, 세계의 소득 불평등 및 관련 문제 등의 관계 등, 장기적 분배 변화의 요인과 결과를 알 수 있다. 향후 이런 성격의 데이터는 더욱 많이 필요할 것이며 정부와 국제기구의 정책 논의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 분배에 대한 시계열 자료에 대한 수준 높은 표준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소득 분배에 관한 시계열 데이터의 작성과 분석에 대해 논의한다. 개념적으로 한 국가 내의 시기별 비교자료는 한 시점에서의 국가별 비교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일관성 요건이 똑같이 때문이다. 그러나 시기별 비교자료는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인해,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첫째, 일국 내의 시기별 비교자료는, 주로 동일한 생산자가 만들기 때문에 국가별 비교자료보다 더욱 일관된 정의와 일관된 소스 데이터에 토대를 둔다. 그 생산자는 데이터의 “창조자”로서 가장 광범위한 지식을 지닌 인물이다. 그러나 만일 생산자가 정의, 조사 실습 등을 바꾸거나,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비표집 오차 혹은 비확률 표집 등을 경험한다면, 이 가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하다. 사실, 발행된 시계열이 내부적으로는 일관성을 지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는 시간 주기가 길수록, 비확률적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많다. 따라서 중요한 과제는, 생산자와 사용자가 모두 이 문제를 잘 인식하고, 사용자는 가능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변화가 이행될 때 중복 관측 자료를 제공하고 시계열 변화에 대한 역사적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국가별 추이를 비교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중 (공간 및 시간적) 일관성 제약이 부과되기 때문에, 시간적 추이 비교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가별, 그리고 시기별 이중 국제적 절충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위협적이다. 처음부터, 완벽한 국제적 융합을 목표로 설정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수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제 6장에서 논의한 대로, 특정 유형의 가구가 시간에 따라 어떤 소득분포를 지니게 되는가에 대한 연구의 경우, 반복 횡단면 조사 자료보다는 종단면 패널자료가 훨씬 유용하다. 그러나 표본의 규모가 작을 수 있고, 탈락 편향으로 인해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종단면 패널자료가 시계열 추계치를 계산하는 데에 항상 최선의 방법인 것은 아니다. 패널자료는 성격상 기준연도에 표집된 대상자 집합을 따르기 때문에, 별도의 노력을 들이지 않는 한 그 기준연도를 넘어선 이민자나 해외 이주자를 배제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IS)는 에서 시점 비교국가 일관성 (point-in-time cross-national consistency)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여 왔다. 그러나 LIS의 절충 기법 및 다양한 시점에서의 국가 조사의 차이 때문에 시간에 따른 이중 일관성을 지니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우리는 실용적 관점에서 기존 국가의 시계열 자료를 통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한다. 여러 국가가 연속 시계열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경우에도, 이 시계열 자료에서 발견되는 방법론적, 정의적 차이를 고정효과 교정 (fixed-effects correction)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장의 주요 대상은 통계학자 및 연구자이며 다음과 같이 세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 **시계열 데이터 창조자 (생산자)** 세계은행 및 조사 데이터를 수집하는 국제기구를 비롯, 1차 자료 (설문조사, 행정자료, 납세기록 등)로부터 국가계정 추계치를 수집, 처리하는 통계국 (NSO) 및 기타 조사기관.
- **2차 시계열 데이터 생산자.** 다기간 혹은 다국가 데이터베이스 작성을 위해 발행이거나 계산된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고, 시기별 (또는 국가별) 비교자료를 생산하는 기관. 여기에는 Tabatabai (1996), Deininger 및 Squire (1998), WIDER

(1999) 등이 있다. 이들 데이터는 강점과 약점을 완벽히 논의한 후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시계열 데이터 사용자: 이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고, 그를 토대로 시기별, 국가별 비교치를 추계할 수 있는 연구자 및 정책 입안자. 이들은 최고의 시계열 데이터셋을 규명, 활용하고, 내재된 편향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모형 상세화와 계량경제학적 추계를 위해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장의 목적은 향후 더욱 향상된 시계열 자료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 5.2는 중대한 측정 오차의 원인을 규명할 것이다. 5.2절에서 5.5절까지는 데이터 생산자, 2차 데이터 시리즈 생산자 (다른 이들이 사용할 중간 생산물을 제공하는 생산자), 그리고 추세 데이터의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권고를 담고 있다.

## 5.2 측정 오차의 영향

측정 오차는 모든 소득분배연구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든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하든 측정 오차는 늘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제 4장에서 이미 분석하였다. 이 절에서 다루고자 하는 질문은, 측정 오차로 인한 편향이 기간간 연구 (inter-temporal studies)에서 더욱 악화되느냐의 여부이다.

측정 오차는 연도별 차이 (difference across years)에 의해 감소 가능하고 그에 따라 신호 대 잡음비는 증가할 수 있다. 기간간 비교에 영향을 주는 측정 오차와 그렇지 않은 측정 오차간 구분은 측정 오차의 영향을 최소화한다기보다는 오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기간간 연구의 핵심 용어인 측정 오차는 소득 분배계층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달라진다. 예컨대, 소득의 과소 신고 건수가 소득상위계층보다 하위 계층에서 더 크게 발생하며, 그 차이의 정도가 연도별로 다르다면, 2년간 변화된 불평등 수치는 편향될 수 있다. 그러나 과소 신고 건수가 시기별로 다르지 않다면 상대소득 분배의 시계열 비교에 어떤 편향도 나타나지 않는다.

국가간 추세의 비교 결과도, 국가간 비교에는 공통된 영향을 주면서 소득 분배계층간에는 차별화된 영향을 주는 시간 특정적 오차, 그리고 소득 분배계층간 차별화된 영향을 주면서 시간과 국가 특정적인 오차에 의해 편향될 것이다. 그러나 시기별, 국가별로 다르지만 소득 분배계층에는 공통된 영향을 주는 측정 오차는 국가간 추세의 차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기간간 차이 (inter-temporal differences)는 잡음의 절대적 수준을 감소시키지만 신호 대 잡음비에 주는 영향은 모호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측정 오차는 국내외적으로 기간간 불평등 비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측정 오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소득분포에서의 순위에서 독립적인 측정 오차는 단일 국가의 불평등 수준이나 추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국가별 비교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컨대, 조사 데이터에서 누락된 시설 거주민이 소득 분배계층 전반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면, 그 누락은 소득 분배의 추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연도별로 변화가 없는 측정 오차는 기간간 비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매년 수행되는 소득 분배 측정에는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연도별로 변화가 없는, 소득 상위계층의 자산 소득 과소 신고는 매년 편향된 측정치를 양산하지만, 이 때문에 연도별 비교 결과가 편향되는 것은 아니다.
- 소득 산포 추세의 국가간 비교결과는 시간에 불변한 측정 오차, 혹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만 국가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측정 오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소득 비교 시 국내, 국가간, 시기별 데이터의 상대적 오차 구조라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편향이 일정하다면 오차는 감소할 수 있다. 제 4장에서 강조했듯이, 1차 및 2차 데이터 생산자 모두는 이런 오차와 그 영향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데이터의 최종 사용자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 5.3 데이터 창조자와 관련된 문제

각국의 통계청과 공공기관에서는 소득 분배의 시계열 추계치 또는 시계열 구성의 토대가 되는 연간 추계치를 매년 작성, 발표해 왔고 때로는 미시데이터를 발행해 왔다. 그러나 이들 자료가 상대적으로 효용성이 없거나 데이터 생산기관 외부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자료 및 관련 증빙 문서를 광범위하게 배포하여 대중들에게 소득 분배와 경제적 후생에 대한 사안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동료 집단이 서로 검토할 수 있어, 향후 향상된 추계치를 생산해 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복합적인 통계 시계열이 그러하듯이, 소득 분배 시계열을 배포하고 통계 자산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용자들은 통계를 정확히 해석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메타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소득분배통계뿐 아니라 기타 통계자료에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원칙이다.

제 8장은 조사 실습, 측정 기법, 데이터 품질 (표집 및 비표집 오차, 대체, 시뮬레이션 등), 소득 지표, 불평등 수치, 데이터의 상위 코딩 또는 하위 코딩 등의 문서화를 위한 로버스트성 평가 보고서 (Robustness Assessment Reports: RAR's)의 일반적 요건을 설명했다. RAR's의 생산 - 그리고 사용자들의 연구-은 데이터 비교능력의 정확한 평가를 위한 첫걸음이다. 추세 분석을 위해서는 새로운 추계치가 발표될 때마다 이를 기록, 문서화해야 한다.

데이터 창조자는 특히 신중을 기해서 시계열 비교의 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를 포착해야 한다. 조사 실습도 바뀔 수 있으며 (예컨대, 컴퓨터 지원 면접 도입 등), 더 광범위한 소득구성요소를 포착하기 위해 설문을 확대하거나, 응답률 저조를 막기 위해 설문을 축소할 수도 있다. 통계의 기초로 완전히 다른 조사 자료를 채택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변화는 생산된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한 것이지만 기간간 비교능력을 수축시키는, 달갑지 않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 창조자는 그 부작용의 영향을 추계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오버래핑 시리즈를 사용해서 해서 오랜 기간 일관된 시계열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5.4 2차 데이터 생산자와 관련된 문제

“2차” 데이터셋 - 다양한 출처로부터 도출한 소득 분배의 요약 지표 집합 - 의 생산자가 직면하는 첫 번째 문제는 추계치의 채택 혹은 거부를 위한 내부 표준을 수립하는 일이다. 표준 선정 시에는 정의와 품질의 일관성에 토대를 두어야 하며, 어떤 추계치가 더 광범위한 국가나 연도를 포함하거나 확장한다고 해서 그 추계치를 포함시키는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 예컨대, Deninger과 Squire (1996) 데이터셋에 포함시킬 통계자료를 선정할 때, 가구 지출 혹은 소득에 관한 설문 조사에서 도출되어야 하고, 그 가구가 전체 인구를 대표해야 하고, 자가소비를 위한 재화 생산을 비롯, 모든 소득이나 지출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1차 데이터 생산자와 마찬가지로, 2차 데이터셋을 조립하는 연구자나 기관의 주요 임무는 포함된 모든 추계치의 원천과 성격을 선정 기준과 1차 데이터 생산자가 활용한 정보에 따라 문서화하는 일이다.

2차 데이터셋의 역할은 “기존에 작성된” 소득분배통계의 범위를 넓히고 그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여러 형태를 띌 수 있는데, 2차 데이터 소스에 수록된 “기존에 작성된” 소득분배통계의 다양한 출처를 계속 인식하는 것이 좋다. 기억하는 것이 좋다.

- 개별 국민 미시데이터셋으로부터 계산. “원 (orginal)” 데이터셋과 “공용” 데이터셋간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다.
- LIS와 같이 절충된 미시데이터셋으로부터 계산. 이들도 마찬가지로 소스 데이터와 다를 수 있다.
- 국가적으로 발행되거나 (공급된) 도표로부터 계산. 여기서는 국가통계가 여러 수준의 내용을 지닐 수도 있고 (예, 통계연감 (Statistical Yearbook)의 경우 전문화된 소득 분배 간행물보다는 내용이 상세하지 않을 수 있다.) 발행된 자료가 대안적 형식으로 수정되거나 발행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양한 정의에 따라)
- 또 다른 2차 데이터셋 내 도표로부터 계산
- 국가통계가 간행 (공급)한 요약통계
- 또 다른 2차 데이터셋 생산자 혹은 다른 분석가의 간행물로부터 직접 입수한 요약통계

위 모든 경우에서, '미가공' 데이터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대한 결정을 수행해야 한다. 예컨대, 상위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또는 분포의 양 끝단에 보통 집중되어 있는 잡음을 줄인다는 연구자의 결정 중에, 상위 코딩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바꾸게 되면 결과의 비교가능성도 상당히 바뀌게 될 수 있다. 소득하위계층에서는 0의 소득 혹은 부의 소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들은 하위 코딩처리를 하거나, 0으로 설정하거나 작은 양수 (+)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누락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문서화해야 한다.

두 번째로, 1차 자료에서 도출된 원본 데이터가 그룹 형태로만 존재할 경우, 분위수 비중과 불평등 지수를 추계하는 절차에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어떤 미시데이터셋에서 각 가구의 가처분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 로렌츠 곡선 (정의에 대해서는 7장 참조)를 적용하려 하면 오차가 생기거나, 아니면 완전한 데이터셋이 있을 경우 입수 가능했던 결과와 상당히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2차 데이터셋에 다시 계산된 시리즈와 원래 통계를 함께 포함시키는 것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들면서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와 동일하게, (계층분포 내부에 대한 다양한 추정으로 입수한) 그룹 데이터의 상단 및 하단 경계를 미리 계산하고 포함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처리에 적용되는 절차는 완전히 문서화되어 사용자에게 가능한 넓은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또한 보간법 또는 0의 소득 처리법 등과 관련한 선택은 채택된 통계정책 내에, 또는 그 계산에 적용된 공식 내에 이미 존재할 수 있어서,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소득분배통계 분야에서는, 2차 데이터셋 창조와 관련해 오래도록 수행되어 온 전통이 있다.

- 통합. 원칙적으로 동일 국가와 동일 시간에 대한 관측은 정의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가구 가중치 대 개인 가중치), 또는 계산법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다중 관측이 허용된다. 만일 명백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원인 규명을 위해 원시 자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다중 관측해야 한다. 이 때 데이터 창조자는 다중관측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과거의 활용 사례에 비추어, 초기 2차 데이터셋에 수록된 수치를 그대로 기록해 보면 비교연구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매모항목*에 속해야 하는 항목이다.

- 포괄성. 다른 2차 자료를 사용할 때, 이 자료는 포괄적 범위를 지녀야 한다. 미리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관측은 제외시키는 것이 편리할 수 있으나, 적절한 유의사항과 함께 포함시키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다.
- 완벽한 문서화. 소스 데이터의 정확한 출처와 번호, 모든 종류의 조정에 대한 설명을 기입하여 데이터셋의 관측을 재생산하고, 계통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복제. 2차 데이터셋은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 생산자는 이들을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갱신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셋을 다양하게 여러 번 배포하고, 모든 버전을 보존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차 데이터셋의 생산자들은 매우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이들은 “원시” 데이터셋에서 발견된 모든 이론적 (제 2장과 3장), 실제적 (제 4장) 편향을 극복해야 하고, 모든 자료가 시기별로, 국가별로 비교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제는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다. 그리고 모든 상세 자료를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보존해 놓아야 한다.

## 5.5 최종 사용자와 관련된 문제

이 절에서는 사용자와 추세 데이터 발표자 - 연구자, 사회 통계학자, 정책 분석가 등 - 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한다.

### 5.5.1 추세 인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2시점 추세: 비교 가능한 가구소득 미시데이터는 2기간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경우 사용자는 2 기간간 변화를 추계할 수 있지만, 주요 추세를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많다. 즉, 장기간 추세를 추정할 때에 너무 적은 연도만을 (2년 이하) 취할 경우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 경기순환 효과: 불평등에서의 순환적 변동 때문에, 국가마다 경기순환 기간이 다를 경우, 자의적 기간 (1980년-1995년 등)을 토대로 한 추세의 비교연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만일 불평등 추세가 경기 순환적이라면 (미국 등지) - 경기 고점(연도)에서 저점(연도)까지의 추세 추계치는 하향 편향되고 저점에서 고점까지의 추세 추계치는 상향편향을 보인다. 불평등 추세가 경기 역행적이라면 반대 상황이 발생한다. 고점-고점 혹은 저점-저점의 추세를 비교하면 최소 편향 추계치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계열 추계치가 필요하다. (Burkhauser, Crews, and Jenkins 1998)
- 데이터셋과 정의의 혼합: 여러 소득 정의와 시간별 다양한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유일한 '시계열' 자료를 구축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단일 추세 형성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셋을 마구잡이로 섞는 것은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추세는 "실질" 불평등 변화와 데이터셋간 차이 모두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위 세 가지 문제는 그림 5.1에 잘 나타나 있다. X국의 경우 1980년과 1990년 (동일한 조사 자료에서 도출), 1993년 (또 다른 조사 자료에서 도출)의 세 가지 데이터 시점이 있다. 그림에서 곡선은 경기순환을 보여준다. 1980과 1990년 데이터는 불평등의 하향추세를 보여주지만 세 번째 데이터 시점이 추가되면, 불평등은 증가하고 세 시점을 모두 고려했을 때의 "추세" 선은 완만한 상향을 보여준다. "참 추세"선과 "실제" 곡선의 불평등 추세선은 모두 가설적으로 설정된 것이지만, 고점-고점 또는 저점-저점 선이 세 데이터셋 모두에서 관측된 추세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그림 5.1 X국의 불평등: 세 개의 함정

- (a) 2시점 추세 추계치의 위험성
- (b) 고정-고점; 저점-저점
- (c) 데이터셋의 혼합시

X축: 시간

Y축: 불평등

"False Trend": 거짓 추세

"True Trend": 참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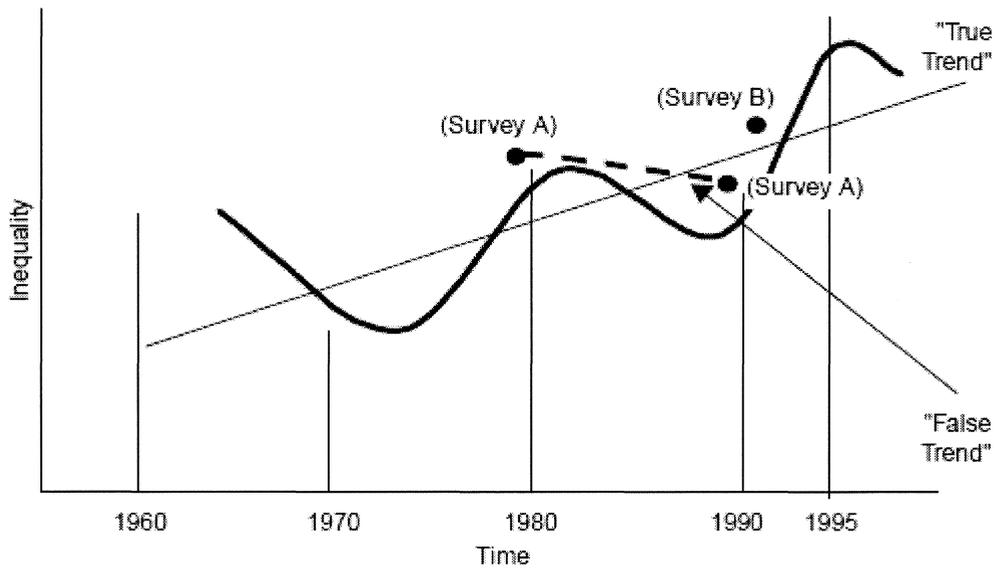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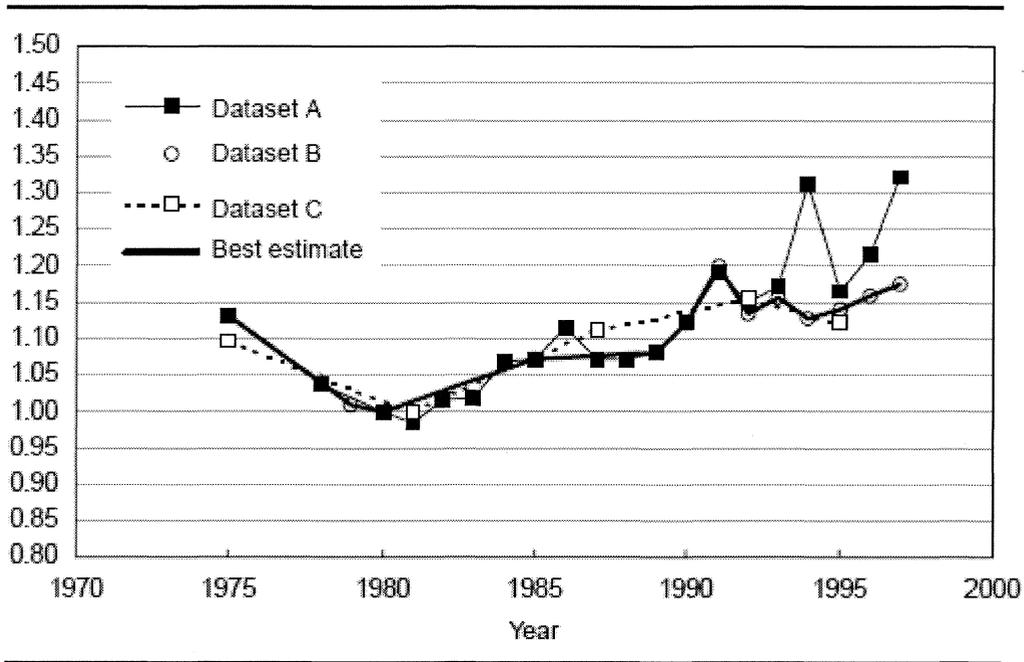


그림 5.2는 소득 정의와 기준 단위가 시기별로, 데이터셋 별로 달라졌을 때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동일한 국가에 대해 세 개의 데이터셋이 사용되었다. 데이터셋 C는 1980년 이후 불평등이 점차 증가되었음을 보여주고, 1991년-1995년 사이에는 점차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이 데이터셋은 다른 이와 함께 사는 젊은 성인이 가구 내에서 규모의 경제를 공유한다는 사실을 무시함으로써, 어떤 시점에서라도 불평등을 상향으로 편향시키고 있다. 생활 실태나 젊은 성인의 수가 당해 기간 동안 급격히 변하지 않는 한, 불평등의 추세 추계치를 편향시켜서는 안 된다.

그림 5.2 소득 불평등 추세: Y국의 지니계수



데이터셋 A에 사용된 소득정의에는 실현 자본 이득 (그림에서 제일 위의 선)이 포함된다. 자본 이득은 경기순환 및 세법 모두에 민감하다. 1990년에는 세법의 변화로 지니계수가 갑자기 상향 이동하였다. 이러한 이동은, 일회성 “고정 효과”와 새로운 추세를 하향 이동시켜 1990년대의 추세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그림 5.2에서는 “극복된” 시계열의 불연속을 낳았다. 따라서 1990-1997년 추세는 1990년의 1990년 이전선과 연결된다. (가처분 소득 정의에 자본 이득을 배제시켰기 때문에 데이터셋 C의 정의(점선)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데이터셋 B (그림 5.2에서 중앙선)의 추세선은 자본 이득을 제외했다는 점만 제외하면, 계속 동일한 조세 단위 정의를 유지하고 있다. 데이터셋 A와 B를 사용한 추계치는 여전히 불평등의 상향 추세를 보여준다. 그러나 자본이득을 포함한 경우 (최고선)에는 포함하지 않았을 때보다 (중앙선) 불평등이 더욱 급격히 증가하고 불규칙적으로 변해간다. 따라서, 다중 추계치를 선정했을 때의 추세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어떤 소득 정의와 데이터 시리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불평등이 완만하게 증가하기도 하고 급격히 증가하기도 한다.

만일 다양한 시계열 자료에 대한 지식을 작고 있다면, 이 다양한 추계치를 보간하여 “깨끗한” 단일한 시계열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림 5.2의 굵은 선 참조).

이 이런 시계열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득의 취급, 시작점과 종결점, 단위의 선정 등과 관련한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대안적 추계치나 시계열을 사용자와 독자에게 내보일 수 있는 연구자가 수행하는 것이 좋다.

그림 5.3은 또 다른 사례를 보여준다. 1980년대 - 1990년대 중반까지 소득 불평등의 변화는 조사 I 또는 조사 II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조사 II은 불평등 악화의 경향, 조사 I는 그 반대의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 차이는 단기간의 변화, 그리고 장기간의 전반적 변화에서 모두 포착된다.

조사 I에서 도출된 세 수치 중 시계열 C는 시계열 A와 B와 유사하지만, 1990년대에는 불평등이 더 증가하였다.

그림 5.3 소득 불평등 추세: Z국의 지니계수 (19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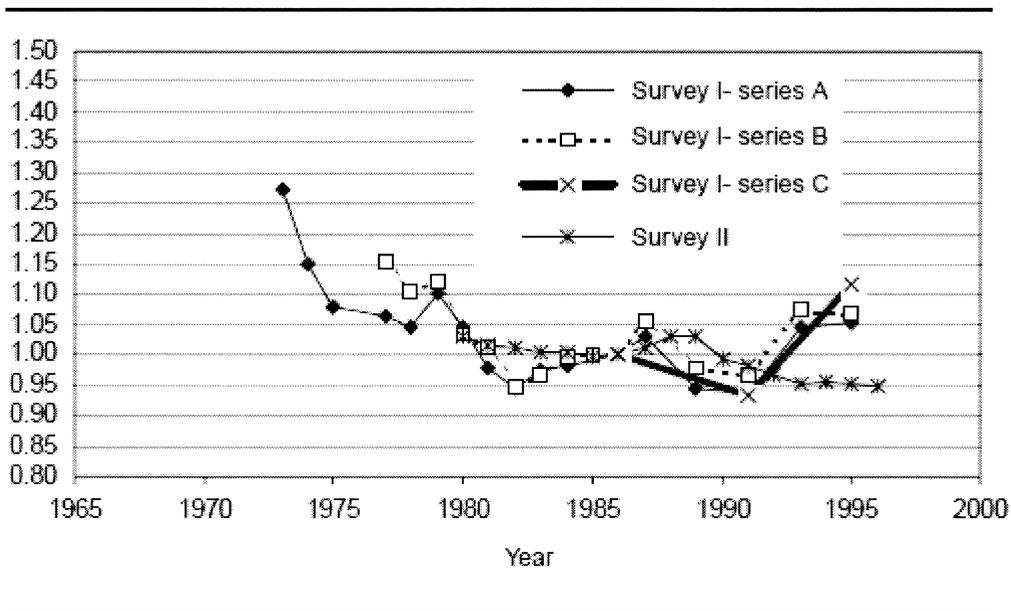


그림 5.3은 매우 혼란 상황을 보여준다. 한 국가에 대해 여러 다른 소득 분배 데이터셋 - 납세기록, 횡단면적 가구소득조사, 종단면적 소득조사 등 각기 자체 편향을 지닌 데이터 - 에서 도출된 것으로 모두 추세를 비교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대안적 시계열 추계치를 비교할 경우, 서로를 강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쨌든, 분석가들은 모든 입증 자료를 사용하여 어떤 시계열, 시계열 집합 혹은 시계열 조합이 가장 신뢰성 있는 추계치를 양산하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 변화의 유의성

소득산포를 측정할 때 시간에 따른 변화의 유의성 판단을 위한 일반적 통계표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문헌에서는 “지니계수에서의 1.0 포인트 변화” (Atkinson et al, 1995, p. 39), 또는 얼마간의 고정 변화 (“5-10% 포인트 변화” OECD, 2000, 또는 “3-7% 포인트 변화”Gottschalk 및 Smeeding, 2000; Smeeding, 2000)” 등과 같이 명확한 표준을 제시한 적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공식 테스트를 거치거나 추계된 요약통계의 표준오차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추계치는 데이터셋 제공자나 미가공 데이터 자체에서 얻은 정보에서 나왔을 뿐이다. 미가공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 저자들은 자체 표준에 의지하거나 데이터 제공자가 만든 표준에 의지해야 한다.

물론, 통계적 유의성이 시기별 소득 분배변화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척도는 아니다. 최종 사용자는 관측된 변화의 정책적 유의성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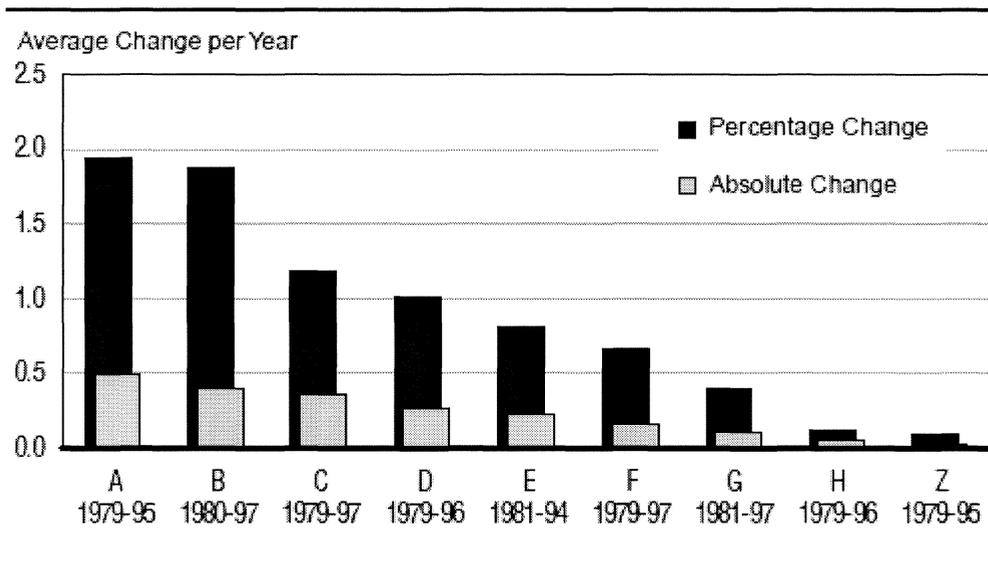
### 5.5.3 추세 vs 에피소드

소득 분배의 기간간 변화 분석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는 “추세”와 “에피소드”의 비교 문제이다. 이제까지 “추세”는 “평균”적 장기 변화에 대한 직관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소득 산포가 갑작스러운 상승과 함께 작고 불규칙적 변화를 번갈아 보이는 경우, 단일한 장기 추세를 탐색하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다. 대신 불평등성이 감소하거나 증가할 때 “에피소드”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Atkinson, 2000) 소득 불평등의 장기간 움직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분석 연구가 적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세가 아닌 에피소드의 진행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다. 하지만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첫째, 추세에 대한 결론은 시작점과 종결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예로, 그림 5.2에서는 1980년까지 불평등이 감소하다가 이후 증가하고, 1990년대보다는 1980년대에 더욱 빨리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준다. 따라서 1975년에 시작된 Y국의 불평등 시계열은 1980년이나 1990년에 시작된 패턴하고는 아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불평등의 장기적 이동은 이렇게 데이터의 시계열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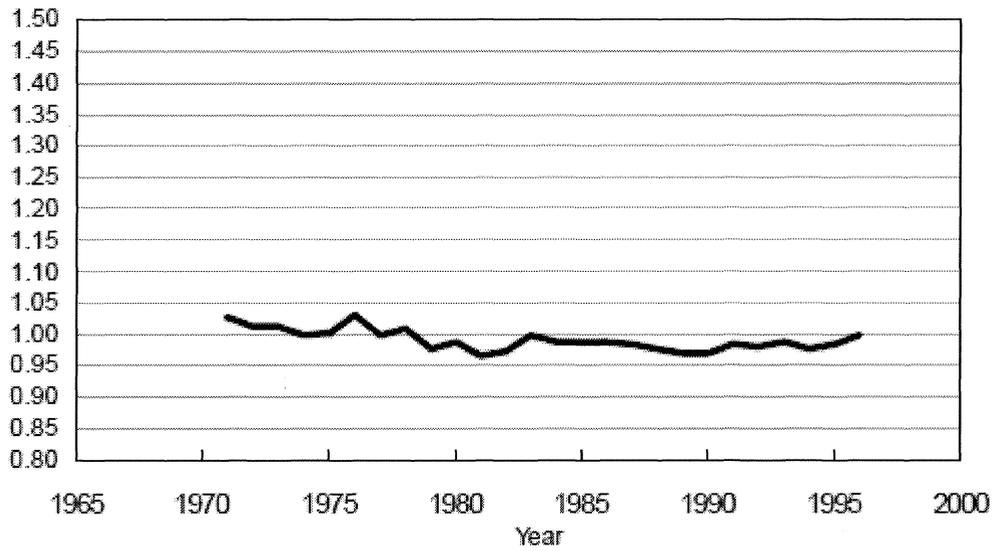
둘째, 겉으로는 동일하게 보이는 국가별 추세는 단기간의 다양한 변화 패턴을 감출 수 있다. 예로 그림 5.4의 “요약 막대그래프”를 보자. 이는 각국 지니계수의 연간 백분율 변화를 계산하고 (시작연도에서 종결연도까지), 연도별 절대적 변화 (시작연도에서 종결연도까지)를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방법은 서로 다른 길이 시계열에 기반한 (어떤 국가는 긴 시계열이고 다른 국가는 짧은 시계열인 경우) 비교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백분율 포인트의 변화 (절대 변화)와 백분율의 변화 (상대 변화)를 비교할 수도 있다. 어떤 시점에서건 국가간 2에서 1 정도의 인수만큼 기초 지니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는 매우 달라진다.

그림 5.4 소득 불평등 추세 (지니계수)  
연간 백분율 변화 및 절대 변화: 1979-97



이 방법의 단점은, 불평등이 처음 감소한 다음 증가하는 변화기간 동안 막대그래프의 변동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Z국 (1979-1995) 및 H국 (1979-1996)의 불평등 변화는 매우 작지만 유사한 모습이다. 사실, H국은 1969년부터 아주 약간의 변화를 보여왔다. (그림 5.5). 반대로 Z국의 불평등은 1979년에서 1995년 사이 극심한 변동을 보였고 하나의 요약 추세선 내에서는 불평등의 뚜렷한 증감 에피소드가 사라지고 있다. (그림 5.3) 따라서 불평등 추세와 에피소드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백분율 변화를 평가하면서 변화의 실제 패턴을 나타내기도 해야 한다. 또한 복합적 시계열을 U자형이나 역 U자형의 단일 시계열로 환원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작점과 종결점 사이의 차이는 그 추세가 존재할 경우에만 유의미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그림 5.5. 소득 불평등 추세: H국의 지니계수 (1983=1)



1차 및 2차 소득분배통계 생산자는 사용자들이 시계열 데이터와 메타데이터의 유용성 증진을 요구하고 있음을 잘 인식해야 한다.

# 제 6장

## 소득 동태성

### 6.1 도입

대부분의 소득 연구와 정책 분석에서는 횡단면 데이터가 널리 사용되는 반면 종단면 데이터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종단면 조사가 복잡하고 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단면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다. 횡단면 데이터는 특정 시점에서 소득의 “순 효과” 및 “순 변화”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려주지만 종단면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이 경험한 변화를 탐구하는 데에 유용하다. 또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간 잠재적 관계를 탐구하거나 공공정책 개발을 이끄는 데에는 종단면 데이터의 분석력이 더 뛰어나다. 이 장에서는 종단면 데이터의 상대적 장점과 단점, 이의 활용 및 정책적 함의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제 1절은 횡단면 데이터에 비해 종단면 데이터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고, 종단면 조사의 예를 제시하고 종단면 조사가 적합한 연구 분야 등을 제시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종단면 패널과 관련된 복합적이고 기술적인 방법론적 문제를 탐구하는 것은 아니다. 추계 (종단면 가중치의 설계) 및 표본 탈락 (attrition)에 대한 조정과 같은 사안들은 다른 문헌에서 자세히 정리되었다. 이 절은 가구소득 분배 측정을 위한 종단면 접근법으로 활용 가능한 분석에 중점을 둔다.

### 6.2 종단면 조사의 상대적 장점과 단점

개인 수준에서 발생하는 변화의 측정은 종단면 데이터의 중요한 특징이다. 한 개인의 생애역사에 관련된 과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시기별로, 그리고 더욱 확대된 시간 동안 발생한 핵심 전이점의 데이터를 동일한 개인 집단으로부터 수집해야 한다. 반복된 사건에 대해 수집된 횡단면 데이터는 그 인구층이 겪은 사회적 변화의 효과, 즉

“순효과”를 관찰할 수 있지만, 종단면 데이터는 그 인구 내 개인의 변화 - “총효과”를 관찰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종단면 소득 연구를 통해 인생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 수 있으며, 그 사건의 장기적 영향을 유추하고 결론지을 수 있다. 물론 횡단면 데이터도 그 인구층을 대표하는 표본을 제공하지만, 소득이나 가족 특성의 변동, 개인적 혹은 미시적 수준의 생애주기에서 어떤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가 등에 대한 정보를 코호트 기준에서 포착하지는 못한다.

예컨대, 어릴 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유는 부모의 낮은 열망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횡단면 조사는 부모의 열망과 자녀의 교육수준간 상관관계만 보여줄 뿐, 그 원인이나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종단면 데이터는 자녀의 교육 수준과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대해 좀 더 광범위한 통찰을 제시해 준다.

그러나 종단면 연구는 데이터 수집의 비용 및 복잡성에 비추어 평가해야 한다. 이중 가장 심각한 것이 시간에 따른 표본의 손실인 표본 ‘탈락 (attrition)’과 관련된 데이터 품질 문제이다. 연구의 주체는 이사를 가거나 (결혼 등을 통해) 성을 바꾸거나 더 이상 연구 참여에 관심이 없어서 사라질 수도 있으며, 다른 이들이 연구에 새로 참여할 수도 있다기 때문에 연구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 표본의 손실은 데이터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단위 (사람 혹은 가구)의 수를 감소시키는데, 이는 종단면 분석에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완벽히 기록을 해 두어야 한다.

표본 탈락 (attrition)도 자료 편향의 한 원인이 된다. 연구를 떠난 사람들이 연구를 시작한 당사자가 아니라면, 종단면 데이터는 그만큼 편향되기가 쉽다. 반면, 횡단면 데이터와 달리 종단면 데이터는 연구가 시작되었을 때 표본의 특징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탈락으로 인해 집단별로 각기 다르게 표본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표본에 다시 가중치를 부여하여 그 변수의 핵심 분포를 재구성할 수 있고, 가중치에 의해 어느 정도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종단면 패널이 정기적으로 보완되지 않는 한, 전체 인구에 대한 대표성도 점차 감소하여, 예컨대, 표본 내에 이민자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가 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외적 변동 요인과 관련된 데이터 품질 문제가 존재한다. 종단면 데이터가 수록하는 개인의 외적 변동 요인은 연령, 기간 및 코호트 효과이다. 이 세 가지 요인은 이상적으로는 연구 설계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 종단면 연구에서 특정 시점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개인 연령 (연령 효과), 그 개인이 태어난 시간 (코호트 효과), 데이터가 수집된 기간 (기간 효과 혹은 장기적 효과)일 수 있다. 코호트 효과의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점에 태어났지만 동일 연령의 개인들 (코호트)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연령 효과를 평가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다른 연령의 개인들로부터 같은 기간에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기간 효과를 평가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동일 연령의 개인들로부터 다른 기간에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종단면 조사가 횡단면적 조사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종단면 조사 수행의 비용도 훨씬 높다. 종단면 조사를 대규모로, 장기간 진행할 경우, 연구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상당히 높아진다. 웨이브 사이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야 하기에 문제가 된다. 이런 이유로, 효과적인 종단면 연구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보장할 수 있는 탄탄한 재무구조의 인프라가 필요하다.

종단면 데이터는 수집과 분석이 복잡하고 어려울 뿐 아니라 사용자 친화적이지도 못하다. 각 데이터 웨이브는 각 표본 단위에 또 다른 차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데이터의 종단면 연결은 처리 및 해석에서 엄청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대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이런 문제점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 **6.3 종단면 소득 조사: 국제적 사례**

아래에는 다양한 국가들이 최근 수행한 종단면 소득 조사의 사례 - 노동 및 소득 동태성에 관한 캐나다 연구 (Canadian 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 미국의 소득 동태성에 관한 패널 연구, 소득조사 및 프로그램 참여, 유럽 공동체 가구 패널 조사 등 -를 제시하였다. 각 조사에서는 여러 복잡한 사회경제적 관계를 탐구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변수를 측정하였다. 위 사례 외에도 상대적으로 견고한 종단면 조사로는 독일의 사회경제 패널 조사, 영국의 가구 패널 조사, 미국의 노동시장 경험의 종단면 조사 등이 있다.

### 6.3.1 노동 및 소득 동태성 조사 (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

노동 및 소득 동태성 조사 (SLID)는 캐나다 통계청이 수행하는 여러 종단면 가구조사 프로젝트 중 하나로서,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경험, 수준, 소득원, 가족 생활의 변화 등을 추적하기 위해 설계된 다목적 조사이다. 표본은 중복 패널 (overlapping panels)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패널은 6년 동안 지속된다. 각 패널은 1만 5천 가구부터 조사를 시작하였다. 지속적으로 모든 가구 구성원을 조사하였고, 새롭게 합류한 가구 구성원도 함께 조사하였다. 16세 이상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1월 결혼력, 출산력, 근무 경험, 교육 수준 등의 광범위한 역사적 정보 외에도 전년도까지의 노동시장 활동에 대해 면접을 한다. 상세 소득정보는 납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면접을 통한 응답을 선호하지 않을 경우, 납세기록을 통해 수집한다. 소득 면접은 5월에 실시한다. SLID의 패널은 1993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1999년에 종료되었다. (3차 패널 출범)

SLID의 주 연구 영역은 고용 및 실업 동태성에서 생애주기와 연결된 노동시장의 전이, 직업의 질적 수준, 직장 내 불평등 문제, 가족의 경제적 이동성 (소득 수준의 이동), 저소득 동태성 (빈곤층 진입 혹은 탈피), 근로와 교육의 관계까지 실로 광범위하다. SLID는 보통의 가족이나 개인이 시간에 흐름에 따라 겪는 소득 변동에 관해 자료를 제공하는 최초의 가구조사이며, 캐나다 저소득층의 성격과 그 수준에 대해 중요한 통찰력을 제시한다.

### 6.3.2 소득 동태성에 관한 패널 연구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1968년에 시작된 소득 동태성에 관한 패널 연구 (PSID)는 미국에 사는 개인 (남성, 여성, 아동)과 이들이 사는 가족 단위의 대표 표본을 종단면으로 연구한다. 주된 연구 내용은 경제 및 인구학적 행위의 동태적 측면이지만, 그 내용은 사회학적, 심리학적 영역까지 광범위하다. 탈락율이 낮고, 가족과 함께 사는 청년들의 높은 응답률로 인해, 표본 규모는 1968년 4,800개의 가족에서 1999년에는 6,434개로 증가하였다. 1997년 현재 PSID는 6만 명 이상의 개인에 대한 정보를 갖추고 있으며, 2년마다 원가족과 그 변화에 대한 정보도 조사한다.

### 6.3.3 소득 및 프로그램 참여 조사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제 2차 미국에서 수행한 대규모 종단면 조사는 소득 및 프로그램 참여 조사(SIPP)로서 이는 미국의 가구와 개인의 경제적 상황 분석을 위해 유용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 제공하는 정보는 소득 수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 소득 수준의 변화, 국민의 후생,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인구 사회학적 성격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특히 SIPP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연방 이전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프로그램 비용과 효과를 추계하고 프로그램 규정과 수혜 수준에 대해 제안된 변화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조세 개혁, 사회보장 프로그램 비용, 국민 건강 보험 등과 같은 기타 중요한 국가적 사안들에 대한 분석도 이 조사에서 도출된 정보를 토대로 확대 혹은 구체화될 수 있다. 1983년에 시작된 이 조사는 3년 동안 4개월마다 3만 7천 가구를 대상으로 수행된다.

### 6.3.4 유럽 공동체 가구 패널 조사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Survey)

유럽 공동체 가구 패널 조사 (ECHP)의 목표는 EU의 소득, 생활 조건, 주거, 보건 및 근로에 대한 데이터 (개인/가구)를 비교 가능한 미시적 수준에서 수집하는 것이다. 아직 기존 패널을 이용하는 국가도 일부 있지만, 유럽 공동체 가구 패널 조사는 완전히 새로운 유럽식 조사이며, 가장 엄밀히 조정된 EU 사회 조사 체제 중 하나이다. 이 조사는 1994년부터 매년 동일한 가구와 개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는데, 1995년에는 6만 가구 이상을 조사 하였고, 조사 내용은 근로 소득, 개인 소득, 소득 분배, 사회적 배제, 빈곤, 주택, 건강, 보건, 교육, 은퇴, 실업 및 이혼 등이다.

## 6.4 종단면 조사의 적용

종단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수 년이라는 시간적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그 분석적 결과는 사회 및 노동시장 정책의 개발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또한 종단면 연구는 노동시장의 동태성, 경제적 이동성 및 저소득 동태성 등의 공공 정책 형성에 도움을 준다.

#### 6.4.1 노동시장의 동태성

고용과 실업 동태성이란 고용, 실업, 비경제활동간 이동 등과 같이 개인 수준에서 경험하는 노동시장에서의 이동을 의미한다. 최근 몇 년 간 횡단면 데이터에 토대를 둔 연구를 보면, 조사 연도 동안, 심지어는 한 달 내에서도 노동시장에 대규모의 움직임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연구 자료는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노동시장 자료를 간단하게 보여주어, “고정된 기간 동안 “순” 변화를 측정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종단면 데이터는 동일한 개인이 어느 정도까지 반복적으로 실업을 경험하는가, 경기 순환 동안 실업 기간은 얼마나 존속되는가 등을 알려준다. 종단면 설계는 불완전 기간보다는 더 우수한 연구 결과를 양산할 수 있는 완전기간을 이용한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종단면 설계를 이용해서 고용과 실업으로의 진입, 그리고 이러한 이동을 유발하는 사건 등을 연구할 수도 있다. 예컨대, 노동시장 위축의 주요 결정 인자는 무엇인가?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건이 노동시장의 전이를 유발하는가? 개인사업으로의 전이를 유발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족 소득 (수준과 안전성)과 부는 근로자가 개인사업자가 되겠다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와 유사한 주제로, 생애주기와 관련된 노동시장 전이는 개인의 가족 환경 혹은 생활 실태에 역점을 두고 특정 생애주기 단계를 지배하는 주요 노동시장 전이를 다룬다. 특히 관심을 끄는 주요 생애주기의 전이는 학교에서 일터로의 전이, 일터에서 은퇴로의 전이,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장기 휴직 혹은 임시 휴직 등이다.

학교에서 일터로의 전이에는 학교 졸업 후 장기간의 비경제활동과 실업 등을 포함하는데, 이는 단기간의 생산성 상실뿐 아니라 수반되는 사회부조로 인해 노동시장의 정책적 문제가 된다. 이러한 동태적 이동은 시간에 따른 소득의 흐름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고등학교 중퇴자의 노동시장으로의 통합, 퇴학자들이 첫 직업을 찾는데 필요한 시간, 첫 정규 직장의 안전성, 교육과 전공과 관련된 임금과 직업, 조기 노동시장 진입 이후 학교로의 이동 등도 이 분야에서의 관심사항이다.

직장에서 은퇴로의 전이와 관련된 사안, 그리고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는 노령층과

퇴직준비 집단간의 부의 분배, 어느 정도의 부가 퇴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등이 포함된다. 노동시장에서의 철수 과정 연구 대상에는 직장에서의 은퇴 후 개인사업 시작, 혹은 계약직 또는 저임금 퇴직준비 근무로의 전환 등이 있다.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장기휴직/임시휴직도 중대한 생애주기 전이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 휴직 전후의 임금, 근로제도 및 직장 복귀에 걸린 시간 등의 통합 형태를 연구할 수 있다. 물론 다양한 가족 유형, 특히 한부모 가족 등과 관련된 형태에도 연구 역점을 둘 수 있다. 또 다른 연구 영역으로는 취업모와 관련된 가족의 해체 등이 있다.

#### **6.4.2 가족의 경제적 이동성**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는 소득 불평등의 증가 현상은 노령 근로자와 청년 근로자 사이, 특히 남자들 사이에 더욱 극심하게 나타난다. 이때 종단면 데이터를 통해서 불평등의 변화에 내재된 개인적 궤도를 읽을 수 있다. 종단면 데이터는 가족의 실질수입 감소가 주는 장기적 영향을 판단하는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주 연구 내용은 가족의 경제적 후생에서 나타나는 안전성과 변화의 측정이며, 이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는 가족의 형성과 해체이다.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대규모의 소득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횡단면 데이터를 보면, 많은 국가에서 일상적으로 가족해체와 재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종단면 데이터는 이러한 가족의 변화를 유발하는 재정적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만일 변화로 인해 생업에 이득이나 손실이 초래된다면, 가족의 재정상황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종단면 데이터는 특히 결혼이나 이혼 등과 같은 사건으로 인해 자녀들이 저소득이나 빈곤상태로 진입하거나 탈출하는 과정을 탐구하는 데에 사용되기도 한다. 예컨대, 부모가 이혼을 한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특정 빈곤선 아래로 떨어질 위험성이 많아진다. 반대로, 결혼이나 새로운 법적 결합을 통해 저소득 상태로부터의 탈출 가능성이 더욱 증가된다.

### 6.4.3 저소득 동태성

저소득의 동태성은 앞서 논의한 주제와 관련이 있지만 저소득에 더욱 역점을 둔다. 예컨대, 2년간의 짧은 소득 흐름을 기반으로 한 횡단면 데이터에 의해 저소득과 빈곤을 연구한다면, 저소득 인구층에서 발생한 “이직률”이나 저소득 지속기간 등을 과장해서 나타낼 우려가 있다. 좀더 장기간으로 보다면, 종단면 데이터는 저소득 인구층의 “이직률”을 장기간 매년 추계하여 더욱 정확한 빈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와 관련, 저소득으로의 진입과 저소득층에서의 탈출의 결정인자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저소득으로의 진입 또는 탈출을 유발할 수 있는 인구학적 요인 및 노동시장의 요인은 무엇인가? 정부의 이전 지급이 저소득의 탈출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사회적 프로그램에 대한 경제적 의존의 시기별 변화 정도와 가족 소득 증가를 위한 각자의 역할을 연구하는 데에도 종단면 데이터가 아주 유용하다.

노동시장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족, 즉 “근로 빈곤층 (working poor)”은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출될 가능성이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소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에 더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상황을 감안할 경우 종단면 데이터는 소득보장정책 연구에 더욱 중요하게 된다.

종단면 데이터는 쓰임새가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연구자와 정책입안자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는 사회경제적 관계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시한다. 특정 시점에 전체 인구에 발생한 순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 횡단면 데이터와는 달리, 종단면 데이터는 특정 사건이 개인의 소득과 전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려준다. 노동 및 소득 동태성 조사, 소득 동태성에 관한 패널 연구, 소득 조사 및 프로그램 참여, 유럽 공동체 가구 패널 조사는 모두 빈곤의 동태성, 노동시장의 생애주기 전이, 가족의 경제적 후생과 같은 여러 연구 주제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종단면 조사에 해당한다. 이러한 연구 분야에서 축적된 지식은 오늘날 사회의 복잡한 사회경제적 관계를 이해하고 정부 프로그램 및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 제 7장

## 데이터 표현

### 7.1 도입

통계 표현을 위한 모든 '모범적' 규칙이 소득분배분석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차트도 매우 귀중한 이해를 주는 수단이지만, 정보 내용이 집약적이지 않고, 조직적으로 분류된 정보를 주기는 한계가 많다. 3D 그래프는 미학적으로는 괜찮지만 3D에 내재된 왜곡 문제 때문에 2D 자료의 표현방법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때로 3D 자료를 그래프 형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은 자료는 도표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어쨌든 그래프로 표현된 자료는 항상 사용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소득 통계는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자료 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으로, 사용자 친화적 방법으로 이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이 장의 목표는 가구소득 데이터의 다양한 표현 방법과 각 방법이 지닌 단점에 대해 논의해 본다.

제 7.2절은 다양한 분류 단위와 관련하여 3장에서 제시된 권고를 따르며 다양한 분석 방법에 따른 소득 데이터 제시 방법의 사례를 소개한다. 제 7.3절에서는 주요 성향의 측정 방법으로서 평균과 중위 개념의 활용에 대해 논의한다. 7.4절에서는 소득 산포를 탐구한다. 불평등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며, 이들 불평등 지표의 활용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다. 7.5절에서는 다양한 소득구성요소의 표현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 7.2 분석 단위 및 분류단위

3장에서는 소득분배분석 단위로 가구를 권고했다. 그 이유는 가구는 개인 소득의 집합 단위이며, 소득 공유라는 가정이 가장 유효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석 단위가 가구라 하더라도 데이터는 다른 방식 - 예컨대, 가구의 수 대신 개인의 수를 표현할 수 있도록 가구소득에 다시 가중치를 부여 -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3.3.6절 참조)

따라서 소득 분배 결과를 표현할 때에는 즉, 한 가구의 모든 구성원은 가구의 소득을 공평히 공유한다 등, 그 분석 단위에 고유한 가정을 분명히 나타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구성원의 계산방법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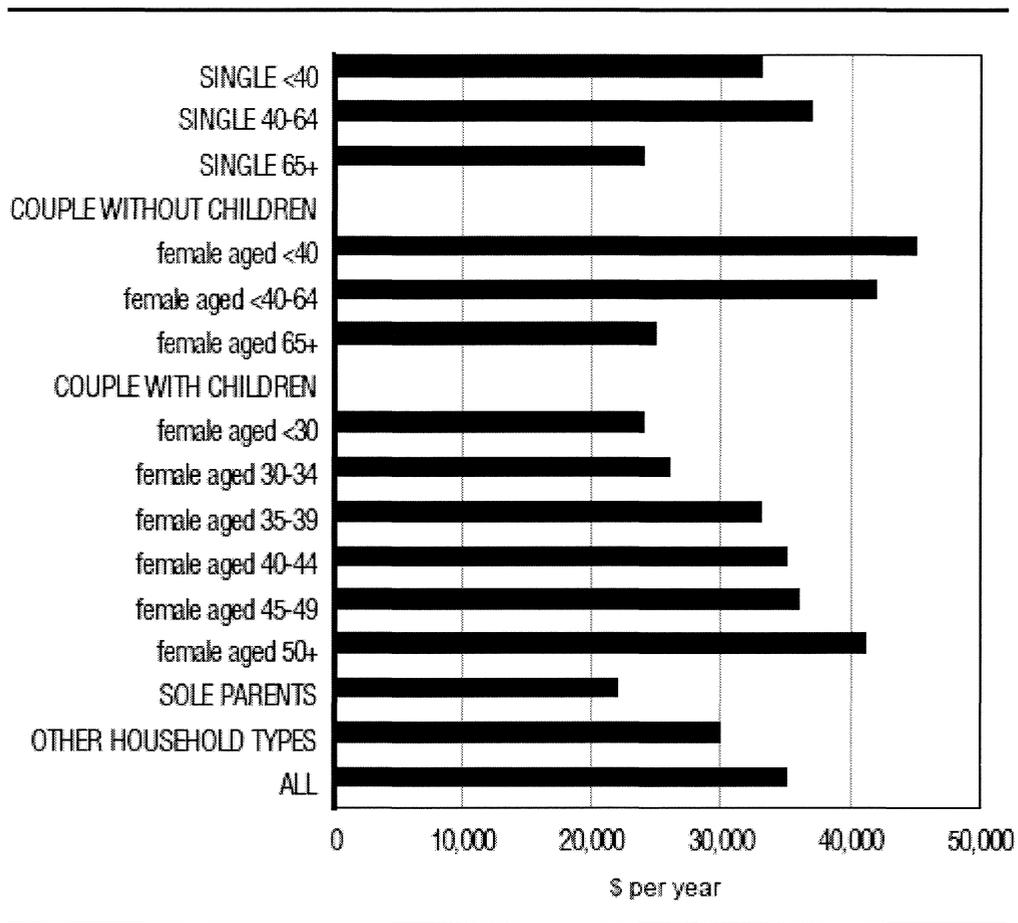
즉 사용자들에게 '소득 하위 20%가 총소득의 8%를 차지한다'라는 문장이 소득 하위 20%의 개인이 총소득의 8%를 받는지, 혹은 소득 하위 20%의 가구가 총소득의 8%를 차지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한다.

소득분배통계를 표현할 때에는 소득과 상관관계가 있는 특징에 따라 가구를 분류하는 것이 유용할 때가 많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연령과 가구 내 자녀의 수,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의 수 등의 요인에 따른 분류이다. 만일 다른 모든 특징이 동일하다면 경제활동 성인의 수에 따라 가구간 경제적 후생에는 상당한 격차가 발생한다. 여기서도 데이터 생산자는 가구가 속한 범주 -예, 자녀가 있는 '편부' 혹은 자녀는 있지만 다른 성인은 없는 싱글 -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아동' 및 '경제활동 중' 등의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밝혀야 한다. 예컨대 '아동'은 연령 혹은 교육적 지위, 다른 가구 구성원과의 친족 관계 등에 따라 정의할 수 있다.

성, 연령, 교육, 근속 연수, 주된 활동 유형 등의 개인적 특징도 있지만, 이들은 가구 분류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 예컨대, 개인과 가구의 소득은 생애 단계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어린 아동이 있는 가구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없고 연령대가 더 높은 부부와 비교했을 때 경제적 후생의 정도가 낮고, 연금 수급자들은 근로자 가구보다 소득이 낮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가구를 가구주 (또는 기준인)의 개별 성격과 성인과 아동의 수에 따라 가구를 분류하기도 한다. 그림 7.1은 어떻게 가구가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분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차트와 함께 어떤 텍스트가 제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상의 사례를 제시한다.

여기서 가구의 유형은 가구 규모 (독신자, 자녀가 있거나 없는 편부모 및 부부 등)와 연령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림 7.1. 평균 가계 균등화 가처분 소득: 생애 단계에 따라, 1996 (연간 \$)



독신 - 홀로 사는 성인

부부 - 결혼한 남녀

아동 - 16세 이하 또는 정규 교육을 받는 중인 16세 이상

편부모- 1명의 성인과 1명 이상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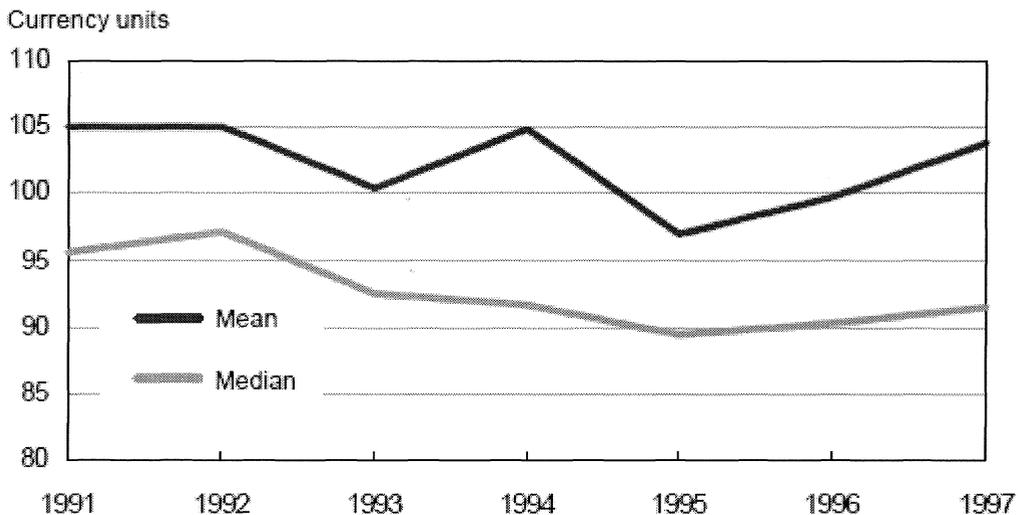
여러 가구 유형의 경제적 후생을 비교할 때, 보통 소득은 균등화 지수를 사용하여 조정된다. (3.3.5절). 가구유형별 소득 수준 비교를 목표로 하는 통계 표현시 소득 통계의 생산자와 사용자는 이러한 가구 균등화 지수에 의해 통계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생산자는 균등화 지수 조정이 표 또는 그래프에 적용되었는가를 명확히 알려야 하며, 메타 데이터에는 사용된 지수, 그리고 지수마다 결과에 대한 민감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설명해야 한다.

### 7.3 소득수준의 요약 지표: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

소득 수준 기술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산술 평균으로서, 전체 소득의 합을 관측 수 (number of observations)로 나누어 구한다. 평균 소득은 측정과 해석시 쉽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극한값과 비대칭 분포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중심 성향을 측정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는 즉 분포의 중앙을 가리키는 중위 개념이 있다. 중위 개념은 평균 개념보다 더 안정적이고 로버스트성이 강하며 극한값과 표본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다. 그림 7.2는 가구의 평균 및 중위 균등화 소득의 변화를 나타냈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1992년부터 1995년 사이 중위 소득은 완만한 하락세, 1995년에서 1997년까지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다. 그러나 평균 소득의 추세는 중위 소득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 1993년에서 1994년까지 평균 소득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1994년에서 1995년에는 급락하며, 1995년에서 1997년에는 다시 한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그림 7.2 가구 평균 및 중위 균등화 가치분 소득의 변화



평균 소득은 중심 성향을 측정할 때에는 취약점을 보이지만, 여전히 소득 통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측정 도구이다. 또한 가구소득구성요소를 표현하는 데에도 가장 적절한 도구이다. 일반 사용자라면, 다양한 소득구성요소를 총소득으로 합산한 후 이를 평균한

소득 개념이 중위소득보다는 더 익숙할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 혹은 “고소득”을 판단할 기준으로는 중위소득이 더욱 유용하다. “일반적” 소득 수준에 대한 상대적 간격이라는 측면에서 빈곤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분포의 꼬리 부분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덜 취약하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일반 혹은 표준 소득을 나타낼 때에는 평균 소득보다 중위 소득이 더 선호된다.

#### 7.4 소득 산포의 지표

소득 산포는 평균과 중위의 차이로 결정되기도 한다. 많은 국가에서 평균 가구소득이 중위 가구소득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소득의 분포가 주로 하단으로 치우쳐있기 때문이다. 평균 소득 대 중위 소득비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으로 거친 방법으로, 소득 불평등을 정확히 측정하는 방법은 이외에도 많이 있다.

#### 도수 그래프

도수 그래프는 소득 산포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며, 각 표본 단위에 대해 주어진 소득 유형 (총소득, 가처분 소득, 조정 가처분 소득)을 보여준다. 그림 7.3은 통상적인 소득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소득이 정상적 분포가 아니고 상단 끝 쪽으로 치우쳐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3 소득 도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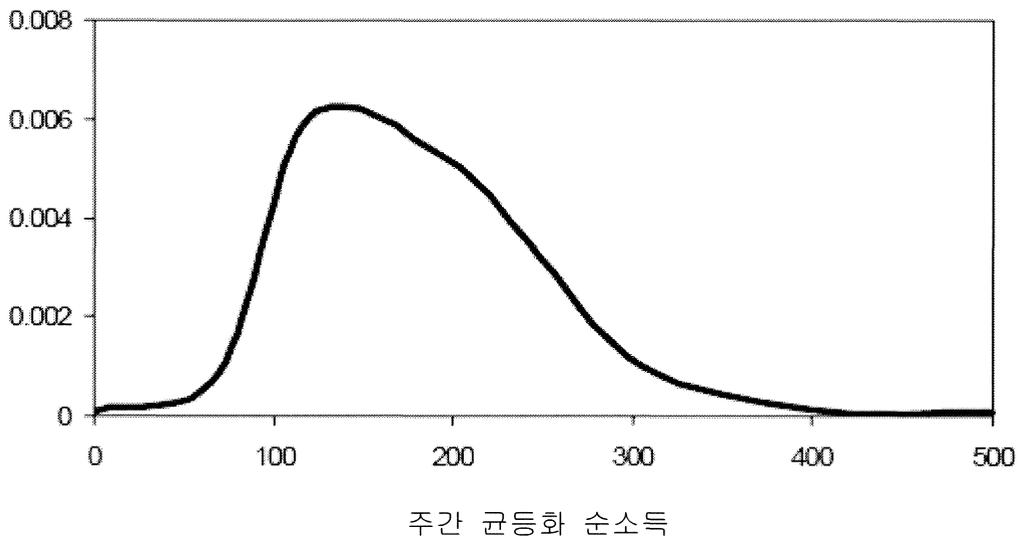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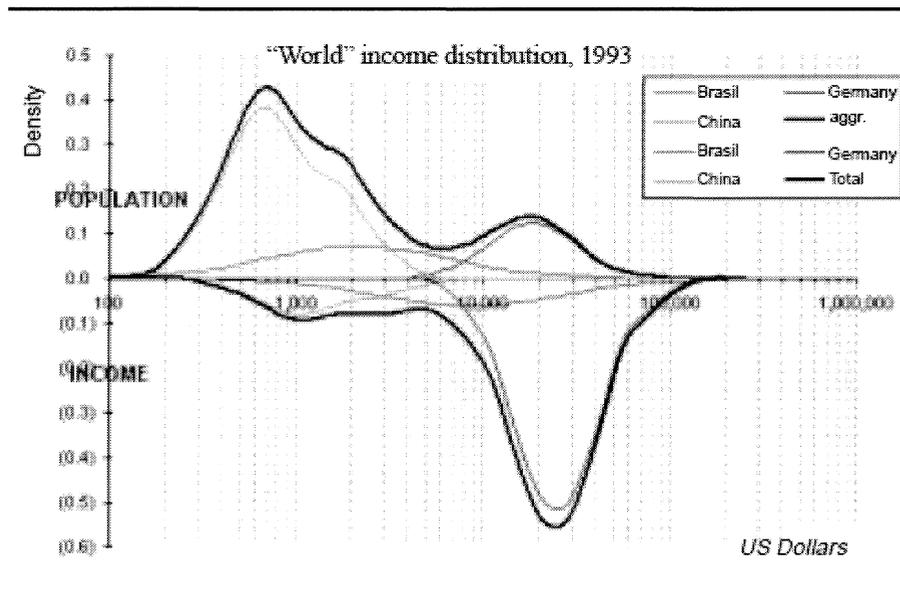


그림 7.4는 좀 더 복잡한 도수 그래프의 전개 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소득분배통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자, 그에 대한 응답으로 고안된 그래프이다. X축 위의 선은 인구밀도, 아래의 선은 소득밀도를 보여준다. 각 곡선과 X축 사이의 면적은 1이다. 그리고 총 분포를 분해할 수 있다. 각 지역 국가를 상징하는 대표로 설정된 A, B, C 3개국은 분포가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가중치를 받는다. 따라서 이 그림은 세계 소득분포가 어떻게 분석되는지 만을 보여줄 뿐, 실제 소득분포의 모습을 의도하여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프를 보면 '세계' 인구의 40% 이상이 연간 1천 달러 이하의 소득을 받으며, 이는 총 '세계' 소득 중 불과 6%만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중 대부분이 'A'국, 일부가 'B'국 출신임을 알 수 있다. 로그스케일을 보면, 인구가 전체 소득 스펙트럼을 가로질러 퍼져있음을 볼 때, B국의 불평등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세계' 인구 분포선에는 두 개의 꼭지점이 있는데, 이에 상응하는 소득분포선은 꼭지점이 하나이고, 오른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도표가 지닌 지역보유적 성격 때문에 소득분포가 우측으로 균일한 이동을 보인다고 해서, 곡선의 모양이 바뀌지는 않지만, 좌측 혹은 우측으로의 전반적 분포는 이동한다. 이 때문에 국가간 분포 혹은 시간에 따른 소득분포의 변화 등을 하나의 그래프로 비교할 수 있다.

그림 7.4 세계 소득분포



### 7.4.1 로렌츠 곡선

도수 그래프는 소득에 따른 단위의 순위를 표시하며, 대부분의 소득 산포 측정 방법의 근본이 된다. 이 중 로렌츠 곡선의 경우, 분석 단위 (개인 혹은 가구)가 가로축에 위치하며 세로축에는 총소득 누적비를 표시한다.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더욱 공평함을 의미한다.

로렌츠 곡선은 보통 소득 분배 정도를 나타낼 때 주로 이용한다. 두 개의 분포 곡선이 교차하지 않으면, 두 개의 분포선 중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는 더욱 소득 분배가 공평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7.5는 1999년에 조사한 2개국의 균등화 가구 소득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두 국가의 곡선은 교차하지 않고, A국의 로렌츠 곡선은 B보다 더욱 대각선에 가깝기 때문에 B국보다 분배 평등이 잘 실현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7.6은 B국과 C국의 소득 분배 상태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여기서 두 국가의 곡선은 교차하기 때문에, C국이 B국보다 더욱 평등한 분배가 실현되는 국가일 수도 있고, B국이 C보다 평등한 국가일 수도 있다.

그림 7.5 가계 균등화 가처분 소득분포에 대한 로렌츠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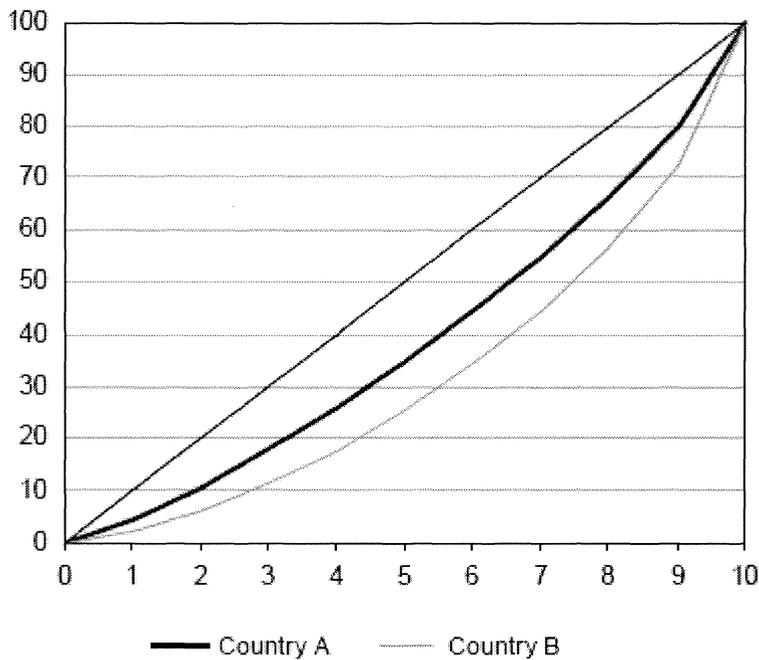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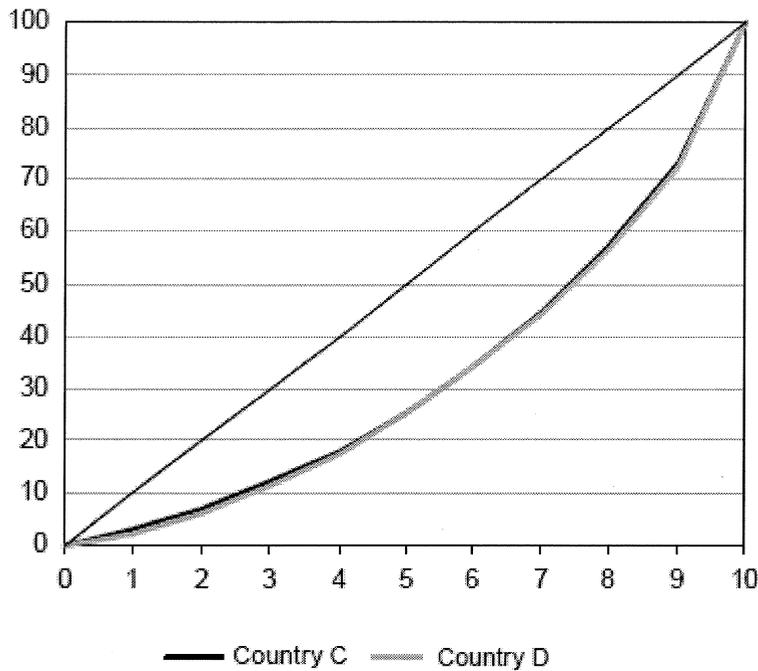


그림 7.6 가계 균등화 가치분 소득분포에 대한 로렌츠 곡선



#### 7.4.2 지니계수

앞서 설명한 대로 로렌츠 곡선의 약점은 두 곡선이 교차될 때의 해석에 있다. 그러나 로렌츠 곡선은 중요한 불평등 지수의 이론적 기초이자 지표이다. 소득 산포의 요약 지표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바로 지니계수이다.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의 곡선과 대각선 사이의 면적 (A)으로 나타내며, 대각선과 가로축, 세로축의 삼각형의 넓이 대 A의 비율을 지니계수라 한다. 지니계수는 0 (모든 단위의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에서 1 (완전히 불평등 분배의 상태)까지 분수나 백분율로 나타낼 수 있다.

지니계수의 장점 중 하나는 소득 통계의 생산자와 전문적 사용자 모두가 해석하기 쉽도록 소득 불평등 정도를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이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불평등 정도도 높다. 그러나, 분포의 평균 지점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너무 민감한 반면 분포의 양 끝단에서 발생하는 변화에는 너무 둔감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결과 만일 극도로 높은 소득을 지닌 소득분포선은, 아주 낮은 소득을 나타낸 분포선과 동일한 지니계수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지니계수만으로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심분위 분배나 다른 요약 지표와 결합하여 지니계수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다른 수학 산포도와 마찬가지로 지니계수는 대중이나 정책 입안자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지니계수 표현시 소득분배분석가들이 주로 우려하는 사안 중 하나는 표집오차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표 표본조사에 의거하여 소득 통계를 생산한다. 표본조사에서 발생하는 표집오차도 지니계수에 영향을 준다. 불평등 순위의 의미를 판단하는 데에는 표집분포의 분산이 유용하다. 예컨대, 소득 분배의 추세 혹은 국가간 비교 (제 5.5.2절 참조)시, 지니계수의 (작은) 변화가 표집오차 내에 존재할 경우, 소득 분배의 변화를 유추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간 불평등 분배를 비교할 경우, 비표집오차가 표집오차보다 수량적으로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Atkinson et al. 1995).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의 (작은) 변화에 대해 잘못된 결론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니계수와 더불어 표집오차를 항상 함께 제시해야 한다.

### 7.4.3 분위집단

분석 단위 (가구 혹은 개인) 순위에 기초하여 총소득 대 그 단위소득의 비율을 - 십분위 (10%) 또는 오분위 (20%) - 측정하는 방안이 있다. 만일 각 단위에 소득이 공평하게 분배된다면, 각 십분위 (오분위)는 총소득의 10 (20)%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분위집단 중 십분위와 오분위 소득집단이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이후에는 십분위 집단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다른 분위 집단에도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십분위 집단에 대한 요약 자료를 표현할 때, 평균 혹은 중위값이 그 십분위 집단의 상대적 지위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된다. 7.4.1에서 논의했듯이, 중위소득은 일반적으로 해당 분포의 꼬리에서 특히 많이 사용된다. 이 외에도 십분위점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십분위점이란 두 개의 십분위 집단을 분리하는 정확한 값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십분위 집단 1에서 최고소득을 받는 사람은 제 1 십분위 (제 10 백분위), 반면 최고소득을 받는 10% 집단 내에 최저소득을 받는 사람은 제 9 십분위 (혹은 제 90 백분위)가 된다.

전체 인구를 분위 집단으로 나눈 다음 각 집단의 소득비를 비교하면 한 국가 내의 소득 불평등의 추세를 분석하거나 국가간 차이를 연구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예컨대, 이를 이용하면 도수그래프가 없다 하더라도 한 분포가 다른 분포보다 더욱 불평등한가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그 분포 내 격차가 어디서 발생하는가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그림 7.7은 12개 국가에서 다양한 소득계층간 가구 균등화 가치분 소득의 분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소득계층은 십분위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이 그래프의 목적상 저소득 단위는 하위 3개의 집단으로 정의되고, 중위소득 단위는 중간 4개 집단, 고소득 단위는 상위 3개 집단으로 정의된다.

그림 7.7 십분위 집단의 가구 가치분 소득

총소득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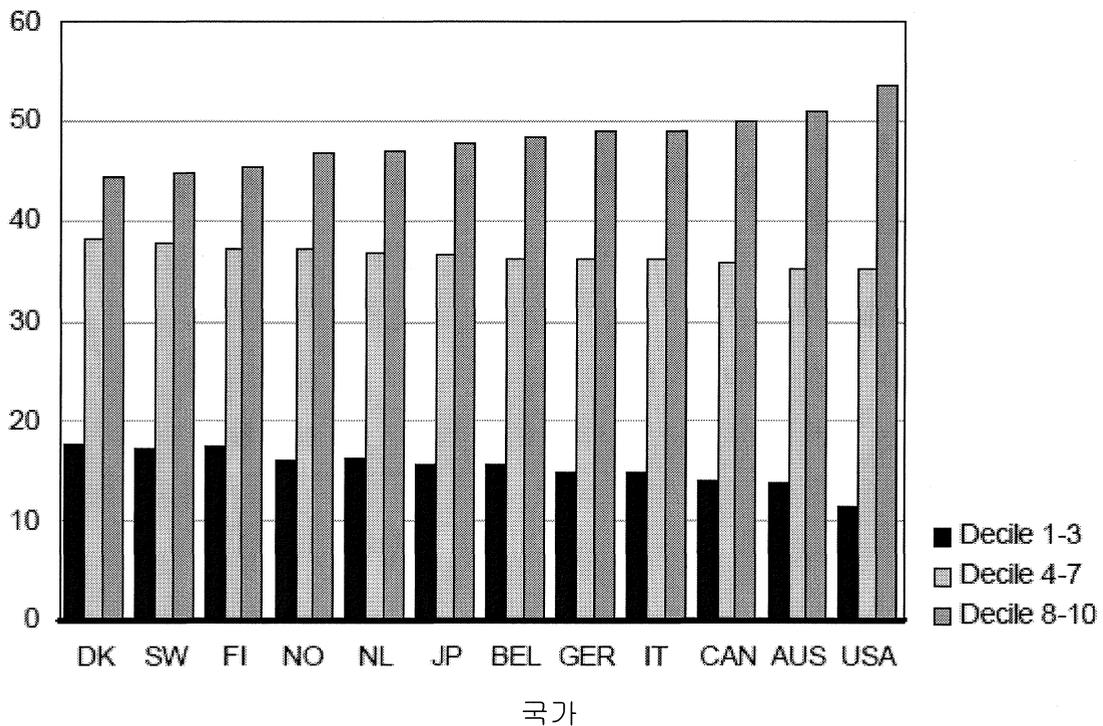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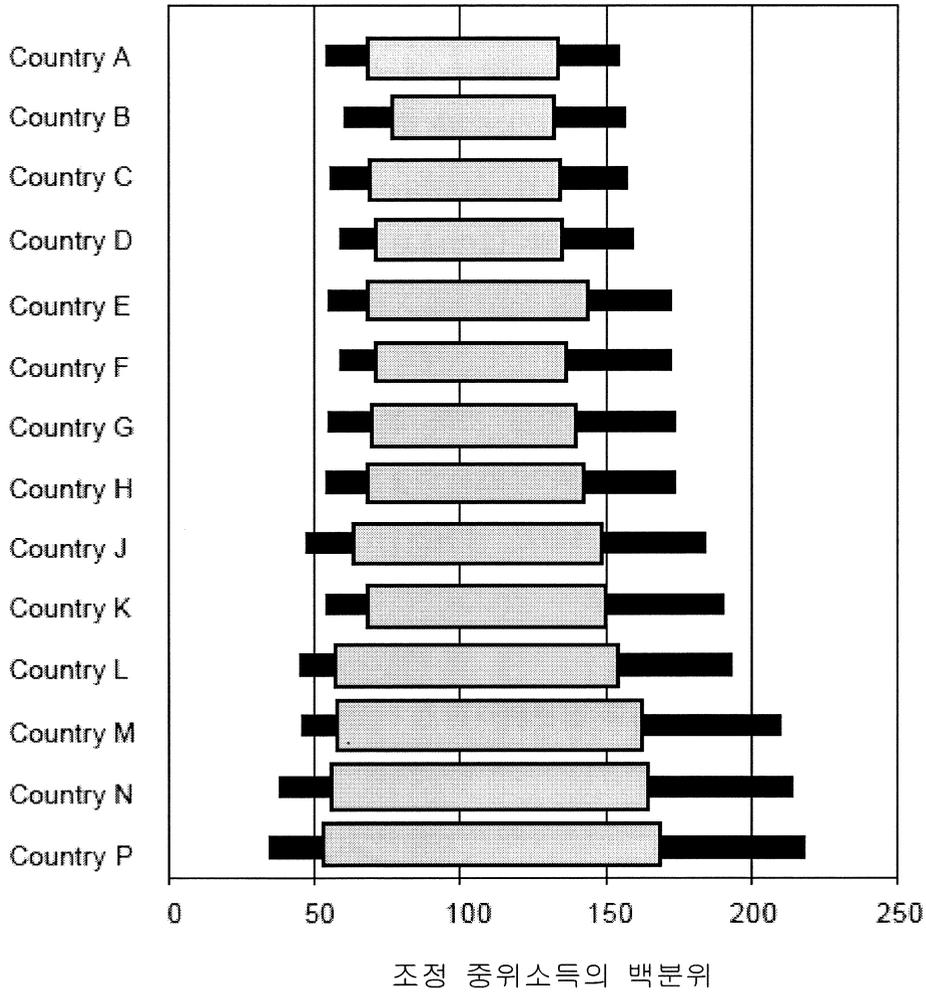


그림 7.8을 보면 오분위에 기초한 소득 분배 형태를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선정 국가에서의 “부자”와 “빈자”간 격차를 보여주며, 막대 그래프는 오분위 중 제 1 분위와 제 4 분위간 간격, 십분위 중 제 1 분위와 제 9 분위간 간격을 나타낸다. 각 막대의 길이는 고소득 개인과 저소득 개인간 격차를 표시하기 때문에, 각국에서 100은 중소득과 동일하다.

그림 7.8 제1오분위와 제4오분위, 제1십분위와 제9십분위의 간격  
국가/연도



- 제 10 백분위 및 90 백분위간 간격
- ▨ 제 20 백분위 및 80 백분위간 간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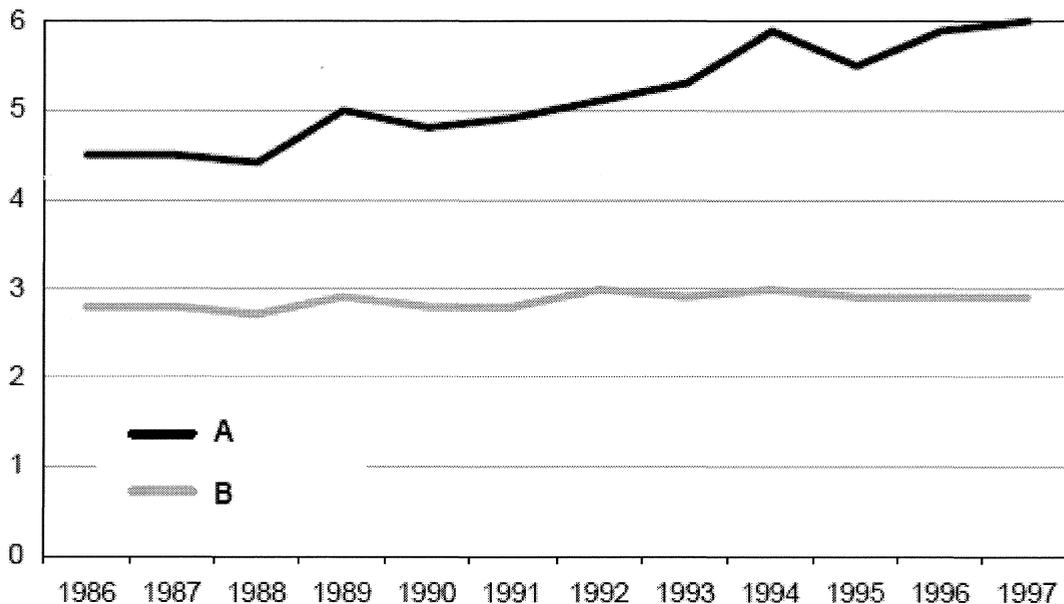
주:

1. 사회적 간격은 조정 중위 소득 (100)과 상대적인 백분위 위치, 그리고 십분위 및 오분위 분배율로 측정한다.
2. 소득은  $E=0.5$ 로 조정된다. 여기서 조정 DPI = 실제 DPI를 E에 대한 가구규모 (s)로 나눈 수이며, 조정 DPI =  $DPI/SE$ .
3. 국가 순위는 십분위 분배율에 따라 정했다.

그러나 평균 및 중위소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십분위 집단의 비중과 십분위 경계값에 의한 표현은 상반된 결과를 양산할 가능성도 있다. 십분위점의 차이에 기반해서 불평등을 측정했을 때 분포의 양 끝에서 나타나는 극한값은 그리 큰 영향력이 없다. 이는 십분위 집단 10과 십분위 집단 1의 소득비를 제 9 십분위점 대 제 1 십분위점의 비율과 비교한 그림 7.9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제 1 십분위와 제 9 십분위가 전체 인구의 20%의 소득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소득분포의 양 꼬리에 존재하는 계층은 특히 정책입안자와 여론의 관심을 많이 받는 집단이지만, 이들의 소득은 경제적 후생을 신뢰성 있게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제 8장, 로버스트성 평가 보고 참조)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십분위 집단의 비중은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는 기간에 상당히 증가하였다. 전 인구 중 소득상위 10% 계층의 소득비중은 소득하위 10% 계층의 소득에 비해 1986년에는 4.5배에서 1997년에는 6배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양끝 십분위수 점의 비율은 동기간 내 거의 변화가 없음도 알 수 있다.

그림 7.9 십분위 집단 비중간 비율 (A)과 십분위수점간 비율 (B)



이상적으로는 소득 통계 생산자는 십분위점, 십분위 집단 비중, 그리고 십분위 집단 평균에 대한 통계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데이터의 불완전성 때문에 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어떤 국가의 데이터가 하위코딩 되거나 상위코딩 되었는데 다른 국가는 그렇지 않다면, 십분위 비중, 즉 전체 가구 중 상위소득 10% 또는 하위소득 10%가 받는 총소득 비중에 따라 국가간 비교치를 제시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특히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소득 - 투자 수익 등-은 국가마다 엄청나게 다를 수 있다. (Atinson et al, 1995) 이런 이유 때문에 십분위율에 근거한 국가간 비교자료를 제시할 때, 그리고 앞서 언급한 데이터의 불완전성을 고려한다면, 이 수치들은 1차적으로 십분위 집단 비중보다는 십분위점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반면, 동일 국가 내 소득 분배의 추세를 제시하고 소득 정의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전제한다면, 십분위 비중이 소득 분배의 변화를 파악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된다.

#### 7.4.4 기타 요약 지표

소득 통계 생산자와 소득분배분석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불평등 지표는 지니계수이지만, 이 외에도 수많은 요약 지표가 존재한다. 여기서 그 모두를 제시하기는 힘들지만, Nygård & Sandström (1981) 또는 Cowell (1995) 등 소득 불평등의 측정에 관한 방법론을 상세하게 저술한 책이 많다. 이 절에서는 소득분포의 각 부문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민감한 지니계수를 보완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지표를 소개해 보겠다.

애킨슨 지수 (Atkinson index)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소득분포의 구간 내 이동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e$  지수 (이를 “불평등 혐오” 수준이라 함)를 통해 주어진 소득 분배비율의 변화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이 지수의 값은 0과 1 사이이며,  $e$ 가 1에 가까워질수록 소득분포의 하단 끝에서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되며, 불평등 혐오가 하락할수록 ( $e$ 가 0에 가까워질수록), 애킨슨지수는 상단 끝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된다.

소득분포의 상단 끝 변화를 측정하는 데에 자주 사용되는 또 다른 지수로 2) 변이계수자승 (Squared Coefficient of Variation: SCV)과 타일의 엔트로피 (Theil's entropy)가 있다. 변이계수는 평균으로 나눈 표준편차이다. 이를 제공하면, 추가적으로 분해 가능하다. 지니계수처럼 SCV 지표의 최소값은 0이지만 최대값은 단위 수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타일의 엔트로피도 고정된 최대값은 없지만, 소득 분배가 평등하게 이루어질수록 엔트로피도 0에서 멀어진다.

대부분의 경우, 소득 산포가 시간에 따라 혹은 국가나 집단간 달라지는 전체 그림은 요약 지표에 따라 그리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각 지표들은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이도 무시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통계 생산시에는 목표에 따라 적합한 지표를 하나 이상 선택하여 결합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7.5 소득 구성

국내 및 국가간 소득을 분석할 때에, 소득구성을 비교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간 소득 구성의 차이를 해석할 때에는 각국마다 소득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차이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컨대, 복지국가가 각 가계를 지원하는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며 그 지원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아동수당을 현금 지원하는 국가도 있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조세를 감면해 준다.

국가간 혹은 집단간 소득 구성을 비교하기 위해, 가처분 소득구성요소를 모두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한 국가 내 인구 집단간, 그리고 국가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득 구성에서는 소득세와 같은 부의 이전을 빼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러한 이전에 관한 정보는 총소득을 구성하는 요소와 직접 관련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소득구성요소에 비례적으로 조세를 할당한 다음 공제함으로써, 그리고 모든 소득구성요소에 비례하여 기타 부의 이전을 공제함으로써 가처분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을 위해서는 전체 소득구성요소의 평균값을 내야 한다. 모든 구성요소를 총소득으로 합산하기 위해 평균값을 채택할 수도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평균값의 단점 중 하나는 특이점들이 소득분포의 상단이나 하단꼬리에 과도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소득 구성은 세 가지 이하의 소득 범주만 나타낼 의도라면, 표의 형태가 가장 좋은 표현 도구이다. 설계도나 누적막대그래프도 사용되기는 하지만, 모든 범주의 소득을 포괄하기에는 부족하다.

# 제 8 장

## 로버스트성 평가 보고

### 8.1 도입

모든 통계는 통계 작성에 사용된 출처와 방법 등의 충분한 정보를 함께 제시하여 적절하고 정확한 추론에 따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 때문에 많은 정부의 통계기관은 각 통계자료를 위해 일반화된 품질체계를 개발해 왔는데, 캐나다 통계청의 데이터품질체계, 미국 통계국의 품질프로파일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들은 각 통계 결과에 대해 비교가능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목적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득분배통계의 복잡성, 광범위한 정의, 결과가 범하기 쉬운 오차 혹은 불확실성의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정보 - 메타데이터-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용자는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특정 상황에서, 소득 분배 목적에 그 정보가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완벽하게 문서화하지 않는다면, 늘 오해와 오역이 발생할 수 있다.

캔버라 그룹은 목적 적합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요약한 적합성 로버스트성 평가 보고서 (RAR)을 개발하였다. RAR의 기반은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IS)의 기술문서와 Eurostat 문서이다. 이 장에서 논의할 RAR의 템플릿은 부속서 6에도 소개되어 있다. 각국에 대해 완성된 템플릿은 LIS 웹사이트 ([www.lis.ceps.lu/canberra.htm](http://www.lis.ceps.lu/canberra.htm))에서 찾아볼 수 있다.

### 8.2 지침원리

소득분배통계의 출판인이나 출판기관은 통계 결과와 소득분포를 진실되고 공정하게 나타내고 있는가를 평가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개인이든 기관이든 단독으로 평가작업을

할 경우, 매우 광대하고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 출판물의 결과 평가는 각국/데이터베이스에 대한 '1차적' 평가에서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 4장과 5장에서는 소득 분배 데이터베이스를 생산하거나 1차적 소득분배통계를 생산한 사람이 이 평가작업을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

따라서, 데이터/1차 통계 생산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데이터베이스에서 배제된 집단을 식별, 정량화하고, 가능하면 이들의 추계 소득 및 생활수준에 대해서도 보고.
- 추계치의 기본이 된 데이터 출처, 데이터 수집 방법론, 편향 추계이라 해석될 수도 있는 특징 등을 상술.
- 응답 편향의 성격 및 규모를 평가.
- 데이터 편집 및 대체, 적용 규칙 및 소득분포 양극단의 소득에 대한 영향, 편집 및 대체 전후에 발생하는 차이, 직접세가 전가되었는지의 여부, 규모가 큰 전가의 타당성에 불확실한 점이 있는 경우를 보고.
- 사용된 용어의 정의 - 예컨대 '가처분 소득'은 다양한 소득 정의를 대표할 수 있다.
- 여러 가정에 대한 결과의 민감도 보고, 예컨대, 다양한 균등화 지수
- 대안적으로 선택한 출처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양산할 경우, 그 이유와 그 내용을 보고
- 과거 발표된 방법론 중 참조 대상 보고
- 가능한 조사 대상의 범위, 정의,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데이터의 합산 방법, 합산된 소득에 대한 미시데이터 및 국민계정소득 추계치에 대해 보고

또한 한 국가의 소득분배통계의 1차 생산자는 다음 사항을 식별, 규명해야 한다.

- 해당 통계를 위한 자료에서 소득구성요소가 지니는 포괄성, 혹은 가처분소득에서 살 수 있는 특정 재화 및 서비스의 정도의 변화
- 해당 소득 데이터로서는 그 집단의 생활수준을 알기가 어려운 집단. 개인사업자나 소득분포의 최 하단에 해당되는 집단에 대한 설명도 함께 수록해야 하며, 해당 국가에 대한 평가서, 또는 그 집단에 대한 소득데이터가 생활수준을 모두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라고 작성한 주의문 등.
- 특정 집단의 소득 비교 타당성을 훼손시킬 수 있을 정도로 큰 중대한 물가 혹은 물가 지수의 차이.
- 데이터셋 혹은 사회정책 환경에 나타난 기타 요인으로서 소득분배통계 생산자 및 분석가들이 인식해야 하는 사항.

이 모든 요인들은 RAR 템플릿에 수록되어 있다. Eurostat는 1998년 사회적 배제 및 빈곤에 대한 특별위원회 (Task Force on Social Exclusion and Poverty)의 보고서에서 로버스트성 보고에 대해 권고하였는데, 이들은 그 권고와 매우 유사하다.

동 사안에 대한 상세한 로버스트성 평가 보고서뿐 아니라 각 데이터셋을 위해서는, 1페이지의 요약본을 작성해야 하며, 해당 데이터셋에서 소득분배통계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수록해야 한다. 아래는 한 가상의 가구소득조사 요약본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 소득 분배 결과의 로버스트성과 데이터 결함 관계

소득통계는 매년 8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 조사에 기초하여 작성되고 있다.

이 중 전 인구의 약 2%가 조사대상에서 배제되지만, 전반적 소득분포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고 간주된다. 그러나 노인층과 청년층의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청년층의 평균 소득치가 상향 편향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응답률은 60-70%이기 때문에, 무응답 편향은 로버스트 결과에 대단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무응답 편향과 그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제한되지만, 소수민족 및 최고소득 가구의 의 과소대표성은 불평등성의 과소 추계로 이어질 수 있다. 저소득 독신 성인도 과소 대표되는 경향이 있다. 무응답자가 사는 지역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을 수행해 보면, 주로 공공임대 아파트에 사는 저소득 집단이 평균 이하의 응답률을 보임을 알 수 있다.
- 항목 무응답 - 이에 대한 구체적 정도와 결과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작다고 추계된다. 주요 소득 항목에 대한 무응답은 데이터셋의 불완전을 유발한다.
- 국민계정을 비교해보면 개인사업자 소득 및 투자수익이 25% 이상 (총량 환산 자료에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다. 납세기록의 비교자료를 보면 소득분포의 최상단으로 가면서 설문조사의 과소 신고가 극심하게 나타난다.
- "근로빈곤"은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취약하며 불평등 추계치는 이보다 덜 민감하지만, 개인사업자를 제외하면 소득 하위 십분위수의 가처분소득 비중이 약 10% 증가하며 상위 십분위수의 가처분소득은 약 5-10% 감소한다.
- 개인사업자를 제외하더라도, 소득하위 5%의 가계 지출은 그 다음 하위 5%보다는 높다. 따라서 소득 하위 5% 또는 10%를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 저소득 가구의 경우 주거비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현금 등가품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고소득층 (출퇴근 차량 지원 등)과 저소득층 (연금 수령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모두에 영향을 준다.

전반적으로 개인사업자 - “근로 빈곤자”를 포함"- 또는 소득하위 5%에 가중치를 많이 둘 경우의 결과는 소비 능력에 대한 길잡이로서는 불안정하다. 응답 형태와 투자수익의 누락 등으로 불평등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응답률 변동은 또 다른 중대한 편향을 낳을 수 있다. 학생층의 누락, 저소득 독신 청년들의 응답률 저조 등의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젊은 독신 성년의 통계는 특히 주의해서 취급해야 한다.

1차적 생산자는 추세를 도출하기 위한 시계열 자료를 형성하는 소득 분배 추계치를 보고할 때에 특히 중요한 책임을 지며, 몇 년 전 이미 발표된 자료와 비교할 경우, 그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징의 변화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차적 생산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결과의 로버스트성을 새로운 추계치가 발표될 때마다 평가
- 새로운 추계치와 이전 추계치의 비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용어 정의, 조사 대상, 대체 관행, 조사 관행 (컴퓨터 기반 면접 등의 도입) 등의 변화 포착.
- 비교가능성에 대한 이런 변화의 영향 평가를 가능하게 해야 함.

2차 소득분배분석자료 생산자는 다음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 1차 생산자로부터 나온 일반적 결과를 고려하여, 분석 결과의 로버스트성 평가.
- 사용자들이 사용한 소득 정의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을 해석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분석 결과의 로버스트성을 선정한 정의와 관련해서 평가해야 함

- 다양한 균등화 지수 (또는 물가 지수)에 비추어 분석 결과를 평가
- 소득 분배 결과와 함께, 그 결과가 논의될 질문에 대해 진실되고 공정하게 답을 주는가에 대해서도 보고.

출판물의 유형에 따라 적합한 보고 형식이 존재한다. 예컨대 1998년 Eurostat Task Force 보고서는

- 보도자료 및 “헤드라인”만 보여주는 간략한 출판물의 중간 모습
- 상세한 보고서
- 개론, 선집, 또는 간행물의 모습을 띄고 있으며, 각상황마다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보고 방식을 권고하였다. (부속서 7 참조)

만일 보고 내용이 로버스트성이 있다고 알려진 내용에만 한정된다면, 로버스트성을 논의할 필요가 없을지 모른다. 표 안의 내용이 대부분 로버스트성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결과만 표시하는 것이 적합하다.

소득 분배 데이터셋에서는 부속서 6에 수록된 템플릿 내 로버스트 평가 보고서를 함께 제시하여 사용자가 데이터셋의 목적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 9장

## 향후 과제

### 9.1 도입

이 가이드라인은 현 모범사례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현재 경제 및 사회적 상황에 맞게 구성되었다. 캔버라 그룹은 경제나 사회 모두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런 종류의 가이드라인은 정기적인 검토와 갱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계정체계(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나 이와 유사한 국제표준의 전통을 따르려 노력하고 있다. 캔버라그룹은 각국의 통계국이 이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여 이 가이드라인이 소득분배통계와, 그 통계에서 나타난 경제사회적 현실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소득통계작성의 관행과, 통계가 이용된 경제사회적 상황의 발달에 따라 가이드라인도 갱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캔버라 그룹에서 소득 분배 영역에서 향후 다루어야 할 몇몇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들을 해결하는 것이 캔버라 그룹의 목표는 아니었다. 이 장에서는 향후 이 문제를 다른 단체에서 다루어줄 것을 희망하며 잠시 언급한 비망록 같은 존재이다. 이 내용도 가구 소득 및 분배를 측정하려는 이들이 겪고 있거나 향후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수록한 것은 아니다. 이 문제들은 정성적 및 정량적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논의 중 등장했지만, 현재까지 이의 측정을 위한 만족할만한 경험적 해결책을 발견한 국가는 없다.

이 사안들은 다음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가계의 경제적 후생이라는 개념을 해석하는 방법에 이미 영향을 주고 있지만 아직 일반적으로 채택된 측정 수단이 개발되지 않은 사안들
- 통계학자들에게 그들이 사용하는 개념과 가계 경제적 후생의 측정 방법을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경제 및 사회적 환경에서의 외적 개발품

이 두 유형의 사안은 9.2절과 9.3절에서 논의한다.

## 9.2 가계의 경제적 후생 다음에 오는 것은?

측정된 가구소득에 현 사회가 '경제적 후생'라 간주하는 요소를 지속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 가구간, 가구 내 이전
- 소득, 지출, 부의 관계
- 가계 경제 내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통해 창출, 유통되는 비화폐적 소득

위 세가지 개념은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논의가 되었지만, 일반적으로 현재로서는 범위 밖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 까닭은, 이들의 중요성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좀 더 실용적 정의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국제 통계기구의 연구와 논의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 9.2.1 가구간, 가구 내 이전

가구 내 자원의 이전은 사회후생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 문제이다. 제 3장은 가구가 소득분배연구 분석의 1차적 단위가 되어야 하며, 그것이 현재 최상의 관행에 부합하기도 하다. 대다수의 소득분배연구에서는 여러 이론적 실천적 이유 때문에 모든 자원이 가족 또는 가구 구성원간 공평하게 할당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는 '차선택'에 불과하다. 이 가정은 가구 구성원간 불평등 분배에서 오는 불평등은 없다는 의미이다. 많지는 않지만 일부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 가정은 여러

상황에서 실제 가구의 역동적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혀지고 있다. 경제력, 소득원(수입, 정부 이전 등), 개개인의 욕구와 같은 요인들이 가구 내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그 때문에, 개별 가구 구성원은 평균 가구 구성원보다 소득을 더 할당 받거나 덜 할당 받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가구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총소득이 가구 구성원간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는 문화마다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가구 내 이전을 측정하기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확신을 지니고 이를 추계하기 전까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 성 역할, 아동 후생과 빈곤간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러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가구 내 이전의 분배는 빈곤 가족을 위한 사회지원프로그램이 향후 최적으로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가구 구성원간 불평등한 소득 분배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일부 국가의 정부사회지원 시스템에 의해 밝혀졌다는 점 - 아동지원금이 부가 아니라 모에 지급된다는 점-의해 인정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가구간 비정기적 이전은 제 2장에서 구성한 소득 정의에서는 제외되었으며, 정기적 이전이라도 지급 이전이 아닌 수령된 이전을 실제로 소득 정의로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가족간 지급 및 수령되는 송금액은 가구 내 이전과 동일한 지위를 지닌다. 여기에는 이민 노동자의 해외 송금액도 포함된다. 일부 개도국에서는 이러한 해외 송금액이 가구소득원의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경우 송금자든 수급자이든 개인 후생을 정확히 추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 **9.2.2 소득, 지출 및 부의 관계**

이 가이드라인의 초반에 논의를 했듯이, 소득은 개인 후생 혹은 효용을 측정하는 최고의 수단이라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소비와 부도 중요한 경제적 후생의 수단이다. 소득 데이터가 수급자가 살 수 있는 생활수준을 의미한다면, 소비 데이터는 실제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정보라 할 수 있다. 부의 소유는 미래 소비를 위한 잠재력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자산의 보유 여부는 신용에 대한 소유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도 있어서 현 소비에게 영향을 주기도 한다. 아직까지 가구 내에서 부의 분배 형태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유산을 통한 세대간 부의 이전과 부의 이전이 부의 분배에 주는 영향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소득은 소비 및 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제 2장에서는 소득, 소비, 자산이 서로 관련되는 개념체계를 개발하였지만, 아직 실천적 이행 단계까지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 세가지 개념을 모두 포괄하여 완벽히 다룬 조사 데이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국가에서 소득, 소비, 부에 대한 통합적 설문조사가 수행되고 있고, 또 저축, 기타 자본거래와 순자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단일 가구에 대해 이 모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들을 대차대조표 등에 기장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회상 기간, 신고 단위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에서 통합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모든 세 개의 개념을 통틀어 더욱 일관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실질적 방법을 지원해주는 것이 좋다.

이전 기간에 구입한 내구재의 유량 서비스를 소비에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도 있다. 소유주 거주 주택의 유량 서비스의 포함 문제는 소득의 관점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이 차량 혹은 기타 소비 내구재와 같은 재화에 어떻게 확대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가구간 비정기적 현물 이전 - 선물 -도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제 2장에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가구간 비정기적 현물 이전은 수급자의 소비이지만 제공자의 지출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출 이전 항목으로 분류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실천적, 개념적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득과 관련하여 캔버라 그룹이 추진한 연구 외에도, 수많은 연구 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 **9.2.3 가계생산을 통한 비화폐적 소득**

제 2장에서는 가계 내에서 생산, 소비된 재화와 서비스의 귀속 가치는 귀속 개인사업 소득의 일부로서 소득 개념에 포함되었다. 자체 생산한 재화의 소비가치는 SNA 에서

규정한대로 생산한도 내에 있으며 개도국 등 많은 국가들은 이 개념을 총량으로 계산하고 있다. 유급 가사 서비스의 생산가도 SNA 생산한도 (내에 있으며, 현물 소득 및 현금 소득의 형태로 미시데이터에 나타나야 한다. 가계생산의 세 번째 유형으로는 공식 및 비공식적 무료 자원 서비스, 가계 내에서 소비되는 가사 및 대인 서비스가 있는데, 2장에서 이들은 명시적으로 SNA 생산한도에서 제외되었다.

가계 안에서 생산 및 소비되는 서비스는 '대인 서비스' (식대, 수면, 운동 등 생리학적, 오락적 서비스)와 그 외의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대인 서비스'란 한 개인이 소비하며 다른 사람은 수행할 수 없는 서비스이다. 세탁, 요리, 노인 및 아동 돌보기, 보수 및 수리와 기타 무급 서비스 등의 가사, 대인 서비스는, 소득, 시장 상황 및 개인적 성향 등이 허락한다면,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위임할 수 있으면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생산의 중요성을 평가하려는 학계의 움직임은 오래 전 1920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최근에서야 관련 데이터 수집 활동의 통합 - 특히 생활시간조사 (Time Use Survey)를 국가통계프로그램에 통합하는 활동- 등과 함께 최근에는 널리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수많은 포럼에서 국가 정책에 비 SNA 생산을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 특히 개발계획 및 프로그램 수립에 주는 영향 등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을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경제 및 사회보장에 대한 남성의 기여도 명확히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생산을 평가하기 위해 제기된 두 개의 접근법은, 노동 투입 (투입기반 접근법)의 직접 평가와 생산된 산출의 평가 (산출기반 접근법)이다.

투입기반 접근법의 경우, 비SNA 생산에 확대된 노동시간을 주로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평가한 다음 임금을 곱해 소득을 생산에 귀속시킨다. 하지만, 적절한 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일반적 방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대,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의 시간 기회비용을 이용할 수도 있다. 즉, 시간 기회비용은 개인적 특성을 토대로 노동시장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임금률로 계산된다. 하지만 이의 문제점은, 요리 같은 동일한 서비스는 누가 수행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상당히 다르게 평가된다는 점에서 금방 드러난다. 반대로, 시장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 요리사 혹은 청소부 -의 시장 임금률을 사용하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기술수준 차이를 무시한 것이다. 세 번째 방법으로 그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의

서비스의 생산성 수준과 과업 범위가 고용된 사람의 수준과 유사할 경우의 일반적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도 적합한 임금률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적용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임금을 소득세를 제외한 순 개념으로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사회적 급여를 활용해야 하는가의 문제 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산출기반의 측정 방식은 제공된 서비스 - 식대, 청소 등 - 는 이에 상응하는 시장가로 측정된 다음 중간 투입요소 (음식재료, 세제, 전기 등), 자본 소모와 이론적으로는 간접세의 가격을 공제하여 서비스 요소만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하다.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출을 파악, 정량화한 다음 그 가구가 산출물의 일부를 매매할 때의 가격 및 시장에서 등가 제품을 구매할 때의 가격을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가계의 생산물과 유사한 등가물이 시중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가격을 산출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계생산의 통계는 가구 위성 회계의 구성 및 분석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계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가계 경제에서의 가계의 1차적 기능을 '의식주 및 보건 제공'으로 본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가계 자체가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된다. 자발적 근로 (volunteer work)는 그 가구 밖에서 소비되지만, 이들 자발적 근로 역시 포함된다.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는 앞서 제시한 여러 방법 중 하나로 계산한다. 수많은 국가들이 실험적 차원에서라도 이런 계정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가계생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귀속 가치를 화폐로 환산 가능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소득분배통계를 작성할 때 대규모의 비시장 소득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가구와 개인에게 이를 분배하는 일은 화폐 소득 분배와는 전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소득 분배와 불평등 형태도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가계의 경제적 후생 분석의 면에서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이 분야에 관한 한 국제 통계 기관들은 아직 정의와 방법에 대한 공통된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에 특히 부각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 소득 분배에 대한 현재 결과와 향후 결과가 동일하지 않다면 - 국내외적 관행의 일탈 및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의 부족) - 분명 이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9.3 경제적 변화로 인한 소득 측정의 문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경제와 사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변화로 인해 가계의 소득과 부의 측정과 관련한 개념과 방법에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변화 형태 중 캔버라 그룹이 정량적, 정성적으로 중요성을 띄지만 아직 경험적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한 변화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9.2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해 완벽한 규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분야의 실천가들 앞에 놓여있는 도전들에 대해 일종의 실마리를 제공해주기를 바란다.

우리가 선정한 두 가지 변화는 다음과 같다.

-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역할 변화
- 노동시장에서 수행하는 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의 근본적 역할

향후에는 이 변화가 직면한 이론적, 운영적 문제에 대해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는냐의 여부가 소득 분배의 측정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 9.3.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변화

전세계적으로 공공부문은 재화와 서비스 생산과 직접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는 대신 규제적 역할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공공지출 분야에서 연대성의 원칙은 개인 책임의 원칙에 자리를 내주고 있으며 민간 부문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수많은 국가에서 현물 공공 서비스 (보건, 교육)가 시장에서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되는 화폐 이전으로 대체되고 있다. 효율성은 증대되고 수급자는 서비스 공급자를 선정함으로써 효용이 높아질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사회적 현물 이전의 혜택을 가치 평가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제 2장과 제 4장에서 이미 논의한 바 있다. 만일 이러한 서비스의 민간 공급 추세가 지속되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자금지원 형태가 현재의 형태에서 변화된다면, 또 다른 형태의 도전이

발생할 것이다. 현재 몇몇 국가에는 민간의료보험과 민간 교육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개별적으로 구매한 동종 서비스의 가치평가와 분배는 미시적 수준에서 측정하기가 훨씬 쉽다. 그러나 공공 서비스와 민간서비스의 품질 차이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측정,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급여 제공에 대한 민간 부문 참여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면, 민간부문의 회계체계도 따라서 중요해질 것이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금융체계와 통계방식이 요구될 것이다.

### 9.3.2 비공식 부문

지난 20년간 수많은 국가에서 특히 비공식 부문에서 영세기업의 고용률이 상당히 증가해 왔다. 비공식 부문 기업에서 발생하는 총소득은 다른 전반적 경제 소득원과 비교했을 때에는 작을지 모르지만, 비공식 부문에 관련된 가구의 총소득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비공식 부문에 고용된 인구의 비중과 결부하여 생각한다면, 비공식 부문의 소득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특히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평가하는 데에 중요하다. 또한 한 경제 내의 불법적 활동의 규모와 성격을 더욱 잘 이해하는 데에도 비공식 부문의 활동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비공식 부문 기업이 지니는 성격으로 인해, 소득 측정이 매우 어렵고, 따라서 소득 분배 평가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으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 OECD는 비공식 부문에 대한 안내서의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비공식 부문 통계에 대한 델리 그룹 (Delhi Group on Informal Sector Statistics)이 이 문제를 다룬 바 있는데, 이들이 연구를 위해 제기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 고용주들의 근로제, 기업의 “비공식적” 특성 (별도의 분리계정이 없는 경우), ‘미등록,’ ‘미신고,’ ‘비관측’ 개념과 (예컨대 불법 활동과 관련된 기업 포함) 관련하여 비공식 부문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 부문의 이질적 성격, 개인 회사의 짧은 수명, 잦은 이동, 계절적 운영 등의 이유로 인해 조사를 통한 직접 측정이 어렵다. 이의 해결방법은?

성격상, 비공식 부문의 활동은 전통적 데이터 수집 방법을 통해서 포착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개인사업주는 납세기록을 제출할 가능성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 회계 장부를 만들 필요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의 손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조사 응답자들이 사업활동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의 기준기간에도 영향을 준다. 어쨌든 이들의 사업목적에 위한 지출과 가계 지출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분명, 비공식 부문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론은 더욱 개발하고 점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노력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이런 유형의 소득 데이터를 작성하기가 불가능하여, 결국 소득분배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누락시키게 될 것이다.

# 부속서 1

## 소득구성요소의 정의

### 1. 근로 소득

근로 소득은 현금과 비현금 형태로 고용주가 지급하는 보수의 총량이다.

현금 또는 준현금

#### 1.1 현금 임금 및 봉급

포함 항목:

모든 근로 시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된 임금 및 봉급

무급 보수 (연차 등)

초과근무

법인 이사에게 지급된 보수

차별 성과급제

정부지원프로그램 외의 급여 (근로자 지원 등)를 포함한 육아 지원비

추가 사항

육아지원비는 사회적 이전이라기보다는 가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급여에 가깝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현금 임금 및 봉급에 포함된다.

고용주가 지급하는 모든 직무관련 비용은 임금 및 봉급과 함께 지급될 경우 공제되어야 한다. (예, 출장 교통비 및 숙박비)

## 1.2 봉사료 및 보너스

포함 항목:

봉사료

연말 보너스

현금 보너스

## 1.3 스톡옵션을 포함한 수익분배

포함 항목:

수익분배에 따른 급여, 현금 보너스 제외

추가 사항

일정 기간 후 고용인에게 이전될 때까지는 현금 소득으로 전환될 수 없는 스톡옵션도 여기에 포함된다. 스톡옵션의 정확한 가치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

## 1.4 해고 및 퇴직 수당

포함 항목:

근로자가 정상적인 은퇴기간에 다다르기 전 직장을 그만둘 때의 보상금

제외 항목:

정상적인 퇴직일에 지급되는 총량, 이는 자본 이전으로 간주됨.

추가 사항

정상적 퇴직일은 직장마다 차이가 있다. 예컨대, 군대나 경찰의 경우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부터 퇴직급여나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고 및 퇴직수당은 보통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규정된 퇴직연령 이전에 근무지를 떠나는 경우 수령한다.

### **1.5 고용계약으로 원격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포함 항목:

고용조건에 해당하며 특정 지방 등에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등의 급여

제외 항목:

출장경비 및 방호복 등 순수한 근로 관련 비용에 대한 급여는 제외 (근로자 비용으로 간주)

추가 사항

여기에는 군인 등 특별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지출에는 순수한 직무관련 비용은 제외된다.

‘복리후생’의 현금가치

### **1.6 고용주의 사회보험 부담금**

포함 항목:

고용주의 민간연금보험 부담금

고용주의 민간의료보험 부담금

고용주의 생명보험 부담금

기타 보험에 대한 고용주 부담금 (예. 장애)

고용주의 정부보험에 대한 부담금

(사회보험 급여 포함)

## 추가 사항

특히 정부업체의 경우 지급시점에 사용할 별도의 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요청이 있을 때에만 연금이나 기타 급여를 지급하는 비적립식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보험 부담금을 적립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잠재적 경제 후생은 그렇지 않는 근로자의 후생보다 훨씬 크게 되지만, 그 외의 모든 측면에서는 소득은 동일하다. 이 경우 이 항목의 명목 지급액을 계산해야 한다. 이 항목은 총소득 정의에는 포함되지만 가처분 소득을 도출할 때에는 지급 이전으로 간주되어 총소득에서 제한다.

## 실제 사례

고용주가 사회보험 부담금을 내는 경우, 직원들은 그 부담금액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구조사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고용주가 비적립식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 항목은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통해 추계를 하든지, 해당 사회보험기금에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또한 응답자로부터 관련 데이터 항목을 수집해야 성공적 모델링이 될 수 있다.

항목의 수치화가 쉽지 않아 다른 소득구성요소를 예측할 때의 주기만 가지고는 예측하기가 더욱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소득분배분석에는 아주 중요한 항목이다. 이 항목은 상대적으로 높은 현금 소득을 지닌 이들이 제공하는 일종의 보상이기 때문에, 이를 소득에 포함시킨다면, 소득 분배 평등성이 높아진다. 둘째, 소위 '보수총량 (remuneration packaging)'이 증가하면 시간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높아지는 항목이다. 셋째, 이런 형태의 보수총량은 다양한 과세제도와 제도적 요인 때문에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 1.7 고용계약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화와 서비스

#### 포함 항목:

고용주가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교통비, 전화비, 주거비, 의료비, 양육비, 휴가비, 저금리 지원 등 (모든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지원받는 형식. 고용주의 부담금만 포함된다.)

제외 항목:

고용주의 사회보험 부담금. 별도 항목으로 분류  
순수한 직무관련 비용 (고용주 비용으로 간주)

추가 사항

이 항목에서 근로자가 현금을 지급받을 경우도 있지만, 이는 특정 형태의 재화나 서비스 지출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지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고용계약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항목은 포함되지만,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목표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2. 개인사업 소득

개인사업 소득은 일부는 노동에 대한 대가이지만 근로자 소득은 아니다. 여기에는 비법인 기업에 투자한 자본에 대한 수익이 상당량 포함된다. (따라서 SNA에서는 '혼합소득'으로 불린다.)

현금 또는 준현금

### 2.1 비법인 기업의 손익

포함 항목:

비법인 기업의 사주나 파트너에 발생하는 순 영업 손익

제외 항목:

법인 기업의 사주가 벌어들인 이사의 보수, 이는 근로자 소득으로 간주된다.

법인 기업의 사주가 벌어들인 배당금. 이는 자산 소득으로 간주된다.

임대 소득 및 로열티, 이는 별도 항목으로 분류된다.

## 추가 사항

순 영업 손익은 총 수입에서 영업비, 임금 및 급료, 사회보험 부담금, 생산과 수입에 대한 조세, 기업 대출이자,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을 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순 영업 수익에는 사주나 파트너가 기업으로부터 가져간 현물 재화 및 서비스를 포함하며 총수입에는 수령 보조금이 포함된다.

손실은 부(-)의 소득으로 간주한다.

농민의 소득을 개인사업자 소득과 구별하는 국가도 있다.

## 실제 사례

데이터의 내부적 편집 및 절충 범위를 극대화하거나 이를 국민계정 데이터 등과 총량 수준에서 절충하기 위해서는 이자를 별도 항목으로 기록해야 한다. 4.1 참조.

## 2.2 로열티

### 포함 항목:

저작, 발명 등으로 벌어들이는 인세. 비법인 기업의 손익에 포함되지 않음.

## 추가 사항

로열티는 보유자에 지급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귀속 현물

가계는 다른 이로부터 구매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뿐 아니라 스스로 생산하거나 물물교환을 통해 수집한 재화나 서비스도 소비한다.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는 거래 기준이 되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내재적으로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자체 소비나 물물교환을 위한 가계생산도 경제적 후생의 상당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소득의 척도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 항목을 제외시킨다면, 국가간, 기간간, 또는 소득집단간 비교 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귀속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물물 교환용으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 가계 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 소득에서 소유자 거주 주택비용을 뺀 금액 등이 있다.

### **2.3 물물교환용으로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

**포함 항목:**

타 가계와의 교환용으로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에 생산 비용을 뺀 소득.

**추가 사항**

비현금 경제가 중요한 국가에서는 이 항목이 특히 중요하다.

**실제 사례**

가구소득 추계치와 비교되는 가계 지출 추계치에 이와 상응하는 항목이 존재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물물교환용의 생산은 자가소비와 쉽게 구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교환 과정은 가계간 교환되는 선물로 기록되기도 한다. 그런데 물물교환에 최종 소비와 중간 소비가 혼합되는 경우는 실제로 어떤 항목에 기록되는가가 논란이 된다.

### **2.4 자가소비용으로 생산된 재화**

**포함 항목:**

가계 내에서 생산 및 소비되는 재화의 가치에 생산 비용을 뺀 소득.

**추가 사항**

자급 농업이 상당히 존재하는 가구의 경우 특히 중요한 항목이다.

**실제 사례**

가구소득 추계치와 비교되는 가계 지출 추계치에 이와 상응하는 항목이 존재해야 한다.

## 2.5 소득에서 소유자 거주 주택비를 뺀 항목

### 포함 항목:

한 가게에서 제공된 서비스의 귀속 가치에서 주거비, 감가상각비 및 재산세 등을 뺀 소득

### 추가 사항

시기별 비교 혹은 국가간 비교를 위해 데이터를 작성할 때에는 주택을 어떻게 취급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어떤 이는 직접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주택관련 비용이 없을 수도 있다. 정부 보조금 지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출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주택을 임대해서 사는 경우, 임대료 등 주거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주택에 대한 취급방법을 통일시키기 위해, SNA는 모든 주택 소유주를 그 주택을 가게에 다시 임대하는 비법인 기업으로 가정하였다. 이 때 임대료는 시장 임대료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귀속 소득은 이 임대료에 임대인의 역할 시 발생하는 비용을 뺀 금액이 된다.

### 실제 사례

원칙적으로 소유자 거주 주택의 임대료는 이와 완전히 유사한 주택의 시장 임대료 환산 가치와 동일해야 한다. 주택의 임대료 환산가치는 위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유사한 유형의 주택이 임대되는 임대 시장이 발달된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런 항목의 가치를 추계하는 데에 적합한 시장 임대료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개도국의 외진 시골지역이나 대도시 주변의 판자촌은 더욱 그렇다.

임대 소득의 가치는 귀속 임대료 환산가치에 유지비 등을 포함한 투입 비용을 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자가생산을 위한 재료비, 투입 비용, 감가상각비와 재산세 등은 소비지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소비지출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수리 공구의 구입 등과 같이 소유자 거주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유자 거주 주택 구입에 사용된 대출이자를 소비자 대출이자 등 다른 형태의 이자와 별도로 추계하기가 쉽지 않다면, 이를 모두 결합하여 부의 자산 소득으로 포함한 다음 총 자산 소득에서 벌어들인 이자와 상쇄시켜야 한다.

### 3. 임대료에서 비용을 뺀 소득, 지대 제외

#### 포함 항목:

비법인 기업의 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영업용 건물, 차량, 장비 등의 임대료.  
기숙사비 혹은 하숙비

#### 제외 항목:

지대

#### 추가 사항

거시 계정에서는 토지를 제외한 임대 소득의 경우 획득 혹은 창출, 그리고 임대 항목의 보수 유지에 기업규모의 막대한 노력이 들기 때문에 개인사업 소득으로 간주한다. 반대로 지대는 자산 소득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현재 많은 국가의 미시적 통계에서는 임대 소득을 자산 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이 관행이다. 따라서 표 2.1의 틀에서는 자산 소득이나 개인사업 소득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범주로 취급했다.

#### 실제 사례

실제로 건물이 들어서 있는 지대는 건물 자체의 임대가치와 분리되기 힘들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는 농지 임대 외의 모든 임대 소득을 포함시킨다.

실제로 일부 비법인 기업의 임대 소득을 총 수익 또는 손실과 분리해서 추계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득은 개인 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된다.

#### 4. 자산 소득

자산 소득은 자산 소득에 다른 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비용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소유자 거주 주택의 소유자에 발생한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위 2.5절의 논의 참조.

##### 4.1 수령 이자에서 납입 이자를 뺀 금액

포함 항목:

비법인 기업의 손익에 포함되지 않은 수령 이자

예금 계좌, 양도성예금증서, 채권 등의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국민연금 등 의무적 가입 연금이나 고용주가 부담한 연금이 아니라, 수령자의 재량적 투자에 의한 수익 형태로 민간 보험에서 받는 연금 소득

추가 사항

원칙적으로 이자는 발생주의, 즉 실제로 수령한 때가 아니라 수령될 예정인 때를 기준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하지만 가계 수준에서는 수령한 때의 이자가 실제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모든 납입 이자를 뺀 순소득을 기록한다. 기업 대출과 관련된 이자(손익 도출 시 운영비로 간주), 소유자 거주 주택 담보대출에 관련된 이자, 소비자 부채와 관련된 이자와 구별된 이자를 항상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 대출에 대한 이자를 다른 형태의 이자와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모두 결합하여 부의 자산 소득으로 기록하여, 총 자산 소득에서 번 이자와 상쇄해야 한다. 그러나, 가능한 납입 이자와 수령 이자는 별도로 기록해야 한다.

일부 분석에서는 소비자 부채에 대한 이자를 구분하여,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 지출을 가처분 소득에서 공제하여 저축을 계산함과 동시에 함께 공제하는 것이

유용할 때도 있다. 이 경우, 저축을 계산함으로써 SNA 계산법과 일관성을 지닐 수 있게 된다.

## 4.2 배당금

배당금은 출자자에게 배당되는 개인 소득분이다. 법인의 경우 이 수익을 배당금이라 부르지만, 그 외에는 비법인 기업으로부터의 인출이라 부른다. 후자의 경우 슬리핑 파트너에 대한 지급도 포함된다.

### 포함 항목:

법인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금

주식 및 유추얼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비법인 기업으로부터의 인출, '슬리핑 파트너'에 대한 지급 등도 포함

민간 보험에서 배당금 형태로 받은 연금. 즉 국민연금 등 의무적 가입 연금이나 고용주가 부담한 연금이 아니라, 수급자의 재량으로 보험료를 낸 민간보험에서 이자 형식으로 받은 배당금

### 실제 사례

원칙적으로 배당금은 발생주의, 즉 실제로 수령한 때가 아니라 수령될 예정인 때를 기준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하지만 가계 수준에서는 수령한 때의 이자가 실제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다.

## 4.3 지대

### 포함 항목:

비법인 기업의 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지대

제외 항목:

지상 건물의 임대 소득

실제 사례

제 3절 - 임대료에서 비용을 뺀 소득, 지대 제외 - 논의 참조

## 5. 경상 이전 수령분

이전은 납입 및 수령 기간 동안 “반대 급부” 없이 수령 및 납입된 금액, - 퇴직 연금 -을 의미한다. 주로 정기적으로 수령 및 납입되며, 법률 등에 의해 의무적인 경우가 많다. 사회보험 부담금 및 급여가 모두 이전에 해당한다. 가계의 입장에서 볼 때 급여와 보험료는 흐름이 반대이다.

사회보험 급여 - 현금 또는 준현금

### 5.1 고용주 지원의 사회보험 급여

사회보험 급여는 수급자 혹은 수혜자에 의해 납입하거나 대신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다. 비적립식 고용 관련 급여 제도와 마찬가지로, 고용주는 고용 관련 급여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포함 항목:

고용주가 운영하는 민간보험제도 혹은 공무원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제도를 통해 지급받는 고용 관련 연금 및 기타 보험금

해외 정부로부터 받는 연금 및 기타 급여

군인 연금

사회보험 자격이 있는 민간 보험제도로 받는 실업, 질병, 장애, 의료보험 등

복리후생 일부로 지급되는 직원 가족의 교육비

제외 항목:

일시불 퇴직금

보험료가 정부나 고용주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형태가 아닌 부담자의 재량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제도의 급여

추가 사항

퇴직시 가입자가 일괄 지급 형태로 퇴직금을 받아가도록 허용 (또는 강제)하는 사회보험도 존재한다. 이 경우 그 후의 정기적 지급분은, 일괄 지급이 되지 않았을 경우보다 액수가 더 낮아진다. SNA는 모든 퇴직금은 사회보험 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상 이전으로 취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시불 퇴직금과 정기적 지급분을 별도로 알 필요는 없고, 납입된 모든 부담금과 급여를 동일 계정에 기장하면 된다. 그러나 소득분배분석에서는, 일괄 지급분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자본 이전으로 취급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표 2.1이 아니라 표 2.2에 나타냈다.

여기서 지불된 급여는 민간 사회보험에 납입한 7.1 고용주의 사회보험 부담금 및 7.2, 근로자의 사회보험 부담금에 나타난 사회보험 부담금에 상응한다.

가입자가 완전히 재량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한 민간 보험금은 비생명 보험금이어서 표 2.1에 정의된 소득 범위 밖일 수도 있고, 연금 혹은 유사한 투자 수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일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자산 소득으로 간주되어 4.1 혹은 4.2에 해당된다.

실제 사례

가구조사에서 사회 급여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시, 가능한 포괄적으로 사회적 급여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 5.2 정부 지급의 사회보험 급여

사회보험 급여는 수급자나 수혜자에 의해 또는 대신에 지급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다. 비적립식 고용 관련 급여 제도와 마찬가지로, 고용주는 고용 관련 급여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포함 항목:**

고용관련 연금 및 기타 정부지급 보험금

**제외 항목:**

공무원을 위해 운영되는 정부의 보험제도를 통한 급여. 이들은 고용주 지급 사회보험 급여 (4.1 참조)으로 취급된다.

일시불 퇴직금

정부가 배상하는 의료비, 이는 사회적 현물 이전으로 간주된다.

추가 사항

여기서 지급하는 급여는 7.1 고용주의 사회보험 부담금 및 7.2 근로자의 사회보험 부담금에 해당하는 사회보험 부담금에 상응한다. 5.1의 일시불 퇴직금에 대한 설명 참조.

실제 사례

가구조사에서 사회 급여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시, 가능한 포괄적으로 사회적 급여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정부 지급의 사회부조 급여-현금 또는 준현금

### **5.3 정부 지급의 종합사회부조 급여 (자산조사 불필요)**

**포함 항목:**

고용관련 혹은 수급자의 기여에 따라 받는 연금 및 수당 외 노령, 실업, 질병, 장애 등의 연금 및 수당.

출산수당, 가족수당, 아동수당  
정부 보조 장학금 및 기타 교육지원  
자산조사에 의한 학생대출이자의 감면  
세액 공제 (7.3 소득세 참조)

제외 항목:

임대료 수당 (주택 보조금)  
환급 의료비  
기타 사회적 현물 급여

실제 사례

가구조사에서 사회 급여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시, 가능한 포괄적으로 사회적 급여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 **5.4 자산조사에 따른 사회부조 급여**

기타 소득 (및 또는 저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개인, 가족 혹은 가구에 정부가 지급하는 급여.

포함 항목:

노령, 실업, 질병, 장애 등의 연금 및 수당  
출산수당, 가족수당, 아동수당  
정부 보조 장학금 및 기타 교육지원  
자산조사에 의한 학생대출이자의 감면  
세액 공제 (7.3 소득세 참조)

제외 항목:

임대료 수당 (주택 보조금)

환급 의료비

기타 사회적 현물 급여

실제 사례

가구조사에서 사회 급여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시, 가능한 포괄적으로 사회적 급여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민간 현금 이전

## 5.5 가구간 정기적 현금 이전

포함 항목:

의무적 이혼 수당 및 양육비

자발적 이혼 수당 및 양육비 (정기적)

해외 가구의 정기적 지급

타가구로부터의 정기적 소득지원 (유학 자녀 혹은 다른 가구에 사는 노인 친인척에 대한 지원)

제외 항목:

대출보상 등, 소득 지원 외의 지급

추가 사항

자발적 지원이 정기적으로 수행되는가의 여부를 결정할 경우 자의적 요인이 존재하지만, 정기적인 자발적 지급을 이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법적 구속 대상이 되는가의 여부는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만일 정기적 지원이며, 이에 대해 지원자가 자신의 가처분 소득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수급자는 자신의 가처분 소득에

더해진다는 점을 인정하는 이상, 법원의 명령이 없다 하더라도 이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논리적이다.

가구를 정의할 때 해외 유학 중인 자녀를 가구 개념에 포함시키느냐의 여부는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해외 유학 중인 자녀 및 다른 가구에 사는 노인 친인척 등에 대한 정기적 지급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이에 대해 7.5 가구간 정기적 이전 참조.

#### 실제 사례

실제사례가 어쨌든, 이 항목에 대해서는 7.5의 항목에 대한 데이터 수집 사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다면 가처분 소득의 이중 계산 혹은 과소 계산의 결과를 범하게 될 우려가 있다.

### 5.6 자선단체 등 비영리 기관의 정기적 지원

#### 포함 항목:

비영리 기관이 가구에 제공하는 정기적 원조  
노조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파업수당  
공익신탁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 제외 항목:

모든 일괄지급 및 일회성 지급

## 6. 총소득

### (1에서 5까지 합산)

총소득은 가구 밖 실체인 정부, 기업, 비영리 기관 및 기타 가구로부터 받는 모든 현금

및 비현금 수입의 합체이다. 총소득은 임금, 자산 소득, 이전, 가구가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재화의 귀속 가치 및 소유자 거주 주택의 귀속 임대료 등으로 구성된다.

실제 사례

소득구성요소 중에는 특히 그 액수를 추계하기가 어려운 요소가 있다. 따라서 가구가 받는 현금 유량을 대표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시켜야 한다. 그 다음 소득 분배분석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비현금 소득구성요소를 계산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제 4장 참조.

## 7. 경상 이전 지급분

의무적 지급분에는 소득세 및 사회적 부담금이 포함된다. 가처분 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총소득에서 이 항목 (가구간 가족지원금)을 공제한다.

### 7.1 고용주의 사회보험 부담금

이 항목은 1.6의 항목과 동일하며, 직원을 대신해서 고용주가 지급하는 부담금으로 총소득 계산시에는 임금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해당 사회보험으로 즉시 이전되기 때문에 회계기간 동안에는 소비를 위한 소득은 될 수 없다.

실제 사례

항목 1.6이 이행되는 경우, 여기서도 동일하게 취급된다.

### 7.2 근로자의 사회보험 부담금

포함 항목:

근로자가 정부나 의무적 민간사회보험 (연금, 건강보험) 등에 내는 부담금

제외 항목:

가입자의 재량으로 가입한 민간보험 부담금

추가 사항

총 사회보험 부담금은 고용주 (7.1)와 근로자 (7.2) 기여분으로 구성된다.

특정 사회보험의 경우, 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무적 성격에 대한 보상차원이자 투자의 형식으로 고용주의 부담금 비중이 더 많은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의무적 기여와 자발적 기여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둘 다 이 항목에 포함시킨다.

### 7.3 소득세

포함 항목:

환급분을 제한 소득세

사냥, 사격, 낚시에 대한 의무적 수수료 및 과태료

추가 사항

국민계정의 수치와 완벽히 일치시키려면 소득세는 발생주의 기반으로 기록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그 해 과납된 세금을 연말에 돌려받는 환급절차이다. 물론 미납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이러한 세금 환급과 추가 납입분은 납세분에서 공제하거나 추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과세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올해 소득에 대해 내년에 납부할 세금이 아닌 올해 내어야 할 소득세를 기록해야 한다.

물론 조세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할 경우도 있는데, 이는 개념적, 실천적으로 세금 환급과 별도로 취급되어야 한다. 세액 공제 혹은 세금 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구실을 한다. 거시 자료에서는 세액 공제를 고려한 이후에야 납부 세액이 정해진다. 반면 소득 분배 부문에서는 다양한 세액 공제 제도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총 납부 세액이 얼마인가 계산한 후 총 공제 세액을 상쇄 항목으로 보여준다.

세액 공제액이 추가 납세액보다 많을 경우가 있다. 지급자에 현금으로 차액을 돌려주는 국가의 경우 이 환급분은 사회부조로 나타나고 항목 5.4 자산조사에 따른 사회부조 급여에 포함된다. 이 경우 거시 자료에서는 이 공제액을 징세기관에서 지급하는 항목으로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가 부과하는 수수료나 과태료 등도 조세 또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불릴 수도 있다. 이들은 국가마다 다르고, 수수료 대신 받는 서비스의 범위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조세로, 어떤 것을 서비스 수수료로 간주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가 불가능하다. SNA에서 채택한 협약에 따르면 사냥, 사격, 낚시 면허에 부과되는 수수료 및 과태료는 조세로, 기타 모든 과태료와 수수료는 서비스료로 간주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그 가구의 소비 지출로 분류될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수수료와 기타 과태료 등을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크게 오류를 범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 실제 사례

소득 통계 작성을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에서 한 가구의 소득세 납부금을 직접 도출하기는 힘들다. 특히 연간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더욱 힘들다. 그렇다면, 소득세 납부금을 시뮬레이션으로 추계해야 한다. 물론 개인 소득에 부과된 경우 한 가구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추계하기도 쉽지는 않다.

일부 국가에서는 총소득을 추계하기 위해, 소득세분을 계산한 다음 수입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세후 소득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한다.

### 7.4 정기적 재산세

#### 포함 항목:

토지세 (농지에 대한 조세 제외)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재산세

## 추가 사항

자신이 소유한 주택 거주자가 납부하는 재산세 또는 주택 소유자가 임대 소득에서 납부하는 재산세는 생산세로 분류되며, 이를 공제하면 소유 주택 거주자의 귀속 임대 소득이 계산된다. 만일 임차인이 임대료 외에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면, 이 항목에 포함된다.

또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재산세만 이 항목에 해당된다. 예컨대, 차량이나 보트 등의 자산에 대한 조세가 이에 해당된다. 상속세 등 비정기적 조세는 부유로 표 2.2에 포함된다.

## 실제 사례

재산세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되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료에서 조세 요소를 분리하는 것이 좋지만 데이터 한계가 존재한다. 예컨대, 소유주는 납세금을 알고 있지만, 임차인은 이를 알지 못해 가구조사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다.

## 7.5 가구간 정기적 현금 이전

### 포함 항목:

의무적 이혼 수당 및 양육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자발적 이혼 수당 및 양육비

해외 유학 중인 자녀나 노인 친척과 같이 다른 가구에 사는 가구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기타 정기적 지원

### 제외 항목:

소득 지원이 아닌 대출 보상과 같은 지급

## 추가 사항

5.5 가구간 정기적 이전 항목에 해당된다.

## 실제 사례

실제사례가 어떻든, 이 항목에 대해서는 7.5의 항목에 대한 데이터 수집 사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다면 가처분 소득의 이중 계산 혹은 과소 계산의 결과를 범하게 될 우려가 있다.

### 7.6 자선단체 등 비영리 기관에 대한 정기적 이전

#### 포함 항목:

노동조합비, 자선단체 (또는 전문단체 등)에 내는 회비

### 8. 가처분 소득 (6-7)

가구소득을 합산할 경우, 사회보험 부담금과 급여 등 상당한 금액이 이중 계산되어 총소득에 합산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기적으로 다른 가구를 지원하는 가구와 지원 받는 가구의 소득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가처분 소득이란 총소득에서 직접세와 의무적 지원, 가구간 가족지원금 등을 뺀 금액으로 정의된다. 모든 가구를 합산한 총 금액에서 개별가구 및 전체 경제에서의 이중 계산을 제외시킨 가처분 소득은 소비와 재량적 저축의 원천이 된다.

### 9. 사회적 현물 이전 (STIK)

사회적 현물 이전에 포함된 항목에는 보건 및 교육과 같은 정부의 개별 서비스, 현물 사회보장 및 사회부조 급여 (소비자 보조금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초기에는 개별가구가 총당하지만 후에 정부에서 보상하는 의료비 등이 있다. (유럽 대륙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료비 지원 방식)

#### 포함 항목:

정부의 사회보험제도 하에서 보상 받는 의료비

정부의 사회보험제도 하에서 제공받는 의료 서비스

임대료 수당 (주택 보조금)

식품 보조금 또는 식품 교환권

공공소유주택 보조금

공교육

의료비 (사회보험에서 제공되지 않는)

문화 및 오락 서비스

특정 범주의 가구를 위한 교통 보조비 (노인을 위한 교통비 할인 또는 무료정책)

제외 항목:

위 서비스에 대해 가구가 지급하는 명목 가치

추가 사항

공영 주택 지원금은, 소유자 거주 주택의 임대료 환산 가치에서 유추하여 계산한다.

## 10. 조정 가처분 소득

### (8 + 9)

사회적 현물 이전의 수급자는 그 이전의 소득 대체금의 활용에 대한 선택권이 없지만, 그 이전의 가치를 포함한다면, 가처분 소득을 소비지출과 관련 짓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정 가처분 소득을 실제 소비와 연관시킬 수 있다.

## 부속서 2

# 미시-거시 개념 및 용어의 융합

### 1. 도입

이 부속서에서는 소득의 분류와 가구소득 분배 수립에서 차이를 보이는 미시적 접근법과 거시적 접근법을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표 2.1에서 나타난 소득 범주와 소득 총량의 수립 방법 차이에 대해 고찰하려 한다. 여기서는 서로 합의된 유형의 소득을 넣을 수 있는 “상자”를 만들어, 두 전통에서 비롯된 다양한 분석 유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각자의 순서에 따라 이를 조립하려 한다. 그 다음 공통 토대를 결정하거나, 적어도 이 두 가지 접근법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여, 두 가지 전통이 어디까지 화합할 수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 2.2에 의거, 가구의 소득을 넘어 소득과 자산까지 이 둘의 새로운 관계를 넓혀볼 것이다.

#### 1.1 소득 유형 또는 지급 수단

거시적 접근법에서는 지급 수단과 무관하게 유량을 발생시키는 거래 유형에 따라 가구소득을 분류한다. 반면 가구조사 데이터 수집 방법에 토대를 두는 미시적 접근법은 이와 방향이 반대이다. 지급 수단은 중요한 차별적 요인이며 지급 근거는 부차적이다. 따라서 이 둘을 조화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소득원과 지급 수단 모두를 고려한 2차원적 분류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소득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i) 경제활동 (생산) 참여로 발생하는 유량. 임금 및 근로 소득 등.
- ii) 금융 및 기타 자산의 소유로 발생하는 유량. 이자 등.
- iii) 의무적 성격의 이전. 세금 등.
- iv) 자발적 이전. 가구간 선물 및 기타 소득 등.

지급 수단은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 A. 수령인이 제한 없이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현금. 현금의 대부분은 가구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간단히 말하면 현금 수입이라 부른다.
- B. 고용계약의 일부로 받지만 수령인이 지출 방법을 결정할 수 없는 수단. 이에는 회사차량, 출장비 또는 광열비 할인 등이 포함된다. 통상 차량은 그대로 지급되고 여행경비나 광열비는 먼저 가구에서 지급한 다음 초과분에 대해 보상을 받는 형태로 지원받는다. 이들을 통틀어 현물 수입이라 부른다.
- C. 일부는 고용계약에 의해 지급되고 일부는 다른 근거에 의해 지급되는 종류로, 수령자가 그 수입을 저축할 수밖에 없다. 이를 강제 저축 수입으로 부른다.
- D. 그 가구가 자체 사용을 위해 생산한 재화에서 발생한 부의 증가. 이 경우, 시장에서 이와 상응하는 재화의 가치에 해당 재화의 생산에 들어간 직접비를 제하여 귀속 소득을 결정한다. 소유자 거주 주택 (OOD)의 귀속 임대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이들 항목은 자가 생산 재화 및 OOD 소득으로 부른다.
- E. 후생 측정의 한 방법으로, 가구 내 생산 및 사용되는 서비스 가치를 추계할 수도 있는데, 이를 자가 생산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부른다.
- F. 후생의 개념을 확장시킨다면, 정부가 가구에 무료로 혹은 저가로 제공하는 서비스 - 보건, 교육, 후생, 문화 등-에 대한 소비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들을 사회적 현물 이전으로 부른다. 이러한 소비의 확대된 가치에 상응하는 소득 개념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적 현물 이전의 귀속 수입을 기장해야 한다.
- G. 마지막으로, 수입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지출을 제외한 순수입을 기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상응 지출이 기입될 수 있도록 열이 추가된다.

부속서 표 1의 행은 네 종류의 소득을, 7개 열은 지급 수단을 나타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텍스트에서는 각 셀을 검토하여 제 2장과 부속서 1에서 규명된 상세한 소득 항목이 이 표와 일치하는지 살펴보았다. 개별 소득요소에 사용된 숫자 (1.1, 1.2 등)은 표

2.1에 나온 것과 일치하지만, 부속서 4에서는 1.1A, 1.1B 등으로 더 상세하게 소득요소를 분해하였다.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메타조사에서 수집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정보이다.

## 2. 현금 수입 (A열)

수령인이 제한 없이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현금을 의미한다. A열에는 '음의 수입'을 별도로 기장할 수 있다.

### 2.1 생산 참여로 발생하는 소득

생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수입을 두 가지 - 근로자의 임금 및 봉급, 개인사업자의 소득-로 기장된다.

#### 근로자

아래 항목 1A는 부속서 표 1의 셀 1에 나타난 항목을 보여주며, 행에는 임금 및 봉급, 열에는 현금 지급분을 나타냈다.

---

#### 항목 1A: 현금 임금 및 봉급

---

1.1A 임금 및 봉급 (주업)

1.1B 임금 및 봉급 (부업)

1.1C 자녀 양육비

1.1D 육아 보조금

1.1E 비자발적 근로비용에 대한 고용주의 환급분 (임금 및 봉급에 포함된다면 이를 공제)

1.1F 자발적 근로비용에 대한 고용주의 환급분 (임금 및 봉급에 포함된다면 이를 공제)

1.2A 봉사료

1.2B 보너스

1.3 스톡옵션을 포함한 수익분배

1.4 해고 및 퇴직 수당

1.5 군인 가족 및 해외 주재원 등 원격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

항목 1.1E 비자발적 근로비용에 대한 고용주의 환급분과 1.1F 자발적 근로비용에 대한 고용주의 환급분 등의 비용은 고용주의 생산비용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이들이 임금 및

봉급에 포함되고, 1.1A 혹은 1.1B에서 공제된다면, 이는 표 1 또는 2에만 존재하는 사항이다.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비법인 기업에서 받은 보수에는 확장된 근로에 대한 보상 및 사용자본에 대한 수익 요소 모두가 포함된다. 이 때문에 SNA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수입을 혼합 소득이라 정의한다. 농민 소득과 개인사업자 소득을 구분하는 일부 국가도 있지만 대규모 농장기업, 또는 소규모이지만 법인 농장인 경우, SNA에서는 이들 농민을 기업의 근로자로 취급하고 이들 소득을 근로자의 소득에 포함시킨다.

기타 개인사업자 소득에는 두 가지 특별 소득 - 자산, 차량 혹은 장비 임대 (순) 소득 및 저작, 창작 등에 대한 개인의 로열티 - 을 포함시켜야 한다. 농민의 경우, 그 개인이 법인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임대 소득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임대 소득으로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SNA) 자산 소득에 포함시키는 국가도 존재하는 등, 국가마다 임대 소득을 취급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표 2.1에서는 이를 별도의 범주로 나타냈다.

---

### 항목 2A: 현금 혼합 소득

2.1A (순) 비농민 개인사업 소득

2.1B (순) 농민 개인사업 소득

3 비법인 기업으로서 가구가 버는 임대 소득 (지대 제외)

2.2 비법인 기업으로서 가구가 버는 로열티

2.3 물물교환용 가내생산에서 발생한 순소득 (비용제외 후)

---

## 2.2 자산 소득

자산 소득은 특정 유형의 자산을 다른 이에게 임대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한다. 자산 소득에는 금융자본의 이자, 주식 배당금 및 지대가 있다.

SNA는 소유주가 유지보수의 책임을 지며 임차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과 장비 임대와 보수유지의 책임이 없는 자산 임대를 구별하고 있다. 주택이나 장비 임대는

생산활동으로 간주되며, 이를 통해 받는 소득은 혼합 소득이기 때문에 위 항목 2A에 해당된다. (이는 1968 SNA에서 권고된 사항이지만 많은 국가들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 소득분배통계에 관한 UN의 잠정적 가이드라인 및 가구의 소비와 자산 (M61, UN, 1977)에서도 주택 임대를 자산 소득으로 간주한다.)

주택 임대료를 고용 소득으로 간주할 것인가 아니면 자산 소득으로 간주할 것인가는 이 두 가지 소득을 구별하는 것이 분석적 의미가 있을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 두 소득 모두는 총 1차적 소득에 포함된다.

## 이자

SNA는 다소 복합적인 이자 기장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SNA는 관찰된 이자 (interest as observed)를 특정 서비스에 대한 지불 요소와 “순수”한 이자 요소로 나눈다. 이자를 이렇게 구분할 경우, 상대적으로 가구의 미수이자(는) 증가하고 미지급 이자는 감소하게 된다. 가 수령할 이자는 좀더 증가하고, 납입 이자는 감소한다. 계산된 이자 (calculated interest)와 관찰된 이자 (interest as observed) 가치의 차이는 은행서비스에 대한 소비 지출로 기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 가처분 소득과 소비는 상대적으로 증가하지만, 저축은 이자를 위와 같이 나누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다.

물론, 이는 가구를 분해해서 분석할 경우뿐만 아니라 가구 전체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잘 적용되는가에 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다. 따라서 이 표에서는 위와 같이 이자를 구분하지는 않았다.

표의 현금 수입 열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장된다.

---

### 항목 5A: 수령 이자:

#### 4.1A 수령 이자

#### 4.1B 부동산 및 신탁 이자

---

표 2.1에서는 항목 4.1의 납입 이자를 수령 이자에서 제한다. 이로서 소득은 기업 대출이나 주택 소유주이자 거주자나 소유주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 등 어떤 종류의 대출이자도 없는 순소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SNA의 권고에도 부합된다. 그러나

수령 이자와 납입 이자의 유량을 따로 측정하도록 하기 위해, 표 1의 G열에는 납입 이자를 나타내도록 되어 있다. - 5G와 6G 참조

## 배당금

배당금은 출자자에게 배당되는 개인 소득분이다. 법인의 경우 이 수익을 배당금이라 부르지만, 그 외에는 비법인 기업으로부터의 인출 (withdrawals from non-corporate enterprises)라 부른다. 후자의 경우 슬리핑 파트너 (출자만 하고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지급도 포함된다.

### 항목 7A: 배당금

#### 4.2A 배당금

#### 4.2B 부동산 및 신탁 배당금

#### 4.2D 비법인에 대한 출자 수익

## 지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대만이 자산 소득에 해당된다. 다른 임대료는 혼합 소득으로 간주한다.

### 항목 9A: 지대

#### 4.3 비법인 기업으로서 가구가 받은 지대

## 2.3 이전

소득과 관련된 세 번째 유량 지표는 이전이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경상 이전은 가처분 소득을 도출하기 전에 기장하며 원칙적으로 이전이 성격상 경상 이전인가 또는 자본 이전인가에 대해서만 결정한다. 반면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이 외에도 두 가지의 문제가 추가된다. 첫 번째는 일부 경상 이전이 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지출로 분류되어야 하는가 이다. 둘째 문제는 경상 이전과 자본 이전으로 나눈 SNA의 정책을 미시 분석에서도 적용해야 하는가의 여부이다. 제 2장에서는 소득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이전과, 지출로 취급되어야 하는 이전을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대해

권고를 제시한 바 있다. 소득에 해당하는 이전에는 의무적 이전과 가구간, 가구와 가계지원 비영리기관간 정기적, 준 의무적 이전이 있다. 지출 이전에는 자발적, 비정기적 이전이 있다. 자발적 이전의 취급 방법은 소비 및 자본축적으로의 계정 확대를 설명한 절에서 기술하였다.

#### 의무적 이전 및 가구간 정기적 이전

이에는 소득세, 연금 및 기타 일반 사회보험 관련 급여, 가족 지원 급여 등이 있다. 소득세는 가구가 정부에 내는 의무적 이전이다. 수령과 지급 주체가 모두 가구인 경우 이 외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이 경우 수령과 지급 주체가 동일한 가구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로 그 외의 범주에 속한다.

#### 사회보험, 사회보장 및 사회부조

사회보험 부담금과 사회보험 급여는 아주 복잡한 기장을 요한다. 연금과 관련된 항목은 세 개가 있는데, 첫째, 고용주가 근로자를 대신해 내는 부담금이며, 이는 근로자 보상으로 기장된다. 근로자들은 고용주에게 (또는 연금기관에)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이 연금과 관련된 두 번째 요소이다. 세 번째 요소는 연금 수령자나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보험 급여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낸 연금 부담금은 낸 시점에 기장되며 (따라서 가처분 소득에서 공제), 급여는 실제로 지급된 시점에 기장된다. (따라서 수급자의 가처분 소득에 부가). 이 급여와 부담금의 기장 과정을 보면 연금 제도 등이 근로자로부터 비근로자에게의 소득 재분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연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으로 불릴 수 있는 연금만이 이런 방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SNA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제도는 고용주나 정부가 참여를 강제해야 하는 제도이다. 만일 민간연금보험이라도, 고용 조건으로서 가입이 강제된다면, 이에 포함된다. 여기서 배제되는 것은 고용주나 정부의 강요가 없는 자발적 연금제도이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혹은 실업 상태의 개인들이 민간 보험에 가입한다. 이들도 일부 특히 사회보장이라고 불리는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다. 대부분의 민간연금이 사회보험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에 배제되는 연금을 비근로자 연금제도로

부른다. 이 비근로자 연금은 수익성 금융자산 획득을 위한 저축의 활용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이자나 배당금 등의 축적 등으로 진화하였다. 비근로자 연금상품을 이렇게 간주하는 이유는 i) 개인이 언제 자신의 저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연금에 기대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의 실질적 어려움, ii) “제 3자”가 참여하는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언뜻 보면, 연금 급여는 이자나 배당금과 유사해 보여 자산 소득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SNA는 연금보험을 다르게 취급한다. 그 이유는 적립식 연금의 경우, 연금 자산으로서 가계의 자산에 해당하지만, 유럽 대륙의 경우 비적립 방식을 취한다. 이 방식은 현재 근로자에게서 이전 근로자에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SNA는 사회보험 부담금 및 급여를 보험료와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자산 소득이 아닌 이전으로 간주한다.

## 사회보험 급여

사회보험 급여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하에서 받은 모든 급여를 포괄한다. 자산조사 여부 또는 과거 부담금 (사회부조), 고용주가 운용하는 사회보험제도 급여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급여가 포함된다. 연금도 여기에 기장되기 때문에 은퇴 가구의 경우 이 항목이 총소득에서 최대 규모를 차지할 것이다. 비근로자, 그리고 사회후생 대상자에게도 다른 소득수입보다도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제 2장에서 논의했듯이 이 가이드라인은 일괄 연금 급여를 경상 이전이 아닌 자본으로 간주한다는 SNA의 권고를 따르기 때문에, 일괄 연금 급여는 항목 10A, 11A 및 12A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 항목 10A, 11A, 12A: 사회보험 급여

5.1A 고용주 지원의 연금 또는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 및 자발적 부담금으로 받는 정기적 연금

5.1B 해외 연금

5.3A 가족 또는 육아 급여/보조/수당

5.3B 출산 급여/수당/보조금

5.2A 정부 사회보장 (퇴직자 및 유가족) 급여

- 5.2B 정부 장애보험/무능력/장해 급여
- 5.2C 정부 실업 급여/구직 수당 - 자산조사 무관
- 5.2D 근무 중 상해 근로자에 대한 정부 보상
- 5.3C 정부 장학금 & 교육비 지원 (대출 제외)
- 5.1D 민간 장학금 & 교육비 지원 (대출 제외)
- 5.3D 학자금 대출이자 감면
- 5.2E 정부 질병/의료 급여
- 5.2G 고용 증진을 위한 육아 보조금
- 5.2F 퇴역 군인 연금 (상해, 연금 등)
- 5.4A 자산조사에 따른 자녀 지원 보증 (공적) 급여
- 5.4B 자산조사에 따른 공적 부조 또는 일반 후생 급여
- 5.4C 자산조사에 따른 노인층 공적 부조
- 5.4D 자산조사에 따른 실업 급여
- 5.4E 자산조사에 따른 장애 지원
- 5.4F 자산조사에 따른 노령 연금
- 5.4G 기타 자산조사에 따른 이전 프로그램
- 5.4H 자녀 세액 공제
- 5.4I 근로 소득 세액 공제
- 5.4J 기타 세액 공제

부속서 4의 메타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일부 소득구성요소의 경우, 민간 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의무적 고용주 지원 제도인지 혹은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간 보험인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 이 부속서에서는 후자를 가정하였기 때문에, 해당 항목은 비생명보험에 대한 보험금으로 간주하여 아래 24A에 포함시켰다.

세액 공제의 기장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소득세 논의 참조.

## 사회보험 부담금

A열의 셀은 근로자 부담금만 해당된다. 고용주의 부담금은 C열을 논의하면서 설명한다.

---

### 항목 17A: 근로자의 사회보험 부담금

7.2A 의무적 민간 사회보험에 대한 근로자 부담금 (연금, 건강보험, 등.)

7.2B 의무적 정부 사회보험에 대한 근로자 부담금

7.2C 정부 강제의 실업 보험에 대한 근로자 부담금

---

## 가구간 정기적 이전

초기에 SNA는 가구간 이전을 이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가구는 집합적으로 취급되어, 가구간 이전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계 부문이 세분되면서 가구간 이전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 항목 13A: 가구간 정기적 이전 (수령)

5.5A 다른 가구로부터 받는 이혼 수당

5.5B 다른 가구로부터 받는 양육비

다른 가구로부터의 수급분

5.5C 다른 가구로부터 받는 정기적 현금 이전 (선물)

---

### 항목 19A: 가구간 정기적 이전 (지급)

7.5A 다른 가구에 지급하는 이혼 수당

7.5B 다른 가구에 지급하는 양육비

7.5C 다른 가구를 대신한 지급분

7.5D 다른 가구에 지급하는 정기적 현금 이전 (선물)

---

다른 가구를 대신한 지급은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일 수 있다. 가구의 미시데이터에 기장될 대부분의 항목은 정기적이라 가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킨다. 만일 비정기적으로 나타난다면 아래 항목 21A에 나타난다.

## 2.4 소득세와 재산세 등

엄격히 말하자면, 소득세와 재산세는 대부분의 가구에서 유일하게 의무적인 경상이전이다. 여기에는 소득세, 재산 및 영업용 차량이 아닌 차량 등록세 등 항목에 대한 중복 과세가 포함된다. 국민계정의 수치와 완벽히 일치시키려면 소득세는 발생주의 기반으로 기장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그 해 과납된 세금을 연말에 돌려받는 환급절차이다. 이러한 환급분은 납세분에서 제해야 한다.

물론 조세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할 경우도 있는데, 이는 개념적, 실천적으로 세금 환급과 별도로 취급되어야 한다. 세액 공제 혹은 세금 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구실을 한다. 거시 자료에서는 세액 공제를 고려한 이후에야 납부 세액이 정해진다. 반면 소득 분배 부문에서는 다양한 세액 공제 제도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총 납부 세액이 얼마인가 계산한 후 총 공제 세액을 상쇄 항목으로 보여준다.

세액 공제액이 추가 납세액보다 많을 경우가 있다. 수급자에 현금으로 차액을 돌려주는 국가의 경우 이 환급분은 사회부조로 나타나고 항목 12A 사회부조 급여에 포함된다. 이 경우 거시 자료에서는 이 공제액을 징세기관에서 지급하는 항목으로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

소득 비교 (특히 지출 비교)에서의 왜곡을 제거하기 위해 소유자 거주 주택의 귀속 임대료를 포함시키는 내용은 항목 3D와 관련하여 아래에 논의된다. 재산세를 이중 계산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이 소유한 주택 거주자가 납부하는 재산세 또는 주택 소유자가 임대 소득에서 납부하는 재산세는 생산세로 분류되며, 이를 공제하면 소유 주택 거주자의 귀속 임대 소득이 계산된다. 만일 임차인이 임대료 외에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면, 이 항목에 포함된다.

---

### 항목 18A: 소득세와 재산세 등

#### 7.3A 환급분을 제한 소득세

#### 7.4 재산세 (부동산세)

#### 7.3B 사냥, 사격, 낚시에 대한 의무적 수수료 및 과태료

---

### 3. 현물 수입 (B열)

표 1의 B열은 셀 하나만 포함한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사회보험에 대한 부담금을 제외한 모든 "현물" 급여가 이에 해당한다.

항목 1B는 근로자의 자유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현금을 제외하고, 근로조건의 일부로 근로자에게 제공 가능한 모든 항목을 의미한다. 부속서 4, 그리고 아래 항목에서 그 전형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1.7A-1.7F의 항목에 포함된 금액은 청구 금액 (invoiced amount)와 근로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간의 차를 의미한다.

---

#### 항목 1B: 현물로 지급된 임금 및 봉급

1.7A 회사차량

1.7B 식대

1.7C 대출 지원 (저리)

1.7D 주택 및 광열비 지원

1.7E 육아 지원

1.7F 휴가 지원

---

### 4. 강제 저축 수입 (C열)

#### 4.1 고용주의 사회보험 부담금

사회보험 부담금 및 급여를 기장하는 다소 복잡한 방식은 앞서 설명한 바 있다. C열의 항목에는 고용주가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지급하는 부담금만 관련된다. 현물 수입처럼, 이 부담금도 고용계약 사항이며 "복리후생"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대신해 연금을 낸다면, 근로자의 복리가 향상 되겠지만, 이러한 부담금은 저축의 성격으로, 즉시 지출이 불가능하다.

---

#### 항목 1C: 고용주의 사회적 부담금

1.6A 고용주의 민간연금보험 부담금

1.6B 고용주의 민간의료보험 부담금

1.6C 고용주의 생명보험 부담금

1.6D 기타 보험에 대한 고용주의 부담금 (예, 장애)

1.6E 정부보험에 대한 고용주의 부담금 (사회보장 부담금 등)

---

여기는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는 정부 강제 제도와 근로자를 위해 고용주가 운용하는 제도가 모두 해당되며, 장애 및 실업 보험, 일반 건강 보험과 같은 사회보험과 연금보험 등이 포함된다.

이 항목은 제 C열 셀 16C의 소득에 대한 공제분으로 나타난다.

---

**항목 16C:** 고용주의 사회적 부담금

1.6A 고용주의 민간연금보험 부담금

1.6B 고용주의 민간의료보험 부담금

1.6C 고용주의 생명보험 부담금

1.6D 기타 보험에 대한 고용주의 부담금 (예, 장애)

1.6E 정부보험에 대한 고용주의 부담금 (사회보장 부담금 등)

---

#### 4.2 자산 소득

항목 5A 및 7A은 이자 및 배당금 수입을 보여준다. 원칙적으로 이자와 배당금은 발생주의 기반의 거시 자료에 기장되어야 한다. 즉, 실제 지급된 때가 아니라 지급 예정인 때를 기준으로 기장되어야 한다. 때로는 이 차이가 아주 크다. 물론 가구소득분배통계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정보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지만, 표 1에는 거시 수준에 완전히 적합하도록 이를 조정하기 위한 셀이 존재한다.

---

**항목 5C:** 지급분을 제외한 이자 수입

강제 저축 - 지급분을 제외한 이자 수입

**항목 7C:** 지급분을 제외한 배당금

강제 저축- 지급분을 제외한 배당금

---

#### 4.3 연금 기금 조정

연금 기금은 연금과 관련된 네 번째 SNA 항목이다. 가구는 사회보험료를 내고 급여를

받는다. 1년 이상이 지나면, 보험료와 급여간 불일치로 연금 기금의 순자산에 변화가 나타난다. 이 기금은 가계에 속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계 저축에 포함되어야 한다. SNA는 소득 계정 사용시 이를 조정하여 이를 가처분 소득에서 배제시키되 저축에는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강제 저축 수입 범주에 속한 항목은 현재로서는 가구소득분배통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만일 이 항목을 분해할 수 있다면 자산 분배의 과정을 기장할 수 있는 데에 한걸음 다가갈 것이다.

---

**항목 8C:** 보험가입자에 귀속되는 자산 소득.

17.3 생명보험의 가치 상승

#### 4.4 자본 이득

제 2.5.3절에서는 모든 보유 이득을 소득의 지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그러나 회계 기간 내 실질 보유 이득은 소득 총량 측정에 포함될 수도 있도록 해야 한다. 중립 보유 이득은 개방 대차대조표와 결산 대차대조표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 한정되어야 한다.

---

**항목 15C:** 실질 보유 손익

이 항목은 다음 항목과 관련이 있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

17.4 실현 자본 이득

20 미실현 자본 이득

---

### 5. 재화의 자가 생산 및 소유자 거주 주택 (D열)

#### 5.1 자가 생산

이 항목의 귀속 가치는 개인사업자가 벌어들인 혼합 소득의 일부로, 별도의 열에 기장되어야 한다.

---

**항목 2D: 자가 생산****2.4 자가소비용 가내 생산에서 발생한 순소득 (비용 제외 후)**

---

**5.2 소유자 거주 주택**

가구 집단을 분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서의 국민계정에는 소유자 거주 주택 항목도 포함시켜야 한다.

---

**항목 3D: 소유자 거주 주택의 잉여 수입****2.5 순자산 귀속 수익률**

---

**6. 서비스의 자가 생산 (E열)**

가계의 후생은 가구 구성원이 생산, 소비하는 요리, 가사, 육아 등의 서비스에도 영향을 받는다. 자체 소비를 위한 재화 생산이나 소유자 거주 주택의 귀속 임대료와 달리 SNA는 이 자가 생산된 서비스에 대해 어떤 고려도 하지 않았고 제 2장에서 정의된 소득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실제로 이 서비스에 대한 가치 측정은 상당한 어려움을 동반할 뿐 아니라 조세 부담, 인플레이션, 국제수지 등을 모두 검토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서비스에 대해 화폐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GDP에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서비스의 자가 생산이 경제적 활동이 아니거나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계의 후생을 연구할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항목 4E를 표에 추가하였다. 가계 서비스의 자체 소비의 가치 평가에 대한 논의는 제 9장 참조.

---

**항목 4E: 자가 생산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소득**

가구 내에서 생산 및 소비되는 서비스의 소득

---

## 7. 사회적 현물 이전 (F열)

사회적 현물 이전에 해당하는 항목에는 공중 보건 및 교육 - 사회보장 및 사회부조 급여의 현물 제공 (소비자 보조금으로 불리기도 함), 개별 가구가 총당한 후 정부가 환급해 주는 의료비 등이 있다.

---

### 항목 14F: 사회적 현물 이전

- 9.1 공교육
- 9.2 정부 보조 보건 서비스
- 9.3 정부 사회보험체제를 통한 의료비 환급
- 9.4 임대료 수당 (주택 보조금)
- 9.5 식품 보조 또는 식품 교환권

### 항목 14F: 사회적 현물 이전

- 9.6 공영 주택 보조금
  - 9.7 잉여 식품 및 의복 보조
- 

## 8. 상응 지출 (G열)

A-F열 각각을 측정하면 총 유량이 나타난다. 표 1에서는 총소득에서 가처분 소득을 구하기 위해 공제해야 하는 '부의 수입'을 기장할 수 있다. 이자의 경우 지급된 이자의 유량과 지불된 이자의 유량을 별도로 측정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순 수치를 기장해야 하는가의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순 수치를 기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표는 새로운 G열에 지출된 금액을 따로 표기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앞서, 개인사업자의 혼합 소득은 이자를 제하기 전 기장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하지만 생산 활동과 관련해서 지불된 이자와 (소유자 거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자 등)

소비와 관련되어 지불된 이자를 따로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지출된 이자를 분리하여 보여줄 경우, 생산 관련 이자는 혼합 이자에서 제하여 SNA가 기업 소득이라 일컫는 소득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계산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어서, 대신 항목 5G와 6G를 결합한 데이터를 나타낸다.

---

항목 **5G**: 생산 관련 이자.

4.1D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

4.1E 기업 활동과 관련한 비담보 대출이자

항목 **6G**: 소비 관련 이자.

4.1E 기업 활동과 관련한 비담보 대출이자

---

강제 저축에 관한 C열의 내용은 앞서 언급하였다. 이는 이자를 내야 할 때와 실제로 지급할 때간 차이와 관련이 있다. 만일 실제 지급될 때를 기점으로 지급된 이자를 가장한다면 항목 5C는 이자 지급 및 수령을 나타낼 것이다.

항목 9A는 지대 수입을 보여준다. 항목 9G는 지대 지출을 보여준다. 모든 토지를 가구가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균형 수지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는 없다.

---

항목 **9G**: 지대

가구가 낸 지대

---

## 9. 소득 총량의 도입

표 1 은 다양한 종류의 소득 유량을 보여주는 20개의 행과 다양한 지급수단을 보여주는 7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행의 소득을 합쳐 이들을 각각의 열과 조합하여 검토한다면, 더욱 유연한 소득 정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시데이터와 거시 자료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수 있다.

## 생산에서 발생한 소득

1-4열까지는 생산으로 발생한 소득을 보여준다. 현금 수입은 임금 및 봉급 (항목 1A) 및 혼합 개인사업 소득 (항목 2A)에서 발생한다. 이 두 가지 항목은 항상 미시데이터셋에서 수집 가능하다. 항목 1B는 현물로 지급된 임금 및 봉급을 나타내며, 항목 2D는 재화의 자가 생산에서 발생한 혼합 소득을 나타낸다. 수많은 OECD 국가에서는 이들 항목의 비중이 적을 지 모르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중요한 소득원이다.

항목 1C는 국가 및 민간 사회보험에 대한 고용주의 부담금을 보여준다. 이들 항목은 미시데이터셋에는 없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국가에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는 자료이다. 또한 행 1의 세 가지 항목은 “근로자 보상”이라는 거시적 개념을 보여준다. 항목 1C의 규모는 총액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미시데이터와 거시 자료에서 도출된 임금과 봉급이 얼마나 일치되는가를 비교할 경우, 거시적 총량에서 배제시킬 수도 있다.

항목 1C의 규모는 총액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미시자료 및 거시자료에서 도출된 임금 및 봉급 데이터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비교할 때에는 거시총량에서 배제될 수 있다.

항목 3A는 소유자 거주 주택의 임대료에서 발생하는 운영 잉여금을 나타낸다. 주택의 다양한 소유 형태로 인해 소득분배통계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이론적으로는 이 항목을 미시데이터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거시데이터셋에서는 총량으로 나타낸 수치를 얻을 수 있지만, 가구 유형에 따른 분배를 분석할 때에는 실용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항목 4E는 가구 내에서 생산, 소비된 서비스 가치를 추계하기 위한 소득구성요소를 나타낸다. 이 데이터는 보통의 미시경제 데이터셋으로는 구하기 힘들며, 소득 분배 데이터셋과 연관을 가진 특별 연구에 의해서만 나타낼 수 있다. 이 항목이 포함된다면 1-4열까지의 모든 소득구성요소의 총량은 근로 소득과 개인사업자 소득을 거시경제적으로 합산한 수치를 증가하게 될 것이다.

## 자산 소득

현금 자산 소득은 이자, 배당금, 지대로 나뉠 수 있으며 A열에 나타나 있다. 이 이자와

지대에 상응하는 지출은 G열에 나타나 있다. 이자와 배당금에 대한 미시데이터와 거시 자료를 개념적으로 일치시키는 항목은 C열에 나타난 강제 저축 항목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시데이터셋과 거시데이터셋 모두에서의 유량을 기장하기가 어려워, 두 개를 일치시키는 작업은 훨씬 복잡해진다.

자산 소득에 기장되는 또 다른 요소는 보험 가입자, 특히 생명보험 가입자에 발생하는 소득이다. 이는 거시 자료에는 잘 나타나 있지만, 미시데이터에서는 나타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

총 자산 소득은 5-9행과 A-E열의 총소득에 G열의 지출을 제한 금액이다. (이들 행에 해당하는 F열에는 기장 내용이 없음)

## 9.1 본원소득

본원소득이란 생산에서 발생한 소득 및 자산 소득을 의미하며, A열의 소득만이 미시데이터에서 수집 가능하다. A, B, C, D 및 G열의 소득 총량은 국민계정과 거시 자료에서 나타난 가구의 본원소득 총량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각 열로 나뉜 까닭은, 상황에 따라 총소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A열은 본원소득 중 현금 소득이다. B열은 현물 소득이다. 자가 생산 소득을 포함한 현금과 현물 본원소득은 A, B, D 및 E열의 총량과 같다.

## 9.2 총소득, 가처분 소득 및 조정 가처분 소득

기타 소득으로는 의무적 이전과 가구간 정기적 이전이 있으며 그 내용은 10A, 11A, 12A, 13A에 나타나 있다. 12A까지의 내용은 사회보험 급여를 나타내고, 13A는 이혼 수당과 기타 가구간 정기적 이전을 나타낸다. 항목 14F는 사회적 현물 이전이다.

이 항목을 총 본원소득에 더하면, 총소득의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여기에 선택적으로 실질 보유 손익 (항목 15C)을 더하면 확대된 총소득을 구할 수 있다.

A열에 나타난 모든 항목은 미시데이터에서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 항목 14F 및 15C는 합쳐서 거시 자료에서 수집할 수 있다. 제 2장에서 논의된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여, 사회적 현물 이전을 개별 가구에 배분할 수도 있다. 가구 집단별로 실질 보유 손익을 해체하는 것은 실용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미시데이터에서 수집된 모든 데이터는 실질 손익이라기보다는 실현된 손익을 나타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16-19열은 의무적 이전과 가구간 정기적 이전의 지출을 나타내고 있다. 항목 16C는 고용주가 지출하는 사회보험 부담금, 항목 17A는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및 봉급에서 지출하는 사회보험 부담금이다. 항목 19A는 가구간 정기적 이전으로 지출되는 금액, 항목 18A는 지출된 소득세를 나타낸다.

총소득에서 이 모든 항목을 제하면 가처분 소득을 구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현금 수입 (A열)으로만, 또는 더욱 광범위하게 가처분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만일 F열의 사회적 현물 이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결과는 국민계정의 "조정 가처분 소득"이 된다.

표 1의 본원소득이 원칙적으로는 미시데이터와 거시 자료의 소득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지만, 미시데이터 분석 시 사회적 급여에서 지급된 일시불 퇴직금을 제외시키고 이를 자본 이전으로 취급한다면, 그 금액은 일시불 퇴직금만큼 총량이 감소할 것이다.

## **10. 표를 소비 및 자산으로 확대**

표 1은 소비 및 자산까지 간단하게 확대할 수 있다. 그 결과는 표 2에 나와 있다. 수입을 나타낸 열은 이제 지출도 함께 나타낸다.

### **10.1 소비 지출**

대부분의 가처분 소득은 소비에 사용된다. 소비 지출의 항목은 소득구성요소 별로 이들을 분석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 2장의 표 2.2에 각각 나타냈다.

첫 항목은 직무 관련 비용이지만 고용주가 명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비용이다.

여기에는 출퇴근 비용, 양육 비용 등이 포함된다.

---

### **11.1A** 교통비

### **11.1B** 양육비

---

사회보험에서 지급되는 의료비는 항목 10A, 11A 및 12A에 해당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의료비는 소비 지출에 포함된다. 그리고 총 의료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의료비도 따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

---

### **11.5A** 사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의료비

---

항목 18A의 경우, 정부가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 및 조세에 대한 법률을 보면, 사냥, 사격, 낚시 면허에 대해서만 조세를 부과한다. 그 외에는 거시 자료에서 소비 지출에 해당하고, 정부가 부과하는 서비스 수수료로 취급된다. 이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H22a와 H22b의 가장 난을 별도로 생성하지 않았다.

---

### **11.6B** 사냥, 사격 및 낚시 외의 의무적 수수료 및 과태료

---

때로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 시점에 부과되는 조세 가치를 가격에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도출한 다음 소비 지출에서 조세를 분리한다.

---

### **11.6A** 판매세 또는 부가가치세

---

#### 가구간 자발적 이전

제 2장에서는 지출 이전으로 간주될 수 있는 가구간 이전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데이터는 항목 21A로 분류되는데, 수입분을 제외한 지출분으로 표현된다.

---

### 항목 **21A**: 가구간 이전

#### 12.1A 가구간 현물 이전

12.1B 가구간 일회성 이전 지급분 (선물)

12.1C 가구간 일회성 현금 수령분 (선물)

### 가구와 다른 단위간 자발적 이전

가구 및 기타 경제체제간 발생하는 이전은 수없이 많다. 자선단체로의 후원과 자선단체로부터의 지급, 복권 및 보험, 생명 및 비생명 (상해) 보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앞서 2장에서는 이들 각각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들은 엄격하게 SNA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SNA가 가구 집단간 이전을 세부적으로 분해할 경우에 발생할 결과에 대해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SNA는 소득분배연구를 위해, 바람직한 분석적 특성이나 실용적 어려움 등에 관한 기반 제공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소득분배연구

### 항목 22A 및 22G: NPISH와 가구간 이전

5.6A 노조의 질병 또는 장애 수당

5.6B 노조의 파업 수당

5.6C 자선단체로부터의 지원

7.6A 노동조합비 및 전문단체회비

7.6B 자선단체에 대한 정기적 후원

---

### 복권과 도박

복권과 도박은 국민계정에서는 재분배 수단으로 간주된다. 복권과 도박에 사용한 전체 금액과 당첨금간 차이는 복권/도박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간주되며 가구의 지출로 나타낸다. 이 둘의 총금액은 일치하며 가구간 이전이기 때문에 SNA에서는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SNA에서는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다.

소득계층간 도박 금액과 당첨금에 대한 완벽한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원칙적으로 그 도박금은 서비스료와 "순수" 도박금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극도로 불투명한 과정이다. 따라서 총 도박금을 가구의 소비 일부로 나타내고, 당첨금은 이를 상쇄하는 부의 지출로 나타내는 것이 좋다.

---

항목 **23A**: 복권 및 도박에 건 금액에서 당첨금을 제한 금액

12.2B 복권 또는 도박의 당첨금

복권 또는 도박에 건 금액

---

비생명보험

비생명보험은 상해보험과 동일하게 사용되며 생명보험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SNA에서는 보험 회사와 보험 가입자를 일치하도록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보험 항목의 가장 과정이 다소 복잡하다. 가구의 미시데이터와 분석을 위해 좀 더 간단한 표현 방법을 찾으려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SNA의 입장을 살펴보면, 보험회사는 실제로 받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보험금이 더 크다고 한다. 이들은 연초에 받는 보험료를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투자 수익을 얻는다. SNA는 원칙적으로 이 투자 수익이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가서 다시 “premium supplements”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 다음 한편으로는 실제 보험료와 premium supplement의 차액과, 다른 한편으로는 지급 보험금을 구해, 그 차액을 보험회사의 봉사료로 부른다. 여기에 관련된 항목은 모두 가구 소비에 포함된다. 이 보험료의 나머지 부분은 가계가 지급하는 이전이며 보험금은 가구가 받는 이전이다. 보험 회사의 경우 이 이전 수입과 지출은 동일하다. (적어도 장기적인 면에서) 그러나 가계 부문에서는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예컨대, 가계와 기업간 상호 보조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와 보험금에 대한 미시데이터는 복권과 도박에 대한 자료보다는 완결성과 신뢰성이 높을 수 있어서 처음에는, 원하기만 한다면 SNA 절차를 따를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premium supplements”를 전체 소득계층에 분배할 경우, 표에 “SNA로의 일치” 항목으로 명명된 열을 추가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좀 더 투명한 해결방법으로는 실제 보험료를 가계 소비로 놓고 보험금을 부의 소비로 간주하는 방법이 있다.

부속서 4에 논의된 메타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일부 소득구성요소의 경우, 민간 보험 제도에서 지급된 급여가 의무적 고용주 지원의 보험인지, 아니면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한 민간 보험 제도인지가 정확하지 않다. 이 부속서에서는 후자로 가정하여 비생명보험에 대한 보험금으로 간주, 아래 항목 24A에 포함시킨다. 고용주 지원의 보험제도에서 지급된 급여는 위 항목 10A에 포함된다.

---

**항목 24A:** 비생명 보험료에서 보험금을 제한 금액

- 12.3A 개별적으로 가입한 민간 건강 보험료
- 12.3F 개별적으로 가입한 민간 실업 보험료
- 12.3D 민간 장애/무능력/장해보험 급여 등
- 12.3G 민간 실업 급여/구직 수당
- 12.3E 근무 중 상해 근로자에 대한 민간보험 보상
- 12.3B 민간 질병, 상해, 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
- 12.3C 민간 질병/의료 급여 등
- 기타 상해 (비생명) 보험료
- 기타 비생명보험에서 지급받는 보험금

## **10.2 저축**

저축은 총소득, 실제 소비 및 자발적 이전간 차액으로 구한다. 정의에 따르자면 소비가 비현금 소득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B, E, F열의 저축은 0이 되어야 한다. 재화의 자가 생산이 자본 구성을 위한 것이라면 D열의 저축으로 나타날 것이다. 무제한 활용할 수 있는 현금 소득 (C열)은 자동적으로 저축을 구성하게 된다.

저축은 자본 매입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자본 이전 수입, 자산 매각금, 비근로자 연금 혹은 새로운 차입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으로 충당되기도 한다. 이러한 자원은 신규 자본 획득 (고정 자본 혹은 재고의 변화), 신규 귀금속 (보석, 골동품, 명화 등)의 획득, 비생산적 자산 (가계의 경우 주로 토지)의 구입, 혹은 금융자산의 잔여 매입, 또는 부채 발생 등으로 발생한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일시불 퇴직금도 추가 저축으로 간주한다. 특히 수령자의 재량에 따라 받게 되는 일시불 퇴직금은 대부분 특정 목적을 위해 남겨두는 경향이 있다. 이는

미래의 소득 흐름을 위해 금융 자산 혹은 기타 자산의 획득으로 연결된다. 설사 화려한 휴가 등을 위한 현재 소비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소득으로 가능한 정기적 소비라기보다는 부의 저축으로 간주된다.

---

**항목 33G: 일시불 퇴직금****17.2 일시불 퇴직금**

---

이 표에서는 상세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잠재적 소득을 소비와 자산 축적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도 유용하다.

**10.3 축적 자산 기장**

가계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통해 자금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항목은 명확히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2장에서 논의한 목록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 부속서의 표 2에서는 고정 자산 (주택)의 매각, 귀금속 (가보 등)의 매각, 토지 매각 혹은 부채의 발생 등을 나타낸 G열로 분류된다.

그런데 제 2장에서 회계사들이 축적 자산으로 취급하는 항목 중 유산과 생명보험금이 있다.

**상속**

상속은 이전에 해당하지만, 일부 다른 항목과 함께 일반적으로 국민계정에 기장되지 않는다.

분해를 할 경우, 상속은 명시적으로 자본 이전으로 기장되어야 한다. 유산의 수령은 미시데이터로 파악되지만, 유산의 증여 당시, 증여자는 정의상 더 이상 가구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산의 지급은 미시데이터에서 파악되지 못한다. 여기에 미시데이터의 불균형이 생겨나게 된다.

---

항목 **32A** 및 **G**: 자본 이전

17.1 상속 수령분

상속 지급분

생명보험

SNA는 생명보험금을 저축의 한 형태로 간주한다. (그 이유는 앞서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설명한 바 있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수령은 금융 거래로 취급되어 25행에 기장된다.

제 2장의 항목 중 두 개는 4.1C와 4.2C에 나타냈는데, 이는 자기가 투자한 연금보험에서 받는 연금을 의미하고, 5.1C는 미리 연금을 인출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

항목 **34A** 및 **G**: 금융 자산 및 부채 거래

4.1C + 4.2C 연금 또는 투자 수익 형태의 연금 소득

5.1C 연금 인출

---

**11. SNA/거시 총량과의 조화**

표 1의 A, B, C, D열의 합계에서 G열을 제하면 SNA와 개념적으로 동일한 가구의 본원적 소득을 구할 수 있다. 미시 연구에서는 B, C, D 중 일부 혹은 모두를 선택적으로 배제할 수도 있고, E와 G를 포함시킬 수도 있다.

A, B, C, D열의 합계에서 G열을 제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다음과 같은 경우, SNA의 정의보다 적게 된다.:

일시불 퇴직금이 경상 사회적 급여가 아닌 자본 이전으로 간주될 때;

국내 가구에서 해외 가구로의 불규칙적인 현금 및 현물 지출의 순 이전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규모가 적을 경우.

복권 및 도박의 당첨금이 그에 투자한 "순" 금액을 능가할 때 (이론적으로는 국외와의

거래량에 상응하겠지만, 실제로는 데이터 부족을 반영한다.)

가구가 받은 보험금이 실제 납입한 보험료와 premium supplements를 능가하는 경우 NPISH에 납입한 이전이 NPISH에서 가구로 지급한 금액을 능가할 경우

이렇게 거시적 표준과의 차이가 제안되는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관점이 아닌 가계 부문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출 유형에 대한 결정은 소비 지출에 대한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가구로서는 이렇게 발생한 수입을 정기적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이러한 수입이 수령 가구가 속한 가구의 소득분배분석 내에서 그 집단을 결정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실제로는 거시수준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작다. 이들 각각에 대한 미시데이터도 충분하지 않아서, 이들을 모두 포함시키면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다.

F열을 가처분 소득에 포함시킴으로써, SNA의 조정 가처분 소득 개념에 도달할 수 있다.

A, B, D열에 있는 총 소비는 SNA의 가구 소비 지출과 일치한다. F를 포함시킨다면 실제 가구 소비를 구할 수 있고 이는 SNA/거시 개념과 일치하게 된다.

A, C, D열의 총 저축은 일시불 퇴직금을 제외시키면 가계 저축에 대한 SNA의 거시적 수치와 일치한다.

## 12. 결론

이 부속서에서는 미시적 전통과 거시적 전통에서의 소득 개념과 표현의 면에서 이론적으로 가능한 조화를 모색해 보았다. 가능한 한 두 전통 모두 존중해야 하고, 미시적 총량과 거시적 총계를 도출할 때에 유연성이 필요하다.

가구 내 이전은 SNA 내에서는 명시적으로 다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해가구연구 (disaggregation household studies)의 관점에 따라 분석적 유용성에 역점을 둔 새로운 절차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의무적 이전과 정기적 가족 지원간 구별, 그리고 자발적 이전을 구별해야 한다. 또한 소비지출과 실제 소비간 구별을 비자발적

가구 이전으로 확대하여 소득의 이전이 아닌 지출의 이전으로 간주하였다.

본원소득과 저축은 미시적 총량과 거시적 총량 사이에서 모두 일치된다. 물론 SNA와 약간 일치하지 않는 항목이 다섯 개가 있지만, 엄격한 일치를 위한 방안도 여전히 존재한다.

표 1: 미시 및 거시적 관점에서의 소득 분배

	A	B	C	D	E	F	G
	현금 수입	현물 수입	강제 저축 수입 재화 OOD	자가생산- 생산- 서비스	자가 생산	현물 사회적 이전	상응 지출
1	임금 및 봉급	임금 및 봉급	고용주의 사회보험 부담금 -민간 보험 -정부 보험				
2	개인사업자의 혼합 소득			자가생산- 재화에서 발생한 혼합 소득			
3				소유자 거주 주택에서 발생한 운영 잉여			
4					자가생산 서비스 소득		
소계				생산에서 발생한 소득			
5	수령 이자		납입 이자를 제외한 이자				생산과 관련된 납입 이자
6							소비와 관련된 납입 이자
7	수령 배당금		수령분을 제외한 배당금				
8			보험 가입자에				

				귀속된 자산 소득		
9	지대					지대
소계						
소계						
10	사회보험 급여					
	-민간 보험					
	-정부 보험					
	일시불 퇴직금					
	제외					
11	사회보장 급여					
12	사회부조 급여					
13	정기적 가족 지원					
14						정부와 NPISH의 개별 소비
소계	12.1 총소득 (=III + 의무적 이전 및 정기적 가족 지원금)					
IV						
15	선택적 항목	12.2	1.3	실질 손익	모유 12.3	12.5
소계	12.6 확대된 총소득 (=IV+선택적 항목)					
V						
16				고용주의 사회보험 부담금		
				- 민간 보험		
				- 정부 보험		
17	근로자의 사회보험 부담금					
	- 민간 보험					
	- 정부 보험					
18	소득세, 재산세 등					

19	가족 지원금
소계	12.7 가처분 소득 (=IV 또는 V- 의무적 이전 + 정기적 가족 지원 (지불금))
VI	

표 2: 소비와 자산 축적으로서의 확대

	A	B	C	D	E	F	G
	현금 수입	현물 수입	강제 저축 수입	자가생산 재화 및 OOD	자가생산 서비스	- 사회적 이전	현물 상응 수입
20	다른 가구로의 사회적 이전을 제한 소비 지출	임금 및 봉급, 현물로 받은 혼합 소득		자가생산한 재화와 OOD의 소비	자가생산한 서비스의 소비	정부와 NPISH의 개별 소비 + 다른 가구로부터의 현물 이전	
21	국내 및 해외로의 비정기적 현금 이전 - 수입						
22	NPISH로의 이전						NPISH로부터의 이전
23	복권 및 도박 투자금 - 당첨금						
24	비생명 보험료 - 보험금		보험 가입자에 귀속되는 자산 소득				
25			연금 기금에서 가구의 순자산 변화에 대한 조정				
	저축		저축	저축			
26	고정 자본		고정 자본				고정 자본 매각

	형성	형성	
27	재고 변화	재고 변화	
28	귀금속의 매입		귀금속 매각
29	토지 매입		토지 매각
30	민간 연금 부담금		민간 연금 급여
31	자본세 납입 (상속세)		수령 자본 이전 (상속)
32	기타 금융 자산 매입	이자-납입 이자; 배당금- 납입 배당금; 연금 기금에서 가구 순자산의 변화에 대한 조정	
	순자산	순자산	

1. 자격에 기반하여 소득이 주어질 때 지출 항목에는 기본+ 암묵적 이전 항목을 보여주는 조정분을 나타내야 한다. 소득 요소가 보험기반일 경우, 그 해당 지출항목도 동일해야 한다.

저축 = 가처분 소득 - 소비 - 현금 및 현물의 비정기적 지출 이전.

저축이 고정자산형성 및 자가생산재화의 재고 변화와 동일한 경우, 두 개의 현금 열 \_ 자가 생산 열에서만 나타난다.

A열의 순 축적 자산 = A열 저축 - A열 축적 자산 - G열 축적 자산 기장

D열의 순 축적 자산 = 저축 D열.

# 부속서 3

## 구매력평가지수

### 1. 구매력평가지수(PPP)란 무엇인가?

구매력평가지수 (PPP)는 B국의 통화로 구매할 수 있는 한 단위의 재화와 서비스를 A국이 구매하는 데 필요한 통화 단위를 보여주는 지수이다. 따라서 PPP는 환율에 따라 변하지만, 사실 환율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반면, PPP는 해당 국가 내에서 소비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 -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고 자체 소비를 위해 생산하는 재화까지 포함 - 에 의해 결정된다. 한 국가의 수출입 형태가 그 경제에 유통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형태와 유사할수록, 환율과 PPP는 유사해진다. 그러나, 두 개념이 완전히 동일해 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모든 국가에는 수출입용이 아닌 정부 제공 서비스도 있고, 국제 거래가 거의 불가능한 건축이나 건축 자재 등의 재화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건축은 유통의 어려움이 있고, 건축 자재는 중량비 대 가격을 감안하면, 먼 거리를 이동시킬 때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장단기간의 자본의 흐름도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본의 흐름은 유통 중인 재화와 서비스의 통화 구매력을 측정하는 환율의 역할을 무색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국가간 소득 수준을 비교할 때에는 한 통화에서 다른 통화로 환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PPP는 수출입을 하는 기업이 아니라, 소득을 벌어들이는 이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다루기 때문에, 환율보다는 더욱 유용하다. 특히 수출 품목이 극히 소량의 농산물에만 집중된 개도국에게는 더욱 중요한 수단이다.

### 2. PPP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시간에 따른 가격 변화를 비교할 때, 그 출발점은 파세 지수 (PPI)와 라스파이레스 지수 (LPI)이다. 두 지수 모두 상대 가격의 가중 평균치이며, 비교연도 (t)와 기준연도 (0)의

여러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비를 의미한다. LPI는 기준연도의 거래량을, PPI는 비교연도의 거래량을 사용하여 상대가격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단순한 2국 PPP가 이 지수와 유사하다. 특정 시점에서 각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상대 가격이 형성되며 각 가격은 해당 국가의 통화로 나타난다. 이들을 A국 혹은 B국의 가중치를 사용해서 함께 가중치를 부여한다. 시기별 비교 시에는 PPI와 LPI의 기하평균으로 산정하며, PPP도 마찬가지로 산정한다.

시계열 자료를 위해 여러 시점간 비교를 수행해야 할 때에는 시간적 순서를 따라야 한다. 선형적 순서가 없는 국가군의 경우에는, 어떤 국가든 국가간 비교를 수행한 다음 그 기하 평균을 직접, 간접적으로 비교한다. (간접 비교는 i국을 k국과 비교하고, k국을 j국과 견줘, i국과 j국을 간접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이다.)

### 3. 주기성

시기별 물가 지수는 특정 두 시점의 가격과 관계되기 때문에, 다른 시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t 기간의 물가 지수는 t+k 기간의 물가 지수에 적용될 수 없다. 이와 유사하게 모든 PPP는 단일한 기준연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연도에는 적용될 수 없다. 언뜻 보면, 환율이 고정적이라면, PPP도 환율과 동일한 관계를 유지하며 고정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변동 환율의 경우에는 걸맞지 않다. 변동 환율제에서는 수출입 재화와 서비스가 변하면 PPP도 변한다. 즉, 고정 환율이든, 변동 환율이든, 재화와 서비스가 변하면서 PPP도 변하게 된다. 물론 연간 물가상승률이 아주 낮을 경우, 연간 PPP 변화율도 아주 낮을 테지만, 만일 가격이 급변한다면 (예컨대 VAT 유형의 조세 도입시) PPP도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 4. PPP의 발전

PPP 산정은 상당히 규모가 큰 작업이라 매년 모든 국가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지는 않는다. OECD와 Eurostat는 모든 OECD 회원국 (EU 회원국 포함) 및 기타 다른 국가들에 대해 PPP를 산정하기 위한 비교 작업을 실시하는데, EU국가의 경우 매년 상대 물가를 수집하여 가중치의 1/3을 매년 갱신한다 (rolling benchmark). 다른 국가의 경우 보통

세계 은행 (World Bank)이 지역 단위로 국가간 비교를 수행한다.

PPP가 지극히 점차적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감안, 기존 연도간 보간법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PPP의 시계열 자료를 구한다.

t 연도의 B국과 비교한 A국의 PPP를 구한다.

t에서 t+1까지 A국과 B국의 각국 물가상승률을 구한다. ( $p_A$ ,  $p_B$ )

$$PPP(t+1) = PPP(t) \times p_A/p_B$$

예컨대, t 연도의 PPP가 2였다면, t 연도에 B국에서 1단위의 통화로 살 수 있는 양을 A국이 구입하려면 통화 2단위가 필요하다. t+1 연도에는 동일한 양의 재화와 서비스를 사려면 A국에서는  $p_A2$  통화 단위가, B국에는  $p_B1$  통화 단위가 필요하다. 따라서  $PPP(t+1) = PPP(t) \times p_A/p_B$ 가 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다음의 기준 결과를 기다리면서 PPP를 예측할 때에도 사용된다.

OECD 웹사이트에는 1970년에서 1999년까지 모든 회원국에 대한 PPP를 표로 제시해 놓았다. ([www.oecd.org/std/nadata.htm](http://www.oecd.org/std/nadata.htm))

## 5. 어떤 PPP인가?

PPP는 여러 수준의 총량에서 단일 제품이나 제품군에 대해 산정할 수 있다. 총량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 결과는 외관상 외부인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외관상"이라 표현한 것은 그 수치가 두 국가 물가 구조의 실질적 차이를 반영하는지, 아니면 물가 산정에 오차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늘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PPP 기준 GDP, 그리고 10개 주요 지출 요소를 도출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도출된 GDP는 소득분배통계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다.

정부가 제공하는 보건, 교육, 기타 개별 서비스의 정도가 국가마다 제도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보통 두 종류의 소비값을 산정한다. 첫 번째 소비값은 사회적 현물 이전을 제외한 소비 지출이며 두 번째 소비값은 실제 소비로서 사회적 현물 이전까지 포함한 지출을 측정된 값이다. 이는 소비 지출보다는 가계의 후생을 더욱 정확히 측정할 수

있으며, 정부나 민간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보건 및 교육 서비스가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간 비교능력도 훨씬 높다.

PPP는 지출 자료를 토대로 형성되지만, 화폐의 구매력을 보여주는 까닭에 소득을 측정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소득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사용되는 PPP도 달라진다. 사회적 현물 이전을 제외한 소득 지표를 전환하려면, 소비 지출 PPP를 사용해야 한다. 사회적 현물 이전을 포함한 소득 지표 전환을 위해서는 실제 소비에 대한 PPP를 사용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임대료를 제외한 가계 소비 PPP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PPP는 피셔 지수에서 도출되기 때문에 대중이 이런 종류의 계산을 정확히 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택과 관련된 PPP 정보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에 대해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을 포함 및 제외한 가계 소비의 대체 총량 (alternative aggregates)에 대한 PPP 산정이 1993년 출판된 국민계정 매뉴얼 수정본에 적용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 6. 대표성 및 비교가능성

어떤 통계 자료도 완벽하지는 않다. PPP도 마찬가지이다. 두 개의 다른 시점에 대해 상대 가격을 도출할 때에,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제품에 대해 두 개의 가격을 비교하고자 한다. 그런데 재화의 spec이 시간에 따라, 특히 국가간 그 변화가 더 심할 때에는 기간별 지표가 문제가 된다. 국가마다 재화의 spec이 다를 뿐 아니라 특정 재화가 지니는 대표성도 다르다. 대표성을 지니는 재화라 하더라도, 품질의 차이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 재화의 가격을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다. 또한 완벽히 비교 가능한 재화라 하더라도 실제 구매하는 재화를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화의 종류와 양이 거의 유사하고 이들을 비교하는 데에 우리가 없는 국가들간 PPP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형성된 지역별 국가 집단은

한 집단 이상에 참여한 국가들을 연결함으로써 서로 연결된다. 비 대표성과 비 비교가능성의 오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집단에 대해 주식 등을 포함, 수백 개의 품목에 대한 물가를 조사한다.

서비스에 관한 한 PPP가 지닌 문제는 더욱 커진다. 재화의 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그 특성의 일관성이나 차이를 나타낼 수는 있지만, 서비스의 경우 만족스러운 결정을 하기는 힘들다. 재래 시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최첨단 고품격 시설을 지닌 대형 마트의 서비스는 분명 차이가 나지만, 그 차이를 수량화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왜냐하면 둘 간의 선호나 선택은 극히 주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PPP는 모든 시장에서 파는 동일한 재화는 동일한 서비스 이윤을 가져다 주며, 전문가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노동 생산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임금률로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 형성된 개념이다. 이 가정은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를 능가하는 일반적 대안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 7. 여러 소득 집단에 대한 PPP

대표성 문제는 한 국가 내의 여러 소득 집단에도 적용된다. 노인층은 고관절 수술을 많이 받지만, 젊은 부부가 주로 소비 하는 것은 아기 옷이다. 이러한 차이는 소득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대용량의 냉동 채소는 소량의 채소보다 저렴할 지 모르지만, 가난한 가계의 경우 절대적 비용이 큰 물건을 살 여력이 없거나, 이를 저장할 냉동고가 없어서 상대 가격이 싼 물건을 사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른 대안적 물가 지수를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소득분배통계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십분위 집단에 대해서는 거의 사용되는 경우가 드물다.

한 국가 내 두 시점에서 절대적 소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의 증가에 대해 조정을 수행해야 한다. 집단마다 달리 적용되는 물가 지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소비자 물가 지수 (CPI)와 같은 일반적 물가 지수가 조정에 사용된다. CPI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구매력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가는 잘 보여줄 지 모른다. 하지만 CPI는 전체 집단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해의 분배 지표는 단순하고 보편적인 척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물가가 변했을 때, 다양한 집단의 후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측정하기에는 좋은 수단이 아니며, 따라서 또다시 대표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만일 정부가 소득세율을 변화시킨다면,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분배의 결과가 명백히 나타날 것이다. 직접세에서 간접세로 조세 변화가 발생했다면, 간접세율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득의 구매력이 변화되기 때문에 세후 소득이 달라질 것이다. 만일 모든 소득 집단이 이러한 변화에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다면, 자기 조정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실제로 조세 정책의 변화는 소득 분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물가상승률에 대한 조정에 일반 CPI를 사용하지만, 가처분 소득에 포함된 특정 소득구성요소에는 적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 현물 소득은 해당 재화와 서비스와 관련된 물가 지수를 통해 조정되어야 하며, 소유자 거주 주택의 귀속 임대료는 주택 가격 지표 등에 의해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국제적 환경에서 더 심각하게 드러난다. 정부 서비스 외에도 국가마다 조세 부담과 관련된 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만일 두 국가 (빈국과 부국) 의 소득 집단이 구매한 재화와 서비스를 비교할 경우, 부국의 소득 중위 오분위 집단이 구매한 재화와 서비스는 빈국의 중위 오분위가 아닌 최상위 오분위가 구매한 재화나 서비스와 더 유사할 것이다. 따라서 유사한 명칭을 가진 집단을 대항시킨다 하더라도, 반드시 비교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소득 집단에 대해서는 PPP를 활용할 수는 없다. 기간별 비교를 위해서는 물가 정보뿐 아니라 특정 소득 집단에 대한 수량 정보 (대량 혹은 소량 포장 등)도 수집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 수집의 문제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대한 실험적 정보 외에는 다른 완벽한 정보를 알기가 힘들다. 모든 가구 집단에 대해 단일한 PPP를 활용하는 것은, 한 해의 물가를 다른 해의 물가로 전환하기 위해 단일한 물가 지수를 활용하는 것과 같은 단계적 효과를 지닌다. 물론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 (특히 물가상승률이 높은 시기에는 훨씬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인플레이션이란 주로 상대 가격의 이동과 관련되기 때문에 여러 가구 집단마다 서로 다른 타격을 준다는 사실, 그리고 각국 정부가 가구 집단마다 다른 영향을 주는 정책을 펴기 때문에 국가마다 물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도 간과한 것이다. 여전히 환율 대신 PPP 사용이 권고되고 있지만, PPP는 두 국가의 표준이 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평균” (중위가 아닌) 구매력을 측정할 뿐, 일국 내 물가의 상대 산포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8. 결론

따라서 PPP 활용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사항에 유의할 것을 제안한다.

1.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력 측정을 한 통화에서 다른 통화로 전환하는 데에는 환율보다는 PPP가 더 낫다.
2. PPP는 특정 연도와 관련 있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PPP를 활용해야 한다. (또는 앞서 설명한 식을 이용하여 PPP의 근사치를 구해야 한다.)
3. PPP는 다양한 총량 수준에서 소득분배통계에 활용된다. 따라서 활용되는 소득 정의에 따라, GDP 외의 다른 총량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영세 농업과 주택비를 제외한 소득을 측정할 때에는 이 항목을 제외하여 계산한 PPP를 원칙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4. 모든 측면의 소득 분배에 적용되어 가격 차이의 형태에 따른 후생의 차이를 모두 설명 할 수 있는 단일한 전환율은 존재하지 않는다.

# 부속서 4.

## 소득 데이터의 유용성

이 부속서에서는 캔버라 그룹이 수행한 가구소득구성요소 데이터의 유용성에 대한 메타설문조사에 대해 그 결과를 상세하게 논의한다.

5개 대륙 25개 국가에서 30 종의 소득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응답자가 설문지에 제공된 소득구성요소를 이해한 것은 아니며, 응답자가 기술한 새로운 소득구성요소를 이해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국가마다 언어적 차이 외에 제도적 차이도 상당히 존재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 발생한 오차에 대해 추후 수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 과정에서는 소득구성요소 목록을 제 2장과 부속서 1장에 제시된 소득구성요소에 맞춰 조정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 혹은 삭제 등이 이루어졌다. 제 2장 (표 2.1과 2.2)과 부속서 1에 사용된 분류 체계는 이 메타설문조사에 사용된 상세한 수준의 소득구성요소까지 포괄하도록 확대되었다. 이는 표 1에 잘 나와 있다. 표 1의 마지막 열은 설문지에서 사용된 원래 코드를 나타낸다.

각 소득구성요소에 대해 응답자들은 다음의 지시에 따라 답변하였다.

- (1) 소득구성요소를 모두 수집했는지의 여부
- (2) 그렇지 않다면, 해당 조사를 수행한 통계기관이 대체 (할당)하지 않는 한 "N"으로 표시
- (3) 그렇다면, 별도의 소득구성요소로 수집되었는지 ("S"로 표시), 또는 다른 소득구성요소와 결합되어 수집되었는지 ("J"로 표시)
- (4) 결합되어 수집되었다면 어떤 요소들을 함께 수집했는지의 여부.

만일 한 요소가 어떤 포괄적 질문 속에서 유추에 의해 수집되었다면, 응답자는 그 요소를 "N"으로 기입했으며, 특정 소득이 자신의 국가에 해당이 없다면 "0"로 기입하였다.

4개국 -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 -에서는 소득분배통계 보고를 위해 사용하는 행정자료로부터 수집 가능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보고하였다.

표 2는 조사 결과를 요약한 자료이다. “비수집” 응답 (N)은 공란과 구별하였다. 공란은 유용한 응답이 없었거나 질문이 없었던 (새로운 요소) 항목을 의미한다. “에”라 응답한 국가의 수를 계산할 때 “0”이라고 응답한 국가의 수도 추가하였다. (어떤 국가가 해당 프로그램이나 소득구성요소가 없는 경우 암묵적으로 그 값을 0이라 하였다.) 또한 해당 국가에서 적어도 하나의 설문조사가 그 소득요소를 수집했다면, 그 소득구성요소는 수집되었다고 간주하였다. 예컨대, 미국의 현 인구조사 (USA 1)에서는 1.6B를 수집하고 1.6A는 수집하지 않는 반면, 소득 및 프로그램 참여 조사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USA 2)에서는 1.6B는 수집하지 않는 대신 1.6A를 수집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1.6A와 1.6B 모두를 수집했다고 간주한다.

질문서에 대해 완성된 답변은, 작성자의 편집을 거쳐 룩셈부르크소득연구 웹사이트 ([//lis.ceps.lu/links/canbaccess](http://lis.ceps.lu/links/canbaccess))에 게재하였다.

**표 1**

소득구성요소 코드 목록

코드	소득구성요소	코드	목록
<b>1 근로 소득</b>			
<i>현금 또는 준현금</i>			
<b>1.1 현금 임금 및 봉급</b>			
1.1A	임금 및 봉급 (주업)	A1	
1.1B	임금 및 봉급 (부업)	A2	
1.1C	자녀 양육비	A6	
1.1D	육아 보조금	A8	
1.1E	비자발적 근로 비용에 대한 고용주의 환급분 (임금 및 봉급에 포함되었다면 이를 공제)	H10	
1.1F	자발적 근로 비용에 대한 고용주의 환급 (임금 및 봉급에 포함되었다면 이를 공제)	H11	
<b>1.2 봉사료 및 보너스</b>			
1.2A	봉사료	A3	

1.2B 보너스 A4

---

1.3 스톡옵션을 포함한 수익분배 A5

1.4 퇴직 수당 A7

1.5 군인 가족 및 해외 주재원 등 원격 근무자에게 제공되는 수당. K1  
복리후생의 현금 가치

---

1.6 고용주의 사회보험 부담금

1.6A 고용주의 민간연금보험 부담금 B1

1.6B 고용주의 민간의료보험 부담금 B2

1.6C 고용주의 생명보험 부담금 B3

1.6D 기타 보험에 대한 고용주의 부담금 (예. 장애) B4

1.6E 정부보험에 대한 고용주의 부담금 (사회보장 부담금 등) B5

---

1.7 고용계약으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

1.7A 회사차량 B6

1.7B 식대 B7

1.7C 대출 지원 (저리) B8

1.7D 주택 및 광열비 지원 B9

1.7E 육아 지원 B10

1.7F 휴가 지원 B11

---

2 개인사업 소득

현금 또는 준현금

---

2.1 비법인 기업의 손익

2.1A (순) 비농민 개인사업 소득A9

2.1B (순) 농민 개인사업 소득A10

2.2 비법인 기업으로서 가구가 버는 로열티C2

현물 소득, 귀속

2.3 물물교환용 가내 생산에서 발생한 순소득 (비용 제외 후) A12

2.4 자가소비용 가내 생산에서 발생한 순소득 (비용 제외 후) A11

2.5 순자산 귀속 수익률 K6

---

3 비법인 기업으로서 가구가 번 임대료에서 비용을 뺀 소득, 지대 제외 C4b

---

## 4 자산 소득

### 4.1 수령 이자에서 납입 이자를 뺀 금액

4.1A 수령 이자 C1

4.1B 부동산 및 신탁 이자 C5 (일부)

4.1C 연금 및 투자 수익의 형태의 연금 소득 K8 (일부)

4.1D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 H1

4.1E 비담보 대출이자 H2

---

### 4.2 배당금

4.2A 배당금 C3

4.2B 부동산 및 신탁 배당금 C5 (일부)

4.2C 연금 또는 투자 배당금 형태의 연금 소득 K8 (일부)

4.2D 비법인에 대한 출자 수익 C8

---

### 4.3 비법인 기업으로서 가구가 번 지대 (비용 제외) C4a

---

## 5 경상 이전 수령분

*사회보험 급여, 현금 또는 준현금*

### 5.1 고용주 지원의 사회보험 급여

5.1A 고용주 지원의 연금 또는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 및 자발적 부담금으로 받는 정기적 연금 A13

5.1B 해외 연금 A14

5.1C 연금 인출 (퇴직 계정에서의 비정기적 인출) A16

5.1D 민간 장학금 & 교육비 지원 (대출 제외) E11

---

### 5.2 정부 지급의 사회보장 급여

5.2A 정부 사회보장 (퇴직자 및 유가족) 급여 E1

5.2B 정부 장애보험/무능력/장해보험 E2

5.2C 정부 실업 급여/구직 수당 E4

5.2D 근무 중 상해 근로자에 대한 정부 보상 E6

5.2E 정부 질병/의료 급여 E13

5.2F 퇴역 군인 연금 (상해, 연금, 등.) E16

5.2G 고용 증진을 위한 육아 보조금 E15

---

**5.3 정부 지급의 종합사회부조 급여 (자산조사 불필요)**

5.3A 가족 또는 육아 급여/보조/수당 D1

5.3B 출산 급여/수당/보조금 D4

5.3C 정부 장학금 & 교육비 지원 (대출 제외) E10

5.3D 학자금 대출이자 감면 E12

---

**5.4 자산조사에 따른 사회부조 급여**

5.4A 자산조사에 따른 자녀 지원 보증 (공적) 급여F1

5.4B 자산조사에 따른 공적 부조 또는 일반 후생급여F2

5.4C 노인층 공적 부조 F3

5.4D 자산조사에 따른 실업 F8

5.4E 자산조사에 따른 장애 지원 F9

5.4F 자산조사에 따른 노령 연금 F10

5.4G 기타 자산조사에 따른 이전 프로그램F11

5.4H 자녀 세액 공제 F12

5.4I 근로 소득 세액 공제 F13

5.4J 기타 세액 공제 F14

*민간 현금 이전*

---

**5.5 가구간 정기적 이전**

5.5A 다른 가구로부터 받는 이혼 수당 G1

5.5B 다른 가구로부터 받는 양육비 G2

5.5C 다른 가구로부터 받는 정기적 현금 이전 G5

---

**5.6 자선단체 등 비영리 기관의 정기적 지원**

5.6A 노조의 질병 또는 장애 수당 K3

5.6B 노조의 파업 수당 K4

5.6C 자선단체로부터의 지원 K7

5.6D 기타 외부 가구로부터 받는 정기적 지급 G7

---

**7 경상 이전 지급분**

**7.1 고용주의 사회보험 부담금 (위 1.6과 동일)**

**7.2 근로자의 사회보험 부담금**

7.2A 의무적 민간 사회보험에 대한 근로자 부담금  
(연금, 건강보험 등.) H8

7.2B 의무적 정부 사회보험에 대한 근로자 부담금  
(급여소득세 포함) H9

7.2C 의무적 실업보험에 대한 근로자 부담금 H19

---

**7.3 환급분을 제한 소득세 및 사냥, 사격, 낚시에 대한 의무적 수수료 및 과태료**

7.3A 환급분을 제한 소득세 H15

7.3B 사냥, 사격, 낚시에 대한 의무적 수수료 및 과태료 H22a

---

**7.4 재산세 (부동산세) (정기적 납입) H16**

---

**7.5 가구간 정기적 이전**

7.5A 다른 가구에 지급하는 이혼 수당 H3

7.5B 다른 가구에 지급하는 양육비 H4

7.5C 다른 가구를 대신한 지급분 H5

7.5D 다른 가구에 지급하는 정기적 현금 이전 (선물) H7

---

**7.6 자선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기관에 대한 정기적 현금 이전**

7.6A 노동조합비 및 전문단체회비 H14

7.6B 자선단체에 대한 정기적 후원

---

**9 사회적 현물 이전**

9.1 공교육 D3

9.2 정부 보조 보건 서비스 D2

9.3 정부 사회보험체제를 통한 의료비 환급 E8

9.4 임대료 수당 (주택 보조금) F4

9.5 식품 보조 또는 식품 교환권 F5

9.6 공영 주택 보조금 F6

9.7 잉여 식품 및 의복 보조 F7

---

**이 가이드라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은 기타 항목**

*가계 소비 지출*

11.1A 근로 관련 교통비 (미보상) H12

11.1B 근로 관련 양육비 (미보상) H13

11.5A 사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의료비 H18

11.6 가계 지출에 대한 간접세

11.6A 판매세 또는 부가가치세 H17

11.6B 사냥, 사격, 및 낚시 외의 의무적 수수료 및 과태료 H22b

---

**12 현금 및 현물 지출의 비정기적 순이전**

**12.1** 기타 가구 및 자선단체에서 받은 비정기적 현금 및 현물 이전

12.1A 가구간 현물 이전 G3

12.1B 가구간 일회성 이전 지급분 (선물) H6 -

12.1C 가구간 일회성 현금 수령분 (선물) G4

---

**12.2** 복권 및 도박에 건 금액에서 당첨금을 제한 금액

12.2A 복권 및 도박에 건 금액 -

12.2B 복권 또는 도박의 당첨금 K5

---

**12.3** 비생명 보험료에서 보험금을 제한 금액

12.3A 개별적으로 가입한 민간 건강 보험료 - H20

12.3B 민간 질병, 상해, 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 E9

12.3C 민간 질병/의료 급여 등 E14

12.3D 민간 장애/무능력/장해보험 급여 등 E3

12.3E 근무 중 상해 근로자에 대한 민간보험 보상 E7

12.3F 개별적으로 가입한 민간 실업 보험료 - H21

12.3G 민간 실업 급여/구직 수당 E5

*수령한 자본 이전*

---

**17.1** 상속 G6

17.2 일시불 퇴직금 A15

17.3 생명보험의 가치 상승 K2

17.4 실현 자본 이득 C6

---

**20** 메모 항목: 미실현 자본 이득 C7

근로 소득개인사업 소득개인사업 소득개인사업 소득현물 소득자산 소득경상 이전근로  
소득이혼 수당경상 이전이혼 수당현물 이전현물 이전현물 이전

표 2. 소득구성요소 요약 자료

1. 근로 소득
2. 개인사업 소득
3. 소득
4. 자산 소득
5. 경상 이전경상 이전 수령분
7. 경상 이전 지급분
9. 사회적 현물 이전

1. 감비아, 모리셔스 및 스위스만이 지대 외의 임대료를 따로 규명하였다. 여기서는 임대료를 총액 데이터로 나타낸 국가를 보여준다.
2. 이 조사에는 자선단체에 대한 정기적 현금 부담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3. 중국만이 사냥, 사격, 낚시 외의 총 의무적 수수료 및 과태료를 따로 규명하였다. 여기서는 총 의무적 수수료 및 과태료 데이터를 나타낸 국가를 보여준다.

# 부속서 5

## 국민계정 추계치의 로버스트성

### 1. 개관

국민계정은 통계 조사와 행정자료를 모두 모아 집계한다.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로버스트적 평가는 미시데이터 조사와 관련해 기술했던 과정보다는 다소 다른 과정을 거친다. 어쨌든 가구조사에서 도출된 데이터와 국민계정에서 도출된 데이터를 견줘 후자의 신뢰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자주 인용되면서 전체 국민계정체계를 잘 모르는 이들도 쉽게 이해하는 총량지표인 국내총생산 (GDP)의 신뢰성 평가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 GDP 측정 방법은 세 가지이다. 첫째, 경제 내의 모든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합 (산출 측정), 둘째, 그 과정에서 창출된 모든 소득의 합 (소득 측정), 셋째, 그 소득으로 구매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합 (지출측정). 개념적으로 이 세 측정 방법 모두는 동일하다. 또한 통계적으로 로버스트성 평가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전반적 로버스트성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이 세가지 측정 방법을 평가해 보기로 한다.

### 2. 산출 측정

통계학자들은 한 경제 내의 모든 기업을 표준 국제 분류법에 따라 여러 산업으로 분류하며, 각 산업의 부가가치를 표준 조사 기법을 통해 측정한다. 그 결과의 정확성은 산업마다 다른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고 80%의 기업이 5인 이하의 종업원을 지닌 영세 기업이지만 나머지 20%의 대기업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약 90%이다. 물론 전 산업에 걸쳐 대기업이 동일하게 분포된 것은 아니다. 광산, 조선, 전기 등의 산업에는 대기업이 많이

포진되어 있지만, 레스토랑, 청소, 구두 수선 등은 영세하게 운영된다. 농업, 건설, 교통 등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골고루 포진해 있다. 대체적으로 대기업이 주도적인 산업의 설문조사 결과는 소규모 기업보다는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통계망에 걸리는 일이 드물어, 활동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가 무척 어렵다. 이 현상을 일컬어 “숨은” 혹은 “비공식적” 경제라 부른다. 또한 이런 종류의 활동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특별한 방안도 점점 더 많이 고안되고 있다.

한 산업의 특성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프랑스에 있는 대부분의 베이커리는 규모가 작지만, 영국은 규모가 큰 편이다. 폴란드의 어업은 저인망 어선이 이끌고 있지만, 그리스의 경우 전통 낚시가 아직 지배적이다. 따라서 동일한 산업에 대한 측정의 로버스트성은 각 지역별 전통 때문에 국가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외에도 통계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많이 있다. 대부분 OECD 국가에서는, 제조업이 경제의 동력 역할을 하던 60년대와 70년대에 산업적 연구와 고용원, 부가가치 창출원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이후에는 서비스 산업이 점점 중요해졌지만, 그에 대한 통계 연구는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못했다. 초기에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 (보건, 교육, 문화 서비스까지)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은행에서 제공한 금융 서비스는 행정적 조사에 의해 측정되었다. 그러나 민간 서비스가 지닌 중요성은 통계청이 몇 년 간의 예산 부족을 겪으면서 민간 부문에 대한 연구의 확장이 극도로 어려움을 겪은 후에야 겨우 인식되었다. 이 외에도, 서비스는 보통 가게에서 제공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커서, “숨은” 경제로 분류되어 왔다.

선진국이나 개도국이나, 수많은 국가에서 농업은 정치 문화적 중요성을 지니기 때문에 측정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문이다.

요약하자면, 대부분 농업이나 대규모 제조업은 공적으로 제공되고 조사도 잘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 민간 부문은 그렇지 못하다.

### 3. 소득 측정

모든 부가가치는 소득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한 기업을 예로 들어보자. 한 부가가치 요소는 (주로 비중이 큰 부가가치), 종업원에 대한 지급을 나타낸다. 또 다른 부가가치 요소는 (비중이 작거나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가가치) 생산적 활동 (건축 혹은 근로에 대한 조세) 과 관련해 정부에 내는 조세를 나타낸다. 기업에는 주주에 대한 배당금, 대출이자 등이 분배되거나, 세전 소득 등을 보유한다. 이 모든 부가가치의 요소는 조세 관련 부서의 행정 기록을 통해 통계 기관에서 수집 가능한 자료들이다.

앞서 기술한 부가가치의 산출치와의 비교, 조정도 가능한 일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산출과 소득이 다양한 정의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기록 시점도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가장 중요하게는, 이 조정을 수행하는 통계학자들이 두 체계하에서 있을 수 있는 허위 보고 등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꺼리거나 불가능한 부문의 활동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은 국세청인가? 아니면 통계기관인가? 특히 “숨은” 경제에서 활동하는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도 발생한다.

냉소주의 혹은 전문가적 오만 때문에 우리는 통계 자료보다 행정자료보다 더 낫다라고 간주할 위험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납세기관은 징세 체계의 효능을 더욱 높이고, 미신고 소득까지 상세히 측정하려는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 4. 지출 측정

지출 측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GDP를 구성하는 요소는 다섯 가지이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소비이다. 소비도 수많은 요소로 분류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의 목적에서 본다면 2단계 분해가 가장 유용하다. 대부분 OECD 국가들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행정 및 국방 서비스 (공공재)는 GDP의 약 80%를 차지한다. 이러한 공공재는 정부 예산을 통해 측정하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고 투명하게 측정 가능하다. (물론 개념 정의나 기록 시점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지만, 큰 오차를 낳는 것은 아니다.)

1996년 OECD 국가에서, 가계에 편익을 주는 소비는 GDP의 약 65-75%를 차지했다. 당시

다른 국가들보다는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경우, 전체 70% (GDP의 약 절반)가 가계의 지출이었으며, 나머지 30%는 정부가 제공하는 보건, 교육, 사회적 서비스와 같은 공공 서비스였다. 미국의 경우, 반대로 가계 소비의 90% 이상이 가계의 지출이었으며 정부 서비스는 10% 미만에 불과했다.

가계 소비 지출을 추계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한데, 이 중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가계 예산 조사 방법이다. 따라서 이 경우 RAR 하에 기술된 방법이 모두 적합하게 사용된다. 술이나 담배 등 조직적으로 과소 신고되는 항목, 또는 차량이나 가구와 같이 규모가 크면서 자주 구입되지 않는 품목, 또는 고소득층이 구입하는 명품 등 빈곤층 집단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지출 품목 등에 대한 예산 조사의 신뢰성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다.

국민계정 내에서는 기숙사, 병원, 교도소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도 조사를 수행한다. 비영리 단체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1993년 가이드라인의 도입과 더불어, 이들 조사에 대한 결과는 별도의 범주로 나타내게 되었다.

지출 중 투자도 GDP의 1/4 이상을 차지하며, GDP의 산출 측정방법에서 기술된 방법과 유사한 조사 방식으로 자료가 수집된다.

이 외의 나머지 GDP 구성 요소로는 수출과 수입이 있다. (기타 지출의 총량에서 수입을 제한 후 GDP가 산정된다.) 재화의 수출입은 예로부터 관세청의 행정적 통제를 통해 측정되었다. 물론, 관세 적용 품목이 점점 감소하면서 관세청에 신고되는 정보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일이 사라지고, 컨테이너의 사용으로 인해, 정보 수집 비용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현재 수집되는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 내에서는 이러한 행정자료가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그 결손을 메우기 위해 통계 자료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서비스의 수출입 측정은 재화의 측정보다 더욱 어렵고 정확성이 떨어진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국제거래의 증가로 그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 5. 세 가지 측정 지표의 융합

GDP의 측정에 이용되는 산출 및 소득 지표, 그리고 산출 및 지출 지표를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고안되고 있는데, 이는 제품마다 건 별로 행해진다. 통상, 술과 담배의 생산치는 가계 예산 조사에서 신고된 동 품목에 대한 소비 자료보다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가계의 소비치를 이에 따라 변경해야 한다. 반대로, 가계의 택시비 지출 자료는, 택시 운전사들이 낸 정보보다 더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가구조사를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여러 개의 제품에 대해 단일한 자료보다는 기타 통계 및 행정자료를 활용하도록 해서 회계의 전반적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산출, 소득, 지출간 이론적 상호관계 구조를 통해 균형 잡힌 계정에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오차의 가능성을 한결 낮출 수 있다. 또한 국민계정은 매년 혹은 분기별로 작성되기 때문에, 상세 수준에서 국민계정의 시계열적 자료가 타당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그때마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계정의 작성자들은 측정이 어려운 부문에 대한 추계치를 포괄적으로 제시하며,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통합하기 때문에, 이들의 계정 자료 품질은 개별적으로 얻은 자료의 품질보다 높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가구의 소득, 소비, 자산에 대한 종합적 계정을 원한다면, 국민계정 값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가계에 대한 귀속 소득의 영역, 연금 부담금이나 국가 제공 서비스 등에서 더욱 그렇다. 다른 부문, 예컨대 임금과 봉급, 가계 소비 지출 등에 대해서는 가구 예산 조사를 통해 상세 값을 얻을 수 있지만, 이를 국민계정 추계치로 한정시키는 이유는 범위가 더 포괄적이기 때문이고 (시설 가구 등도 포함), 미시와 거시자료의 융합으로 초기 추계치의 품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 예산 자료와 국민계정을 융합할 때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는, 국민계정의 시계열 자료는 자주, 소급 검토되지만, 대안적 데이터셋과의 융합이 상세히 진행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단 한 데이터셋이 융합되면 변화하기가 쉽다.

## 부속서 6

# 소득 분배 자료의 로버스트성 평가 보고서

### [국가]

이 보고서는 소득에 관한 미시데이터에서, 소득 분배 결과의 타당성을 훼손할 수도 있는 결함을 파악하고 이러한 결함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우리는 결함의 해석시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타 국가/데이터셋에 대한 보고서는 캔버라 그룹의 인터넷 사이트 <http://www.lisweb.ceps.lu/links/canbaccess.htm>에 게재되어 있다.

보고서의 데이터셋과 연도

데이터 작성자:

이름:

기관: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일자

보고서 상황 (최종/잠정)

기타 추가 사항:

---

1. 데이터셋의 이름, 기재 사항, 특징

1.1 데이터셋의 이름?

1.2 데이터셋의 표집틀은?

1.3 데이터 세트의 출처가 된 조사 및 기록의 주 목적은?

1.4 데이터 수집 방법은?

(가구주와의 일대일 면접 등)

1.5 데이터의 출처가 하나 이상이라면 그 데이터는 어떻게 연관되었는가?

1.6 표본 규모 및 응답률은?

(응답률의 계산 방법, 한 가구를 '응답' 가구로 간주할 때의 기준 - 가구의 모든 성인 가구 구성원이 응답해야 '응답' 가구로 간주하는가 등-을 설명해라)

1.7 소득 측정 기간은?

(연 또는 주 단위. 소득 구성 요소가 여러 개라면 각 요소별 측정 기간을 기입할 것)

1.8 데이터는 연간, 혹은 1 시점 혹은 다시점에서 수집되었는가?

(a) 전체 데이터셋에 대한 수집방법 - 예컨대, 각 가구 표본을 일년 중 다른 때에 각각 수집하였는가? B) 개별 가구에 대한 수집 방법 - 전체 소득 측정 기간에 대해 한 번 수집되었는가? 아니면 여러 기간에 대해 수집되어 이를 집계하였는가?)

1.9 소득 데이터는 "현재" 데이터인가 아니면 소급 데이터인가?

(데이터는 일년 내내 혹은 1 시점 또는 다시점에서 수집되었는가?)

1.10 소득 측정 기간 중 변수는 언제 변할 수 있는가? (고용 상황 혹은 근무 시간), 이 변수에 할당된 값은 얼마인가?

1.11 지난 10년간 이 중 어떤 특징이 변화를 겪었는가? 소득 변수의 정의 혹은 도출된 변수가 지난 10년 간 변화된 적이 있는가? (이 경우 소득 분배 결과에 대한 예측 효과를 상세히 적어라.)

1.12 데이터는 종단면 데이터인가?

2. 인구 포괄성

2.1 그 국가의 총인구는 몇 명인가?

(2.2에 신고되어 있다면, 개인, 가구/가족의 인구 기록을 연도와 함께 기입)

2.2 표집들이나 데이터 집단에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배제된 집단은 아래에서 어떤 집단인가? 이것이 소득 분석에 미치는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집단 기술)

배제	배제 집단 규모 (개인)	소득 분배에 주는 기대 효과
2a	지리적 영역	
2b	출생지, 시민권, 이민 여부, 국적 혹은 이민족별로 정의된 집단	
2c	노숙자	
2d	병원, 요양소, 양로원 등에 거주하는 자	
2e	숙박소에 거주하는 자 (학생, 간호사 등)	
2f	보육원	
2g	군인, 경찰, 그 가족 군대시설에 거주 민간인	
2h	외국 주둔 군인, 외교사절 등	
2i	수형자	
2j	기타 (경제 활동, 연령, 소득 수준, 가족 규모 등으로 정의)	

2.3 특정 집단을 배제했을 때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리라 기대하는가?

(극노령층, 혹은 소년층)

- 2.4 지난 10년간 인구 범위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는가? 그렇다면, 소득 분배에 어떤 영향을 주리라 기대하는가?
- 2.5 특정 배제 집단의 규모가 시간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겪었는가? 그렇다면 소득 분배에 어떤 영향을 주리라 기대하는가?
- 2.6 [중단면 데이터셋만] 출생, 이민 혹은 배제 집단에서의 이동 등을 통해 '합류한' 사람들, 혹은 사망, 해외이민, 배제 집단으로의 이동 등을 통해 떠난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취급되는가?

### 3. 표본 설계, 무응답 편향, 가중치

#### 3.1 표집률 및 표본 설계는 어떠한가?

(총화 표집이라면 어떤 총화 표집인가?)

#### 3.2 표본 설계는 표집 오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가?

(근로 소득 등, 핵심 소득 추계치의 설계 요소를 인용하라. 특히 대규모의 설계 요인이 있다고 알려진 추계치를 규명하라.)

#### 3.3 가중치에 대한 표준을 구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목표는 무엇이고 어떻게 도출되는가?

(개별 성인의 연령 (10년 연령 단위로), 활용된 모든 독립 추계치의 신뢰성, 1:2.5로 제한된 가중범위를 지닌 CALMAR 등 총량 체제 등, 사용된 모든 차원에 대해 상술)

#### 3.4 어떤 무응답 편향이 나타났는가? 또는 어떤 무응답 편향이 의심되는가?

(가능한 모든 편향을 기술하고 정량화. 이를 교정하려면 얼마나 가중치를 부여해야 하는가?)

#### 3.5 납세 기록, 급여 기록 또는 기타 행정 기록과 비교했을 때, 무응답 편향이 소득 분배 추계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가?

(3.4 하의 기록이 없다면, 행정자료에서 의심되는 약점을 기입하고, 그 잠재적 편향을 교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중치 부여 정도를 쓴다.)

#### 3.6 응답 편향을 평가하기 위해 기타 자료와 어떤 비교를 수행했는가? 그 비교 결과는 어떠한가?

#### 3.7 무응답 문제가 의심되는 다른 집단이 있는가? (위에 나온 집단 외, 예, 근로 허가 없이 일하는 불법 이민 근로자)

- 3.8 전반적으로, 어떤 소득 추계치가 가장 큰 무응답 편향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시점 추계치와 시기별 소득 분배 변화 추계치에 대해 따로 작성하라.)
- 3.9 지난 10년간 표본 규모, 표본 설계 또는 응답 편향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가 있었는가? 그렇다면, 소득 분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리라 기대하는가?
- 3.10 [종단면 데이터셋만] 이 데이터셋에서 도출된 탈락 (attrition)의 정도와 형태는 어떠한가? 이를 어떻게 취급하는가? a) 횡단면 소득 분배와 b) 소득 이동성의 변화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 4. 무응답, 대체 및 편집

- 4.1 3개의 소득구성요소 중 무응답 항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요소는? (What is the incidence for these 3?)

(“모른다 + 응답 거부” 대 무제로 (non-zero) 수에 대한 비율로 측정한다. 데이터셋에서 누락된 개인, 가족 혹은 가구가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응답자의 95% 이상이 소득 0으로 보고한 경우는 제외)

- 4.2 무응답 항목에 많은 영향을 받는 다른 소득 구성 요소가 존재하는가? (“모른다 + 응답 거부” 답변이 비제로 (non-zero) 응답 숫자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4.3 무응답 항목에 많은 영향을 받는 변수 - 연령, 경제적 상황 등-가 존재하는가?

- 4.4 위의 변수에 사용된 대체 기법 (imputation techniques)은 무엇인가?

(예, hot-decking, closest class mean, 신경망 등. 대체 목적을 위해 데이터가 분류된 계층을 밝히고, 누락 소득 변수 중 대체되지 않은 변수가 있음은 이를 밝힌다.)

- 4.5 어떤 상위 코딩 혹은 하위 코딩이 사용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observations (관측)이 영향을 받는가? 상위 코딩 혹은 하위 코딩의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시점 추계치와 시기별 소득 분배 변화 추계치에 대해 따로 보고) 세후 부의 소득은 어떻게 취급되었는가?

- 4.6 직접세를 제한 소득은 직접세에 대한 불완전 데이터에 영향을 받는가? 그렇다면, 순소득 분배의 추계치에 주는 실질적 영향은 어떤 것인가? (순소득이, 신고된 순소득에서 수집되는지 아니면 총소득에 귀속세를 제한 후 구해지는지 기술한다.)

실제로 직접세가 징수되는 방법 (예, 연말 과세 평가를 통해)을 기술한다.)

- 4.7 표본의 5% 이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다른 편집 방법이 사용되었는가?  
그렇다면 측정된 소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가? 자료 수집 단계에서 어떤 편집 및/또는 점검을 하는가? (CAPI를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점검하는가?)
- 4.8 대체 및 편집시 알려진, 혹은 의심되는 결함에 가장 민감한 소득 결과는 무엇인가? (그 근거가 정량적 분석인지, 정확한 판단인지 아니면 단순한 추측인지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 4.9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소득 구간을 사용하여 수집한 소득 데이터가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그 값은 어떻게 할당되었으며, 결과의 정확성에 어떤 영향을 주리라 기대하는가?
- 4.10 지난 10년간 무응답 항목 발생, 귀속 혹은 편집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가 있었는가? 그렇다면, 소득 분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리라 기대하는가?
- 4.11 [종단면 데이터셋만] 초기 시기에 수집된 자료나 그 자료의 특성은 소득 데이터의 대체에 어느 정도까지 활용이 되는가? 소득 분배 및 소득 이동성 결과의 신뢰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 4.12 [종단면 데이터셋만] 다양한 총량 체제가 종단면 분석을 위해 제공되거나 사용되었는가?

---

## 5. 소득 데이터의 정확성

- 5.1 대체 자료로 얼마나 많은 소득 데이터가 수집되었는가?
- 5.2 얼마나 많은 근로 소득 데이터가 a) 고용주로부터 제공되었고, b) 고용주의 명세서에 견주어 점검되었는가? 다른 소득 구성 요소에 대한 자료는 얼마나 많이 점검되고 있는가?
- 5.3 미시데이터셋에서 도출된 총소득 데이터는 어떤 방법을 통해 국민계정 추계치와 비교하는가? 이것이 소득 분배 추계치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아래 표를 참조해 보자. 투자 소득과 자산 소득 각각에 대해 비교를 할 수 있다면, 총 비교 외에 각 요소에 대한 비교 결과도 보고한다. 국민계정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약점과 미시데이터와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만일 이들 각각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면, 그 평가 결과를

여기에 상세히 기입한다. 만일 국민계정보다 더 우수하거나 유용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출처가 있다면 이를 활용해도 좋다.)

소득 구성 요소	미시데이터에서 도출된 총 추계치, 국민계정의 %로 나타냄	비고	분배 추계치에 주는 함의
임금 및 봉급			
개인사업 소득			
기업 연금			
투자 소득			
이전			
기타 소득			
직접세			

5.4 소득에 대한 미시데이터에서 고용 형태는 노동력 조사 (Labor Force Survey) 또는 기타 데이터 출처의 정보와 일치하는가?

(예, 성인 근로자의 고용률, 65세 이하 성인의 고용률, 복수의 직업을 가진 인구의 비율 등)

5.5 해당 데이터 출처에서는 개인 사업자의 소득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기업회계를 통해서인가? 그렇다면 그 회계기간은 다른 소득 데이터의 기간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며, 손실분은 어떻게 취급하는가에 대해 기술한다.). 개인 사업자 소득 데이터는 어떤 신뢰성을 지니고 있는가? 개인 사업자 소득은 순소득을 신고하는가 아니면 세전 총소득을 신고하는가?

5.6 지난 10년간 소득분배통계용 미시데이터에서 파악된 소득과 다른 소득 데이터원에서 파악된 소득간 차이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했는가? (그렇다면 주된 변화를 기술). 그렇다면, 그 변화가 소득 분배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하는가?

5.7 여러 소득구성요소의 상대적 규모는 시간에 따라 크게 변화해 왔는가? 그렇다면, 그 변화가 소득 분배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하는가?

5.8 지난 10년간 소득분배통계용 미시데이터에서 파악된 고용 수준과 다른 고용 데이터 출처에서 파악된 고용 수준간 차이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했는가?

(그렇다면 주된 변화를 기술). 그렇다면, 그 변화가 소득 분배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하는가?

5.9 기타 추가 사항을 기술한다.

---

## 6. 소비 역량에 대한 가이드로서 지니는 소득 데이터의 타당성

6.1 a) 소득 분배 분위, b) 특정 집단 (개인사업자 혹은 농민 등)의 중위 또는 평균 순소득을 어떻게 지출과 비교를 수행했는가? 보통 가계의 가처분 소득으로 구매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분위/집단의 역량을 나타내는 가이드로서 소득 데이터는 어떤 타당성을 지니는가? (시점 추계치 및 시간에 따른 소득 분배 변화 추계치 각각에 대해 기술한다.)

6.2 당신의 나라에서는 현금 대용물 - 식권 혹은 회사차량 등 -이 특정 집단 혹은 특정 소득 구간에서 상당한 소득의 역할을 하는가? 그렇다면 소득 분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시점 추계치 및 시간에 따른 소득 분배 변화 추계치 각각에 대해 기술한다.) 소득 미시데이터에서는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6.3 정부에서 어떤 유형의 주택을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는가? 그 수혜자는 특정 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는가? 이와 더불어 주택 소유자이자 거주자에 대한 귀속 임대료의 취급 형태에 어떤 형태의 소득 분배 결과가 민감성을 보이는가? (시점 추계치 및 시간에 따른 소득 분배 변화 추계치 각각에 대해 기술한다.)

6.4 기타 추가 사항을 기술한다.

---

## 7. 가구, 가족, 개인, 아동

7.1 소득 데이터의 관측단위는 무엇인가?

(예, "가구" 와 "개인" 모두를 관측단위로 하는가?)

7.2 "가구"와/또는 "가족"은 어떻게 정의되었는가? '가구주' 혹은 '가장'은 어떻게 정의되었는가?

7.3 개인 수준에서 신고되지 않는 소득구성요소는 무엇인가?

7.4 "개인"에서 "가족으로" 혹은 "가구로" 합산 가능한가? 소득 산정이 가능한 최소 단위와 최대 단위는 무엇인가?

7.5 소득 데이터셋에서 가구, 가족, 개인의 상대 숫자의 추계치는 어느 정도로

정확성을 보이는가? 신뢰성 있는 통제가 가능한가?

7.6 “아동”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7.7 아동에 대해서도 소득 데이터가 수집되는가? 그렇다면 소득이 이들에게 할당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가구 구성원에게 할당되는가?

7.8 개인은 어떻게 “가구” 혹은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가?

(예, 집을 떠나 유학 중인 아동, 집을 떠나 군대나 병원에 있거나 직장을 다니는 성인 등에 대한 정의)

7.9 가구의 여러 구성원들간 가족 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었는가? 일반적으로 구성원이 소득/예산을 공유하지 않는 때를 규명할 수 있는가?

7.10 학생과 학생의 소득은 어떻게 취급되는가?

7.11 지난 10년간 7.1-7.19항의 내용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는가? 그렇다면 소득 분배 변화에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

7.12 위 특징들 중 당신의 국가에서 소득 분배 데이터 분석에 특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가?

---

## 8. 일반적 평가 문항

관련성:

8.1 이 데이터 출처의 주 용도는 무엇인가?

8.2 주 사용자는 누구인가?

8.3 설문조사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8.4 시계열 자료가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8.5 시계열에 단절 상황이 존재하였는가?

시의적절성

8.6 자료 수집 말기부터 자료의 사용 시점 (처리 시점)까지 필요한 시간은 얼마인가?

---

접근성:

8.7 어떤 형태로 자료가 배포되는가?

8.8 이 자료는 익명의 미시데이터로서 대중에 배포되는가?

8.9 어떤 형태로든 메타 자료가 포함되어 배포되는가?

---

비교 가능성:

8.10 이 조사에서 사용된 개념과 정의는 국제 표준 (1977년 소득 분배, 소비, 자산 축적에 관한 UN 가이드라인 등)에 부합하는가?

---

일관성

8.11 소득 데이터는 통계청 내에서 사용되는 기타 소득 데이터와 조화로운가?

8.12 그렇지 않다면 소득 통계를 위해 어떤 자료를 사용하는가?

## 부속서 7

# 1998년 “Eurostat 사회적 배제 및 빈곤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제언” 발췌문

### Statistics in Focus: 1차 배포 혹은 보도자료를 위한 요건

상세한 배경에 대한 정보 수준은 출판 유형 및 제시 결과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지만, 사용자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최소한의 정보가 존재한다. 그 정보는 바로, 어떤 문제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그 문제가 데이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정보이다. 예컨대 근로계층간 빈곤에 관한 데이터의 경우, 개인사업자 소득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개인사업자의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이에 1차 배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독자들이 어떤 수치를 보고 그 수치가 의미하는 것보다 더 과하게 해석 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그래프, 표, 텍스트 등을 적절히 선택해야 한다.
- 소득이나 사회적 배제와 같이 텍스트에 사용된 용어는 반드시 개념 정의를 해야 한다.
- 정보의 출처가 표본조사라면, 표집오차도 반드시 나타내야 한다. 표집오차를 측정하는 좋은 방법으로 상대적 표준오차 - 변동계수, 평균으로 나눈 표준오차 등이 있다. 한계치도 정의를 해야 한다. 상대적 표준오차가 한계치를 초과하면 이는 공표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성격의 정보를 제시할 때 대안적으로 도표를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 특정 정보가 행정자료에서 도출된 것이라면, 이를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그 행정자료와 관련한 문제가 존재할 경우에도, 이를 명시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그 전형적 사례가 포괄성에서의 편향이다.

또한 주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이 필요하다.

- 무응답 혹은 측정 오차로 인한 편향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 개인사업자에 대한 빈약한 소득 정보, 가구에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배제
- 처리 과정에의 추정에 민감한 수치
- 데이터원에서 포착되지 않은 요인 (예, 비현금 지원 등)의 중요성이 국가마다 차이가 있음
- 다른 데이터원과의 충돌

국가통계연구소 (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s)가 그 국가 내에서 생산한 수치와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 모든 수치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별 절충 데이터의 비교능력은 국내자료와의 비교능력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자료 비교능력에 대한 우려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위의 주의사항은 본문 내에 또는 별도의 상자 안에 수록할 수 있다.

#### 보다 상세한 보고서를 위한 요건

보다 전문적 지식을 지닌 대중을 대상으로 작성된 상세 보고서에서는, 위의 주의사항을 본문과 표 내에 수시로 나타내야 하며, 본문이나 부속서 등의 성격에 적합하게 나타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부속서에는 다음의 정보를 수록해야 한다.

- 사용된 모든 용어와 개념에 대한 정의 - 균등화된 순가처분 소득, 사회적 배제, 최소수입액, 기준인, 아동 등
- 정보의 출처: 표집방법, 표본 규모 등. 사용된 방법의 한계, 특히 국가마다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한다.

- 패널조사의 비대표적 성격의 증가와 같이, 수집방법의 설계 때문에 발생한 편향. 국가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요인도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
- 시설에 사는 인구, 지리적 한계, 특정 인구층의 배제와 같은 표집틀의 한계 등의 소스 데이터의 포괄성을 언급해야 한다.
- 전체 소득기록이 없는 개인 등에 대한 무응답 혹은 누락의 수준, 특정 변수의 유용성과 관련된 무응답 항목 등을 명시해야 한다. 대리 정보를 사용했다면 이도 상세히 명시해야 하며, 그 정보의 품질도 평가해야 한다. 무응답이나 누락의 취급 방법도 언급해야 한다.
- 통계에 포함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와의 비교 결과
- 무응답 항목 조정시의 편집, 대체, 분류오차.
- 무응답 대상에 대한 조정시의 가중치 부여 혹은 총계시스템
- 주택, 교통 등의 보조금 취급에 대해 지니는 비교의 민감도 (노인층에 대한 교통비 할인 등)
- 균등화: 보고서에 사용된 지수 및 그 결과가 대안적 지수에 대해 지니는 민감도.
- 전문화된 측정 방법
- 표집오차: 표집오차에 대한 설명과 그 용도, 설계효과, 변동계수 계산법 명시.
- 시기별 비교능력, 특히 이전 시기에 발표된 수치와의 비교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화를 명시해야 한다.
- 다른 소스와의 비교능력: 국내의 대안 발간물에 대해 언급하고, 국내 자료와의 충돌이 있다면, 이를 부각시키고 설명해야 한다.

- 데이터 결함이 분석진술에 주는 함의
- 이전에 발간된 시리즈 혹은 기술적 문제에 대한 특별 보고서 등에 수록된 분석 내용 언급
- 배포 형태와 연락처

#### 개론, 선집, 또는 간행물

점점 더 중요해지는 통계자료로서, 사회 전반적 모습을 개괄하는 간행물이 있다. 이에, Eurostat와 많은 국가들은 다양한 사회와 경제적 테마 속에서 사람들의 삶을 다루는 통계연감을 발간하고 있다.

광범위한 통계 자료에 토대를 둔 이러한 종류의 간행물에서는 상세하고 수준 높은 평가나 개별 출처를 모두 다루는 메타데이터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버스트한 진술만을 사용하고, 통계 문제점의 원인을 밝히는 작업은 여전히 중요한 원칙이다.

또한 이전에 보도되지 않은 통계를 포함하지 않는 이러한 간행물은 더욱 신중을 기해 개념, 다양한 출처 및 원시 데이터를 언급하고 설명해야 한다.

Eurostat의 사회지표 (Social Indicators) 포켓북의 경우, 데이터를 최초로 배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상세한 고품질의 평가나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메시지는 반드시 로버스트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포함 항목을 선정해야 한다. 메시지가 충분한 설명 없이 모호하거나 호도적이라면, 그 항목은 배제시켜야 한다.